발간등록번호
57-3720018-000001-11

의정백서

제 8 집 [제5대 전반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 8 집

의 정 백 서

- 제5대 전반기 -

(2010. 7. 1 ~ 2012. 6. 3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마크 및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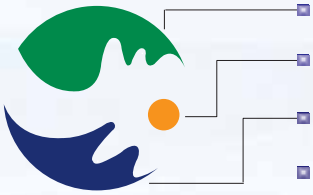

- 녹색부분 : 산, 육지 - 자연
- 주황색원 :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 공단
- 파랑부분 : 바다 - 자연
- 의　　미 : 전체적으로 산과 바다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연과 산업 중 어느 한곳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지역발전의 모습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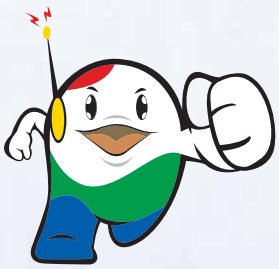

- 컨　　셉 : 든든한 북구, 달리는 북구, 아이디어 북구
- 형　　태 : 돌고래
- 의　　미 : 강한 생명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젊고 높은 지능의 돌고래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반짝이는 아이디어, 새로운 탄생,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

| 구 상징물

구화(區花) / 참나리

청초 우아함과 순결함을 지닌 꽃으로 번식력이 강하여 신설 북구의 깨끗함과 번영을 상징함.

구목(區木) / 느티나무

화합, 번영, 안정성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장수성 나무로서 북구의 힘찬 번영과 도약을 의미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북구의 희망을 상징함.

구조(區鳥) / 산까치

친숙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새로 더불어 사는 북구의 희망과 친환경성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상징함.

발 간 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 치 용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제5대 북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듯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18만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5대 북구의회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과 성과를 정리한『제8집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생생한 기록인 의정백서는 의정활동 경험이 부족한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제5대 의회에서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지침서로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의정백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운영과 의정활동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자료로 보존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선배의원님들이 일구어온 지방자치의 기틀을 이어받아 한층 더 계승 · 발전시킴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비젼있는 정책개발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여, 18만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자료수집과 편찬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지역의 중요한 사료(史料)로서의 역할은 물론 구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의회운영모델을 정립하는데 소중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축 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 종 오

우리 북구의회 제5대 의정사를 집대성한 의정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18만 북구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 의회는 전국의 어느 의회보다 열정적으로 구민의 대변자로써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구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구정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수준 높은 의정활동 등으로 행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주신 열정과 노력이 계셨기에 가능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의기관인 북구의회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일들을 의회와 함께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여 공무원들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다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의회를 존중하고 북구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며,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열린 구정을 맘껏 펼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북구의회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거듭 제5대 북구의회『의정백서』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북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며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議

제5대 전반기 북구의회의원 현황

의 장 단

(재임기간 : 2010. 7. 1 ~ 2012. 6. 30)

의 장

안 승 친

부 의 장

정 윤 석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2010. 7. 1)

제5대 전반기 북구의회의원 현황

(임기 2010. 7. 1 ~ 2014. 6. 30)

성 명	학력 및 경력	주소 · 전화
 안 승 찬 가 선거구 (농소1동·강동동·송정동)	■ 학 력 • 연산초 · 동래중 · 브니엘고 졸업 • 울산대학교 자연과학대 졸업 ■ 경 력 • 울산새날여는청년회(현. 울산청년회) 회장 역임 •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역임 • 국회의원 보좌관 역임 • 북구주민회 창립 초대회장 역임 •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대표 역임 • 울산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역임 • 송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역임 • 호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역임 • 통합진보당 북구지역위원회 위원장 역임 •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역임 • 현) 북구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 • 현) 북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원 • 현) 북구 주민회 줌마행복대학 학장 • 현) 금속노조 울산지부 정치위원 • 현) 가족봉사단 8기‘ 마중물 ’회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65 103동 205호 (화봉동, 대우아파트) (E-mail) asc1963@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 an-janggun/ HP : 010-6587-1287
 이 홍 걸 가 선거구 (농소1동 · 강동동 · 송정동)	■ 학 력 • 송정초 · 제일중 · 학성고 졸업 • 동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 력 • 송정동새마을협의회회장 역임 • 송정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 역임 • 송정초등학교총동창회사무차장 역임 • 송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역임 • 화봉중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 울산광역시북구문화원이사 역임 • 울산광역시핸드볼협회장 역임 • 울산처용로타리클럽회장 역임 • 새누리당 울산북구당협 운영위원 역임 • 현) 북구종합사회복지관운영자문위원장 • 현) 화봉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 학성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현) 울산광역시아파트연합회 북구지회 자문위원 • 현) 농소농협 운영평가 자문위원 • 현) 새누리당 중앙위원	(자)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 10길 4 ☎ 289-3388 (E-mail) sselc3388@hanmail.net HP : 010-2950-3763
 윤 치 용 나 선거구 (농소2동 · 농소3동)	■ 학 력 • 화랑초 · 경주중 · 경주공고 졸업 • 서라벌대학 졸업 ■ 경 력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 상무집행위원 역임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교육위원 역임 • 동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 천곡중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 농소3동 아파트연합회 초대회장 역임 • 쌍용아진 2단지 입주자대표 회장 역임 • 통합진보당 창당발기인 및 통합진보당 북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 현) 동천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 북구주민회 운영위원 • 현) 농소3동 자율방범대원 자문위원,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 회원 • 현) 농소3동 아파트연합회 고문 • 현) 전국아파트연합회 울산지부 북구지회 자문 • 현)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5 214동 702호 (상안동, 쌍용아진아파트) ☎ 933-7209 (E-mail) ycy7321@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 ycy7321 HP : 010-5231-7321

제5대 전반기 북구의회의원 현황

(임기 2010. 7. 1 ~ 2014. 6. 30)

성 명	학력 및 경력	주소 · 전화
 이 수 선 나 선거구 (농소2동 · 농소3동)	■ 학 력 • 농서초 · 농소중 · 울산고 졸업 • 울산과학대학 토목과 졸업 ■ 경 력 • 천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초대 단장 역임 • 달천고등학교 초대 · 2대 운영위원장 역임 • 농소농협이사 역임 • 새누리당 울산광역시 사회봉사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 현) 새누리당 중앙위원 • 현) 농소중학교 · 울산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현) 북구문화정책 위원 • 현) 북구노인복지관 운영위원 • 현) 다문화 가족 자문위원 • 현) 북구 인권증진위원 • 현) 북구 안전관리위원 • 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	(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 131(천곡동 526 - 2) ☎ 295 - 1929 FAX. 282 - 1166 (E - mail) lss1929@yahoo.co.kr HP : 010 - 2833 - 1929
 강 진 희 다 선거구 (효문동 · 양정동 · 염포동)	■ 학 력 • 수암초 · 태화여중 · 울산여고 졸업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경 력 • 현) 염포 · 양정 여성회 회장 • 현‘ 명촌을 사랑하는 사람들 ’운영위원 • 현) 염포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 • 현) 울산한부모가족센터 자문위원 • 현)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 현) 북구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장 • 현) 북구 인권증진위원회 부위원장 • 현) 통합진보당 울산북구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자)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 106동 401호 (염포동, 성원상떼빌아파트) ☎ 288 - 4745 (E - mail) greenjin70@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 greenjin70 HP : 010 - 8610 - 4748
 정 윤 석 다 선거구 (효문동 · 양정동 · 염포동)	■ 학 력 • 수성초 · 동아중 · 경남공고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기계과 졸업 ■ 경 력 • 현대자동차 근무 • 연암초,명촌초,학성여고 운영위원장 역임 • 강북교육청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역임 • (주)동양기기 대표이사 역임 • 북구생활체육회 이사, 감사, 부회장 역임 • 선진국민연대 북구네트워크팀장 역임 • 현) 무룡산 보존회(산악회) 회장 • 현) 동행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북구지회장 • 현) 강북교육지원청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 현) 북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현) 울산광역시 장애인 학부모회 후원위원 • 현) 연암자율방범대 자문위원장 • 현) 진장 · 명촌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현) 노동부 고용평등위원 • 현) 새누리당 중앙위원 • 현) 새누리당 지방특별위원회 위원	(자)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길 18 - 12(진장동) ☎ 287 - 4385 (E - mail) dongyangjung@ hanmail.net HP : 011 - 835 - 6035

제5대 전반기 북구의회의원 현황

(임기 2010. 7. 1 ~ 2014. 6. 30)

성 명	학력 및 경력	주소 · 전화
 이 혜 경 비례대표	■ 학 력 • 대현초 · 중앙여중 · 학성여고 졸업 ●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졸업 ■ 경 력 • 울산여성회 부설 북구가정폭력상담소장 역임 ● 울산상담소 · 시설협의회 부회장 역임 ● 울산시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 활동 ● 북구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역임 ● 현) 연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 현) 전국지방여성의원네트워크 운영위원 ● 현) 사단법인 행복발전소 운영위원 ● 현) 사단법인 울산여성회 북구지부 운영위원 ● 현) 울산 한부모 가족센터 자문위원 ● 현) 통합진보당 북구지역위 부위원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60 115동 204호 (연암동, 벽산늘푸른아파트) (E-mail) 86lhk@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86lhk HP : 010-9448-1364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및 상견례(2010.6.22)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2010.7.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 축하 내빈 기념촬영(2010.7.1)

울산외고 옹벽붕괴 긴급 현장점검(2010.9.9)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22회 임시회 오토밸리로 2공구 도로 개설공사 현장 등 6개소 현장활동(2010.9.14)

추석맞이 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2010.9.16)

달천동 농소 배 작목반 배 수확 자원봉사활동(2010.10.18)

의정실무능력향상 특별연수(2010.11.1)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조례입법연구회 개최(2010.11.5)

제4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2010.11.17)

북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의결(2010.11.23)

새마을 북구지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격려(2010.12.16)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어울림화봉 공동생활가정 외 1개소 방문 설 위문품 전달(2011.1.31)

울산지식산업센터 방문 산업체 현장 의견수렴(2011.3.17)

제66회 나무심기 행사(2011.3.28)

제7회 울산쇠부리축제 개막(2011.4.22)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89회 어린이날맞이 북구어린이 큰잔치(201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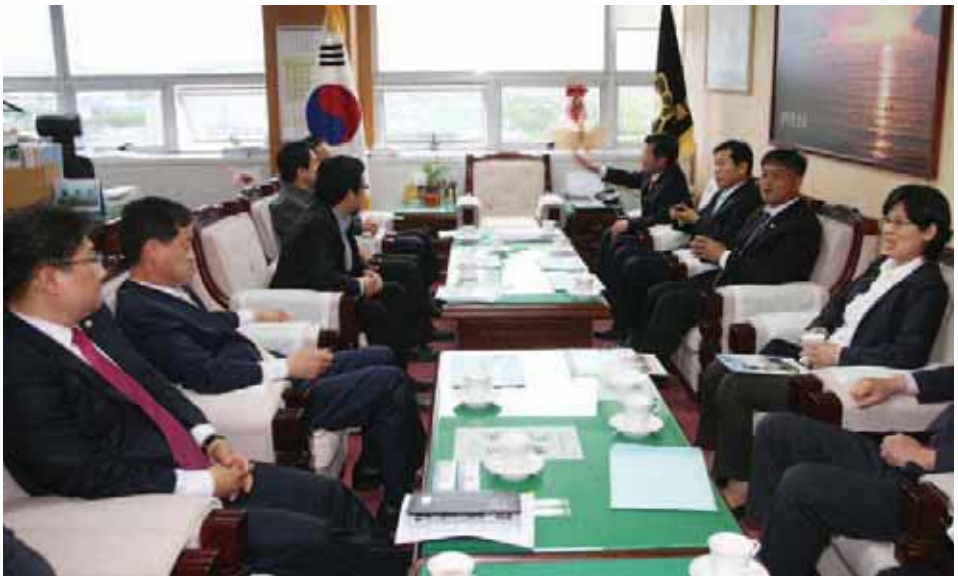

의정활동 비교견학을 위한 부산 수영구의회 의원일행 북구의회 방문(2011.5.11)

제126회 임시회, 고리원자력발전소 현장활동(2011.5.25)

제126회 임시회, 화동못 수변공원 현장활동(2011.5.25)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태연재활원에서 체육활동과 물리치료 보조 등 자원봉사활동(2011.5.30)

북구마을기업1호 사랑길 제전장어 오픈(2011.7.14)

구의원과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 개최(2011.8.24)

북구의회 4년연속 의정비 동결 의원간담회 개최(2011.9.7)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통영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조성사례 관련 등 벤치마킹(2011.9.21)

북구노인복지관 어르신 행복식당운영 배식지원 자원봉사활동(2011.11.1)

제7회 울산광역시 선출직 친선 체육대회 개최(2011.11.11)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2011.12.22)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12년 북구 신년 인사회(2012.1.6)

소망지역아동센터 외 1개소 방문 설 위문품 전달(2012.1.13)

제130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2012.2.6)

울산 북구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식(2012.2.7)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상안동 굿실버전문요양원 어르신 놀이치료 자원봉사활동(2012.2.14)

북구 자원봉사센터(라온누리 청소년 봉사단) 북구의회 견학(2012.3.24)

의정실무능력향상 특별연수 및 선진지 벤치마킹(2012.4.25)

농소3동 찾아가는 한글교실 어르신 북구의회 견학(2012.4.30)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북구의회 의원과 8개동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2012.5.2)

북구의회 의원과 생활체육회 관계자와의 간담회(2012.5.4)

제8회 울산쇠부리축제(2012.5.11)

제132회 임시회 현장활동 실시(2012.5.17)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농소초등학교 학생 북구의회 견학(2012.6.15)

제133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2012.6.29)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농소초등학교 학생 북구의회 견학(2012.6.15)

제133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2012.6.29)

목 차

■ 발간사

■ 축사

■ 제5대 전반기 북구의회의원 현황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51

제2절 의회연혁 ····· 53

제3절 의회일반현황 ····· 55

1. 제5대(전반기)의회 원구성 ····· 55
2. 의회기구 ····· 56
3. 의원현황(의원정수,직업,학력,연령,성별) ····· 5
4. 의회예산현황('10, '11, '12년도) ····· 57
5. 의사당 시설현황 ····· 58
6. 사무과 직원현황 ····· 58
7. 의회의 권한 ····· 59
8. 의회의 역할 ····· 60

제4절 구정기본현황 ····· 61

1. 지역여건 ····· 61
2. 구정현황 ····· 61
3. 구민생활지표 ····· 62
4. 동별 인구·면적 현황 ····· 64
5. 울산광역시 구·군 일반현황 ····· 65

제2장 의회운영현황

제1절 집회현황 ····· 69
1. 의회역대 집회현황 ····· 69
2. 연도별 집회현황 ····· 70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 71

제2절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 72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 73

제3장 제5대 전반기 개회상황

제1절 제120회 임시회 ····· 83
1. 개회이유 ····· 83
2. 개회사 ····· 83
3. 의사일정 ····· 85

제2절 제121회 임시회 ····· 86
1. 개회이유 ····· 86
2. 개 회 사 ····· 86
3. 의사일정 ····· 88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89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호) ····· 89
□ 양정동 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호) ····· 91

제3절 제122회 임시회 ····· 92
1. 개회이유 ····· 92

2. 개 회 사 ····· 92
3. 의사일정 ····· 94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96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호) ····· 96
□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9호) ····· 96

제4절 제123회 제1차 정례회 ····· 98
1. 개회이유 ····· 98
2. 개 회 사 ····· 99
3. 의사일정 ····· 100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06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안번호 4호) ····· 106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호) ····· 107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호) ····· 108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호) ··· 110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14호) ····· 112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호) ····· 114
□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6호) ····· 115
□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호) ····· 116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17호) ····· 116

제5절 제124회 제2차정례회 ····· 118
1. 개회이유 ····· 118
2. 개 회 사 ····· 119

3. 의사일정 ····· 121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28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 128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호) ····· 130
□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호) ····· 131
□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 133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 135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의안번호 제26호) ····· 137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 ··· 138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 139
□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 141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 143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30호) ····· 145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 147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5호)
····· 148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2호) ····· 149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변경의 건(의안번호 제22호) ··· 151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안번호 제19호) ····· 152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6호) ····· 154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호) ····· 155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0호) ····· 159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 160
□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 161

제6절 제125회 임시회 ····· 164
1. 개회이유 ····· 164
2. 개 회 사 ····· 165
3. 의사일정 ····· 167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69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호) ····· 169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 170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 172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호) ····· 173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 ····· 175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 176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 177

□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 178
□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 ····· 180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 184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호) ····· 190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제53호) ····· 191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호) ····· 195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 200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 20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 ····· 203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호) ····· 204

제7절 제126회 임시회 ····· 206
1. 개회이유 ····· 206
2. 개 회 사 ····· 207
3. 의사일정 ····· 208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11
□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 211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 216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 … 217
□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호) …… 218
□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제74호) …… 219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번호 제64호) …… 222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 …… 224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호) …… 23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 232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 233

제8절 제127회 제1차 정례회 …… 235
1. 개회이유 …… 235
2. 개 회 사 …… 236
3. 의사일정 …… 238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42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호)
…… 242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9호) …… 245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호) …… 247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 247

□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 247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호) ····· 247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호) ····· 248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호) ····· 248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호) ····· 250

제9절 제128회 임시회 ····· 253
1. 개회이유 ····· 253
2. 개 회 사 ····· 254
3. 의사일정 ····· 255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58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96호)
····· 258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97호) ····· 260
□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6호) ····· 261
□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호) ··· 263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2호) ····· 264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호) ····· 265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7호) ····· 267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 ····· 268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호) ····· 269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 ····· 270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 271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8호) ····· 273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 ····· 274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 276

제10절 제129회 제2차정례회 ····· 279
1. 개회이유 ····· 279
2. 개 회 사 ····· 280
3. 의사일정 ····· 28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92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호) ····· 292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3호) ····· 296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4호) ····· 301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 ····· 305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3호) ····· 306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 ····· 307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 312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2호) ····· 315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24호) ····· 317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5호) ····· 3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18호) ····· 319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7호) ····· 321
□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 322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 324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21호) ····· 325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8호) ····· 326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9호) ····· 327
□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6호) ····· 329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37호) ····· 331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 332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4호)
····· 333
□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9호) ····· 334

제11절 제130회 임시회 ····· 336
1. 개회이유 ····· 336
2. 개 회 사 ····· 336
3. 의사일정 ····· 338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340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47호) ····· 340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2호) ····· 341
□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 343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호) ····· 346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48호) ····· 355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5호) ····· 356
□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 358

제12절 제131회 임시회 ····· 360
1. 개회이유 ····· 360
2. 의사일정 ····· 360
3.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361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0호) ····· 361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 ··· 362

제13절 제132회 임시회 ····· 366
1. 개회이유 ····· 366
2. 개 회 사 ····· 367
3. 의사일정 ····· 368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372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166호) ····· 372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5호) ····· 373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3호) ····· 374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 ····· 375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0호) ····· 376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 377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 ··· 379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61호) ····· 380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4호) ····· 381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2호) ····· 382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53호) ····· 384

제14절 제133회 임시회 ····· 386
1. 개회이유 ····· 386
2. 의사일정 ····· 386

제4장 예산·결산심의사항

제 1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89
제 2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394
제 3절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98
제 4절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400
제 5절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06
제 6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10
제 7절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13
제 8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418
제 9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20
제10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424
제11절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29
제12절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32

제5장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1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439

1. 감사개요 ····· 439
2. 감사실시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 ····· 440
3. 행정사무감사 일정 ····· 442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442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443
6. 증인 선서 방식 ····· 443
7. 행정사항 ····· 444
8.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444

제2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477

1. 감사의 목적 ····· 477
2. 근거 ····· 477
3. 감사기간 ····· 477
4. 감사실시기관 ····· 477
5. 감사실시 경과 ····· 478
6. 감사결과 ····· 480

제3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510

제4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512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 512
2.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 51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5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572

1. 감사의 개요 ····· 572
2. 감사실시 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 ····· 573
3. 행정사무감사 일정 ····· 575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576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576
6. 증인 선서 방식 ····· 577
7. 행정사항 ····· 577
8. 2009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578

제6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618

1. 감사의 목적 ····· 618
2. 근거 ····· 618
3. 감사기간 ····· 618
4. 감사실시기관 ····· 618
5. 감사실시 경과 ····· 619
6. 감사결과 ····· 621

제7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652

제8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654

1. 시정·건의 요구사항 현황 ····· 654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 655

제6장 기타의정활동

제1절 결의안 ····· 723

제2절 구정질문, 서면질문 ····· 739
제3절 5분 자유발언 ····· 751
제4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 765
제5절 주요 의정활동사항 ····· 785
제6절 의정활동일지 ····· 817

〔附 錄〕

1. 역대 의장단 명단 ····· 851
2. 초대의원 명단 ····· 853
3. 초대의원 사진 ····· 854
4. 제2대의원 명단 ····· 855
5. 제2대의원 사진 ····· 856
6. 제3대의원 명단 ····· 857
7. 제3대의원 사진 ····· 858
8. 제4대의원 명단 ····· 859
9. 제4대의원 사진 ····· 860
10.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97.7.15이전) ····· 861
11. 역대 구청장 명단 ····· 862
12.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 862
13. 역대 전문위원 명단 ····· 863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제2절 의회연혁
제3절 의회일반 현황
제4절 구정 기본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부족국가시대

○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하였으며, 굴아화촌이라는 촌락 형성

□ 삼국시대

○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지명을 하곡으로 개칭, 임관군에 속함.

□ 고려시대

○ 태조때 하곡, 동진, 우풍현을 합하여 흥려부로 승격

○ 제16대 현종때 울주로 개칭

□ 조선시대

○ 제3대 태종 13년 울주를 울산으로, 선조 31년 울산 도호부로 승격

○ 고종 32년 울산군으로 개칭

□ 근　　대

○ 1941년 부군 정리 폐합하는 지방제도 개편 시 언양군을 울산군에 병합하고 울산면, 사항면, 대현면으로 행정구역개편

□ 현　　대

○ 1962. 2. 1 : 각령 제403호로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
(당시 농소면 송정리, 화봉리 편입)

○ 1962. 6. 1 : 법률 제1086호로 울산시로 승격
울산군을 울주군으로 명칭변경
(농소·강동면→울주군 편입)

○ 1985. 7. 15 : 대통령령 제11716호로 구제실시
(2구 1출장소 40개동, 중·남구)
○ 1988. 1. 1 : 대통령령 제12367호로 방어진출장소 설치
○ 1991. 1. 1 : 방어진출장소→동구청으로 승격(3구 40개동)
(울주군→울산군으로 명칭변경)
○ 1995. 1. 1 : 법률 제4081호로 울산시·군, 도·농통합
(울산군→울주구로 명칭변경)
○ 1995. 3. 2 : 농소면→농소읍으로 승격
○ 1996. 12. 31 : 법률 제5243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공포
(북구는 종전 울산시 중구 송정, 효문, 진장, 양정동과 울주군 농소읍, 강동면으로 구역획정)
○ 1997. 7. 15 : 울산광역시 및 북구설치<신설> → 8개동
(농소읍→농소1, 2, 3동, 강동면→강동동으로 전환)
○ 1998. 3. 1 : 대통령령 제15652호 "광주광역시북구등4개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거 동구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 9개동
○ 1998. 10. 1 : 인구과소동 폐치분합 진장동·효문동 → 효문동(8개동)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1차 구조조정 지침>
○ 2001. 6. 1 : 청사 소재지 변경
(남구 신정3동 585-9→북구 연암동 1004-1)

제2절 의회연혁

□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 ○ 1952. 4. 25 : 초대 읍·면의원 선거(56명)
- ○ 1956. 8. 8 : 제2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 1960. 12. 19 : 제3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 1961. 9. 1 : 울산읍·면의원 해산

□ 울산시 승격 이후

- ○ 1991. 3. 26 : 울산시의회의원 선거(50명)
- ○ 1991. 4. 15 : 초대 울산시의회 개원
  - – 임기 : '91. 4. 15 ~ '95. 6. 30
- ○ 1992. 7. 12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중·남·동구 각 1명)
- ○ 1993. 7. 10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동구 1명)

□ 울산시·군 통합 이후

- ○ 1995. 1. 10 : 울산시·군 통합 울산시의회 개원(64명)
- ○ 1995. 6. 27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1995. 7. 11 : 제2대 울산시의회 개원(60명)
  - – 임기 : '95. 7. 1 ~ '98. 6. 30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 임기 : '97. 7. 15 ~ '98. 6. 30
-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72명)
- ○ 1998. 3. 1 :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 1998. 6. 4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98. 7. 1 ~ 2002. 6. 30
○ 2000. 2. 21 :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02. 7. 1 ~ 2006. 6. 30
○ 2006. 5. 31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06. 7. 1 ~ 2010. 6. 30
○ 2010. 6. 2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 제5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제3절 의회일반현황

1. 제5대<전반기>의회 원구성

○ 의장단 선거

2010년 7월 1일 09:30에 개회된 제12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7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윤석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에 안승찬 의원, 부의장에 정윤석의원을 선출하였음.

○ 의장단선거 실시결과

- 투표참석 의원7명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실시
- 총 투표수 7표 중 안승찬의원이 7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에 당선되었음.
- 총 투표수 7표 중 기권이 1표 있었으며, 정윤석의원이 6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부의장에 당선되었음.

2. 의회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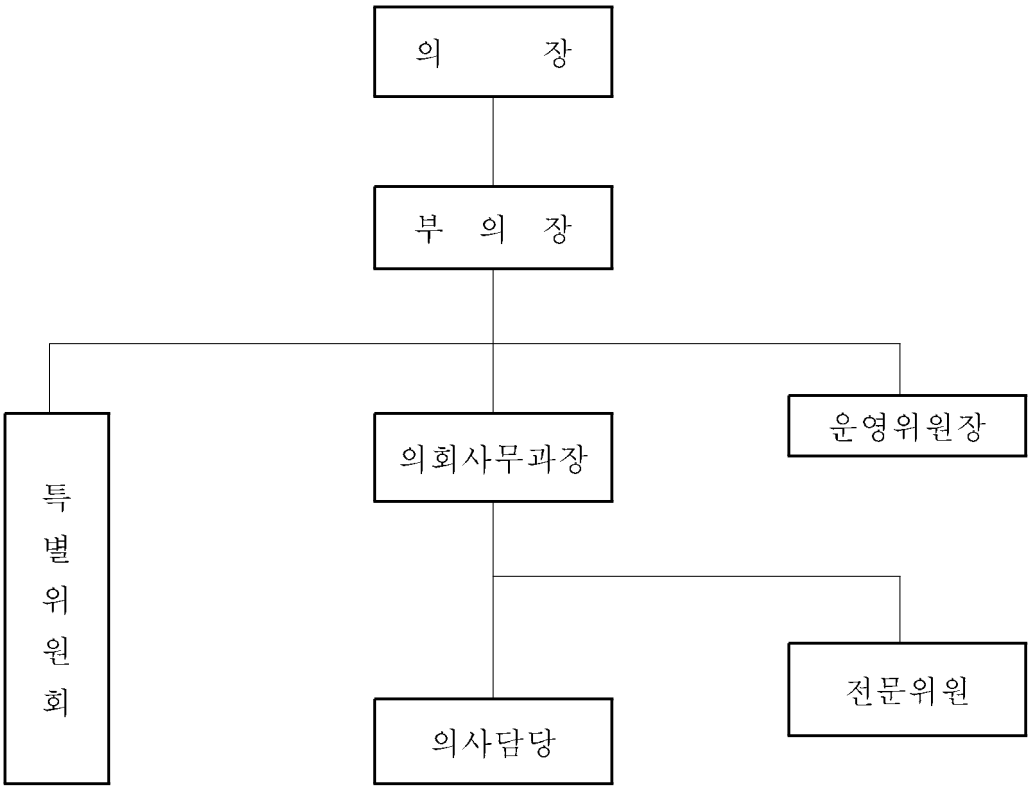

3. 의원현황

□ 의원정수

계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다 선거구	비례대표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3동	효문·양정·염포동	
7	2	2	2	1

□ 직업별

직업별 / 의원수	농 업	상 업	회사원	기 타	비 고
7		1		6	

□ 학력별

학력별 / 의원수	국졸	중졸	고졸	대재	대졸	대학원졸	기타
7					7		

□ 연령별

연령별 / 의원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			4	3	

□ 성 별

의 원 수	계	남	여	비고
7	7	5	2	

4. 의회예산(당초)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회 계		
	계	지방의회 운영지원	행정운영경비
2007년도	949,808	315,442 (의정활동)	634,366 (의사운영)
2008년도	1,190,896	579,370	611,526
2009년도	1,287,155	664,987	622,168
2010년도	1,227,266	596,134	631,132
2011년도	1,125,438	499,923	625,515

5. 의사당 시설현황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 면적 : 북구청 5층 1,174.55㎡ (355.30평)

(단위 : ㎡(평))

시 설 명	전용면적(평)	비 고
본 회 의 장	211.23(63.90)	
방 청 객 실	60.23(18.22)	
소 회 의 실	108.00((32.67)	
의 장 실	70.47(21.32)	
부 의 장 실	60.70(18.36)	
의 원 사 무 실	129.05(39.04)	2인1실 3개
다 목 적 실	129.00(39.02)	
의 정 자 료 실	72.00(21.78)	
의 회 사 무 과	102.85(31.11)	
전 문 위 원 실	51.43(15.56)	
방 송 실 등 6 실	179.59(54.33)	

6.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직위 및 직급	정 원	현 원	비 고
계	13	13	
5급(과 장)	1	1	
5급(전문위원)	1	1	
6급(의사담당)	1	1	
6급(전문위원)	1	1	
7급(행 정 직)	2	3	
8급(행 정 직)	1	1	
9급(행 정 직)	1	0	
기 능 직	5	5	사무보조2, 속기사2, 운전원1

7. 의회의 권한

○ 의결권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함.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는 통제권으로 매년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있음.

○ 자율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스스로 규율을 정함.
(회의규칙, 회기결정 등)

○ 선거권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등 선출

○ 청원처리권

주민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함.

○ 의견표명권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건의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

8. 의회의 역할

○ 주민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 (선거지역뿐만 아니라 해당자치단체 전주민 대표)

○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역할

○ 입법기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역할

○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 보고, 승인, 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하는 역할

제4절 구정기본현황

1. 지역여건

○ 주거, 공단, 해양관광, 수산의 3개 권역별 지역·기능적 구분

○ 주민생활 및 의식이 도시·농촌적 요소 공존

○ 신개발지로서 도시기반시설 미비와 행정수요의 다양

2. 구정현황(2012. 6. 30.현재)

□ 면 적

○ 행정구역 ———— 157.35㎢㎢

○ 도시계획구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미지정)
157.35㎢	12.75㎢	1.08㎢	11.01㎢	95.70㎢	36.81㎢

※ 개발제한구역 74.86㎢(47.57%)

□ 인 구

가 구	총 인 구 수			외국인 등록수
	계	남	여	
61,693세대	183,642명	94,829명	88,813명	2,309명

□ 행정조직

○ 기 구

구 분	본 청	사 업 소	동
현 황	3국 1실 17과	1사업소(보건소)	8개동

○ 공 무 원

(정원)

계	본 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
509명	381명	13명	36명	79명

○ 예산(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2010년도	132,099	127,312	4,787	35.5%
2011년도	140,108	135,140	4,968	41.2%
2012년도	169,220	164,200	5,020	36.2%

3. 구민생활지표(2012. 6. 30.현재)

□ 보건복지

식품접객	공중위생	의료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세대/명)					생활폐기물 발생량(일평균)		1일분뇨수거량
		기관	병상수	소계	일반	시설	조건부	특례	1인1일 발생량	총발생량	
2,204개소	468개소	146	819	1,108개소 / 1,974	1,007 / 1,649	8개소 / 171	79 / 126	14 / 28	0.6kg	113ton	56ton

□ 지역경제

경 지 면 적				기 업 체		노조설립업체	
소 계	전	답	과수원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조합원수
2,008ha	774ha	1,145ha	89ha	967개	42,754명	18개	37,932명

□ 도시건설

도 로				주 택	상 수 도			하 수 도		
연장	도로율	포장도	포장율	보급률	1일 급수량	1인당1일 급수량	보급률	총인구	보급인구	보급률
544㎞	13.03%	205㎞	97.09%	56,055 111.1%	51,091 ton/일	283ℓ	98.92%	182,504명	181,475명	99.4%

□ 교 통

자 동 차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78,532대	65,458대	3,020대	9,621대	433대

□ 교 육

(개소/학생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43개소 / 31,038명	20 / 13,691	12 / 8,696	9 / 8,332	0 / 0	2 / 319

4. 동별 인구·면적현황(2012. 6. 30.현재)

구 분	면 적 (㎢)	법정동	인구수 (명)	지 역 여 건 및 특 성
계	157.34	27	183,642	
농소1동	14.93	4 (2개동중복)	28,376	농소라는 말은 고려 태조때의 박윤웅 공의 **식읍지(食邑地)**인데서 생긴 말이며, 아파트단지가 많고 경주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재래시장 및 신개발주거지역임**
농소2동	11.42	3 (2개동중복)	33,289	
농소3동	31.07	5	41,598	
강동동	60.69	9	4,623	강동지역은 신라초에 율포현이 있고 울산지역의 동쪽이며, 해수욕장과 산과 바다가 조화된 **천혜의 관광지역**이며 **국제규격의 강동축구장**이 있음
효문동	16.27	4	29,355	효문은 세종때 효자였던 송도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효문이라 하였으며,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많은 **준공업지역**임
송정동	10.78	2	20,404	송정은 큰 노송들이 많이 우거져있고 좋은 정자가 있었다하여 송정이라고 하였으며, 울산공항이 있고 북구 중심의 **교통요충지역임**
양정동	6.67	1	12,668	영조때 오정리와 양정리의 두마을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회사가 소재해 있고, **7,800여평의 양정생활체육공원**이 있음.
염포동	5.51	1	13,329	염포는 이조때 수군의 군사기지와 왜군회유책으로 개항한 **제포, 부산포와 함께 3포의 하나**였으며 현대하이스코, 현대모비스 회사가 소재하고 있음.

5. 울산광역시 구·군 일반현황(2012. 6. 30.현재)

□ 인구·면적현황

구 분	면 적(㎢)	인 구 (명)			외 국 인 등록수(명)
		계	남	여	
계	1057.4	1,140,954	587,128	553,826	19,257
중 구	37.0	233,120	119,419	113,701	2,005
남 구	72.2	344,345	175,393	168,952	4,679
동 구	35.8	173,632	91,344	82,288	3,875
북 구	**157.4**	**183,642**	**94,829**	**88,813**	**2,309**
울주군	755	206,215	106,143	100,072	6,389

□ 재정규모현황(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울산광역시	2,486,945	1,792,941	694,004	63.6%
중 구	198,677	190,981	7,696	22.0%
남 구	247,843	230,728	17,115	47.8%
동 구	138,098	134,802	3,296	37.5%
북 구	**169,220**	**164,200**	**5,020**	**36.2%**
울 주 군	420,309	402,519	17,790	46.3%

제2장

의회운영현황

제1절 집회현황
제2절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제3절 회기별 주요 의정활동 내용

제1절 집회현황

1. 의회역대 집회현황

구 분	연 도	정 례 회		임 시 회		합 계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초대	**계**	**1**	**35**	**9**	**25**	**10**	**60**
	'97	1	35	4	11	5	46
	'98			5	14	5	14
제2대	**계**	**6**	**140**	**36**	**184**	**42**	**324**
	'98	1	35	6	31	7	66
	'99	1	35	11	45	12	80
	2000	2	35	8	45	10	80
	2001	2	35	9	45	11	80
	2002			2	18	2	18
제3대	**계**	**8**	**152**	**29**	**168**	**37**	**320**
	2002	2	35	5	27	7	62
	2003	2	35	8	45	10	80
	2004	2	34	8	46	10	80
	2005	2	48	5	29	7	77
	2006			3	21	3	21
제4대	**계**	**8**	**184**	**22**	**170**	**30**	**354**
	2006	2	40	3	12	5	52
	2007	2	44	5	31	7	75
	2008	2	50	6	50	8	100
	2009	2	50	6	51	8	101
	2010			2	26	2	26
제5대	**계**	**4**	**100**	**12**	**102**	**16**	**202**
	2010	2	50	5	46	7	96
	2011	2	50	3	32	5	82
	2012			4	25	4	25

2. 연도별 집회현황

연 도	정 례 회		임 시 회		합 계		법정회기일수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계	27	611	106	624	133	1,235	
'97	1	35	4	11	5	46	연 80일 (정기회 35일 이내)
'98	1	35	11	45	12	80	〃
'99	1	35	11	45	12	80	〃
2000	2	35	8	45	10	80	〃 (정례회 35일 이내)
2001	2	35	9	45	11	80	〃
2002	2	35	7	45	9	80	〃
2003	2	35	8	45	10	80	〃
2004	2	34	8	46	10	80	〃
2005	2	48	5	29	7	77	연 80일
2006	2	40	6	33	8	73	정례회 45일 이내, 임시회 매회기 15일 이내
2007	2	44	5	31	7	75	연 110일 이내 (정례회 50일 이내)
2008	2	50	6	50	8	100	〃
2009	2	50	6	51	8	101	〃
2010	2	50	5	46	7	96	〃
2011	2	50	3	32	5	82	〃
2012			4	25	4	25	〃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회 기	회 별	소 집 요 구 인	집 회 기 간	일수
제120회	임시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0. 7. 1	1
제121회	임시회	이홍걸의원 외 2명	2010. 7.15 ~ 7.23	9
제122회	임시회	윤치용의원 외 2명	2010. 9. 6 ~ 9.15	10
제123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0. 9.29 ~ 10.18	20
제124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0.11.22 ~ 12.21	30
제125회	임시회	강진희의원 외 2명	2011. 2.17 ~ 2.25	9
제126회	임시회	정윤석의원 외 3명	2011. 5.19 ~ 5.30	12
제127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1. 7. 1 ~ 7.14	14
제128회	임시회	이혜경의원 외 2명	2011.10. 7 ~ 10.17	11
제129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1.11.21 ~ 12.26	36
제130회	임시회	이홍걸의원 외 2명	2012. 2. 6 ~ 2.14	9
제131회	임시회	윤치용의원 외 2명	2012. 3.13	1
제132회	임시회	이수선의원 외 2명	2012. 5. 8 ~ 5.21	14
제133회	임시회	강진희의원 외 2명	2012. 6.29	1

제2절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반기>(2010.7.1~2012.6.30) 2010~2012년

회 수	기 간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승인)	건의안	결의안	청원	보고	질문	기타
합 계		195	190	9	2	105	10	0	1	0	6	5	52
소 계	2010년도	70	60	3	1	24	7	0	3	0	3	0	19
제120회	2010. 7. 1	1	4										4
제121회	2010. 7.15 ~ 7.23	9	6			1	1				1		3
제122회	2010. 9. 6 ~ 9.15	10	7	1			1		2				3
제123회	2010. 9.29 ~ 10.18	20	15		1	7	1		1		1		4
제124회	2010.11.22 ~ 12.21	30	28	2		16	4				1		5
소 계	2011년도	82	114	4	1	72	5	0	4	0	3	4	21
제125회	2011. 2. 17 ~ 2.25	9	21			17					1		3
제126회	2011. 5.19 ~ 5.30	12	19			10			2		1	1	5
제127회	2011. 7. 1 ~ 7.14	14	18	1	1	9	2		1				4
제128회	2011.10. 7 ~10.17	11	22	1		14	1					2	4
제129회	2011.11.21 ~12.26	36	34	2		22	2		1		1	1	5
소 계	2012년도	25	36	1	0	20	1	0	1	0	1	0	12
제130회	2012. 2. 6 ~ 2.14	9	11			7					1		3
제131회	2012. 3.13	1	5			2							3
제132회	2012. 5. 8 ~ 5.21	14	18	1		11	1		1				4
제133회	2012. 6.29	1	2										2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06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2008. 7. 1 ~ 7. 21	21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3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 등 3건)
제107회 (임시회)	의 원	2008. 9. 3 ~ 9. 11	9	○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조례안 4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4건) ○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 ·송전철탑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 의결
제108회 (임시회)	의 원	2008. 10. 23 ~ 10. 31	9	○ 조례안 11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제109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2008. 11. 24 ~ 12. 22	29	○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 ○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조례안 18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

회 별	집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10회 (임시회)	의 원	2009. 2. 10 ~ 2. 24	15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조례안 9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 ○ 현장활동(농소1동 주민센터 건립 현장 등 5개소)
제111회 (임시회)	의 원	2009. 3. 26 ~ 4. 3	9	○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조례안 6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강동동 주민센터·천곡문화센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중산문화센터)
제112회 (임시회)	의 원	2009. 5. 27 ~ 6. 1	6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 조례안 13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13건)
제113회 (임시회)	의 원	2009. 6. 15 ~ 6. 22	8	○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조례안 3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등 3건)

회 별	집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14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2009. 7. 1 ~ 7. 20	20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조례안 4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15회 (임시회)	의 원	2009. 9. 21 ~ 9. 29	9	○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조례안 7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제116회 (임시회)	의 원	2009. 10. 27 ~ 10. 30	4	○ 조례안 2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상황 등 8건) ○ 현장활동 (울산외고 건립 현장 및 진입로 개설 현장 등 6개소)
제117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2009. 11. 23 ~ 12. 22	30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 ○ 조례안 10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18회 (임시회)	의 원	2010. 2. 18 ~ 3. 4	15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조례안 12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등 12건)
제119회 (임시회)	의 원	2010. 4. 16 ~ 4. 26	11	○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조례안 3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120회 (임시회)	의 원	2010. 7. 1	1	○ 제5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제121회 (임시회)	의 원	2010. 7. 15 ~ 7. 23	9	○ 조례안 1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2010. 9. 6 ~ 9. 15	10	○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의 건 ○ 대법원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전환 촉구 결의안 의결 ○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의결 ○ 현장활동 (오토밸리로 2공구 도로 개설공사 현장 등 5개소)

회 별	집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23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2010. 9. 29 ~ 10. 18	20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조례안 7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입점반대 결의안
제124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2010. 11. 22 ~ 12. 21	30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16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 ○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제125회 (임시회)	의 원	2011. 2. 17 ~ 2. 25	9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조례안 17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26회 (임시회)	의 원	2011. 5. 19 ~ 5. 30	12	○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 조례안 10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의 건 (천국문화센터 건립 등 3건) ○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정성 촉구 결의 ○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 현장활동 (농소~옥동간 도로개설 현장 등 10개소)
제127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2011. 7. 1 ~ 7. 14	14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조례안 9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28회 (임시회)	의 원	2011. 10. 7 ~ 10. 17	11	○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조례안 14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제129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2011. 11. 21 ~ 12. 26	36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조례안 22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 ○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정종합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제130회 (임시회)	의 원	2012. 2. 6 ~ 2. 14	9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조례안 7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
제131회 (임시회)	의 원	2012. 3. 13	1	○ 조례안 2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32회 (임시회)	의 원	2012. 5. 8 ~ 5. 21	14	○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천곡문화센터 건립) ○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조례안 11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 현장활동 (천곡 한신휴플러스 절개지 현장)
제133회 (임시회)	의 원	2012. 6. 29	1	○ 제5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제3장

제5대 전반기 개회상황

제1절 제120회 임시회
제2절 제121회 임시회
제3절 제122회 임시회
제4절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제5절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6절 제125회 임시회
제7절 제126회 임시회
제8절 제127회 제1차 정례회
제9절 제128회 임시회
제10절 제129회 제2차 정례회
제11절 제130회 임시회
제12절 제131회 임시회
제13절 제132회 임시회
제14절 제133회 임시회

제1절 제120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개회일시 : 2010. 7. 1. 09:30
나. 회　　기 : 2010. 7. 1.(1일간)
다. 부의안건
　○ 의장선거의건
　○ 부의장선거의건
　○ 개원식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구민의 염원을 가득 안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6.2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를 통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구민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5대 북구 의회는 비록 자치단체 의정 경험은 없지만 전문성과 참신성을 겸비한 신진 의원들로 구성되어 우리 의회에 구민들이 거는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시기에 천안함 침몰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유럽발 재정 위기 등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변화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1대부터 4

대까지 선배 의원님들이 일구어 온 지방자치의 기틀을 이어받아 한층 더 계승시킴은 물론 주민이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싶은 북구, 주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북구, 나아가 타 지역 주민이 이사 오고 싶은 북구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날 지역적·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된 주민 자치 운동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주민 자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련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일선 지역에 큰 활력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비전 있는 정책 개발 및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의원 한 사람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의결기관입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아이디어나 몇 명만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7명 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지혜를 다듬는 모습, 함께 고민하고 상호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이 참다운 의회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의원 여러분들은 서로의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건강한 토론을 통하여 구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피고 18만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의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500여 북구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행정의 역할은 구민에 대한 무한 봉사의 장입니다.

군림하고 규제하던 과거의 행정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고, 효율과 능률을 바탕으로 민간과 경쟁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주민 본연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만이 아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조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 제5대 북구 의회가 개원을 하고 앞으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개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5대 북구 의회 개원과 더불어 하반기의 모든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원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안 승 찬

3. 의사일정

제12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0. 7. 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7.1. (목) 09:30	1	1. 제5대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 2. 제5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3. 제12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제12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00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식	

제2절 제121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홍걸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0. 7. 15 (목) 10:00

다. 회　　기 : 2010. 7. 15~7.23 (9일간)

라. 부의안건

○ 제1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치용의원 외 2인 발의)

○ 201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 양정동 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시고 계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새로 부임하신 이종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철과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출범한 우리 제5대 북구의회가 원 구성을 시작으로 원만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이러한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의원 선서를 통해 다짐했던 마음가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주민을

하늘같이 섬기며, 늘 주민과 함께 하고 소통하여 북구 주민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받는 것은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소상하게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구정파악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당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의 계기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시고, 구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보다 생산적인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지역의 현안과 구정업무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의정활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이번 임시회가 많은 성과를 거두어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마철동안 혹시 모를 호우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은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18만 구민과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안 승 찬

3. 의사일정

제1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0. 7. 15~7. 23(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7.15 (목)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1. 제1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0.7.16 (금) 10:00	2	1. 201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기획감사실 ○ 도시건설국(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2010.7.17 (토)		휴 회(공휴일)	
2010.7.18 (일)		휴 회(일요일)	
2010.7.19 (월) 10:00	3	1. 201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2010.7.20 (화) 10:00	4	1. 201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계속》 ○ 총무국(세무과, 민원지적과) ○ 생활경제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010.7.21 (수) 10:00	5	1. 201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계속》 ○ 생활경제국(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호, 생활경제국)	원안가결
2010.7.22 (목) 10:00	6	1. 201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계속》 ○ 도시건설국(건설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2010.7.23 (금) 10:00	7	1. 양정동 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호, 도시건설국) 2. 201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계속》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심의보류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7. 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7. 21. (제121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북구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총칙(안 제1조, 제2조)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안 제3조~제10조)

- 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22조)

-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 시설비 등 지원, 경영·재정지원, 우선구매, 조세감면 등
-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및 홍보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서 사회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총칙을,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사회적 기업의 육성의 목적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고용노동부 및 우리 시에서도 본 조례안 제정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제 악화 및 고용없는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일자리 부족문제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유도로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2001년부터 사회적기업이 3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소 지정되어 있으나, 타 도시에 비해 대기업 및 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지역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육성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예비 사회적기업까지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24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질과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양정동 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7. (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7. 23. (제121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본 구역은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20~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후 재개발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합리적인 이용과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의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심의결과 : 심의보류

제3절 제122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윤치용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0. 9. 6 (월) 10:00

다. 회　　기 : 2010. 9. 6~9.15 (10일간)

라. 부의안건

○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윤치용의원 외 2인 발의)

○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강진희의원 2인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구정 현안파악,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 및 민원상담실 운영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동안 충분히 수렴해 온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금년도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심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종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과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곧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추석맞이 종합대책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한 계절인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18만 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안 승 찬

3. 의사일정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0. 9.6~9.15(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9.6 (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1.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0.9.7 (화) 10:00	2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기획감사실 ○보건소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8호)	원안가결
2010.9.8 (수) 10:00	3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 무 국	
2010.9.9 (목) 10:00	4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생활경제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9.10 (금) 10:00	5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계속〉 ○ 도시건설국	
2010.9.11 (토)		휴 회(공휴일)	
2010.9.12 (일)		휴 회(일요일)	
2010.9.13 (월) 10:00	6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010.9.14 (화) 10:00		<현장 활동> 1. 오토밸리로 2공구 도로 개설공사 2. 달천운동장 조성공사 3.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관련 현장 4.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5. 음식물자원화시설	
2010.9.15 (수) 10:00	7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9호, 의원발의) 3.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10호, 의원발의)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0. 8. 31 (의장)

○ 심의일자 : 2010. 9. 7 (제12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감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감사기간 : 제123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10. 10. 11 ~ 2010. 10. 17(예정)]

○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및 대상사무 현장

○ 감사주체 : 본회의(전의원 7명)

○ 감사방법 :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의 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9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0. 9. 2 (윤치용의원 외 2명)

○ 심의일자 : 2010. 9. 2 (제122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1. 주 문

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 4367 판결에 의하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이라

는 판정을 받은 바,

나. 울산광역시북구의회가 뜻을 모아 불법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을 근절할 것을 촉구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결집된 의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과 함께 2년이 경과한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을 하였다.

나. 이번 판결은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비정규직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이며, 제조업체에 만연되어 온 불법파견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판결이다.

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불법파견이 근절되고 현재 불법파견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4절 제123회 제1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10. 9. 29 (수) 10:00

다. 회　　기 : 2010. 9. 29 ~ 10. 18 (20일간)

라. 부의안건

○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결산검사 대표위원)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의 건(2010년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구청장 제출)
○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이혜경의원 외 5인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한낮의 뜨거운 햇빛에 오곡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조상님께 차례도 지내고 가족 친지들과 화목한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과 함께 우리 모두가 풍요로운 계절이 되었음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어느 회기보다 바쁘고 중요한 회기로써 2010년 행정사무감사 및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단편적인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보다 큰 틀의 정책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권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재정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에 지적되는 사례가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사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의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는 10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여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에게 보람되고 풍성한 열매를 나누어 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18만 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안 승 찬

3. 의사일정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0. 9. 29~ 10. 18(2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9.29 (수) 10:00		개 회 식	
2010.9.29 (수) 10:00 개회식 직 후	1	1.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4호) 4.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윤치용 운영위원장) 5.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30(목)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14호, 생활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호, 생활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의안번호 제16호, 생활경제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10. 1(금) 10:00	3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호,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2.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기획감사실	원안가결
10. 2(토)		휴 회(토요일)	
10. 3(일)		휴 회(일요일)	
10. 4(월) 10:00	4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10. 5(화) 14:00	5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총무국(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생활경제국(생활지원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6(수) 10:00	6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생활경제국 (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10. 7(목) 10:00	7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도시건설국(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10. 8(금) 10:00	8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도시건설국(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10. 9(토)		휴 회(토요일)	
10.10(일)		휴 회(일요일)	
10.11(월) ~ 10.15(금)		행 정 사 무 감 사, (세부 일정 붙임 참조)	
10.16(토)		휴 회(토요일)	
10.17(일)		휴 회(일요일)	
10.18(월) 10:00	9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2010. 10. 11 ~ 10. 15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0. 10. 11(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현장)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총 무 국 • 총 무 과 • 회계정보과 • 문화홍보과	
2010. 10. 12(화)	10:00	〃	○총 무 국 • 평생교육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생활경제국 • 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2010. 10. 13(수)	10:00	〃	○생활경제국 • 경제진흥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 • 도시녹지과 • 교통행정과	
2010. 10. 14(목)	10:00	〃	○도시건설국 • 건설과 •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 시설재난관리과	
2010. 10. 15(금)	10:00	〃	○보건소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당일 의사일정 변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8(금 10:00	8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도시건설국(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8(금 10:00	8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도시건설국(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호, 총무국)	원안가결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당일 의사일정 변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8(금 10:00	8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도시건설국(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호, 총무국)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8(금 10:00	8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도시건설국(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호, 총무국) 3.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의 건 ○ 2010년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총무과)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당일 의사일정 변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18(월 10:00	9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18(월 10:00	9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 (의안번호 제18호, 의원발의)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안번호 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6. (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9. 29 (제123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을 울산광역시북구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나) 주요내용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84,049,313,540원
- 세출결산액 : 153,405,944,740원
- 세계잉여금 : 30,643,368,800원

○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 산 : 464,196,858,902원
  - 부 채 : 7,257,622,155원
  - 순 자 산 : 456,939,236,747원
- 재정운영
  - 수 익 : 127,096,160,665원
  - 비 용 : 117,311,835,392원
  - 운영차액 : 9,784,325,273원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9. (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9. 30 (제123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0. 6. 15. 염포양정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근거를마련하고, 구청장의 독서진흥 시책 및 문화강좌 운영과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구립 도서관이 진정한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염포양정도서관의 위치 표기(안 제2조)

○ 도서관운영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도 회의 소집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및 제 9조)

○ 구청장의 독서진흥 시책 마련과 문화강좌 운영 규정 신설(안 제18조)

○ 자원봉사자 운영 및 포상 규정 신설(안 제19조)

○ 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대해 모법인「도서관법」에 근거가 없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하고자 함(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2010. 6. 15. 개관된 염포·양정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의 독서진흥 시책 및 문화강좌 운영과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염포·양정도서관의 위치 표기와 안 제9조 회의소집에 있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요구가 있을 때도 회의소집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구청장의 독서진흥 시책 마련과 문화강좌 운영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안 제19조에서는 자원봉사자 운영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제21조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부분은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염포·양정도서관의 위치 표기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신규로 구청장의 독서 진흥 시책 마련과 문화강좌 운영, 자원봉사자 운영 및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등 구립 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9. (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9. 30 (제123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수수료 면제요청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7조제1항에 다음 항목을 신설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5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6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7호)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8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9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수수료 면제 요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1항제5호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 하는 경우, 안 제7조제1항제6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안 제7조제1항제7호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안 제7조제1항제8호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안 제7조제1항제9호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등 총 5가지 사항에 대해 제증명 등

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지난 2009. 11. 13.자 협조공문으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수수료 면제요청이 있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게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 경감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구도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9. (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9. 30 (제123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주민과-3337호(2010.04.28)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총무과-13829호(2010.07.06)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인쇄의 제도적 근거 마련

○ 그 밖에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과 일일 결산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반영

나) 주요내용

○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일반프린터기로 인쇄 가능(안 제5조의3 신설)

(2)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 이용(안 제12조제2항 개정)

(3)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시 잘못 출력된 증지에 대해 결손처분 가능(안 제12조제3항 개정)

○ 그 밖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반영

•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 1주일 이내로 늘임 (안 제12조제1항 신설)용(안 제12조 제2항 개정)

※ 별지 제8호서식 무인발급기 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인쇄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수입증지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일반프린터기로 인쇄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12조제2항에 있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을 이용함과 아울러 안 제12조제3항에 있어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시 잘못 출력된 증지에 대해 결손처분을 가능토록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을 1주일 이내로 규정하는 안 제12조제1항의 단서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인쇄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과 일일 결산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1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9. (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9. 30 (제123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규정 마련 (안 제1조)

○ 관련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의 명시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이행, 구매의무 및 예외경우의 명시(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구매문화의 증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 제18조)

○ 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촉진 기여자(단체)에 포상 등을 규정(안 제19조,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며, 최근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울산 지역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율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상품 구매율 저조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상품의 종류·구매방법 정보부족, 친환경상품의 품목이나 사양의 다양성 한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조 부터 제4조까지는 관련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이행, 구매의무 및 예외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구매문화의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촉진 기여자(단체)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법적 의무 권장사항인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우리 구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이행 하게 하고 생산·소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안 제17조의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과 안 제20조의 포상 규정 등은 다소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조례 제정에서만 그치기보다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지원과 실질적인 구매 활동이 일반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9. (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9. 30 (제123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무상 교체 및 배부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되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한 무상 교체 조항 신설(제12조제1호)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한 전용 수거용기 무상 배부 조항 신설(제12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무상 교체 및 배부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제1호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과정에서 파손되는 전용 수거용기에 대한 무상 교체하는 사항과 제2호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한 전용 수거용기 무상 배부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과정에서 환경미화원 등 수거주체의 과실로 인해 파손되는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신규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한 전용 수거용기 무상 배부로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사항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9. (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9. 30 (제123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폐지이유

○ 시행초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였으나,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역기능이 각종언론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

○ 환경부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결정('04. 1월 제정 → '08. 5월 폐지)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2004. 6. 7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 조례안은 지난 2004. 6. 7. 제정 시행되어, 시행초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였으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역기능이 각종 언론에서 사회적 문제로 전국적으로 부각되었고, 이에 환경부는 2008년 5월에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을 폐지함과 아울러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구도 금회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폐지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8. 9 (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0. 1 (제123회 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고 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고자 손 소독제를 구입·지원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9. (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0. 8 (제123회 제1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대엠코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천엠코타운”이 2010년 10월 준공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중산동을 신천동

으로 편입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천엠코타운 준공 부지 내 중산동을 신천동으로 편입

경계변경 前				경계변경 後		
법정동	필지	면적(㎡)		법정동	필지	면적(㎡)
계	179	62,506	⇒	계	179	62,506
신천동	86	42,316		신천동	86	42,316
중산동	93	20,190			93	20,19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신천엠코타운”이 2010년 10월중에 준공예정임에 따라 사업부지내의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별표1에 있어서 “신천엠코타운” 부지내 중산동 93필지를 신천동으로 편입하여 신천동 782번지를 대표 지번으로하여 농소2동 관할구역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신천엠코타운”의 부지가 현재 신천동, 중산동으로 나누어져 있음에 따라 준공이후 입주민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지번을 단일 법정동 지번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5절 제124회 제2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10. 11. 22 (월) 10:00

다. 회　　기 : 2010. 11. 22 ~ 12. 21 (30일간)

라. 부의안건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외 6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치용의원 외 6인 발의)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변경의 건(구청장 제출)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강진희의원 외 6인)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벅찬 기대와 사명감 속에 제5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만물의 성장과 힘찬 도약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설계하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7월1일 출범한 제5대 북구 의회에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비록 의정경험은 다소 부족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구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구민들의 생활 현장을 일일이 살피고, 다양한 의견 청취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한 민원 해결 등 다방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건설을 위해 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당면 주요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경우 내년 한 해 동안의 우리 구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과 일회성, 전시성 예산은 철저히 가려주시고 한정된 재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상정되는 안건들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이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1개월여 남아 있고 오늘은 24절기중 소설(小雪)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와 함께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한번 더 돌아보는 자세와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잘 처리가 되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2010년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1년 새해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안 승 찬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안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10. 11. 22~12. 21(3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11. 22 (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1.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38호) - 시 정 연 설(구청장) - 4.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5.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정윤석의원, 이혜경의원)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11. 23 (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호, 총무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0. 11. 23 (화) 10:00	2	4.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호, 도시건설국)	수정가결 원안가결
2010. 11. 24 (수) 10:00	3	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생활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호, 생활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30호, 생활경제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0. 11. 25 (목)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4호, 이혜경의원 발의-생활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35호, 윤치용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2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변경의 건 (의안번호 제22호, 생활경제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11. 26 (금) 10:00	5	1.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안번호 제19호, 보건소)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36호, 기획감사실)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0. 11. 27 (토)		휴 회	
2010. 11. 28 (일)		휴 회	
2010.11.29 (월) 10:00~ 12.10(금)	6~15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당초예산안 심의	
2010.12.11 (토)		휴 회	
2010.12.12 (일)		휴 회	
2010.12.13 (월) 10:00	16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부구청장) -	
2010.12.14 (화)~ 12.20(월)	17~ 21	1. 기타 안건심의 2.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추경예산안	
2010.12.21 (화) 10:00	22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일정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10. 11. 29~12. 13(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장 소
11. 29(월) 10:00	6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기획감사실 ○ 총무국(총무과)	
11. 30(화) 10:00	7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12. 1(수) 10:00	8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12. 2(목) 10:00	9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생활경제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2. 3(금) 10:00	10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생활경제국(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12. 4(토)		휴 회	
12. 5(일)		휴 회	
12. 6(월) 10:00	11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도시건설국(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12. 7(화) 10:00	12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도시건설국(건설과, 건축주택과)	
12. 8(수) 10:00	13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도시건설국(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12. 9(목) 10:00	14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보건소 ○ 의회사무과	
12. 10(금) 10:00	15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12. 11(토)		휴 회	
12. 12(일)		휴 회	
12. 13 (월) 10:00	16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부구청장) -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10. 12. 14~12. 21(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장 소
12.14 (화) 10:00	17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기획감사실 ○ 보건소	
12.15 (수) 10:00	18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무국	
12.16 (목) 10:00	19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생활경제국	
12.17 (금) 10:00	20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도시건설국	
12.18 (토)		휴 회	
12.19 (일)		휴 회	
12.20 (월) 10:00	21	1.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7호, 도시건설국) 2.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 조정	
12.21 (화) 10:00	22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폐 회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안 (3건)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 7(화) 10:00	12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도시건설국(건설과, 건축주택과)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 7(화) 14:30	12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도시건설국(건설과, 건축주택과)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8(수) 10:00	13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도시건설국(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8(수) 10:00	13	1.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2호, 도시건설국)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도시건설국(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수정가결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0(월) 10:00	21	1.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7호, 도시건설국) 2.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 조정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0(월) 10:00	21	1.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7호, 도시건설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0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강진희의원 발의- 기획감사실 5.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 조정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1. 23.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10.7.15) 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나)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안 제2조, 별표 1)
-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 (안 제19조, 별표 4)
-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친족의 경조사) (안 제20조)
-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명시 (안 제21조)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산입) (안 제25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특별휴가 부여 (안 제24조)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특별휴가 부여 신설)
- 경조사 휴가에 입양휴가 신설(20일) (안 제24조, 별표 3)
-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시술 당일) (안 제24조)
- 공가 사유에 헌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추가 (안 제23조)

나. 그 밖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사항으로서 안 제2조에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과 별표 4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연가가산 가능 경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연가공제 사유에 추가로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공가사유에 헌혈 참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경우에도 추가 하였으며, 안 제24조 특별 휴가에 있어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함과 아울러 나아가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의 경조사 휴가에 있어 입양을 위한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에서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와 제28조, 제29조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0. 7. 15.자로「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며,「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균형을 맞추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

원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1. 23.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주민등록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동사항 개정 및 사무의 관장을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주민등록법」및「주민등록법 시행령」조문 변동에 의한 개정 및 일부 내용 중 사무관장의 내용을 명확히 함
(안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근거가 되는「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등록 동위임 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제1호 권한의 위임에 있어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회수된 주민등록증을 인계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추가함과 아울러, 안 제2조제2호는 법령 조문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는 법령에서 정한 벌칙에 대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위임하였고 기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근거가 되는「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주민등록 사무의 권한위임에 있어 위임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동에 위임하고 "회수된 주민등록증을 인계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구에서 관장하게 하고, 벌칙사항 또한 동 위임사무와 구 사무를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 사무처리를 현재의 실무와 부합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1. 23.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주요내용

○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 (안 제3조~제4조)

○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수행 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안 5조~제7조)

○ 임금청구, 임금·임대료지급,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안 8조~제11조)

○ 기타, 관공사 관련 기업체 협조 홍보 및 실적 평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안 12조~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과 대상사업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대상 사업 수행시 행정지도 부분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임금청구와 임금청구에 따른 임금 지급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그에 따른 상담에 대한 부분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관급공사 관련 기업체 협조 홍보 및 실적 평가, 공개, 자료 제출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에는 아직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임금체불 없는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전국 최초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표준 조례안이 없는 가운데 부서간 충분한 논의는 물론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관급공

사 계약상대자의 관계를 충분히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마련되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본 조례안에 있어 조례 위반 업체에 대한 상위법을 근거한 규제조항이 없음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동안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있어 임금체불 사례가 없었던 점과 본 조례안 시행 시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일정규모이상의 관급공사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민간 사업체까지 파급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등 보다 적극적인 임금체불 근절 분위기 확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있어 구청장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3월말까지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평가 결과물을 공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업체의 자율성 침해 등 논란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조례 시행 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는 회계정보과이나, 민간부분의 체불임금관련 업무는 경제진흥과이므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1. 23.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의 모든 곳이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북구의 발전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앞서가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북구의 실현

나) 주요내용

○ 제3대학 학과에 대한 개정(안 제13조)

○ 제3대학 졸업 및 포상, 총동창회지원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제3대학을 통한 평생학습의 장을 실현함과 아울러보다 탄력적이고 발전적인 제3대학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7조에서 교무위원회의 “심의”권을 “심의·의결”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제3대학의 학과 명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제3대학 졸업 및 포상, 총동창회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교무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완하였으므로 “의결”을 추가 삽입한 것은 적절하고, 제3대학의 학과 명칭을 삭제하고 학과의 신설·폐지 또는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경제·문화적인 여건에 따라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상에 학과명을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학과 신설·폐지 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제3대학 동창회 지원 조항을 신설함에 있어, 제3대학은 2008년부터 1기를 시작하여 2010년 현재 3기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제3대학

의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총동창회를 결성하고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므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졸업 등) ①제 3항학은 각 학과의 출석해야 할 일수의 3분의 2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고, 구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학장은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재학 중 취업,창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장은 동창회의 활동을 위한 워크숍, 체육대회, 야유회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졸업 등) ①제 3항학은 각 학과의 출석해야 할 일수의 3분의 2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고, 구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학장은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재학 중 취업,창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삭 제>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1. 23.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 신규 체육시설 조성으로 인한 시설 추가

○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 월 사용료 기준 세분화·명확화

○ 사용료 조정 및 신설

나) 주요내용

○ 신규 체육시설 추가(안 별표 1, 별표 2)

● 무룡운동장, 달천운동장, 명촌다목적구장, 중산다목적구장

○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 월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함 (안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 탁구사용료 조정 및 배드민턴, 족구·배구 사용료 신설 (안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에 대한 월 사용료를 세분화함과 아울러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별표 1과 안 별표 2에서는 조성완료 한 무룡운동장, 달천운동장, 명촌다목적구장, 중산다목적구장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 3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있어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의 월 사용료를 성인과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탁구사용료 또한 성인과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별로 세분화함과 아울러 하향 조정하였고, 배드민턴, 족구·배구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중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세분화함에 있어, 수영 사용료는 연령대별로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에 대한 할인율이 세분화되지 않은 사항을 금회 보완하는 사항이므로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탁구 사용료의 경우에도 연령대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세분화함과 아울러 강습회원의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는 사항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금회 추가로 신설하는 배드민턴 사용료와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내에 조성된 족구·배구장의 사용료에 있어, 울산 및 인근 지역의 스포츠센터 사용료(강습료)와 비교할 경우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의안번호 제2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1. 24.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법률 제10219~10221호, 2011. 1. 1시행)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행 구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

○「지방세기본법」제정에 따른 관련법령인용조항 반영

○ 세목체계 개편사항 반영

○ 시세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

○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통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간소화 하였

으며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제 개선 등 제도를 대폭 확대 강화하였고「지방세법」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 분야는 구세 기본 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구세 조례에 규정하여 우리구의 세수증대 및 과세공평의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세목간소화에 따라 신설, 폐지 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로 재정비함과 아울러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또한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제·개정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지방세 기본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행법령을 새로이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세수증대와 주민편익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1. 24.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법률 제10219~10221호, 2011. 1. 1시행)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구세 조례 표준안」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목의 간소화(16개-11개) 체계에 맞추어 정비

○「지방세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

○ 법령에서 삭제된 조문 및 중복되는 사항 등 조문정비

○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지방세법」과 동일한 체계로 구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을「지방세법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고「지방세 기본조례 표준안」,「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구세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성격이 유사한 세목의 통합으로 당초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지방세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반영하였고, 법령에서 삭제된 조문 및 중복되는 사항을 재정비 보완하여 후진적이고 복잡한 법 체계를 간소화함은 물론이고 복잡하고 난해한 조세 체계로 인해 납세자의 이해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세수증대 및 발전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구세기본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행 법령을 우리 구에 맞게 정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1. 24.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법률 제10219~10221호, 2011. 1. 1시행)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평생교육시설, 임대주택,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부 이관되어 삭제함.

○ 지방의료원에대한(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감면 신설(안 제4조)

○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변경(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시달에 근거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평생교육시설, 임대주택사전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부 이관되어 삭제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고 특히 안 제4조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행법령을 우리 구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1. 24.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신설과 지역원·하청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사회적합의체 구성·운영 등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의제확대와 기능강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구성 및 기능)

○ 협의회 기능 강화 및 구성원 확대
위원회 주요기능 추가(안 제3조)
구성인원 확대 : 15인 이내 ⇒ 30인 이내(안 제4조)
의제별 대표자 회의 및 하부회의 신설(안 제4조제4항, 제10조의2 및 10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0. 5. 25.자로 시행된「노사관계 발전 지원법」과 2010. 8. 26.자로 시행된「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 제명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협의회 기능 강화 및 구성원 확대 등 일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명에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 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2조는「노사관계 발전 지원법」에 따라 근거법령 변경과 안 제3조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에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원·하청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수를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한편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와 안 제4조의3을 신설하여 의제별 대표자 회의와 업종별·의제별 회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노사관계 발전 지원법」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명과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협의회의 기능에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원·하청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구성인원 또한 대폭으로 확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제 확대 및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 확보를 통하여 협의회의 역할 및 실효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구성원의 전문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채널 마련을 위하여 의제별 대표자회의와 하부회의인 업종별·의제별 회의를 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본 조례안이 시행되어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합의체로서 보다 현실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1. 24.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식품위생법」개정(시행 '09.8.7, 법률 제9432호, '09.2.6)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관련 법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 되도록 정비하고「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 '10.3.25, 제543호)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식품위생법」및「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기금조성 재원 추가(안 제3조)

-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 및 제83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 변경(안 제8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9. 2. 6.자로 공포되어 2009. 8. 7. 시행된「식품위생법」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일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는「식품위생법」및「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법 조문을 조례에 일치시키는 사항이며 또한 안 제3조의 기금의 조성에 있어「식품위생법」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 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 및 제83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과 울산광역시의 조정교부금을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추가하는 사항과 안 제8조에서는 현재의 기구 명칭에 맞게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되어 2009. 8. 7.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조례에서 규정된 각종 조문을 법령과 일치시키는 내용과 기금의 조성에 있어 재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리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3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1. 24.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규정 마련(안 제1조)

○ 관련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조부터 제4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의 명시(안 제5조부터 제6조)

○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이행, 구매의무 및 예외경우의 명시(안 제10조부터 제14조)

○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구매문화의 증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 제18조)

○ 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촉진 기여자(단체)에 포상 등을 규정(안 제19조,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회의 개최권자에 대한 논의와 친환경 상품에 대한 생산·유통·

판매 지원 강화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위한 집행기관의 깊이 있는 고민과 향후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결된 바 있고, 금회 다시 제출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관련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친환경 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이행, 구매의무 및 예외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친환경상품 구매문화의 증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촉진 기여자(단체)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법적 의무 권장사항인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우리 구가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이행하게 하고 생산·소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등 현실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현행 법령에 부합되는 가운데, 지난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부결된 사유를 금회 보완하여 제출하였는 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0. 11. 15(이혜경의원 외 6인)

○ 심의일자 : 2010. 11. 25.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사업의 실행주체 및 이용의 대상, 사업 및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운영 및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원 발의안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의 총칙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임을, 안 제2장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업의 실행주체, 이용의 대상, 사업, 사업비 등의 지원, 사업비 등의 환수, 지도·감독을, 안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임·해촉, 위원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아동복지법」제4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아동은 장래 국가 사회를 이끌어 가야할 주역임에도 현재 사회적 여건으로 충분한 공적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아동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소득격차의 확대 등으로 절대 빈곤층의 아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책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정하고 내용면에서도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점 또한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 조회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5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0. 11. 15(윤치용의원 외 6인))

○ 심의일자 : 2010. 11. 25.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선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 구현을 이루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장·부의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방법을 명시함(안 제8조 제5항)

○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의 정견발표 방법을 설명함(안 제8조 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규칙안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의장단 선거방식을 채택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8조제5항을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라고 조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안 제8조제6항을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검토결과「지방자치법」제48조에 의해 실시하는 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기존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보다 합리적인 절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1(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1. 25.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1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 : 3필지 1,165㎡
- 건물매입 : 2동(지상 1층 및 지상 3층), 572.55㎡
- 건물신축 : 1동(지상 3층), 780㎡

○ 추정가격 : 423(2,500)백만원(토지매입 246<700>,
건물매입·신축 177<1,800>)

○ 취득사유

- 친환경 목욕탕 건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 1건으로서,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본 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악취 발생 등의 이유로 가동 중지인 상태에서 현재 타 시설로 용도 변경 추진 중인 가운데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약 17억8천9백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본 조례 제10조의 주민지원기금의 용도 규정을 근거로 조성된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공청회와 주민지원 협의체 회의 결과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 등으로 음식물 친환경 목욕탕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검토결과, 추진 절차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일부 부지가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가 친환경 목욕탕 부지로 타당한지 등 대상 재산 취득의 적정여부에 대한 논의와 본 친환경 목욕탕에 대한 세부 운영 방향, 기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업 추진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변경의 건(의안번호 제2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3(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1. 25.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의 SBK시설이 정상가동으로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가 안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2008.1.1부터 가동중단 중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용도변경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05.10.1 ~ '07.12.31까지 운영하였으나, 악취 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시설정비를 여러차례 하였으나, 여전한 악취발생으로 '08.1.1부터 잠정가동중단되어 현재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기계노후화로 운영 할 수가 없음

○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일평균 40여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울산광역시에서 '10.5.1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는 용연 SBK 시설과 울산광역시 소각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폐쇄결정하고 용도를 변경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건은 가동 중단중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폐쇄하고, 타 용도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본 건은「지방자치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지난 2005. 10. 1부터 운영하였으나, 주택가 악취 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고, 수차례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취 발생으로 2008. 1. 1부터 잠정 가동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1일 평균 40여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현재 용연 SBK 시설과 광역시 소각장에서 전량 처리 되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폐쇄하고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시설 인근에는 화훼 재배 등 농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고, 금회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농업관련 시설로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안번호 제1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0. 26(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1. 26.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목적 수립

- 비전 : 100세까지 생생하게 함께 가는 북구

○ 지역보건 현황분석을 통한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전략 수립

- 중점과제명 : 고혈압·당뇨병 관리

○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6개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법에 따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07~2010년) 수립 이후 4년이 경과한 2010년도에 2011년~2014년에 해당되는 제5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것은 절차상 타당합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의 비전을 “100세까지 생생하게 함께 하는 북구”를 목표로 정하였고,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중점 과제로 두고 있으며,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 17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그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기획팀을 구성하여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지역주민, 공무원 등 717명을 대상으로 중점과제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제3차에 걸친 기획팀 회의와 구정백서, 통계연보 등 다방면의 자료 수집과정을 통하여 본 계획안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0. 10. 20.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계획안을 마련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본 계획안대로 세부항목별로 2014년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등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

충에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보건소 내 담당간 업무연계는 물론 의료관련 전문가 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단체, 보건관련 학계,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협력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6(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1. 26.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 획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 기금운용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금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계	3,327,402	124,769	62,400	2,979,983	70,050	90,200	3,327,402	2,043,425	110,000	750	1,162,027	11,200
사회복지기금	452,581	20,000	62,400	358,387	10,594	1,200	452,581	3,770	110,000	750	338,061	
식품진흥기금	253,338			220,718	4,620	28,000	253,338	11,800			230,338	11,200
주민지원기금	1,828,855			1,789,502	39,353		1,828,855	1,828,855				
옥외광고정비기금	194,485			130,421	3,064	61,000	194,485	29,000			165,485	
재난관리기금	598,143	104,769		480,955	12,419		598,143	170,000			428,143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2. 1(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2. 8.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1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안 제3조~8조)

• 구청장의 임무,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 대상자의 의무,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13조)

-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15조)

-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학교와 구매협약 급식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급식경비 지원 내역,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정산자료 등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농 교류 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구청장의 임무,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 대상자의 의무,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내용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학교와 구매협약 급식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과 급식경비 지원 내역,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정산자료 등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초·중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단계적인 무상급식 확대, 급식지원 체계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현 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학교 급식의 개념은 교육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에 대한 대책 등이 범국가적으로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간 저소득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무료급식은 대상 아동들의 건강한 심리적 성장을 저해 할 수 있다는 논란이 거듭되어 왔으며 학교급식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사회적으로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다수의 학교가 무상급식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식재료의 사용과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은 매우 의미 있다할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부분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만 전년대비 약 13억원의 재정 부담이 추가 발생하게 되고, 초등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만 해도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사전에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 마련과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과의 충분한 논의 등 협조 체계 시스템 확보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개소예정인 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준비는 물론 농산물의 특성상 최소 2~3개월 이전에 필요한 식자재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식자재 수급 계획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 내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조기에 정착하는 노력과 체계적인 유통망 확보 또한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 종합적인 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현재의 저소득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

력과 의지를 감안하고, 구민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⑥ "친환경급식"이란 제4항에 따라 생산·가공·유통·소비가 순환구조로 이루어지는 생태친화적 급식을 말한다.	제2조(정의) ---------- ⑥"친환경 급식"이란 건강과 환경·생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가공, 유통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 ④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한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 ④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한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②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②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2. 1(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2. 20.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2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지방공무원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안 별표)

• 별표 중 제2호 대상자에 대한 1야당 숙박비를 현행 3만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1조, 제4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관외 출장 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 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안 별표 중 제2호 대상자에 대한 1야당 숙박비를 현행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4급 이하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 시 숙박비가 1박당 3만원으로 실제 물가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현실화 차원에서 숙박비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타 지자체에서도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로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도 그 상한액을 4만원

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0. 12. 1(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12. 20.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2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수강료의 반환범위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강료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고 문화예술 아카데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강료의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여 수강생에게 편리 도모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 운영 활성화 등 명문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과정에서 평소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는 강좌의 운영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안 제14조에 있어 사용료의 부분을 그대로 두고 강좌 수강료의 반환부분은 별표 3을 신설하여 강좌 수강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강좌 운영 활성화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설비의 전기사용료를 따로 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조항은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 중 강좌 수강료의 반환부분에 있어 기존에는 정기 강좌 및 수시 강좌에 대한 수강료의 반환 규정이 포괄적이고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강좌 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 정기 강좌 개시이후에는 회차별로 차등 반환하는 등 수강료의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여 수강생에게 편리 도모를 위한 사항이며, 설비의 전기사용료를 따로 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은 기존 조례 별표2의 규정에 따라 냉난방비를 징수하고 있고 실제 사문화된 조항으로서 금회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수강생과의 간담회 실시, 학습동아리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수료증 교부, 포상 등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0. 12. 6(강진희의원 외 6인)

○ 심의일자 : 2010. 12. 20.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2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는 예로부터 노동운동 등의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 난 곳으로, 인권에 관한 구민의 권리 및 의무와 울산광역시 북구의 인권 정책에 관한 기본책무를 정하고, 인권증진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권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구민의 권리와 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4조～제5조)
○ 인권기본계획수립과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인권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북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가하기 위하여 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구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책무에서는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또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고 이를 신속히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4조 구민의 권리 등에서는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으며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으며, 특히 안 제8조에서는 인권개선을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에 학계, 교육계, 법조계, 인권단체 대표 등 각계 인권전문가 15명이내의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인권증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의 인권보호 증진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선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서는 구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성장될 수 있고 또한 인권 보호 증진이 향상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권증진 활동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헌법 및 법률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 할 수 있겠고 구민의 인권증진 보장 차원에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부구청장,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부구청장,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절 제125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강진희의원 외 2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11. 2. 17(목) 10:00

다. 회　　기 : 2011. 2. 17 ~ 2. 25 (9일간)

라. 부의안건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안승찬의원·이혜경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석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들어 오늘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7월 개원한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그동안 생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구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과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는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와 제4기 민선 구정이 다함께 2차 년도를 시작하는 뜻깊은 해로써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원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지난 하반기부터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윤종오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친환경 무상 급식, 주민 참여시스템 구축, 소외 없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은 물론,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 운영, 1인 1생활체육 육성, 구국도 31호선 테마로드 조성사업, 송정저수지 및 화동못 생태 수변공원 조성사업, 매곡천 및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어느 하나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중요한 시책과 사업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적 여건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한 1,400억원의 2011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최대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만이 아닌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구정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할 사항은 적극 지원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우리 주민을 위한 의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 한 해 우리 구가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 등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은 주요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단위 사업별 문제점 및 대책 등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부서별 업무 보고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들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예방 활동, 이번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 등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올해 첫 임시회부터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안 승 찬

3. 의사일정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1. 2. 17~2. 25(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2. 17 (목)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1.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2011. 2. 18 (금) 14:00	2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총무국(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011. 2. 19 (토)		휴 회	
2011. 2. 20 (일)		휴 회	
2011. 2. 21 (월) 10:00	3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생활경제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2011. 2. 22 (화) 10:00	4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생활경제국(환경미화과) ○ 도시건설국(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2011. 2. 23 (수) 10:00	5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도시건설국(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2. 24 (목) 10:00	6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보건소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 기획감사실)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 윤치용의원 발의)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 총무국)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 총무국)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 총무국)	원안가결
2011. 2. 25 (금) 10:00	7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 생활경제국)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생활경제국)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이수선의원 발의 - 생활경제국)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강진희의원 발의 - 생활경제국)	수정가결
		5.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 안승찬의원·이혜경의원 발의)	수정가결
		6.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호, 생활경제국)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 도시건설국)	수정가결
		8.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 도시건설국)	수정가결
		9.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 도시건설국)	원안가결
		1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 도시건설국)	원안가결
		1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호, 정윤석의원 발의)	원안가결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호, 윤치용의원 발의)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2. 8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2. 24 (제125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울산광역시 북구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를 정비·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기능 중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2조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2011. 1. 1.자로 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호에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기능 중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금회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는 현재 투자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민간위원 임기가 2011. 10. 25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임기만료일까지 투자심사위원회를 존속하고 임기만료 후부터는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2. 8 (윤치용의원 외 5인)

○ 심의일자 : 2011. 2. 24 (제125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있어 수강료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규정 신설 【안 제13조 제3항～제4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 가정세대의 교육 수강료 : 10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

주유공자와 그 유족, 65세이상 노인 : 50%

-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수강료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중 일부 이용 대상자에 대해 감면규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의 제목을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을 “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 가정세대에 대해서는 100%를 감면하도록 하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수강료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현재 우리 구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각종 문화체육 프로그램과 오토밸리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해 감면규정을 적용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2. 8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2. 24 (제125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이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통일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수수료 요액 변경 (안 별표 1)

-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 1건 3,000원 → 1,000원
- 어업권원부의열람신청 : 1건 500원 → 800원
- 어업권원부등초본교부신청 : 1건 1,000원 → 800원
-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1건 800원(신설)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의 재교부 : 1건 3,000원 → 800원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칼라발급 및 도면 첨부 시 500원 추가 → 칼라발급 시에만 500원 추가

○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10. 9. 17.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1에서는 수수료 요액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각종 용어를 보다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2. 8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2. 24 (제125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09. 4. 1)됨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안 제5조의2 신설)

○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안 제8조 신설)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 시군구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24조)

○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상의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명에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안 제24조에서는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 11개 조문은 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기타 일부조항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리와 법령 개정취지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주소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먼저, 법령개정에 따라 제명과 각종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추어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따른 도로명'으로 변경 하여 법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도로명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영 제18조에서 규정됨에 따라 광고물의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광고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건물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의 수수료부분과

안 제8조의2에서 원인자부담 부분은 법령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이며, 그 중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에 충분한 시간을 두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3조~4조, 제5조, 제6조~7조, 제9조~10조, 제13조와 제14조, 제19조와 제26조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명시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2. 8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2. 24 (제125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인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 보산업의 발전에 지

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지적법」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의『측량법』을『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었던 『측량법』이『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으므로 원안의 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2. 8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2. 25 (제125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대행 : 구정조정위원회 ⇒ 생활보장위원회(안 제6조)

○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 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기능 대행을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1항제2호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 기금 심의를 대행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는 순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난 2010년 10월경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실태 감찰결과 이러한 법령 위반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 대행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의 경우 성격에 맞게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노인복지자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금을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서 계정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분임기금운용관을 현실에 맞게 계정별로 소관 업무담당과장으로 변동하는 사항은 적절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2. 8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2. 25 (제125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전문가 및 기관시설 대표자등 인적자원 확충을 위하여『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안 제6조)

• 제6조의(위원의 임기) 내용 중 “1차에 한하여” 문구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 위원의 임기에서 “1차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전문가 및 기관시설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는 그 임기를 최대 4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임기 종료 후 신규 위원 위촉에 애로가 발생하여 과도한 제약이라는 의견에 따라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2. 8 (이수선의원 외 5인)

○ 심의일자 : 2011. 2. 25 (제125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가)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안 제3조~제4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6조~제9조)

○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대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국적법」등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해 사회 문화 적응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은 물론 나아가 사회 통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을, 안 제5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해,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2. 8 (강진희의원 외 3인)

○ 심의일자 : 2011. 2. 25 (제125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민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 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정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등 - 제1장

○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등 - 제2장

○ 여성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 제3장

○ 보칙 - 제4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과 관련하여 구민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제2

장의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성평등 정책에 관한 단위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의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는 여성발전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성평등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평등의 촉진, 성차별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 등을 통한 건전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등 남녀가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조례안에 포함하고자 하였던 여성발전기금 관련 부분이 제외됨으로 인하여, 제15조(위원회 구성)의 본문 중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 부분과 제16조(기능)의 “제5호”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조례안 중 일부 문구나 자구를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위원회 구성) ①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여성인력개발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②~③ 생략
④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한다.	④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4.생략	1.~4.생략
5. 여성발전사업의 계획 및 결산 등 운용에 관한 사항	<삭제>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18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2. 8 (안승찬·이혜경의원 외 3인)

○ 심의일자 : 2011. 2. 25 (제125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안 제4조)

○ 입점예고,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등의 조정권고 사항 (안 제5조~제6조)

○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안 제8조)

○ 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의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

하여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에 따른 입점예고 등에 관한 사항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사업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3조의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법 제7조에서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에서도 이미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시의 지역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보다 합리적인 상생 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함)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은 2011년 1월 11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을 일부개정 고시(제2010-271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의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위 법령에 근거한 내용으로써 입법취지와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 조례안의 제5조(입점예고)와 제6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와 관련하여,
  - 지식경제부에서는 2011년 1월 7일 울산광역시의 「울산

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중 제5조(입점예고)와 제6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수정, 즉 제5조 및 제6조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 이에 울산광역시에서는 2011년 1월 20일 법제처에 조례안의 제5조와 제6조가 시장의 요청이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벌칙사항이 없는 등 조례입법취지로 보아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한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법 제36조에서는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중소업체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도 분쟁조정위원회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와 같이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에 따른 중소유통기업 간의 분쟁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전에 조정이나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이 법에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의 제7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제8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9조(상생협력사업의 지원)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히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조례안의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의 정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2010년 12월 9일자로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한「000

시·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 준칙"이라 함)은 "제1장의 '총칙'과 제2장의 '지역 유통기업상 생발전 추진계획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한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지식경제부 도시 제2010-271호, 2011. 1. 11)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3장과 제4장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3조의3에 의한 '전통상 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사항과 제8조제2항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을 그 내용(부칙에서 2013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 조례안 준칙 중 제3장과 제4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2010년 11월 24일 법률 제10398호로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에서, 법 제2조제3호의3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제2항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전통시장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 상업보존지역에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그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의 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그 유효기간을 부칙 제2조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즉,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헌법(제119조)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 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하도록 한 법 제13조의3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법 제8조제2항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이번 조례안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조 례안 준칙을 본 조례안에의 포함여부나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② 생략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5. 생략 6. 재래시장 및 상점가 대표 7.~8. 생략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② 생략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5. 생략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7.~8. 생략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입점예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위해 제8조제2호에 따라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입점예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입점예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제 8조제2호에 따라 지역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두고자 하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입점예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재래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7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전통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8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생략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에 관한 사항 3.~7. 생략	제8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략 2. 지역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두고자 하는 업체의 입점에 관한 사항 3.~7.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2. 8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2. 25 (제125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계획 수립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심의위원회 신설 (안 제9조의2)

○ 기금운용의 심의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변경(안 제10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

○ 위원장 등의 직무 신설(안 제10조의2)

○ 위원회의 운영 신설(안 제10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 위원회를 변경·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기금운용의 계획 수립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함과 아울러, 안 제9조의2에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

고, 안 제10조의 기금운용의 심의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3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부분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 기금 심의를 대행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는 순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난 2010년 10월경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실태 감찰결과 이러한 법령 위반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맞게 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제5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2. 8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2. 25 (제125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도로의 부속물을 차량충격 등 인위적으로 손괴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이고 도로의 부속물을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제1조	(목적)	도로의 부속물 손괴 시 확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규정함.
제2조	(정의)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및 기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가로등·가로수·도로안내표지판 등) 및 손괴자를 정의함
제3조	(신고방법)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의 신고는 서면·구두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손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손괴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제4조	(지급대상)	도로의 부속물 손괴 시 손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전화 등으로 울산광역시북구청에 신고하여「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를 가능케 한 자로 규정함.
제5조	(지급제외 대상)	도로의 부속물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파손 정도가 경미한 경우, 구청 등 관계기관이 불가피하게 손괴하는 경우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손괴자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함을 규정함.
제6조	(지급기준)	포상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규정함.
제7조	(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은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후에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함을 규정함.
제8조	(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포상금의 환수 등을 규정함.
제9조	(신고자의 보호)	신고자의 신원 등에 관한 비밀보장을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의 부속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의 효율적인 관리 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신고방법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급 대상, 지급제외 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방법을, 안 제8조는 환수를, 안 제9조는 신고자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 질서 확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함과 아울러 시설물 복구를 위한 불필요한 예산을 방지 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안 제6조에서 포상금 지급한도를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것은 적극적인 신고의식의 함양과는 별도로 포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5조의 지급제외 대상을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가로등 유지관리는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으므로 지급제외 대상에 추가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위탁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또한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있어 하단부분, “다만,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 제50조제3항의 규정과는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 본인이 원하는 경우의 현금지급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현금지급 범위를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현재 본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포상금 예산 편성, 필요시 세부 규칙안 마련, 본 조례안의 활성화를 위한 대민 홍보 등을 위한 시행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신고방법)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손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차량번호 등) 3. 손괴자의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손괴 내용	제3조(신고 및 처리) ①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손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적사항 3. 손괴자의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손괴 내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제5조(지급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4. (제정안과 같음) 5.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위탁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포상금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손괴자부담금 징수 후에 신고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다만,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포상금은 구청장이 손괴자부담금 징수 후에 신고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다만,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2. 8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2. 25 (제125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변상금의 징수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변상금 징수 조항 추가(안 제5조, 제8조 및 제10조)

○「도로법」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 점용료 감면 조항 추가(안 제7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도로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전액면제)

○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로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하는 비율)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도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1/2감면)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전액면제)

○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준용규정 추가(안 제8조 및 제10조)

○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을 위하여「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점용료,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점용료 산정기준 인하(안 별표 1)

○ 진·출입로 중 주유소·자동차·자동차 처리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경우 점용요율을 0.025에서 0.02로 인하함.

○ 용어의 정비(안 별표 1의 비고 2)

○ 점용료 산정기준인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변경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제2항 중 점용료의 분할징수 및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는 조항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시 부과·징수 조항을,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변상금 징수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점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가산금 규정과 준용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별표 1에서는 점용물중 1개의 단위항목에 대해 점용요율을 인하하였고, 안 별표 1의 비고 2에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 3은 안 제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주요 개정사항 중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분할 징수와 일시 부과·징수의 규정은 「도로법 시행령」43조에서, 같은 조 제7항의 과오납 된 점용료를 반환 규정은 「도로법」제91조와 「도로법 시행령」제71조에서, 안 제5조의 변상금 징수 조항은 「도로법」제94조에서, 안 제7조의 점용료 감면 조항은 「도로법」제42조 및 「도로법 시행령」45조에서, 안 제8조의 점용료 등의 가산금은 「도로법」제90조에서, 안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두가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별표 3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고 있으나, 도로점용이외의 사항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개정안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개 정 안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총중량 및 축하중 관련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법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2호아목부터 하목까지의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경우: 과태료 면제

2) 1) 외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호	50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150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50		
마.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3호	200		

개 정 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4호	200		
사. 법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3호	50		
아.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 제1항제1호	50	70	100
자.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 제1항제1호	80	120	160
차.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150	220	300
카.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30		
타.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50		
파.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100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 제1항 제3호	500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 정 안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1호	50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2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2호	150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2호	50
마.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3호	200
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 를 시행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4호	200
사. 법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3호	50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2. 8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2. 25 (제125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위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신설(안 제5조의2신설)

• 구정조정위원회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 위원회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위원회 운영 부분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 기금 심의를 대행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는 순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난 2010년 10월경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실태 감찰결과 이러한 법령 위반사항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은 적절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2. 8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2. 25 (제125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신설(안 제8조의2)

○ 기금운용의 심의를「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구정조정위원회를「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9조)

○ 위원장 등의 직무 신설(안 제9조의2)

○ 위원회의 운영 신설(안 제9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 위원회를 변경·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8조의2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기금운용의 심의를「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를「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함과 아울러, 안 제9조의 2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 3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 기금 심의를 대행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는 순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난 2010년 10월경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실태 감찰결과 이러한 법령 위반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맞게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2. 8 (정윤석의원 외 4인)

○ 심의일자 : 2011. 2. 25 (제125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연수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심사기준 강화” 권고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구현을 이루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 비율 확대
1/3 → 과반수(안 제4조 제3항)

○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
과반수 → 3분의2(안 제6조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연수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심사기준을 강화하도록 권고 하였는 바, 이와 관련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항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 비율을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서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강화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에서도 공무국외여행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2. 8 (윤치용의원 외 5인)

○ 심의일자 : 2011. 2. 25 (제125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

제1차 정례회 기간 →제2차 정례회 기간(안 제2조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시 시행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에서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시 지난년도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일정부분 개선하고, 당해연도 구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7절 제126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정윤석의원 외 3명 발의

나. 개회일시 : 2011. 5. 19 (목) 10:00

다. 회　　기 : 2011. 5. 19 ~ 5. 30 (12일간)

라. 부의안건

○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구청장 제출)

○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이혜경의원 외 5인 발의)

○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강진희의원 외 5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치용의원 외 4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윤석의원 외 4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의원 외 4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선의원 외 5인 발의)
○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의 건
• 천곡문화센터 건립(문화홍보과, 시설재난관리과)
• 무룡산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문화홍보과)
• 친환경 무상급식 운영 추진상황(농수산과)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1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와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에너지, 환경 문제 등으로 불안감이 높아지는 등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엇보다 우리 의회가 주민들을 찾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주민과 함께하여 어느 누구보다 솔선수범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민의 대변자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열린 의회, 구민의 의회, 정책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힘을 합치고 주민 숙원사업, 일자리 사업 등 시급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우리 구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2010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각종 조례안, 현장 확인 등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많은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현장 확인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현장에 해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상반기에 계획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세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일본의 지진과 원전 사고는 자연 재해의 무서움과 함께 재난 대비 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총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특히, 원전으로 둘러싸인 우리 지역은 더욱더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전 사고나 지진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중앙 정부 및 울산광역시와의 공조체제를 통해 우리 구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의 안녕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안 승 찬

3. 의사일정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1. 5. 19~5. 30(1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5. 19 (목) 10:00		개 회 식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5. 19 (목) 10:00	1	◆ 5분 자유발언(윤치용 의원) 1.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4.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70호) 5. 구정 질문의 건 - 방사능 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윤치용 의원) 6.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71호, 이혜경의원) 7.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72호, 강진희의원)	
2011. 5. 20 (금)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윤치용의원 발의 -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 총무국)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1. 5. 21 (토)		휴 회	
2011. 5. 22 (일)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5. 23 (월) 10:00	3	1.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정윤석의원 발의-생활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64호, 생활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8호, 생활경제국)	심의보류 심의보류 수정가결
2011. 5. 24 (화)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호, 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6호, 윤치용의원 발의-의회사무과)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5호, 이수선의원 발의-도시건설국) 4.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69호, 도시건설국)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1. 5. 25 (수) 10:00		<현장방문활동> ○ 울산화력발전소(태양광 발전설비) ○ 고리원자력발전소 ○ 태화강 하구(명촌) 억새단지 및 동천일원 (건설과, 울산광역시 협조)	
2011. 5. 26 (목) 10:00		<현장방문활동> ○ 농소~옥동간 도로개설 현장(건설과, 울산광역시 협조) ○ 울산외고 진입도로(건설과) ○ 매곡초등학교~매곡중학교 도로(소2-38호선) (건설과, 울산광역시 교육청 협조)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건설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5. 27 (금) 10:00		<현장방문활동> ○ 화동못 수변공원(도시녹지과) ○ 천마산 편백 산림욕장(도시녹지과) ○ 강동 사랑길(문화홍보과)	
2011. 5. 28 (토) 10:00		휴 회(공휴일)	
2011. 5. 29 (일)		휴 회(일요일)	
2011. 5. 30 (월) 10:00	5	1.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의 건 ○ 천곡문화센터 건립(문화홍보과, 시설재난관리과) ○ 무룡산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문화홍보과) ○ 친환경 무상급식 운영 추진상황(농수산과)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5. 12. (윤치용의원 외 4인)

○ 심의일자 : 2011. 5. 20 (제12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자율방범대의 임무, 조직·구성 등(안 제3조～제4조)
○ 자원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지원, 지원중단 (안 제5조～제6조)
○ 포상, 교육, 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 조직, 구성 등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에 대한 지원사항 및 지원중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방범대 포상, 교육, 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필요성 및 법적합성에 관한 사항과 경비 지원 조항의 실효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먼저, 조례제정안의 법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지방자치법」 제 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대한 예시[별표 1]를, 제9조에서는 자치구 사무의 특례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방범활동’에 관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시(摘示)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에 관항 활동”

등이 적시되어 있고,

제1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법」 제3조에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7조제3항에서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38조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서는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훈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만, ‘방범활동’에 대해 구(區) 조례로 제정함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방범활동을 자원봉사로 볼 경우 임의단체인 자율방범대연합회의 구성을 조례로 정하는 부분(조례안 제2조제3호, 제4조, 제5조, 제9조 및 부칙 제2항 참조)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그 검토가 필요하다하겠습니다.

- 다음, 조례안 제5조 관련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의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20 참조)에 자율방법대원운영비(301-04)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간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우리 구에서도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간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등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법령과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그 예산을 지원받고 있

는 자율방범 대가 사회단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과 「지방자치법」 제122조 및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른 예산의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 겨집니다.

특히, 현재의 조례안 중 그 지원과 관련하여 지구대별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로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활동 중인 모든 자율방범대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그 검토가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 한편, 국회에는 이인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출(2008~2009)되어, 소관 행정안 전위원회에서 법률안(대안) 축조(逐條)심사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 ① (생략) 1. 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운영비,피복비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야식비, 출동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경비 등의 소요경비	제5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운영비,피복비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야식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제 정 안	수 정 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5. 삭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5.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11. 5. 20 (제12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함. (안 제4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 12. 27.자로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내용 중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7조에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거 법령인「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5.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11. 5. 20 (제12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신설. (안 제5조)

○ 구분지상권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 12. 27.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내용 중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호 중 "소유권의 보존"을 "소유권의 보존 등기"로 하였고, 같은 조제2호에 소유권의 이전 등기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제3호 가목에 단서를 신설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 12. 27.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내용 중 등록면허세 세율의 개정 부분을

그대로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3. 17. (구청장)

○ 심의일자 : 2011. 5. 20 (제12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전국의 모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협약에 따른 징수 촉탁업무 신설 및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신설·개정·삭제된 조문에 맞춰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용어 변경 및 규정 명확화

• 지급기준 중 납세의무 발생일을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성립일로 통일(안 제3조제3호)

• 지급한도 중 공동지급기준 규정 명확화(안 제4조제1호)

•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2항)

○ 법령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변경(안 제8조제3항)

○ 징수촉탁 협약으로 징수촉탁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안 제3조제1항제6호)

• 세원을 제보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징수 촉탁업무 신설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11. 1. 1.자로 분법되어 일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제1항에서 지급대상을, 안 제3조에서는 지급기준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급심사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밖에 법령 조문을 일치시키고 문구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징수촉탁 협약으로 징수 촉탁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용어와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5. 12. (정윤석의원 외 4인)

○ 심의일자 : 2011. 5. 23 (제12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추모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 (안 제4조)

○ 보조금 신청방법 (안 제 5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 보조사업 실적 보고 등 (안 제6조)

• 사업 완료 또는 종료 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북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사업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을 안제6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각종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검토결과,

• 먼저, 본 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고, 그 밖에 제23조에서는 공훈선양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조례안 제3조 및 제4조 관련)에 관한 관계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행정안전부훈령)에 의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p. 12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307-03)으로 편성할 수 있는 대상단체 및 지원범위가 적시(摘示)되어 있습니다.
- ‘사단법인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는,「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가 아니라 「민법」 제32조 및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7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1978. 3.10)를 받고,

  고헌 박상진의사의 애국애족 사상과 조국광복을 위하여 순국하신 얼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에서도 고헌 박상진의사의 선양(宣揚)사업을 위해 매년 그 추모사업회 등에 대해 선양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구에도 '추모사업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고헌 박상진의사 생가는,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5항 및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문화재자료' 제5호로 지정(1997. 10. 9.)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시비를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고,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생가보수 및 복원사업(1·2차)도 시비를 지원 받아 우리 구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 고헌 박상진의사에 대한 각종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고헌 박상진의사에 대한 선양사업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아니라 '추모사업회'의 사무 또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區) 조례를 제정하고, 그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함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6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3. 18. (구청장)

○ 심의일자 : 2011. 5. 23 (제12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이유

○ 조례안 제5조(입점예고) 및 제6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 권고)는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 조(입점예고) 및 제6조(상권조사 및 입점지

역 등의 조정권고)와 내 용상 동일한 조문으로, 동 조문에 대한 울산광역시 법령해석 요청(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617호, 2011. 1. 20.)에 따른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심의(2011. 3. 2.)결과가 회신된 바 있습니다.

○ 질의요지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입점예고 요청 및 입점계획이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권조사를 실시하여 입점지역이나 입점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제정이「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로

○ 제5조(입점예고)에 대해서는 입점지역, 시기 및 규모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러한 입점예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 또는 기타 불이익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지도 또는 행정협조 요청 차원의 임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한,「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 제6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에 대해서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조례에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대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동 법상의 사업 조정 제도의 취지와 유사한 권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상권조사에 근거한 임의적인 입점관련 권고내용을 두고 위 법률상의 조정 신청 요건, 절차 및 대상자의 범위를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법령상의 요건을 넘어선 사항을 정하거나 일부 기준을 임의로 완화하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위법령의 규율범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권고의 이행여부를 입점예정자의 의사에 맡겨둔 것과 같이 보이는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입점의 핵심 내용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표시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실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순수한 행정지도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아울러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만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이나 조건이 가능토록 한「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제한을 신설하거나 조건을 붙인 것으로서「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반할 여지가 크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에 법률의 위임을 요하도록 한「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의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기 법제처「법령해석심의회」심의결과의 주요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6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는「지방자치법」제 22조에 위반되므로「지방자치법」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심의결과 : 심의보류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5.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11. 5. 23 (제12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지정절차에 등에 관한 사항,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근거한 유통업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하여 지역 유통산업 발전 도모

나) 주요내용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6조, 안 제7조)

○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 분쟁신청 및 거부(안 제8조 ~ 제13조)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방법·절차(안 제14조)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등 등록절차·제한(안 제16조)

•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등 등록시 조건 등 부과(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0. 11. 24.자로「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 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생 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과 상생발전의 실태조사를,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과 운영, 분쟁의 신청과 조정의 거부에 대해서,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과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제13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표준 조례안에 따

라 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 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송부(2009. 10. 5.)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도 두 위원회를 통합 설치 및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3장(재8조부터 제13조까지) 중 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 및 운영 등에 있어 별지 대비표를 참고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3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8조(설치)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유통분쟁의 조정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신설> 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제16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다. 제17조에 따른 조건 등의 부과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과 중소유통업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나.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제16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라. 제17조에 따른 조건 등의 부과 결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유통산업의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 정 안	수 정 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가. 법 제36조제4항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마. 소상공인지원센터·상공회의소 관계자	<다 ~ 바 : 삭제>
라. 소비자단체의 대표	
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유통기업 대표	나. 북구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유통기업 대표
나. 북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다. 북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2호 : 신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	3.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되, 제9조제1호에 관한 사항은 호선된 위원장이 관할한다.
④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제12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개 정 안	수 정 안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③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19조 : 신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호 · 제3호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호나목 · 다목 · 라목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5.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11. 5. 24 (제126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 선진지 견학, 성과보고회 등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설문조사 결과 반영 및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부위원장 임기 개정(안 제9조제3항)

• 현행 1년(연임불가) → 2년(1회 연임가능)

○ 지역토론회 초청 토론자에 대한 수당과 조정회의 참석 민간위원 실비지급 근거 신설(안 제19조제3항, 안 제22조의2)

○ 누락된 내용 추가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을 증대하기 위해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9조제3항에서 주민참여 예산 시민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19조제3항에서는 지역토론회 초청 토론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에서도 조정회의 참석 민간위원에 대하여 실비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선진지 견학, 성과보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건의사항이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원활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운영)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장과 보궐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장과 보궐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5. 12. (윤치용의원 외 4인)

○ 심의일자 : 2011. 5. 24 (제126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회의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실시 관련 조문개정

- 제1차 정례회 → 제2차 정례회(안 제5조제2항)

○ 정례회 집회일 변경

- 제2차 정례회 11월 네번째 월요일 → 11월 20일(안 제4조제2호)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4조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네번째 월요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고,
- 안 제5조 중 제1항의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난 125회 임시회 시 의결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하기로 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여 명확히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5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5. 12. (이수선의원 외 5인)

○ 심의일자 : 2011. 5. 24 (제126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를 일부정비·보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단장, 부단장, 간사, 동단장 임기 개정 : 3년→ 2년 (안 제4조제5항)

○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및 회의소집 인원 규정

- 구성인원 11명이상 25명 이하 (안 제6조제2항)
- 회의 소집 인원 3분의2 → 과반수 (안제6조제4항)

○ 활동계획 제출 월 개정 : 11월 말까지→ 8월 말까지(안 제9조제7항)

○ 출입증 반납규정 신설 : 탈퇴 시 구청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안 제12조제3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에서 단장, 부단장, 간사, 동단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항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및 회의소집 인원 규정을 “구성인원 11명이상 25명 이하”로 하며,
안 제6조제4항의 회의소집 인원을 “3분의2”에서 “과반수”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7항의 활동계획 제출 월을 “11월 말까지”에서 다음연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8월 말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안 제12조에서 “탈퇴시 구청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등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 그 간 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의 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8절 제127회 제1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윤치용의원 외 3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11. 7. 1 (금) 10:00

다. 회　　기 : 2011. 7. 1 ~ 7. 14 (14일간)

라. 부의안건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윤치용의원 외 5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 및 민원상담실 운영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1년 전, 이 자리에서 제5대 북구의회를 개원하면서 우리 7명의 의원 모두는 구민의 대표로서 왕성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총 71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1차정례회에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며 2010년도 결산 승인을 비롯한 각종 의안 처리를 통해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써 향후 예산 편성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이번에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과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18만 구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주말 제5호 태풍 '메아리'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나 우리 지역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장마와 기습적인 자연 재해로 인해 구민들의 생활 불편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하절기를 맞아 18만 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안 승 찬

3. 의사일정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1. 7. 1~ 7. 14(1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7. 1 (금) 10:00 개회식 직 후 7. 2(목) 10: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1.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80호) - 제 안 설 명(총무국장) -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윤치용의원) 5.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제81호) - 제 안 설 명(부구청장) - 6.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장
		7.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82호, 기획감사실, 총무과, 경제진흥과, 건설과, 농수산과) 8.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7. 2(토)		휴 회	
7. 3(일)		휴 회	
7. 4(월) 10:00	2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무국	소회의실
7. 5(화) 10:00	3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생활경제국 ○ 보건소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6(수) 10:00	4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도시건설국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7. 7(목) 10:00	5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83호, 총무국) ○ 염포동 주민센터 2.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소회의실
7. 8(금) 10:00	6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생활경제국	소회의실
7. 9(토)		휴 회	
7. 10(토)		휴 회	
7. 11(월) 10:00	7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도시건설국	소회의실
7. 12(화) 10:00	8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기획감사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7. 13(수)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호, 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 윤치용의원 발의-생활경제국)	수정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88호, 생활경제국)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6호, 총무국)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 총무국)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89호, 도시건설국)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90호, 도시건설국)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호, 도시건설국)	원안가결
		9.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호, 총무국)	원안가결
		10. 2011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계수 조정	수정가결
7. 14(목) 10:00	10	◆ 5분 자유발언(이홍걸 의원)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당일의사일정변경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1. 7. 1~ 7. 14(14일간)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11(월) 10:00	7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도시건설국	소회의실
· · ·	· · ·	· · ·	
7. 14(목) 10:00	10	◆ 5분 자유발언(이홍걸 의원)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11(월) 10:00	7	1.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93호, 도시건설국) 2.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도시건설국	소회의실
· · ·	· · ·	· ·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14(목) 10:00	10	◆ 5분 자유발언(이홍걸 의원) 1.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92호, 윤치용의원)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종합 심의의결 4.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6.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7. 13 (제127회 제1차정례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업무성격을 고려한 부서조정과 알기 쉬운 국, 실·과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 생활경제국 → 복지경제국
- 도시건설국 → 건설도시국

○ 과 폐지 및 신설(안 제5조, 안 제7조)

- 폐지 : 시설재난관리과(안 제7조)
- 신설 : 주민참여과(안 제5조)

○ 실·과 명칭 변경(안 제4조 ~ 제7조)

- 기획감사실 → 기획홍보실
- 회계정보과 → 회 계 과
- 문화홍보과 문화체육과
- 생활지원과 → 복지지원과
- 경제진흥과 → 경제일자리과
- 건 설 과 → 건설방재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업무성격을 고려한 부서조정과 알기 쉬운 국, 실·과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에 따른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의 국 명칭 변경에 있어 생활경제국을 복지경제국으로, 도시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서는 시설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주민참여과를 신설함과 아울러,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부서 명칭 변경을 위해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회계정보과 를 회계과로, 문화홍보과를 문화체육과로, 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경제진흥과를 경제일자리과로,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기구를 확대하지 않고 정원을 확충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 조정과 주민이 구청의 부서업무를 보다 알기 쉽게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참여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것으로서,

○ 그간 재난관리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 방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건설방재과로 통합 변경하는 등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고 알기 쉬운 명칭으로 국과 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생활경제국을 복지경제국으로 변경함에 있어, 그 명칭이 국 소관의 모든 업무(청소, 위생업무를 포함)를 아우르고 있는 지, 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변경함에 있어 복지지원과와 기존의 사회복지과 명칭으로 볼 때 주민입장에서 해당 과의 업무가 쉽게 구분이 가능한 지, 평생교육과는 모든 구민의 평생교육을 포괄하는 부서이므로 '도서관'과 분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이러한 조직 개편을 위한 개정조례안의 실효성 확보와 시너지 효과 거양을 위해서는 인력이 확충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업무의 적정량을 철저히 분석한 후 인력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는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주민참여, 자치행정, 교육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등에 관한 사무 5. 도서관 관리·운영,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무 **부칙** ③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총무국에는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주민참여, 자치행정, 교육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무 5. 도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 **부칙** ③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주민참여과장"으로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4조제2항 본문 및 후단 중 "평생교육과장"을 "주민참여과장"으로 한다.** ㉛ 울산광역시 북구 제3개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평생교육과"**를 **"주민참여과"**로 한다. 제17조 중 **"평생교육과"**를 **"주민참여과"**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6. 22 (윤치용의원 외 5인)

○ 심의일자 : 2011. 7. 13 (제127회 제1차정례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사전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안 제4조～제5조)

○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의무 등 (안 제6조～제7조)

○ 시설주의 의무 (안 제8조)

○ 사전검사의 결과보고 등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정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시책과 그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제3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시설로 하면서, 우선 검사대상의 종류와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사전검사의 방법 등)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는 편의시설 관련 설계도면에 대해 검사공무원이 사전점검요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고,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검사공무원이 사전점검요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등)은 구청장은 사전검사요원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편의시설 관련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촉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안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등)은 사전검사요원은 검사공무원과 함께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점검사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시설주의 의무)는 시설주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사전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9조(사전검사의 결과 보고 등)은 검사공무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시설주에 통보하도록 함.

○ 안 부칙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됨.

○ 참고로, 집행기관(사회복지과, 건축주택과)에서는 사전검사 대상 편의시설을 공공청사,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전시장,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바, 이는 조례안 제4조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담당부서 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편의시설의 사전검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호)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호)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호)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6.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7. 13 (제127회 제1차정례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원봉사 참여와 관심 유도를 위함

나) 주요내용

관리부서	개정조례안	개 정 내 용	비고
생 활 지원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규정신설 : 울산광역시에서 발급된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 ◦ 기타 : 운영위원 10인이내→ 20인 이하(§8⑥)	
문 화 홍보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면대상 : 수강료 ◦ 개정내용 : 100분의 20% 감면	
평 생 교육과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면대상 : 수업료 ◦ 개정내용 : 100분의 20% 감면 ◦ 기타감면사항 내용⇒조례안 참고	
교 통 행정과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면대상 : 주차요금 ◦ 개정내용 : 100분의 20% 감면	
시 설 재난관리과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면대상 : 이용(사용)료(운동장제외 ◦ 개정내용 : 100분의 20% 감면	

관리부서	개정조례안	개 정 내 용	비고
시 설 재난관리과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감면대상 : 이용(사용)료 ◦ 개정내용 : 100분의 20% 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들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자원봉사 참여 확산과 자원봉사 인정 조기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안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임.

○ 조례별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 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6항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를 20명 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14조의2에서는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그 감면비율 및 적용기준 등은 개별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개별 조례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해수강료 2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15조의2에서 제3대학 수업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수업료 면제, 차상위자 수업료 50% 감면과 아울러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해해서는 2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주차요금 20%를 경감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운동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사용료 20% 감면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대회의실 사용료 20%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은 광역시 및 구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봉사활동 누적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에게 음식업소 등 가맹점에서 할인하는 시책 등을 제공하여 왔으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한 가운데 금회 개정조례안과 같이 우리 구가 관리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해 2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사항은 매우 의미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의 저변 확산을 위한 이러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혜택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우리 구에서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울산광역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6. (문석주의원)

○ 심의일자 : 2011. 7. 13 (제127회 제1차정례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 신설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 주민자치위원 정원 확대, 사무국장 실비보상, 직무 교육 이

수 규정 신설 등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개정(안 제4조 및 제6조)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우수 자원봉사자로 확대(별표 2)

○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25인 이내”에서 “30명 이하” 확대(안 제17조)

○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안 제19조 및 제22조)

○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직무교육 규정 신설(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 신설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 정원 확대, 사무국장 실비보상, 직무교육 이수 규정 신설 등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였고, 별표 2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우수 자원봉사자로 확대함과 아울러 안 제10조의 2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음.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25인 이내”에서 “30명 이하” 확대하였고, 안 제19조 및 제22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 지

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직무교육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에 대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안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을 정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하로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주민자치위원회내 동별 사무국장의 역할이 매우 상이하며 사무국장의 적극적이고 통일된 역할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규정 신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비교표

개 정 안	수 정 안	비고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3명 이하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하로 구성하되, 3인 이하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 ⑦ (생략)	현행 그대로 유지
제19조 ③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의 활동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제23조(실비보상등) 사무국장을 제외한 위원 및 고문----------.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 그대로 유지

제9절 제128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수선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1. 10. 7 (금) 10:00

다. 회　　기 : 2011. 10. 7 ~ 10. 17 (11일간)

라. 부의안건

○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정윤석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선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안승찬·강진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걸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에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정례회 이후 비회기 기간 동안 경로잔치,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참석과 주민의 삶속에서 각계각층의 주민을 만나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 청취는 물론 구민의 입장에 서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동안 충분히 수렴해 온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추경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금년도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심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종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과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엊그제 시무식을 한 것 같은데 벌써 10월 중순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좋지 못한 상황인 가운데 물가 등 실물경제 또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공직자 모두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본연의 자리에서 각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시기에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우리 주위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만 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 하시고 보람된 결실과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안 승 찬

3. 의사일정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1. 10. 7~10. 17(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10. 7. (금)	1	개 회 식	본회의장
2011. 10. 7 (금) 10:00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1.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illegible]	휴 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기획홍보실	[illegible]
2011. 10. 7 (금) 10:00	1	2011. 년10. 제8 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1호) 4.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5. [illegible] (장애인 성폭력 대책 등에 관한 질문, 강진희의원	본회의장
		6.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의안번호 제97호, 보건소) 8.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6호, 정윤석의원 발의 9.) 보건소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8호, 기획홍보실) 10.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부 결 안고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3. 2011 2 (토)		차수	
2011. 10. 9 (일)		차수	
2011. 10. 10.(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 건설도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호, 이수선의원 발의- 건설도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호, 건설도시국) [illegible]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94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illegible] 109 , [illegible] - 총무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10. 10.(월) 10:00	2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110호 ,이홍걸의원 발의-의회사무과) 7.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8호, 이혜경의원 발의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호, 복지경제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1. 10. 11 (화) 10:00	3	1. 2011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 무 국	소회의실
2011. 10. 12 (수) 10:00	4	1. 2011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 ○ 기획홍보실	소회의실
2011. 10. 13 (목) 10:00	5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소회의실
2011. 10. 14 (금) 10:00	6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 조정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04호)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05호)	소회의실
2011. 10. 15 (토)		휴 회	
2011. 10. 16 (일)		휴 회	
2011. 10. 17 (월) 10:00	7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당일 의사일정 변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10. 17 (월) 10:00	7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10. 17 (월) 10:00	7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구정질문의 건 - 달천유적공원 조성 전반에 관한 질문 (윤치용 의원)	본회의장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9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9.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0. 7 (제12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하였던 건강도시업무가 건강증진사업과 상당히 중복되

어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건강도시업무를 폐지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 본 폐지대상 조례는, 지난 2007년 11월 5일 공포·시행함에 있어 우리 북구가 그 동안 추진하여왔던 각종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지역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 진과 구민의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안녕의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건강 형평성 보장과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조례임.
- 본 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로, 본 폐지대상조례를 바탕으로 그간 추진하였던 건강도시업무가 건강증진사업과 상당히 중복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건강도시업무를 폐지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8. 10. 시행한 기구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보건소의 건강도시담당을 폐지하고, 건강증진담당을 신설하였음.
-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국민건강생활의 지원, 금연을 위한 조치, 건강 생활실천협의회 구성,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폐지하고자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와 더불어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지원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

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례로 "가칭"「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소 소관 각종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조례폐지와 관련하여 건강도시 업무가 중복되고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면 폐지조례안과 같이 기존 조례를 폐지하되, 향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새로운 조례("가칭"「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보다 종합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짐.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9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9.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0. 7 (제12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민의 권리 명시(안 제3조)

-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명시, 흡연자의 주의 명시

○ 금연구역 지정 명시(안 제4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장소 금연 구역 지정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과태료 부과 명시(안 제9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신설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2010년 5월 27일 신설되어 2010년 8월 28일(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음.

○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본 조례안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울산광역시에서는 지난 5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고, 여타 구·군에서도 상호 협의를 통해 같은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제정안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붙임자료와 같이 일부문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9. 27(정윤석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1. 10. 7 (제12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4조~ 제5조)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6조)

○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7조)

○ 자살실태조사 (안 제8조)

○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자살예방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자살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자살실태조사,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를 능동적, 효율적으로 추진하

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부칙의 단서부분 시행과 관련하여, 2010, 2011년도 시비 예산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2012년도에는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와 더불어 시비확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9.(구청장)

○ 심의일자 : 2011. 10. 7 (제12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소식지 제호 및 발행주기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나) 주요내용

○ 소식지 제호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2조제1항)

- “행복일번지 울산북구” → “무룡산”

○ 발행주기를 월별로 변경함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3조)

- 분기 1회 → 매월 또는 분기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 소식지의 제호와 발행 주기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소식지 제호를 “행복일번지 울산북구”에서 “무룡산”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발행주기를 분기 1회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본 개정사항은 구정 소식지인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를 분기별 1회 발행하던 것을 “무룡산”으로 제호

변경과 아울러 발행주기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발행하고자 함에 있어,

- 먼저, 제호 변경의 건은 그간 직원 의견 수렴 및 주민 공모를 통해 객원 기자단의 심사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 발행주기 변경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의 규정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소식을 신속하고 적기에 알리기 위해 법령의 범위에서 발행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9. (구청장)

○ 심의일자 : 2011. 10. 7 (제12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0%를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계 : 433명 ⇒ 441명(증 8명)
- 6급 이하 계 : 398명 ⇒ 406명(증 8명)
- 기능직 계 : 62명 ⇒ 54명(감 8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20%를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별표 3에서 일반직 계를 당초 433명에서 441명으로 8명 증원하고, 그 세부적으로 6급 이하 계를 당초 398명에서 406명으로 8명 증원함과 아울러 이에 따라 기능직 계를 당초 62명에서 54명으로 8명 감원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본 개정사항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 도모를 위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우리 구 36명)의 20%(7.2명 ⇒ 8명)를 전환하고, 2012년부터는 2011년도 전환인원에 전환 이후 자연 감소한 인원을 가산한 만큼 전환대상으로 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2011. 9. 2)「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을 그대로 따른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9. (구청장)

○ 심의일자 : 2011. 10. 10 (제12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0467호, 2011. 3. 29.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82호, 2011. 6. 30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하향조정(안 제3조)

• 당초 30% 에서 ⇒ 15%로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법령에 따라「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제한된 자율성 부여(안 제5조)

•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가능한 기금보유액 범위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영의 제도 개선과 관련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2011. 6. 30시행)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법정 적립액의 의무 예치비율을 당초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서는 사용가능 기금보유액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안 제3조의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하향조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고, 안 제5조의 기금의 용도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9. 28(이수선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1. 10. 10 (제12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보완하여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전거주차장 설치면적 개정

•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

→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안 제9조제1항)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 개정 및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명시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

→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

•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명시

→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안 제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2010. 6. 29 개정, 2010. 6. 30 시행)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 및 안 제9조제2항에서자전거 주차장 설치 면적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안 제9조제1항은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있어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을 기준으로 하여 그 면적의 100분의 5로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한 내용임.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부합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9.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0. 10 (제12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011. 3. 9.)에 따른 분과위원회 관련 일부조문 변경

○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안 제6조)

○ 당연직 위원 조항 삭제(안 제6조)

○ 도시계획위원 해촉사유 신설(안 제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2011. 3. 9)에 따른 분과위원회 관련 일부 조문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조문을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규정된 사항을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 2에서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안 12조에서는 회의의 비공개 사항 등을 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2조의 2에서는 심의 안건에 따른 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위원의 해촉 사유 신설, 분과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9.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0. 10 (제12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이를「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

나) 주요내용

○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의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2011. 2. 9 개정, 2011. 7. 1 시행)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호에서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국외 숙박비에 대한 기존 정액제에서 실비 정산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9. 28 (안승찬·강진희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1. 10. 10 (제12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안 제1조~제2조)

○ 기금의 조성·재원·용도(안 제3조~제5조)

○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6조)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존속기한 (안 제7조~제9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안 제10조~제14조)

○ 의견청취 등(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조성·재원·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회계 관계공무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 제15조는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우리구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구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민간부분의 교류 협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제정이후 기금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9. 29(이홍걸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1. 10. 10 (제12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11. 7.14 공포, 2011.10.15 시행)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기간이 종전의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되어 현행조례를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7일 이내 → 9일 이내(안 제2조제2항)

○ 행정사무감사 주체(본회의) 추가

(안 제9조제1항, 안 제12조, 안 제16조제1항)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서류 미제출과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그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5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기간 연장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해 현행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9조제1항, 안 제12조 및 안 제16제1항에서 행정사무감사 주체를 본회의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제5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를 “서류 미제출과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함과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에서 실시토록 하도록 그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하거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9. 28(이혜경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1. 10. 10 (제12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안 제4조)

○ 장애인 인권센터의 사업 (안 제5조)

○ 인권센터의 위탁운영 (안 제6조)

○ 포상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인권센터의 설치와 인권센터 사업의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탁운영의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실효적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집행기관(사회복지과)관련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에 따라 센터 설치와 운영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9.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0. 10 (제12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0813호 2011. 6. 30) 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범위 확대(안 제14조제1항)

• “500미터 이내”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로 2년 연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14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전통상업보존 구역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연장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 6. 13. 조례 제600호로 공포·시행 중인「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과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타당함.

•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함은 물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지정·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

구역"의 조속한 지정 등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업무추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9.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0. 10 (제12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준칙(환경부)"이 개정·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예방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목적, 정의 변경(제1조 ~ 제2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시(제4조)

○ 관계자의 책무부여(제5조 ~ 제7조)

○ 발생억제·감량 우수가구 및 업소에 대한 지원금 등 지원(제8조)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세부시행사항 명시(제9조)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제2조, 제8조~제9조, 제17조~제21조)

○ 2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의무조항(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 등에 대한 책무를, 안 제8조는 음식 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감면에 대하여, 안 제11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에 대하여,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납부필증 등 제작 및 종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대하여,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현행 조례가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방향을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부의 표준조례 준칙안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타 법규와의 관계 등 법률적인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다만,

- 현행 조례 제11조의4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 추진협의회」를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규정되지 않고 있어 감량화 시책 추진협의회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와
- 안 제13조에서 납부필증 등 제작 및 종류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 제14조의2의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방법에 대한 규정은 본 개정조례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14조에서 2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 대해 전용 수거용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논의(표준조례 준칙안 제12조 참조)와
- 안 제19조의 다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표준조례 준칙안 제17조에서는 반기 별 1회이상 하도록 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제 출 안	수정이 필요한 사항	비고
제13조(납부필증 등 제작 및 종류)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신설> ③<신설>	제13조(납부필증 등) ①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붙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별표 2의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에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0절 제129회 제2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11. 11. 21 (월) 10:00

다. 회　　기 : 2011. 11. 21 ~ 12. 26 (36일간)

라. 부의안건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치용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치용의원 발의)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 임진년(壬辰年) 새해를 설계하는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북구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어느 의회보다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은 물론 직접 구민을 찾아가서 경청하고 함께 토론하며 두루 살피는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변화의 격랑 속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우리 서민들은 고물가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지난 3월에 발생한 일본의 지진과 원전사고는 자연 재해의 무서움과 재난 대비 태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공식 발표되어, 어느 지역보다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으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오토밸리 제2공구 개설공사 확정, 소통을 통한 구민 갈등 해소 등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 '주민 참여가 답이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한 성과가 이제 서서히 꽃을 피우려고 한 것도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어느 회기보다 바쁘고 중요한 회기로서 2012년도 당초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보다 큰 틀의 정책 감사로, 주민들의 눈으로 본 감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2년도 당초예산안의 경우 내년 한 해 동안의 우리 구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어렵고 소외된 분야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금번 회기에 상정되는 안건은 물론 내

년도 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겨울나기가 더 힘들고 겨울바람은 더욱 차갑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해 업무에 대한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에 구민의 안녕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안 승 찬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안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11. 11. 21~12. 26(36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 21(월) 10:00 개회식 직 후	1	개 회 식 1.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132호) - 시 정 연 설(구청장) -	본회의장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 21(월) 10:00 개회식 직 후	1	4.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홍보실장 5.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구정질문의 건(중산동 목욕탕 건립관련 이수선의원	본회의장
11. 22(화) ~ 11. 30(수)		행 정 사 무 감 사 (세부일정 붙임 참조)	소회의실 (대상현장
12. 1(목)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3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4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3호, 이혜경의원 발의 총무국) 6.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총무국) 7.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총무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2호, 기획홍보실)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4호, 이수선의원 발의-의회사무과)	수정가결 심의보류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25호, 윤치용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원안가결
12. 2(금) 10:00	3	1.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8호,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6호, 안승찬의원·이혜경의원 발의-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7호, 안승찬의원·윤치용의원 발의-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19호,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호, 건설도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호, 건설도시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12. 2(금) 10:00	3	7.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8호, 윤치용의원 발의 건설도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 강진희의원 발의 건설도시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12. 3(토)		휴 회	
12. 4(일)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5(월) 10:00	4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30호, 총무국)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 염포운동장 조성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33호, 기획홍보실)	소회의실
12. 6(화) ~ 12. 16(금)	5~13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세부일정 붙임 참조)	소회의실
12. 17(토)		휴 회	
12. 18(일)		휴 회	
12. 19(월) 10:00	14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부구청장) -	본회의장
12. 20(화) 10:00	15	1. 201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무국	소회의실
12. 21(수) 10:00	16	1. 201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 보건소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2(목 10:00	17	1. 201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 기획홍보실	소회의실
12. 23(금 10:00	18	1. 201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소회의실
12. 24(토		휴 회	
12. 25(일		휴 회	
12. 26(월 10:00	19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11. 22 ~ 11. 30, 9일간>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1. 11. 22(화)	10:00	소회의실 (현장)	ㅇ**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ㅇ**기획홍보실** ㅇ**총무국** • 총무과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1. 11. 23(수)	10:00	〃	ㅇ **총무국** • 주민참여과 • 회계과	
2011. 11. 24(목)	10:00	〃	ㅇ **총무국**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2011. 11. 25(금)	10:00	〃	ㅇ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경제일자리과	
2011. 11. 26(토)			**휴회**	
2011. 11. 27(일)			**휴회**	
2011. 11. 28(월)	10:00	〃	ㅇ **복지경제국**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ㅇ **보건소**	
2011. 11. 29(화)	10:00	〃	ㅇ **건설도시국** • 건설방재과 • 도시녹지과 • 교통행정과	
2011. 11. 30(수)	10:00	〃	ㅇ **건설도시국** •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ㅇ **의회사무과**	

※ 해당 부서 감사 종료 후 재확인 등 필요시 해당부서 추가 감사할 수 있음.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일정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12. 12. 6~12. 19(1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장 소
12. 6(화) 10:00	5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과)	소회의실
12. 7(수) 10:00	6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주민참여과, 문화체육과)	소회의실
12. 8(목) 10:00	7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총무국(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회의실
12. 9(금) 10:00	8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소회의실
12. 10(토)		휴 회	
12. 11(일)		휴 회	
12. 12(월) 10:00	9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12. 13(화) 10:00	10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소회의실
12. 14(수) 10:00	11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소회의실
12. 15(목) 10:00	12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보건소 ○ 기획홍보실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12. 16(금) 10:00	13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소회의실
12. 17(토)		휴 회	
12. 18(일)		휴 회	
12. 19 (월) 10:00	14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부구청장) -	본회의장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 20(화) 10:00	15	1. 201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총무국	소회의실
12. 21(수) 10:00	16	1. 201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 보건소	소회의실
12. 22(목) 10:00	17	1. 201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 기획홍보실	소회의실
12. 23(금) 10:00	18	1. 201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소회의실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 20(화) 10:00	15	1. 201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복지경제국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 21(수) 10:00	16	1. 201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 보건소	소회의실
12. 22(목) 10:00	17	1. 201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총무국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12. 23(금) 10:00	18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6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37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34호, 정윤석의원 복지경제국) 5. 201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3(금 10:00	18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6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37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34호, 정윤석의원-복지경제국) 5. 201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12. 26(월 10:00	19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3(금 10:00	18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6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37호, 총무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 138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34호, 정윤석의원-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 복지경제국) 6. 201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12. 26(월 10:00	19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3.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40호, 이혜경의원)	본회의장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2. 12. 1.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참여자 실비보상 등 실효성 있는 주민 참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안 제2조)

○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주민참여 학교운영(안 제7~12조)

○ 구정 정책에 관한 토론 청구(안 제13조)

○ 참여주민 실비보상 및 주민참여 포인트(안 제16조~17조)

○ 주민참여 사업 지원(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주민참여,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주민교육, 주민참여 학교 운영과 주민참여 교육 등에 대한 위탁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에서는 구정 정책에 관한 토론 청구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4조에서는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주민 의견조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에서는 참여주민에 대한 실비보상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포

인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9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사무의 위임, 위탁 등에 따른 민간부문 등의 자료 청구 등 그 정보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주민중심의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조례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기본 조례로 새롭게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음.
- 다만, 붙임 검토사항과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해 그 자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주민참여”란 주민이 구의 정책 형성단계부터 집행·평가단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 4. (생략)	2. “주민참여”란 주민이 구의 정책 형성단계부터 집행·평가단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개 정 안	수 정 안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신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주민참여)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모집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서 구 소속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모제나 추천제 등 주민 참여가 보장된 공개적인 절차로 모집 2. 장애인·노인·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보장 <신설>	제7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모집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서 구 소속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모제나 추천제 등 주민 참여가 보장된 공개적인 절차로 모집 2. 장애인·노인·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보장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위원이 균형 있게 위촉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위원이 30퍼센트 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의 위원을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구정 정책에 관한 토론 청구) ① (생략) ② 제1항의 토론 청구는 「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제17조(주민참여 포인트) ①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구정 정책에 관한 토론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토론 청구는 「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제17조(주민참여 포인트) ①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2. 1.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를 복원하여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주민 참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사업공모 및 신청, 지원절차 (안 제6조~제7조)

○ 사업추진의 자문 및 추진 과정에 따른 교육, 견학, 우수자원 발표 등 육성 지원 (안 제9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안 제16조~제18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기능, 운영 (안 제24조~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장(총칙)의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과 우리 구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이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2장(사업의 추진)의 안 제5조에서는 마을만들기 및 CB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대해,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공모를, 안 제7조에서는 신청 및 지원절차와 대상사업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업 주체의 책무를, 안 제9조에서는 자문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해, 안 제10조에서는 사업내용의 변경, 안 제12조에서는 사업비의 반환, 안 제13조에서는 형성재산의 사용에 대해, 안 제14조에서는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안 제15조에서는 그 사업추진에 다른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제3장(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의 안 제16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등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제4장(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의 안 제24조부터 안 제

27조까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지원센터의 조직과 그 운영방법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 제정 조례안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를 복원하여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주민참여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붙임 검토사항과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자구 수정 등 보완이 필요함.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조 례 안	검 토 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4. ~ 5.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4. ~ 5. (생략)	-자구 수정(약칭으로 사용 시에는 붙임: 조례안 전체 적용)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예	-제목(자구) 수정

조 례 안	검 토 안	비 고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을 만들기 및 CB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산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을 만들기 및 CB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자구) 수정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동의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①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동의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목(자구) 수정
제9조(자문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및 CB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	제9조(자문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거	- 자구 수정 (약칭으로 사용 시에는 붙임/다른 조에서 약칭으로 사용하는 사례 없음) -자구 수정

조 례 안	검 토 안	비 고
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교육, 우수사례 현장 견학 우수 자원 발표 등 사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교육, 우수사례 현장 견학 ,우수 자원 발표 등 사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정식명칭 인용
제10조(사업 내용의 변경)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사업 내용의 변경)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관련)
제14조(분석 및 평가) 구청장은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분석 및 평가)구청장은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장에 기관명칭 생략 검토
제3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제3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명칭 관련 조항 인용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5. (생략)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제24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5. (생략)	
제18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8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기관 정식 명칭 사용

조 례 안	검 토 안	비 고
1. 구 관계 공무원 2명 2. 구 의회 의원 2명 3. ~ 4. (생략) ③ (생략)	1. 구 관계 공무원 2명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3. ~ 4. (생략) ③ (생략)	(앞에서 약칭 규정 없음)
제4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제4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 장에 기관명칭 생략 검토
제2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5. (생략) 6. 사업 주체, 기업, 국내·외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네트워크 사업 7.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8. ~ 10. (생략)	제2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5. (생략) 6. 사업 주체, 기업, 국내 국외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네트워크 사업 7.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 물적·정보 교류 협력 8. ~ 10. (생략)	-붙여 쓰거나 (국내외) 국내·국외로 표기 (예, 국공립, 국립·공립)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2. 1.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6 10조에 따라 통·반장의 해촉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에게도 평등한 통·반장의 위촉기회를 제공

※ “울산장애인조례개정추진연대”로부터 개정요청 접수

○ 통장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통장들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에 기여

나)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조례 위임조항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안 제1조)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 제6조 중 장애인 차별 조항 삭제(안 제6조)

○ 통장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에서 통장·반장의 해촉과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의2에서는 통장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통장·반장의 해촉과 관련하여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에게도 평등한 통장·반장의 위촉기회를 제공하고, 통장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통장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6조제1항을 삭제함에 있어 그 밖의 사유 즉, 병원입원·국외여행 등으로 인해 장기간 통장·반장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는바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안
제6조(통·반장의 해촉)동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통·반장의 위촉 해제) 각 호의 어느 하나――――――――――――위촉 해제――――――――――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1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삭 제)	1.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병원입원, 국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1. ――――――――――――――――――――――――	
3. 사망 또는 통·반 관외로 전출할 때	2. ――――――――――――――――――	
4. 당해 통·반의 세대주 과반수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	3. 해당 ――――――――――――――――――――――	
5. 기타 구정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반도덕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동장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의 ――――――――――――――――――――――――――――――――――――――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임무)――――――――――――――――――――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	2. ――――――――――――――――건의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에 한함)	7. ―――――――주민지도 (전시에 한정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8. ――――――――――――――――――(전시에 한정함)	
	10. 법령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안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0.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기타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의----------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통·반장의 위촉 해제)동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통·반장의 위촉 해제)동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 제 >	
1.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1.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2. 사망 또는 통·반 관외로 전출할 때	2. 사망 또는 통·반 관외로 전출할 때
3. 해당 통·반의 세대주 과반수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	3. 해당 통·반의 세대주 과반수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
4. 그 밖의 구정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반도덕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동장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의 구정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반도덕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동장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2. 1.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시행하는 월성원전 단지

○ 공업용수 공급관로 매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제1가압장 부지 내 위치하고 있는 연암동과 효문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

○ 정자항 제방시설의 경우 지리적 위치 상 정자동에 비해 구유동에 근접하고, 해당 시설 일부가 구유동 판지어촌계 어장구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정자동 번지가 부여되어 주민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

※ 해당 시설 사업시행자인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정자동 및 구유동 주민 의견 수렴 후 행정구역 변경 신청

나) 주요내용

○ 개정연혁 조항 신설(안 제3조)

○ 개정연혁표 신설 (별표 2)

○ 개정연혁 지번별 조서 : 붙임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2조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안 제3조 개정연혁을 별표 2로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구역 변경과 동 관할구역 개정연역표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함에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11 (이혜경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1. 12. 1.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을 개방함에 있어 주민을 위한 각종대회를 추가하는 관련 조항을 일부 보완하여 구민의 체육시설물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 개방 관련 규정 추가함 (안 제7조)

•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

→ 주민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 및 각종 대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 개정조례안은 현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에서 '주민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 및 각종대회'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체육시설물 이용 활성화와 체육관의 이용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2. 1.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및 책 읽는 울산 북구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까지)

○ 책 읽는 울산 북구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10조까지)

○ 독서문화 진흥 유공자 및 독서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책 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및 회의 참여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에서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안 제13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 제정 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법」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도서관 운영과 더불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재구성 문제, (가칭)도서관별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책 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 그 밖에 붙임 검토사항과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문구 수정 등이 필요함.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조 례 안	검 토 안	비 고
제2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12조에서 각각 인용
제3조(독서문화 진흥)구청장은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2. 작은도서관(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의 독서문화 행사 지원 3. "울산 북구의 책"을 선정하여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전개 4. ~ 6. (생략)		
제4조(위원회의 설치)구청장은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책 읽는 울산 북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 - - 책 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 - -	-제목 수정 -기관의 정식 명칭 사용

조 례 안	검 토 안	비 고
제5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책 읽는 울산 북구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추진계획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2조제 1항에 의함 ※ 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경우 -제6조부터 제 10조까지 삭제하고, 제 11조부터 제 14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 9조까지로 하여야 함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④ (생략)	사람	-자구 수정 ※기관·단체·학교도 있을 수 있음
제11조(포상 등)구청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	추진계획	-제2조제 1항에 의함

조 례 안	검 토 안	비 고
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구 수정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책 읽는 울산 북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 - -책 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책 읽는 울산 북구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
2.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④ (생략)	사람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추진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2. 1.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12.31 종료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되는 조문은 조례에서 삭

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규정(감면기간, 감면율)을 조례에 반영하며, 기존 조례중 감면이 필요한 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감면조항 삭제(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신설)

○ 제2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17조의2

○ 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38조제4항

○ 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85조의2

○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58조의2

○ 제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56조제3항

○ 제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60조제4항

○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58조제4항

(2) 상위법에서 조례 위임에 따른 개정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감면율 조정 : 안 제2조

• 재산세 과세특례분 감면율 상향조정(50% →100%)

○ 제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감면기간 조정 : 안 제4조

• 제1항과 제2항의 감면 및 공제기간 조정(기존 조례의 감면기간 적용)
(전액면제 : 7년, 50/100경감 : 3년)

• 제3항과 제4항의 감면 및 공제기간 조정(기존 조례의 감면기간 적용)
(50/100경감 : 7년, 30/100경감 : 3년)

(3) 기존 감면조례 기간연장

○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안 제3조

○ 제1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안 제5조

○ 제14조(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안 제6조

(4) 조례 폐지(일몰기간 종료)

○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일몰기간 종료로 폐지

○ 제15조(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 일몰기간 종료로 폐지

(5) 조례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안 제7조

• 자동계좌이체납부 : 고지서 1매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납부 : 고지서 1매당 500원

(6) 적용시한 : 2013년 12월 31일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세제한특례법」에서 감면 조문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 제2조, 제4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적용시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임. 다만, 안 제2조의 적용시한은 2012년 12월 31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되는 조문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규정(감면기간, 감면율)을 조례에 반영하며, 기존 조례 중 감면이 필요한 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2. 1.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신설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안, 비용추계서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작성대상 및 작성제외 대상 (안 제3조)

○ 제출범위 : 구청장 발의안, 의원 발의안, 주민청구조례안 (안제4조)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작성 (안 제5조, 안 제6조)

○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비용추계의 작성대상 및 작성제외 대상에 대해, 안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 등의 제출범위에 대해,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바법에 대해, 안 제7조에서는 비용추계서 등의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구청장이 발의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구 의회의원이 발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의안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4조제2항·제3항과 안 제7조제2항제2호에 대하여는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붙임 검토사항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제출범위) ②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출범위) ②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제6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제 정 안	수 정 안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 (이수선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1. 12. 1.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일부 조문 변경

• “폐질등급” → “장애등급”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25조제1항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를 일부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인용하는 법령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 (윤치용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1. 12. 1.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에 따라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 중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예고에 필요한 사항과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임시회의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 조례안 예고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 예고방법 : 입법 취지, 주요 내용, 전문,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입법예고기간 : 5일 이상

○ 회의 주체(본회의)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추가
(안 제69조제1항, 안 제71조제1항, 안 제73조, 안 제73조의2)

○ 울산장애인조례개정추진연대 건의사항 정비
(안 제59조제6항제2호, 안 제87조제1항제2호～제4호)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2항에 임시회의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의2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71조, 안 제73조, 안 제73조의2에서는 회의 주체(본회의)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고, 안 제59조 및 제89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

- 개정규칙안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운영을 통해 미비사항을 보완함과 아울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2. 2.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1. 6. 7자「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2011. 12. 8자로 시행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육시설 또는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제명, 안 제

1조, 제4조, 제5조제2항제1호 및 별표 제명, 제1조, 제4조제2호, 제8조제1항, 10조제1호)

○ 보육시설장 또는 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명칭변경(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 보육시설종사자 또는 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변경(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별표 제4조제4호 및 별표 제7조제1항, 같은조제4항)

○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변경(안 제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이 2011. 6. 7.자로 개정되어 2011.12. 8.자로 시행 예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제명, 안 제1조, 제4조, 제5조제2항제1호 및 별표 제명 및 제1조, 제4조제2호, 제8조제1항, 10조제1호에서 보육시설 또는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에서는 보육시설장 또는 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별표 제4조제4호 및 별표 제7조제1항, 같은 조제4항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 또는 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 등에 맞도록 명칭 정비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 (안승찬·윤치용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1. 12. 2.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보상요건 및 보상의 제외(안 제3조~제4조)

○ 피해신고 및 조사 (안 제5조)

○ 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안 제6조~제8조)

○ 대장의 비치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 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보상요건 및 보상의 제외에 대하여, 안 제5조는 피해신고 및 조사를,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피해 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을 안 제9조는 대장의 비

치를, 안 제10조는 준용 부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최근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그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로「야생 동·식물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2. 2.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1991년 4월 23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책정 이후 20년간 동결

○ 최근 市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대행업체의 경영난 가중

○ 2010년 10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사용역(市 일괄추진)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인상·조정 추진

나) 주요내용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안 별표〕

○ 수거식 화장실(18리터) : 현행 177원 → 변경 292원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기본요금(750리터까지) : 현행 11,045원 → 변경 16,630원

• 초과요금(100리터마다) : 현행 772원 → 변경 1,18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20년간 동결된

상태에서 2010년 10월 울산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인상·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별표에서 수거식 화장실(18리터 기준)를 현행 177원에서 292원으로 변경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기본요금(750리터까지)은 현행 11,045원에서 16,630원으로, 초과요금(100리터 마다)은 현행 772원에서 1,18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제23회 북구의회 임시회(1999. 7. 27)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있어 수거식 화장실에 대하여는 13.6%,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기본요금을 37.7%, 초과요금을 37.6%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구·군간 인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경제 악영향, 과도한 인상 등의 이유로 심의결과 인상안은 유보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울산광역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대행업체의 경영난 우려와 1991년 4월 23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최초 책정 이후 20여년간 동결되어 온 점, 그간의 상하수도 요금 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경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적정선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이러한 공감대와 인상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0년 10월 울산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며 원가를100% 현실화하였을 경우 현재의 수수료 대비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110.7%, 수거식(재래식)은 218%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금회 제출된 조례안은 현실화율을 각각 70%, 50%선으로 하여 실제 가구당 부담 인상율을 각각 47.2%, 59%로 하는 사항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2. 2.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장애인조례개정 추진연대로부터 조례 중 일부가 장애인에게 차별적 비하 표현으로 지적되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차별적 비하표현인 “심신장애” 용어 삭제 (안 제5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 장애인 조례 제·개정 추진연대로부터 조례 중 일부가 장애인에게 차별적 비하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3항의 “심신장애” 문구를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장애인의 차별적·비하 표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2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2. 2.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장애인조례개정 추진연대로부터 조례 중 일부가 장애인에게 차별적 비하 표현으로 지적되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차별적·비하표현 용어 수정 (안 제2조)

○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 “휠체어”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 장애인 조례 제·개정 추진연대로부터 조례 중 일부가 장애인에게 차별적 비하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휠체어”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장애인의 차별적·비하 표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정비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 (윤치용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1. 12. 2.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합계획의 수립 공고 규정 신설(안 제3조)

•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 지원 기준을 세대 규모별 차등화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고, 선택집중적 방식으로 개선하여 지원의 효율을 높임(안 제4조)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신설(안 제4조제2항)

○ 공용시설 유지보수 대상의 확대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함(안 제4조의2)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에서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대한 공고 규정을, 안 제4조에서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하였고, 안 제4조의2 지원대상 폭을 확대함과 동시에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우선 지원 조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안 제11조제2항에서 사업종료 후 정산 검사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우리 구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의2의 지원대상에 있어 공동주택 시설물 설치·유지·보수에 대한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으며 특히, 제16호의 주민참여형 교육, 자원봉사활동, 주민 특화사업 등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은 매우 의미있다고 할것임.

또한, 안 제4조제2항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별표로 규정하였는 바, 이는 세대수, 지급비율, 지원 상한액을 구분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업비 지원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연계하여 사업 종료 후 정산 절차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안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 검토결과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의 소지를 예방하며, 주민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내용상 합리적이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2. 2.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안 제3조～제4조)

○ 지원범위(안 제5조)

○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교육,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안 제6조～제9조)

○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범위를,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교육,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안 제10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안 제11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안 제12조에서는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인「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위배되

지 않은 가운데, 조례안 제5조(지원범위), 안 제10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안 제11조(여성농어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에서여성 농어업인의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의미 있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성 및 삶의 질 향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조례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각각의 시책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기관장 및 부서장의 추진 의지에 따라 시책 추진 여부가 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2.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2. 23.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1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인한 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의 관련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3조제1항)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목적 업무 취급에 있어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승인
○ 심사기준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 법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기준은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음
○ 다른 법령준용규정 신설(안 제10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 준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기능) 중 제1항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조문 정비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의2(심사기준)에서는 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준용)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2011년 7월 29일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된「공직자윤리법」(시행 2011. 10. 30.)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3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2.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2. 23.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18차본회의)

2) 폐지이유요지

가) 폐지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던 문화의 집 업무가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상당히 중복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문화의 집 업무를 폐지하고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운영 목적 상실에 따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조례안은「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상당히 중복되어 있고, 설립당시와는 다르게 지금은 국시비 보조가 없는 등 여건변화와 아울러「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2.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2. 23.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1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동 시설이 농업관련시설로 용도변경 됨에 따라 조례의 운영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운영 목적 상실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 조례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동 시설이 농업관련시설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운영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본 폐지 조례안은 가동 중지된 기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 2010. 11. 25.자로 의회 승인과 함께 농업관련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현재는 타 용도로 사용중에 있는 가운데, 주민지원기금(7억 4천만원)이 2011. 11. 16.자로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기금으로서 필요성이 사라졌으며, 한편 주민지원협의체가 2010. 10. 12.자로 해체되는 등 더 이상 조례 운영을 위한 실익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2. 9 (정윤석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1. 12. 23.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1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빈번한 소음이 발생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어 주민의 정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을 실천하고 아울러 행정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생활소음저감 실천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구와 사업자, 주민의 책무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안 제6조)

○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안 제7조)

○ 행정지도·점검 사항(안 제9조)

○ 소음저감 개선명령 등(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 저감을 실천하고 행정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생활

소음 저감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 측정을, 안 제7조에서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을, 안 제9조에서는 행정지도·점검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소음저감 개선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지난 11. 23.자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일부 문구수정의견에 대해 조례안 발의 전에 보완하였으며 그 밖에 이견은 없다라는 입장이고, 환경위생과의 2012년도 신규시책인 “공사장 소음 자율관리 책임제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본 조례안은 사업자의 소음 저감 자율 참여로 생활소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 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평온한 생활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1. 12. 23.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1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지방공공요금 인상폭 축소 및 분산방안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시행시기 조정 추진

나) 주요내용

○ 부칙 <조례 제626호, 2011.12.15> 개정 조례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중 “2012년 1월 1일”을 “2012년 7월 1일”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시행시기를 조정하고자 개정 하는 것임.

○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안 시행 시기를 부칙에서 “2012년 1월 1일”에서 “2012년 7월 1일”로 변경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제1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2. 2.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북구청장은 이송 조례안을 12. 15.자로 공포하였으나, 물가 인상, 서민 경제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행 시기를 당초 2012년 1월 1일에서 2012년 7월 1일로 다소 늦추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의원님의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1절 제130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윤치용의원 외 2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12. 2. 6 (월) 10:00

다. 회　　기 : 2012. 2. 6 ~ 2. 14 (9일간)

라. 부의안건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이혜경·안승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들어 오늘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7월 개원한 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그동안 생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구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과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와 제4기 민선 구정이 3차 연도를 맞이하는 해로써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내실을 다져가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지난 하반기부터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윤종오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참여와 소통을 통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리더 양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 공간 창출과 1인 1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동반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작은 도서관 확충으로 책읽기 좋은 도시 조성, 친환경 무상급식 내실화 및 로컬푸드를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연계 강화, 행복한 인생 설계를 위한 평생학습의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 등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역점 시책은 물론 중앙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여러 현안사업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1,690억 원의 2012년도 예산을 적기 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최대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하는 주민 참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민·관 거버넌스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만이 아닌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구정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할 사항은

적극 지원토록 하여 주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 한 해 우리 구가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 등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은 주요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 단위 사업별 문제점 및 대책 등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부서별 업무 보고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들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18만 주민들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긴밀한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북구가 날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안 승 찬

3. 의사일정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2. 2. 6~2. 14(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2. 2. 6 (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2. 2. 7 (화) 10:00	2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홍보실 ○ 총무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소회의실
2012. 2. 8 (수) 10:00	3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총무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회의실
2012. 2. 9 (목) 10:00	4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소회의실
2012. 2 .10 (금) 10:00	5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환경미화과) ○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소회의실
2012. 2. 11 (토)		휴 회	
2012. 2. 12 (일)		휴 회	
2012. 2. 13 (월) 10:00	6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건축주택과, 농수산과) ○ 보건소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2012. 2. 14 (화) 10:00	7	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47호, 윤치용의원 발의)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기획홍보실) 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의안번호 제144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148호,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발의 -총무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부 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총무국)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건설도시국)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4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 30 (윤치용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2. 2. 14 (제130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과 위원의 위촉해제를,

○ 안 제6조는 용역·공사의 금지를,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의 공개를,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유사위원회의 활동 등과 수당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안 부칙에서는 안 제2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안 제3

조에서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폐지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조례시행에 따라 기존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53개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원 선정시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한 조례안 토의내용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1월 31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의결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 27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2. 2. 14 (제130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복지전달체계 및 하천관리 강화, 명촌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안 별표 2의 제2호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 안 별표 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사항임.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의 제2호)

• 기능직공무원

구분	당초					변경			
	6급	7급	8급	9급	10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7%이내	15%이내	26%이내	34%이내	18%이상	10%이내	17%이내	28%이내	45%이상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계 : 441명 ⇒ 452명(증 11명)

- 6급 이하 계 : 406명 ⇒ 417명(증 11명)

• 별정직 계 : 4명 ⇒ 2명(감 2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및 하천관리 강화, 명촌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그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제3항의 개정으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고, 날로 늘어가는 사회복지 수요의 전달체계 강화 및 하천의 체계적 관리, 명촌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원을 9명 증원하고,

-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11.10.10)「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우리 구 보건진료 인력 별정직 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에 따라 일반직 총 11명 증원, 별정직 2명을 감원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 일반직 6급 이하의 경우 직렬별로 늘어나는 인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서 정하는 정원에 대하여는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 27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2. 2. 14 (제130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정수를 20명에서 25명(회장 1, 부회장 1명 포함) 이내로 하며, 회장과 부회장 모두 협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 안 제6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수와 위원 정수를 조례에서 폐지하며,

○ 안 제8조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국 주무과장에서 해당 업무 과장으로, 서기는 국 주무담당에서 해당 업무주무관으

로 각각 변경하고,

○ 안 제9조에서는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운영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음.

○ 검토결과,

• 먼저, 현행 조례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중에서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정수는 7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서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정수를 삭제하는 것은 분과위원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여겨짐.

한편,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구 다른 조례에서도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그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따른 법제처의 의견제시사례(안건번호 의견11-0115, 처리일자 2011. 7. 4)를 살펴보면 조례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의 의미는 반드시 규칙으로 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훈령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호(종전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

2호) 등에 따른 문서의 종류 중 이에 적합한 종류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사례가 있음.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에서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정수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임하고자 한다면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등으로 규정(붙임자료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제3조에서 제6조로 변경함에 따라 조의 제목도 “분과위원회 운영”에서 “분과위원회의 설치”로 그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음.

아울러 조례개정안에는 없지만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10조(운영규정) 중 “협의회”를 “협의회, 분과위원회”로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와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두 번째로, 제8조제2항 중 직급의 호칭문제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훈령 제171호, 2011. 8. 5.) 제4조에서는 대외직명의 선정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서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른 별표 1에서는 “6급”을 “지방행정주사” 등으로 적시(摘示)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제8조제2항 중 “기획주무관”을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그 밖에 “업무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업무주무관”을 “업무담당주사”로 각각 표기(붙임자료 참고)함이 바람직하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그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그 밖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음.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비교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 전체회의에 대한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주무관으로 한다. ③ (생 략)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정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체회의에 대한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 27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2. 2. 14 (제130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먼저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로의 변경을,

○ 안 제8조에서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그 담당 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 분야별 정보화 추진,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과 정보화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 민원사항의 전자적 처리, 지식정보 자원의 제공·활용 및 행정정보의 제공에 대한 사항을,

○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서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과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9. 5. 22.)되고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지역정보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또한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제9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오늘) 의결됨에 따라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칙에 의거 폐지되는 조례에 해당되어 수정할 필요가 있고,

-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자치입법 실무편람』(울산광역시, 20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에 따라 붙임자료와 같이 '설치 목적·기능·구성·운영 등'의 순으로 일괄 정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14조제3항·제4항 중 정보제공 수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감면기준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한편, 안 제12조제3항·제4항의 수수료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령이나 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규칙으로 감면기준을 정한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에서 구체적 내용 없이 규칙으로 위임함이 바람직한지는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안 제2조의 정의,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준용 등과 관련하여 일부 문구의 정비가 필요하겠음.

  따라서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조례안에 대한 축조(逐條)심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붙임자료(대비표/수정의견)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비교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 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 4.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 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북구 (이하 “구”라 한다) 정보화 업무를 총괄 조정 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 를 말한다. 3. ~ 4. (현행과 같음)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 ·해소 9. ~ 10. (생 략) ④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 10.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받은 경

제 정 안	수 정 안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설치 등) ①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대표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학계·언론계·기업체·민간단체·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 및 제7조 : 전부개정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언론계·기업체·민간단체 중

제 정 안	수 정 안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구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구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①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구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징수나 감면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제16조제3항의 우수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 ② (생략)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⑤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지원) ① ~ ② (생 략)	제15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제 정 안	수 정 안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등에 따라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경과조치) ① (생 략)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협의회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협의회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4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 30 (이혜경·안승찬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2. 2. 14 (제130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생활체육 진흥사업 및 지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과 교실의 기능, 강사의 위촉 및 수강료, 그밖에 포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의 구성·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지급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8조 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른 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안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의「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실질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주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음.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한 조례안 토의내용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1월 31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의결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 27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2. 2. 14 (제130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수산업법」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업무가 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 공포되어 업무가 신설되고,

○「비료관리법」제11조 (비료생산업 등록) 및 제12조(비료수입업 신고)가 2007. 8. 3. 법률 제8591호로 개정・공포되고, 그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 이에 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구분란 중 제3호

농수산 관계에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의 3종 수수료 징수금액을 신설함.

<안 별표1>

구 분	기준	요 구 액(원)	비 고
3. 농수산관계			
(43)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신설)	1건	3,000	신설
(44) 비료생산업 등록(신설)	1건	50,000	신설
(45) 비료수입업 신고(신설)	1건	20,000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업법」 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업무가 2010. 1. 25.자로 개정 공포되어 업무 신설 및「비료관리법」 제11조 (비료생산업 등록)과 제12조(비료수입업 신고)가 2007. 8. 3.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되어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수산업법」과「비료관리법」 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금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설 3종의 수수료를 타 시·군·구와 비교 및 자체 원가분석으로 조정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 27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2. 2. 14 (제130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지진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에 의한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히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 안 제4조에서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을,

○ 안 제5조에서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 안 제6조에서 임기 및 위촉 해제를,

○ 안 제7조에서 위험도평가 시기를,

○ 안 제8조에서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를,

○ 제9조에서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을,

○ 제10조에서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을,

○ 제11조에서는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 및 지진 발생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히 판정하기 위한 것임.

○ 검토결과 제정 조례안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진으로 인한 추가 붕괴의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2절 제131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12. 3. 13 (화) 10:00

다. 회　　기 : 2012. 3. 13 (1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2. 의사일정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20. 34. 13(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2. 3. 13 (화) 10:00		개 회 식	
	1	1.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0호, 건설도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 윤치용의원 발의-복지경제국)	원안가결 수정가결

3.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3. 2.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2. 3. 13 (제13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승용차 요일제가 2012년 4월 1일 시행함에 따라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사항과 울산광역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 현행 일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6조제4항제9호에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경감하고,

○ 안 제20조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대수 확대 및 설치기준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일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의 참여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사항과 울산광역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 현행 일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

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또한,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맞게 우리 구에서도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경감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대수에 있어서도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맞게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교통 편익과 장애인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3. 2. (윤치용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2. 3. 13 (제13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

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무를 명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하기 위해 그 적용례를 명시함(부칙 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 그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시행하고자함에 있음.

○ 검토결과 먼저, 안 제17조의2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구청장이 그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각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우리 구 시장일부가 매월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하거나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월 2일 이내로 하되,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단서 규정으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법 제12조의2의 단서 규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우리 구와 울산광역시 관내 구·군별 시장별 휴무 현황과 대규모 점포 등 영업시간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음,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안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안 제2조에 적용례를 “제17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2월 7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간 입법예고(2월 27일까지)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 대형마트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공포·시행 시기는 현재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3월 말이나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비교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2012년 5월 1일 이후 개정 시행될 경우 그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삭 제>

제13절 제132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강진희의원 외 2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12. 5. 8 (화) 09:30

다. 회　　기 : 2012. 5. 8 ~ 5. 21 (14일간)

라. 부의안건

○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안승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이혜경·안승찬의원 발의)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132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11일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업무에 종사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 서민들의 경제 여건은 날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의회가 구민들을 먼저 찾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며,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대변자 역할 수행은 물론 정책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회와 힘을 합쳐 각종 숙원사업, 일자리사업 등 시급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오늘부터 14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여러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의 추경예산안 심의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계획한 업무에 대하여 그 동안 잘 추진되어 왔는지, 하절기 장마철을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확인하는 자세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의 안녕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안 승 찬

3. 의사일정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2. 5. 8~5. 21(1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2. 5. 8 (화) 09:30 개회식 직 후	1	개 회 식	본회의장
		1.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6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2012. 5. 8 (화) 09:30 개회식 직 후	1	4.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안번호 제166호, 보건소)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5호, 복지경제국)	본회의장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3호, 총무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4호, 총무국)	
2012. 5. 9 (수)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9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1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 강진희의원·안 승찬의원 발의-총무국) 6.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2호, 총무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153호, 이혜경의원·안승찬의원 발의 총무국)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157호, 총무국) ○ 천곡문화센터 건립	소회의실
2012. 5. 10 (목) 10:00	3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총무과, 주민참여과, 문화체육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2. 5. 11 (금) 10:00	4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 무 국(회계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회의실
2012. 5. 12 (토)		휴 회	
2012. 5. 13 (일)		휴 회	
2012. 5. 14 (월) 10:00	5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소회의실
2012. 5. 15 (화) 10:00	6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복지경제국(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 보 건 소	소회의실
2012. 5. 16 (수) 10:00	7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소회의실
2012. 5. 17 (목) 10:00	8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건설도시국(건축주택과, 농수산과) ○ 의회사무과 <현장방문활동> ○ 천곡 한신휴플러스 절개지 현장	소회의실
2012. 5. 18 (금) 10:00	9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계수 조정	소회의실
2012. 5. 19 (토)		휴 회	
2012. 5. 20 (일)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2. 5. 21 (월) 10:00	10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155호) 2.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당일의사일정변경안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2.5.21 (월) 10:00	10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155호) 2.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2.5.21 (월) 10:00	10	1.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167호, 윤치용의원) 2.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155호) 3.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16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5. 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2. 5. 8 (제13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해당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과태료 처분통지,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강제징수, 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관리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21조와 관련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라 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시책 추진과 주민의 건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붙임자료와 같이 그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군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5. 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2. 5. 8 (제13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항 일부를 현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5조제3항에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단서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임.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현 실정에 맞게 자원봉사발전위원

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5. 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2. 5. 8 (제13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지방세법 표준세율에 맞추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0조제5호에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천분의 3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지방세법 표준세율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의 1천분의 3”으로 하여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항공사업자에 대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공항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상황을 감안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 부칙에 적용시한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5. 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2. 5. 8 (제13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6조의2에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 기존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재산세를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6조의2는 울산광역시 타 자치구 조례와 맞추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이 규정의 효력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는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을 통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임.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형평성 유지 측면ㅇ

내 타 자치구의 조례와 동일하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5. 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2. 5. 9 (제13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1. 11. 2.자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울산북구지부 간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가족사망 관련 특별휴가를 현실화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별표에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변경함

구분	대 상	현재일수	변경일수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울산북구지부간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가족사망 관련 특별휴가를 현실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변

경하는 사항으로 사망의 경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현재 “2일”에서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현재 “1일”에서 “2일”로 하는 것임.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11월 2일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5. 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2. 5. 9 (제13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와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제3항에서 별정직공무원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와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을 4종으로 확대하였음.

○ 안 제5조의2에서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하고,

○ 안 제8조의2에서는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를 부여함

○ 안 제10조에서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을 삭제하고,

○ 안 제11조에서는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를 개선함

○ 안 제12조의2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3항에 따른 별표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함은 물론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등을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그 밖의 임용시험 방법과 단계, 시험위원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토록 하였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 장애인 차별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부터 후임자를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임.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5. 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2. 5. 9 (제13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 설치를, 안 제4조에서는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설치 및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운영, 장비 및 예산의 확보, 대장관리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 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에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음.

다만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중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로 “50만원 이하의 사업비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50만원 이하”가 적정한 지에 대해 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5. 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2. 5. 9 (제13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강동동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함

나) 주요내용

○ 강동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 현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5
- 변경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강동동주민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강동동주민센터가 2012년 1월 19일 준공되고, 2012년 2월 4일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5”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6”으로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4. 30 (강진희·안승찬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2. 5. 9 (제13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정원 확대와 사무국장 상근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7조제1항에서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 안 제17조제8항에서는 임기 중 사퇴, 위촉 해제된 경우 위원 위촉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의 상근 활동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정원 확대 및 사무국장의 상근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원정수를 “25인 이하”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이 임기 중 사퇴 또는 위촉 해제된 경우 동장이 위원회와 논의하여 지체없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사무국장에 대한 상근 활동비 지원 등 주민자치위원들

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음.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부터 5월 7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5월 2일에는 주민자치위원장과 의원 간에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음.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일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 시 제기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의원 간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5) 개정안·수정안 비교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하로 구성하되, 3인 이하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생 략) 1. ~ 2. (생 략) ③ ~ ⑦ (생 략) ⑧ 동장은 위원이 임기 중 사퇴,위촉해제된 경우 위원회와 논의하여 지체 없이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 ---------- ----------. ② (개정안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③ ~ ⑦ (개정안과 같음) <삭 제>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5. 1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2. 5. 9 (제13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대부료 등 분납 가능 금액(50만원→100만원)을 상향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34조제2항 및 제62조에서 대부료 등 납부 시 종전에는 50만원 이상 분납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시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안 제37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고자하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대부료 등 분납 가능 금액을 상향으로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10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변상금의 납부 시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기존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중 안 제37조의 “지식산업센터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표현으로서,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5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4. 30 (이혜경・안승찬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2. 5. 9 (제13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종류 및 지원,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과 강사의 위촉 및 수강료, 그밖에 포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기능, 위원의 구성・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의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실질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건

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음.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5월 1부터 5월 7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예고기간 중(2012년 5월 4일) 생활체육회와 의원 간의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회와의 간담회 시 제기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의원 간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비교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위원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1. 구 관계 공무원 1명	1. ~ 4. (현행과 같음)
2.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명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4. 구 생활체육회 임원 5명	5. 동 생활체육회 임원 8명(동별 1명)
5. 동 생활체육회 임원 8명	6.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14절 제133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개회일시 : 2012. 6. 29 (금) 10:00

나. 회　　기 : 2012. 6. 29 ~ 6. 29 (1일간)

다. 부의안건

○ 의장 선거의 건

○ 부의장 선거의 건

2. 의사일정

제1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2. 6. 29~ 6. 29(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2. 6. 29 (금) 10: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1. 제1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제1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제4대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4. 제4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본회의장

제4장

예산 · 결산 심의사항

제1절 2010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절 2009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3절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4절 2011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5절 2010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절 2010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7절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8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9절 2011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0절 2012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11절 2011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2절 2012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1 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8. 27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0. 9. 6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09. 9. 15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10년 예산액 (2회추경)	%	기정 예산액 (1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50,602,371	100.0	143,898,134	100.0	6,704,237	4,518,071
일반회계		145,431,460	96.57	138,774,759	96.44	6,656,701	4,362,944
특별회계		5,170,911	3.43	5,123,375	3.56	47,536	155,127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5,841	0.11	128,305	0.09	37,536	4,975
	폐기물 처리시설	3,556,645	2.36	3,556,645	2.47	-	106,699
	기반시설	332,673	0.22	332,673	0.23	-	9,980
	주차장	1,111,152	0.74	1,101,152	0.77	10,000	33,33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600	0.00	4,600	0.00	-	138

3. 2010년도 제2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 심의 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한도액
			삭감액 (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150,602,371	-			5,729,755	5,729,755	150,602,371	4,518,071
일반회계		145,431,460	-			1,512,980	1,512,980	145,431,460	4,362,944
특별회계		5,170,911	-	-	-	4,216,775	4,216,775	5,170,911	155,127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5,841	-	-	-	2,997	2,997	165,841	4,975
	폐기물처리시설	3,556,645	-	-	-	3,556,645	3,556,645	3,556,645	106,699
	기반시설	332,673	-	-	-	332,673	332,673	332,673	9,980
	주차장	1,111,152	-	-	-	324,640	324,640	1,111,152	33,33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600	-	-	-	-	-	4,600	138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분야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7억원이 증액된 1,506억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29억 2천만원, 지방교부세 10억 5천만원, 보조금 12억 3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분야

○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7억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억 1천만원, 교육 분야에 2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억 4천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9천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6억 7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억 7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억 8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억 7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9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 분야에 1천만원, 예비비에 1억 3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물품 취득비, 공공요금 등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일부 있었으며,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금회 다시 삭감 편성한 사업, 현장 및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편성한 사업 등 심의결과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회 전 의원은 집행 기관이 제5대 북구의회에 처음으로 제출한 예산안임을 감안하고 나아가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한층 성숙된 협력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배려 차원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과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전체적인 예산 편성 방법과 편성과정에 있어, 각종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서상에는 산출근거가 표기되지 않아 예산안 심의에 다소 애로가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안 작성 시 산출근거를 표시하여 주시고, 자산 물품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와 대상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전 충분한 시장조사를 선행함과 아울러 편성예산안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 시 특정 의원이 아닌 전체 의원 모두에게 설명하여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금회 많은 예산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함에 있어,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지원 대상과 금액 등 그 기준이 국가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교부된다고는 하나 어려운 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서 있으므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지방기업 지원 사업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또한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업무추진에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임.

○ 또한,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경우 입안단계에서부터 지역여건, 지역 균형개발을 깊이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시에도 개인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 아울러, 효문공단 내부도로 보도블록 정비공사, 화봉 2지구 교량 하부 게이트볼장 인도교 설치 등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에 있어, 인도 보도블록 설치 현장이 상가 지역인지, 통행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보도블록 재질과 내구연한을 감안한 공사는 물론, 각종 부대 시설물 설치비용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풋살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물의 경우

에도 주택지 소음 민원 발생가능성이 없는지 지역 여건을 충분히 살핀 후 입지하는 시설물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각 개별사업에 있어, 재선충·솔껍질깍지벌레로 인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각종 교통민원은 우리 아이들 안전과 밀접 되는 사안으로서 업무특성상 관할 경찰서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타 민원보다는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처리 결과가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절차 또한 준수함과 아울러, 각 부서별로 설치 운영중인 CCTV의 경우 비록 재원과 설치목적은 각기 다르다고는 하나 현재 부서별로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제화하여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관의 냉난방기 보강에 있어 내년 시행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증축 계획과 잘 연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 마지막으로 적절한 예산편성 사례를 말씀드리면,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금회 편성한 하천응급 복구 공사비(1억원)와 같이 향후에도 이러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되어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짜투리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만들기 시책(2천만원) 또한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시책으로서 양정·염포 주택가 등 주차난이 있는 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5. 심의의결 : 원안가결

제2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8. 2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0. 10. 1 ~ 10. 8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84,049,313,540원
- 세출결산액 : 153,405,944,740원
- 세계잉여금 : 30,643,368,800원

○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 산 : 464,196,858,902원
  - 부 채 : 7,257,622,155원
  - 순 자 산 : 456,939,236,747원
- 재정운영
  - 수 익 : 127,096,160,665원
  - 비 용 : 117,311,835,392원
  - 운영차액 : 9,784,325,273원

4. 심의의결 요지

□ 세입부문

○ 2009년도 세입예산현액 1,827억 6,3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40억 4,93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778억 2,383만원에 수납액은 1,789억 2,383만원이고, 지출액은 1,526억 9,388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49억 4,0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억 2,547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1,205만원임.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세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반면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식 결여 등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재산압류와 같은 방법 보다는 은닉재산 추적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 자산을 적기에 조회하고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징수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임.

○ 우리구는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시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복지,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 등에서 주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 재원확보에 있어 체납액 일소와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와 발굴 및 나아가서 집행에도 누락되는 수혜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조사에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과오납 반환액 발생은 대개 법률이나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칫 업무 과실로 인해 착오 부과된 지방세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1,827억 6,38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34억 594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778억 2,38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26억 9,38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49억 4,001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1,205만원임.

○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세출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추진해야 할 구체적 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자동차 특구 업무추진에 있어 현재 경제성 용역과 환경성 용역을 시행 하였고 2011년 계획 수립 시 자동차가 가지는 북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자동차 특구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확보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선진지 견학, 직원 및 구민창안 등 아이디어 발굴사업에도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 등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주민만족 행정에 한걸음 다가서는 적극성을 당부 드림.

○ 결산추경에 과다한 예산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데 민원하고 밀접한 사업 분야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계획을 세워 추경예산 편성 시 주민숙원 사업 및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 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과감히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하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다소 나타납니다.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

행계획을 세워 재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에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에 적극 기여해주기를 당부 드림.

□ 예비비부문

○ 2009년도 신종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 및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손소독제를 구입 배부하였고, 주민왕래가 잦은 지역에 공간소독기를 설치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하고 긴급한 지출이었다고 판단됨.

당부사항으로서 향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여 공간소독기의 관리유지를 철저히 하여 긴급한 상황발생시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기금부문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안정적이면서 좀 더 이율이 높은 곳에 적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3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8. 5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0. 10. 1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2건	38,475,000		29,598,770	8,876,230	
일반 회계	노약자시설 배부용 손소독제 구입	16,215,000	'09. 9.14	14,003,000	2,212,000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손소독제 구입·지원
〃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공간소독기 구입 및 상황실 운영	22,260,000	'09.11.18	15,595,770	6,664,230	공간소독기를 구입하여 주민왕래가 잦은 곳에 방역을 실시하고, 공휴일 및 주·야간 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만전

4. 심의의견 요지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09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38,475,000원중 2건, 29,598,770원을 지출하였으며, 8,876,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09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노약자시설 배부용 손소독제 구입에 14,003,000원,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공간소독기 구입 및 상황실 운영에 15,595,770원을 집행하였음.

○ 2009년도 신종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고 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 및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손소독제를 구입 배부하였고, 주민왕래가 잦은 지역에 공간소독기를 설치하여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하고 긴급한 지출이었다고 판단됨.

○ 당부사항으로서 향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여 공간소독기의 관리유지를 철저히 하여 긴급한 상황발생시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 4 절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11. 18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0. 11. 22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0. 12. 13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11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2010년 당초)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40,107,947	100	132,099,386	100	8,008,561	4,203,239
일반회계		135,139,632	96.45	127,312,521	96.38	7,827,111	4,054,189
특별회계		4,968,315	3.55	4,786,865	3.62	181,450	149,05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35,069	0.10	128,305	0.10	6,764	4,052
	폐기물 처리시설	3,684,654	2.63	3,556,645	2.69	128,009	110,540
	기반시설	341,600	0.24	332,673	0.25	8,927	10,248
	주차장	806,992	0.58	769,242	0.58	37,750	24,210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140,107,947	-	241,274	0.17	5,771,489	6,012,763	140,107,947	4,203,239
일반회계		135,139,632	-	241,274	0.18	1,721,350	1,962,624	135,139,632	4,054,189
특별회계		4,968,315	-	-	-	4,050,139	4,050,139	4,968,315	149,05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35,069	-	-	-	3,000	3,000	135,069	4,052
	폐기물처리시설	3,684,654	-	-	-	3,684,654	3,684,654	3,684,654	110,540
	기반시설	341,600	-	-	-	341,600	341,600	341,600	10,248
	주차장	806,992	-	-	-	20,885	20,885	806,992	24,210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11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80억 8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8억 2,711만원, 특별회계는 1억 8,145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114억 8,700만원, 보조금 81억 3,721만원, 지방교부세 19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7억 5,774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8억 5,982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입에 있어, 등록면허세, 단순등록세와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으로 지방세는 45.4%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수수료 수입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나, 시세목표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정교부금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함에 따라 대폭 감액되었음.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등 서민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16% 증액되었음.

○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내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요구되며, 신규 세외 수입원 발굴은 물론, 교부금·교부세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세 출

○ 2011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80억 8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억 6,492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억 3,152만원, 사회복지분야에 76억 4,879만원, 보건분야에 7억 1,494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억 1,40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억 8,07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일반공공행정분야, 교육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등은 소폭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우선이라는 다수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 추진비를 10%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기본경비 중 종이문서 전
성화 차원과 병행하여 복사용지 구입비를 일괄 10% 삭감하였으니 예산 집행에 보다 효율을 기하기 바람.

○ 한국 지역진흥재단 운영 출연금, 구정연구 동아리 운영, 주민참

여 예산제 선진지 견학 예산의 경우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하였는 바, 기 설치된 운동기구의 재배치 및 수리를 통해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필요시 향후 추경에 편성을 검토하기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나 북구 청소년 통일축구대회는 신규사업임을 감안하고 사업계획을 토대로 일부 금액을 삭감하였음.

○ 우리 구의 국제교류는 최근 몇 년간 답보 상태인 가운데, 우리 구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 교류가 매우 필요하고 교류 대상국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 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 의원이 공감하였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삭감하였으니 향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 그리고, 제3대학 총동창회 관련 예산, 제조업체 실태조사 인부임, 남은 음식물 싸주기 관련 예산, 불법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비, 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 하천불법행위 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임차비의 경우 전시성 사업, 1회성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음.

○ 금회 논란이 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있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문제와 부분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만 전년대비 약 13억원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만 해도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사전에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 마련과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과의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 협조체계 시스템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작은도서관 조성 시설비 지원 건에 있어, 우리 구 재정여건과 기 조성한 타 민간 작은도서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소당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일부 삭감하였음.

○ 다음은 삭감은 하지 않았으나 조건부로 승인한 사업으로서,
명촌 도서관 증축을 위한 실시 설계비에 있어 현 시설의 입지 여건과 낮은 이용 실태 대비 향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다소 떨어지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다수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증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진장·명촌 지역의 열악한 문화여건, 집행기관의 의지 등을 감안하여 승인하였으니, 실시설계 이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 사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시행하기 바람.

○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건에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 투입대비 타당성 및 효과성이 낮고 일부 학교의 경우 사업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교육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액 승인하였으니 향후 교육경비 지원 사업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내실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울산외고 설립 지원 건도 협약에 따라 편성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건부 승인하였으니,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부실시공 문제 등 안정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 우리 구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다음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권고 및 요구사항으로,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와는 면적이나 지역발전 속도에 비해 공무원 수가 매우 적고, 특히 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을 울산광역시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반영 등을 통해 인력 확충에 적극 노력 바람.

○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중에서, 사업 성격이 유사하거나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사무실 운영, 각종 행사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폭설시 가용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용 제설차량 구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구제역 방역에 대해 특별히 관심가지고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금회 예산 심의 시 각 부서에서 보고한 업무계획은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므로 예산 확정 후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임시회시 상세히 보고하기 바람.

○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이며, 지역별 균형 개발이라는 거시적 정책추진은 물론 각종 단위사업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예산에 집중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각종 행사 추진 시 사전에 수요 조사 및 선호도를 조사하여 행사의 알찬 추진은 물론, 모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5절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12. 6.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0. 12. 13(제16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0. 12. 21(제22차 본회의)

2.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10년 예산액 (3회추경)	%	기정 예산액 (2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57,888,987	100.0	150,602,371	100	7,286,616	4,736,669
일반회계		152,712,639	96.72	145,431,460	96.57	7,281,179	4,581,379
특별회계		5,176,348	3.28	5,170,911	3.43	5,437	155,29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70,456	0.11	165,841	0.11	4,615	5,114
	폐기물 처리시설	3,556,645	2.25	3,556,645	2.36	-	106,699
	기반시설	332,673	0.21	332,673	0.22	-	9,980
	주차장	1,110,980	0.70	1,111,152	0.74	△172	33,3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594	0.01	4,600	0.00	994	168

3.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157,888,987	-	-	-	9,305,465	9,305,465	157,888,987	4,736,669
일반회계		152,712,639	-	-	-	5,019,592	5,019,592	152,712,639	4,581,379
특별회계		5,176,348	-	-	-	4,285,873	4,285,873	5,176,348	155,29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70,456	-	-	-	2,997	2,997	170,456	5,114
	폐기물처리시설	3,556,645	-	-	-	3,556,645	3,556,645	3,556,645	106,699
	기반시설	332,673	-	-	-	332,673	332,673	332,673	9,980
	주차장	1,110,980	-	-	-	392,615	392,615	1,110,980	33,3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594	-	-	-	943	943	5,594	168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 세출

○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578억 8,89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27억 1,26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 7,635만원임. 이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 2,866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음.

○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 · 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편성 등 법적 · 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심의 결과 대부분 국 · 시비 보조금 정리와 집행 잔액 감액분으로 삭감한 예산은 없음.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 및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지난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시 집행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나, 집행하지 아니하고 금회 전액 감액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 시장 조사 등 기초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 그리고, 그간 두 차례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금회에 이르러서야 정리하는 일부 사례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집행계획이 없는 잔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리하시기 바람.

○ 금회 많은 보조금 예산을 감액 편성함에 있어,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지원 대상과 금액 등 지원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지원에 있어 한사람이라도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특히 저출산 관련 대책 예산에 있어 국 · 시비 확보 노력은 물론 부족 시 구비(區費)까지도 편성하여 '아이 낳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

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또한, 금회 추경 특성상 많은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기적인 이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의회 승인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회 일부 부서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한 인센티브에 있어, 단순한 자산 취득이나 직원 복지 지원 위주 등 1회성 기대 효과보다는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림.

○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심의 이전에 사업별로 예산 편성취지, 필요성, 편성 내역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 6 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6. 2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1. 7. 1 ~ 7. 6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71,734,875,860원
- 세출결산액 : 146,489,585,850원
- 세계잉여금 : 25,245,290,010원

○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 산 : 498,306,321,376원
  - 부 채 : 5,958,421,016원
  - 순 자 산 : 492,347,900,360원
- 재정운영
  - 수 익 : 140,568,194,406원
  - 비 용 : 125,212,996,934원
  - 운영차액 : 15,355,197,472원

4. 심의의결 요지

□ 세입부문

○ 2010년도 세입예산현액 1,706억4,7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17억3,487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654억 7,145만원에 수납액은 1,663억3,269만원이고, 지출액은 1,456억 7,955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1억7,63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억 218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1,002만원임.

○ 총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이 1,813억1,212만원으로써 이 중에 1,717억3,487만원은 수납되었으나 95억7,725만원은 미수납 되었는 바,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이 고질적인 체납이므로 열악한 구재정 여건과 공정 과세 등을 감안하여 재산압류와 함께 적극적인 공매 의뢰 등 집행기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임.

○ 그간 세출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나머지 세입예산 편성은 다소 등한시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세출예산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에 있어서도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1,706억4,78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64억8,95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654억7,14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56억7,9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1억7,634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1,002만원임.

○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 면밀한 조사와 신중한 예측을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이나 고유 목적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의 이월이나 전용, 변경사용 등은 예산 기본원칙의 예외사항이므로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그리고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 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과

감히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이 아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초과근무수당 등과 관련하여 부서별 집행잔액 편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결산추경 시 삭감 등을 통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한편, 구제역 같은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구비보다는 국·시비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예산부족 우려 등으로 매년 초과 편성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람.

○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 마련은 물론,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다른 사업과 달리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전액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기금부문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 7 절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6. 2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1. 7. 1(제1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1. 7. 14(제10차 본회의)

2.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11년 예산액 (1회추경)	%	기정 예산액 (당초예산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55,106,428	100.0	140,107,947	100	14,998,481	4,653,193
일반회계		149,777,148	96.56	135,139,632	96.45	14,637,516	4,493,314
특별회계		5,329,280	3.44	4,969,315	3.55	360,965	159,878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0,570	0.12	136,069	0.10	45,501	5,417
	폐기물 처리시설	3,700,178	2.39	3,684,654	2.63	15,524	111,005
	기반시설	336,121	0.22	341,600	0.24	△5,479	10,084
	주차장	1,100,969	0.70	806,992	0.58	293,977	33,0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442	0.01	0	0.00	11,442	343

3.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155,106,428	-	100,100	0.06	5,725,387	5,825,487	155,106,428	4,653,193
일반회계		149,777,148	-	100,100	0.07	1,355,980	1,456,080	149,777,148	4,493,314
특별회계		5,329,280	-	-	-	4,369,407	4,369,407	5,329,280	159,878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0,570	-	-	-	2,997	2,997	180,570	5,417
	폐기물처리시설	3,700,178	-	-	-	3,700,178	3,700,178	3,700,178	111,005
	기반시설	336,121	-	-	-	336,121	336,121	336,121	10,084
	주차장	1,100,969	-	-	-	329,169	329,169	1,100,969	33,0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442	-	-	-	942	942	11,442	343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49억 9,848만원이 증액된 1,551억642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5억5,100만원, 세외수입 71억8,471만원, 지방교부세 33억75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497만원, 보조금 38억6,02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49억9,848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9억5,54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185만원, 교육분야에 1,11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8억8,881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0억2,667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7억2,26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7,956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억3,453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8,06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억 242만원, 기타에 9억 5,51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분야에 3억 4,376만원, 예비비에 6억 664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금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맞지 않은 사업이 있었으며,

○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과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삭감된 예산안에 있어,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의 경우 예년보다 많은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금회 추가로 편성한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일부 금액을 삭감하였으며, 강동사랑길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예산은 전 구간이 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 설치·보완이 우선이므로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있어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과 짧은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삭감하였음.

○ 보건소의 순번대기기 구입의 경우 보건소의 친절도 향상 노력과 직원 배치를 통한 안내가 더 우선이라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음.

○ 심도 있게 논의 되었던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정책집 발간에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은 전 의원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다소 많은 발간부수 등의 이유로 일부 삭감하였으니,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집을 발간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요구사항으로,
먼저, 앞서 언급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라든지, 공원시설 보수비, 긴급도로 보수비 등의 포괄 사업 성격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처럼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강동동 주민센터 신청사 물품 구입비에 있어 청사 개청에 필요한 물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최대한 재활용함은 물론 자율방범대 등 사회봉사단체에 기증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구청 본청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냉·난방에 많은 주의를 기

울이고 있으므로, 국민체육센터·오토밸리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동 청사의 현관, 복도 등에 대해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로 공공요금 절감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각종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서상에 산출근거가 표기되지 않아 예산안 심의에 다소 애로가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안 작성 시 산출근거를 표시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는 칼라 프린터 등 물품의 경우 그 단가를 통일하거나 부서업무 성격에 맞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됨.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 8 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6. 2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1. 7. 1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5건	186,745,000		180,589,460	6,155,540	
일반 회계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관련 경비	9,200,000	06. 11	9,190,250	9,750	민선 제3기 및 제 4기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 경비
〃	손해배상금가지급 가처분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50,000,000	10. 25	50,000,000	0	공공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	울산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1,714,000	10. 18	1,713,940	60	공공하수도 파손에 따른 차량피해 배상금 지급
〃	구제역 긴급방역(1차)	95,504,000	05. 07	95,340,050	163,950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제비
〃	구제역 긴급방역(2차)	30,327,000	12. 08	24,345,220	5,981,780	〃

4. 심의의결 요지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1억8,674만5천원 중 여권사무 수행에 따른 사무실 설치 등 5건에 1억8,058만9,460원을 지출하였으며, 615만5,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0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관련 경비에 919만250원, 손해배상금가지급가처분결정에 따른 배상금 5,000만원, 울산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따른 배상금에 171만3,940원, 2차에 걸친 구제역 긴급방역에 각각 9,534만50원, 2,434만5,220원을 집행하였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 9 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9. 2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1. 10. 7(제1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1. 10. 17(제7차 본회의)

2.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11년 예산액 (2회추경)	%	기정 예산액 (1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67,223,771	100.0	155,106,428	100	12,117,343	5,016,713
일반회계		161,889,491	96.81	149,777,148	96.56	12,112,343	4,856,685
특별회계		5,334,280	3.19	5,329,280	3.44	5,000	160,028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5,570	0.11	180,570	0.12	5,000	5,567
	폐기물 처리시설	3,700,178	2.21	3,700,178	2.39		111,005
	기반시설	336,121	0.20	336,121	0.22		10,084
	주차장	1,100,969	0.66	1,100,969	0.71		33,0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442	0.01	11,442	0.01		343

3.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167,223,771	-	450,700	0.26	5,366,926	6,823,006	167,223,771	5,016,713
일반회계		161,889,491	-	450,700	0.27	997,519	2,453,599	161,889,491	4,856,685
특별회계		5,334,280	-	-	-	4,369,407	4,369,407	5,334,280	160,028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5,570	-	-	-	2,997	2,997	185,570	5,567
	폐기물처리시설	3,700,178	-	-	-	3,700,178	3,700,178	3,700,178	111,005
	기반시설	336,121	-	-	-	336,121	336,121	336,121	10,084
	주차장	1,100,969	-	-	-	329,169	329,169	1,100,969	33,0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442	-	-	-	942	942	11,442	343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1회 추경 예산 대비 121억 1,734만원이 증액된 1,672억2,377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11억7,100만원, 세외수입 6억356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9억4,208만원, 보조금 9억7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1회 추경 예산 대비 121억1,734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3억1,586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억3,105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억1,828만원, 보건분야에 7,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449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3억6,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억 5,970만원, 예비비에 5억 4,682만원, 기타에 58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594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9,372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자체 세입 증가분과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인 보통교부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속 사업 및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비 위주로 편성함과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조정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 직원 1인 1전화 전화시스템 구축에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해 전 의원이 공감하였으며 민원실 등 일부 부서로 한정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니 향후 도입 예정인 인터넷 전화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한편, 금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일부 부서의 경우 동일 사업 건에 대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1회 및 2회 추경 시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1회 추경 시에는 전액 감액 편성, 2회 추경 시 다시 편성하는 등 필요한 사업비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임.

○ 소방도로 개설과 같은 큰 규모의 예산과 연차별 예산 투입이 필요한 각종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 전 의원의 공감대 형성 및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각종 운동장 조성·관리에 있어 인조 잔디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는 만큼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향후 천연 잔디 조성과 더불어 천연 잔디 농가 육성 및 보급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구 청사 사무실 증축 공사에 있어, 기존 청사와의 미관을 고려하는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전통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철저한 수요 조사 및 시장 점포주에 대한 계몽은 물론 인정시장 등록 등 전통시장 활성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의회에도 보고하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금년도 2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금회 승인된 추경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만큼 불필요하게 이월사업을 양산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적기 집행은 물론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연말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심의 과정 시 의원님들의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 10 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11. 18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1. 11. 21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1. 12. 19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12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2011년 당초)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69,220,611	100	140,107,947	100	29,112,664	5,076,620
일반회계		164,200,950	97.02	135,139,632	96.45	29,061,318	4,926,029
특별회계		5,019,661	2.98	4,968,315	3.55	51,346	150,591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30,789	0.08	135,069	0.10	△4,280	3,924
	폐기물 처리시설	3,803,592	2.25	3,684,654	2.63	118,938	114,108
	기반시설	347,387	0.21	341,600	0.24	5,787	10,422
	주차장	737,893	0.44	806,992	0.58	△69,099	22,137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169,220,611	-	1,273,921	0.75	7,309,683	7,309,683	169,220,611	5,076,620
일반회계		164,200,950	-	1,272,707	0.77	3,092,990	3,092,990	164,200,950	4,926,029
특별회계		5,019,661	-	1,214	0.02	4,216,693	4,216,693	5,019,661	150,591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30,789	-	-	-	3,000	3,000	130,789	3,924
	폐기물처리시설	3,803,592	-	-	-	3,803,592	3,803,592	3,803,592	114,108
	기반시설	347,387	-	-	-	347,387	347,387	347,387	10,422
	주차장	737,893	-	1,214	0.16	62,714	62,714	737,893	22,137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12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291억 1,2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90억 6,132만원, 특별회계는 5,134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17억 5,400만원, 보조금 140억 4,632만원, 세외수입 20억 7,34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2억 4,70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81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입에 있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입, 징수 교부금 수입, 재산매각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8.8%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징수액 증가로 소폭 증액되었음.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등 서민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23.6% 증액 되었음.

○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내의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2012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291억 1,2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주요 편성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7억 1,92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 7,827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억 3,076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34억 2,601만원, 보건분야에 3억 789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4억 3,317만원, 산림·중소기업분야에 3억 8,503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7억 5,55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3억 82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는 1억 4,2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우선이라는 다수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의장·부의장 및 구청장·부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에 이어 일괄 10% 삭감하

였으며, 부서별 차량선박비에 있어 관용차량 관리가 그간 관행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감안하여 일괄적으로 5% 삭감하였으니, 예산 절감은 물론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울산외고 설립 지원 시설비의 경우, 울산외고 건립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부실시공 문제 등 안정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 우리 구 예산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 강동사랑길 전국 사진 공모전의 경우 강동사랑길에 대한 정비·보완이 우선이며 정비완료 이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확충사업 타당성 조사, 새로운 직업 강연회, 미생물 수처리제 구입비는 1회성 사업, 예산 투입대비 사업 추진 효과 및 타당성이 다소 낮다라는 의견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음.

○ 가로시설물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배경은 공감하나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대상지 후보 선정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니, 향후 우리 구 가로 시설물 디자인 개선에 전 부서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풀예산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억원 증액한 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많은 금액을 편성할 경우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편성요구액 대비 10% 삭감하였으니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편성이 요구되는 한편, 각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다음은 삭감은 하지 않았으나 조건부로 승인한 사업으로서, 강동동주민센터 매각의 건과 관련하여 금회 세입으로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 건은 주민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보다 많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지속적

인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은 물론 추진과정 등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긴밀한 보고체계를 갖추어 주기 바람.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금회 행정사무감사 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비 집행 요령과 정산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효과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친 후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하기 바람.

○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 부족으로 불시에 정전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가 솔선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함과 아울러 우선적으로 절전 등 청사 내 에너지 절약 운동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범구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쳐 주기를 당부 드림.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와는 면적이나 지역발전 속도에 비해 공무원 수가 매우 적고, 특히 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을 광역시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반영 등을 통해 인력 확충에 적극 노력 바람.

개소예정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교육청, 경찰청 관계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초질서 준수 및 범죄예방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명예 및 정년퇴임 공무원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지급되어 온 행운의 열쇠제작에 있어 퇴직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구입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시 LED 또는 태양열로 시범 설치하여 경제성, 타당성 분석 후 확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 11 절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12. 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1. 12. 19(제14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1. 12. 26(제19차 본회의)

2.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11년 예산액 (3회추경)	%	기정 예산액 (2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79,461,164	100.0	167,223,771	100	12,237,393	5,383,834
일반회계		174,126,714	97.03	161,889,491	96.81	12,237,223	5,223,801
특별회계		5,334,450	2.97	5,334,280	3.19	170	160,03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5,570	0.10	185,570	0.11		5,567
	폐기물 처리시설	3,700,178	2.06	3,700,178	2.21	-	111,005
	기반시설	336,121	0.19	336,121	0.20	-	10,084
	주차장	1,100,969	0.61	1,100,969	0.66	-	33,0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612	0.01	11,442	0.01	170	348

3. 2011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179,461,164	-	-	-	13,888,262	13,888,262	179,461,164	5,383,834
일반회계		174,126,714	-	-	-	9,471,844	9,471,844	174,126,714	5,223,801
특별회계		5,334,450	-	-	-	4,416,418	4,416,418	5,334,450	160,03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5,570	-	-	-	2,997	2,997	185,570	5,567
	폐기물처리시설	3,700,178	-	-	-	3,700,178	3,700,178	3,700,178	111,005
	기반시설	336,121	-	-	-	336,121	336,121	336,121	10,084
	주차장	1,100,969	-	-	-	376,010	376,010	1,100,969	33,0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612	-	-	-	1,112	1,112	11,612	348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세출

○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794억 6,11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41억 2,67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3,445만원임. 이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22억 3,739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음.

○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편성 등 법적 ·필수 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으로서, 심의 결과 특별교부금 5건 25억원 외에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정리와 집행 잔액 감액분으로 삭감한 예산은 없음.

○ 다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 및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그간 두 차례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민간위탁비를 금회에 이르러서야 정리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집행계획이 없는 잔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리하여 타 사업비로 활용하시기 바람.

○ 금회, 많은 보조금 예산을 감액 편성함에 있어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지원 대상과 금액 등 지원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더라도 한사람이라도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살펴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 및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효문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등 금회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에 있어 성급한 추진보다는 사전에 보다 철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최근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한 전력난 극복을 위해 청사 내 에너지 절감 대책 추진은 물론 가로·보안등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과 치안 불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기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 또한,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서면 심의는 최대한 자제하시고, 실제 회의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 12 절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4. 30.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2. 5. 8(제1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2. 5. 21(제10차 본회의)

2.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2년 예산액 (1회추경)	%	기정 예산액 (당초예산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85,557,385	100.0	169,220,611	100.0	16,336,774	5,566,722
일반회계		180,295,050	97.16	164,200,950	97.03	16,094,100	5,408,852
특별회계		5,262,335	2.84	5,019,661	2.97	242,674	157,87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6,555	0.09	130,789	0.08	35,766	4,997
	폐기물처리시설	3,803,592	2.05	3,803,592	2.25	0	114,10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9,579	0.01	0	0.00	9,579	287
	기반시설	347,390	0.19	347,387	0.21	3	10,422
	주차장	935,219	0.50	737,893	0.44	197,326	28,057

3.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185,557,385	-	1,048,250	0.56	6,903,964	7,952,214	185,557,385	5,566,722
일반회계		180,295,050	-	1,048,250	0.58	2,876,036	3,924,286	180,295,050	5,408,852
특별회계		5,262,335	-	-	-	4,027,928	4,027,928	5,262,335	157,87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6,555	-	-	-	2,997	2,997	166,555	4,997
	폐기물처리시설	3,803,592	-	-	-	3,803,592	3,803,592	3,803,592	114,10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579	-	-	-	1,467	1,467	9,579	287
	기반시설	347,390	-	-	-	4,711	4,711	347,390	10,422
	주차장	935,219	-	-	-	215,161	215,161	935,219	28,057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3억 3,677만원이 증액된 1,855억 5,738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65억 9,038만원, 지방교부세 32억 2,54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0만원, 보조금 65억 1,92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63억 3,677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억 1,90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4,853만원, 교육 분야에 11억 1,41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3억 246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5,312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70억 8,833만원, 보건 분야에 5,177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8억 9,062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3억 4,758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 5,93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억 3,089만원, 기타에 4,79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 2억 1,6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맞지 않은 사업이 있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삭감된 예산안에 있어,

먼저, 울산외고 설립 지원의 경우 기관과의 약속이긴 하나, 학부모와 지역 주민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안전성이 확보 될 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강동사랑길 전국 사진공모전의 경우 사랑길 관련 시설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설물 설치·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도서관 기본경비인 급량비의 경우 부서인력 2명 증원에 따른 급량비를 추가 편성하여야 하나, 전산입력 착오분에 대한 급량비를 삭감하였음.

제트스키의 경우 재난 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이긴 하나,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강동 해안에 우선 1대를 배치·활용해 보자는 의견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먼저, 워크숍 등의 경우 직원들의 경쟁력 제고와 대외적 역량강화,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워크숍 규모를 볼 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자체 시설물을 이용하는 등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사무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항목 예산이 많은데, 각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됨.

또한, 직업의 세상 강연회 행사 장소 선정 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북구에서 개최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동장에 의자, 벤치 등 각종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는 시설 이용자의 의견이 많으므로, 시설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부대시설 보완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병원을 울산광역시에서 지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북구 소재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경로당 같은 어르신 공동이용 시설이 2층에 있을 경우에는 보행기에 의존하는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이 어려우므로, 신설 또는 개·보수 시 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경로당에 대한

실태 파악 후 출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경로당 주변 안전시설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하여 어르신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숲길 정비의 경우 목재 데크 등 목재를 이용한 시설물 설치 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며, 시설물 설치에 따른 디자인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유지 관리비가 절감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연암동 두부곡 일원을 포함한 관내 보호수 정비와 노거수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구)음식물자원화 시설 활용계획 연구 용역의 경우 많은 갈등이 있었던 시설인 만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지혜를 한 데 모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연구 용역 추진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있어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곳은 공공시설 부지로 향후 들어설 건물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의 부지 전체 활용계획에 의한 건물 배치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태라는 의견이므로, 급식지원센터 건립 부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함.

한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서간 협의사항, 법령 등에 따른 관련 절차의 이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세밀하게 검토·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1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제2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3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제4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5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제6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7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제8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1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개요

가. 감사의 목적

○ 2010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감사기간 : 제123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0. 10. 11 ~ 2010. 10. 17(예정)]

라.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마.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안 승 찬
○ 부 의 장 : 정 윤 석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김 규 석, 강 우 송
○ 사무직원 : 이 동 희

2.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윤종오		감사요구 자료참고
		부구청장	이종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총무국	총무국장 총무과장 회계정보과장 문화홍보과장 평생교육과장 세무과장 민원지적과장	서창원 홍성욱 윤기현 김종구 윤채걸 한상길 이병국		
	생활경제국	생활경제국장 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진흥과장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	김상곤 강걸수 박민수 이충실 김병오 강수상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도시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건축주택과장 농수산과장 시설재난관리과장	정지식 윤규태 박경규 노유석 박성근 정옥현 이상련		
	보건소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이병희 정순상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전 동	농소1동장	이 해 균		감사요구 자료참고
		농소2동장	이 태 희		
		농소3동장	박 경 란		
		강동동장	성 태 경		
		효문동장	신 종 도		
		송정동장	오 광 희		
		양정동장	허 정 행		
		염포동장	윤 일 호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제123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0. 10. 11 ~ 2010. 10. 17(예정)]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대상 현장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3. 행정사무감사 일정

일 시 / 구 분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0. 10. 11(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현장)	ㅇ**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ㅇ**총 무 국** • 총무과 • 회계정보과 • 문화홍보과	
2010. 10. 12(화)	10:00	〃	ㅇ**총 무 국** • 평생교육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ㅇ**생활경제국** • 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2010. 10. 13(수)	10:00	〃	ㅇ**생활경제국** • 경제진흥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ㅇ**도시건설국** • 도시녹지과 • 교통행정과	
2010. 10. 14(목)	10:00	〃	ㅇ**도시건설국** • 건설과 •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 시설재난관리과	
2010. 10. 15(금)	10:00	〃	ㅇ**보 건 소** ㅇ**기획감사실** ㅇ**의회사무과**	

※ 안건 제출 상황에 따라 감사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별첨 1」

계	공통	기획감사실	총무국	생활경제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297	23	19	66	79	88	19	3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자료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작성요령 : 「별첨 2」 참조
- 감사범위 : 2009. 6. 1 ~ 2010. 6. 30

※ 요구자료에 따라 감사범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10. 6. 30일 현재

○ 제출기한 : 2010. 9. 20한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행정사무 처리 상황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 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6.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국·소·실·과장·동장 합동 실시 - 32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20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 선서문 : 「별첨 3」 감사 첫날 선서 후 일괄 제출

7.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6급 전문위원 강우송외 5명
○ 감사지적사항 당일작성 제출 : 감사의원 「별첨 4」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이동희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허순자외 1명
○ 현장확인 활동(필요시)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8.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구 분		요 구 건 수	비 고
합 계		297	
공 통 사 항		23	
기 획 감 사 실		19	
총 무 국	소 계	66	
	총 무 과	16	
	회계정보과	12	
	문화홍보과	14	
	평생교육과	10	
	세 무 과	7	
	민원지적과	7	
생활경제국	소 계	79	
	생활지원과	13	
	사회복지과	25	
	경제진흥과	8	
	환경위생과	17	
	환경미화과	16	
도시건설국	소 계	88	
	도시녹지과	17	
	교통행정과	8	
	건 설 과	21	
	건축주택과	14	
	농수산과	17	
	시설재난관리과	11	
보 건 소		19	
의 회 사 무 과		3	

(전부서)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사항</td><td>
1. 예산집행현황(일반・특별회계 구분 작성)
<2009. 6. 1~2009. 12. 31>, <2010. 1. 1~2010. 6. 30> 구분 작성
<table>
<tr><th>분야·부문·정책사업 단위사업</th><th>예 산 액</th><th>주요편성내용</th><th>주요집행내역</th><th>잔 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table>
<tr><th>민원명</th><th>접수일자</th><th>처리일자</th><th>민 원 인</th><th>민원내용</th><th>처리결과</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각종 공사 추진현황
<table>
<tr><th>공 사 명</th><th>위 치</th><th>사업개요</th><th>사업비</th><th>진 도</th><th>시공자</th><th>예산확보 시기</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2009. 6. 1 ~ 2010. 6. 30(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금 지원 포함)
<table>
<tr><th rowspan="2">단체명</th><th rowspan="2">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정산서 사본 첨부(단체명 구분 표지 첨부)
※ 부서 개별사항에 중복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가능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용역종류</th><th>용역비</th><th>착수일자</th><th>완 료 일 자</th><th>용 역 결 과</th><th>계약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6.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2">예산액</th><th colspan="2">집행액</th><th colspan="2">미집행액</th><th rowspan="2">미집행 사유</th></tr>
<tr><th>국비</th><th>시비</th><th>국비</th><th>시비</th><th>국비</th><th>시비</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등)
- '09. 6. 1이후 신규시설분만 작성
</td><td></td></tr>
</table>

(전부서)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사항]</td><td>
11.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12.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13. 2010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14.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table>
<tr><th>공사명</th><th>변경사유</th><th>공사금액 증 가 액</th><th>설계변경 요 청 자</th><th>설계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5. 시설부대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출장여비 지급내역 (지급방법 -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명시)
16. 법인카드 발급대장(2009. 6. 1 이후 추가분)
17.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8.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19.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table>
<tr><th rowspan="2">번호</th><th rowspan="2">차량명</th><th rowspan="2">차량번호</th><th rowspan="2">구입일</th><th rowspan="2">용도</th><th rowspan="2">상태</th><th colspan="3">수리내역</th><th rowspan="2">유류비</th><th rowspan="2">비고</th></tr>
<tr><th>일자</th><th>내역</th><th>비용</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0.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table>
<tr><th>공사개요</th><th>통보일자</th><th>통보내용</th><th>비 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21.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사업내용, 금액, 환수사유 등)
22.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23. 단위사업별 기간제근로자(일시사역인부임 포함) 근무현황
<table>
<tr><th>부서명</th><th>사업명</th><th>근무인원</th><th>사업목적</th><th>사역기간</th><th>단가(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작성기간 : 2009. 6. 1~2010. 6. 30
- 사업별로 근로 조건 및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td><td></td></tr>
</table>

(붙임 1)

□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ㅇ **예산과목 :**

지급일	지 출 액	지 출 처	지출목적 (내용)	대상인원 (○○○외0 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명 또는 직책 명시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 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10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민간위탁과 용역 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10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용역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총무국	총무과			:												
					:												
					:												
	생활경제국	생활지원과															
		…															
	…	…															
의회	의회																
직속기관	보건소																
	농소1동																
	…																

(1) 구성
 ○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 없이 상시 고용된 자
 ○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10. 5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10. 5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 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 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 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예 : 1,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0) 근속기간 : 평균 근속기간
(11)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 됨 3
(12) 사본 제출서류 : 업무별 임금대장(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편성표
 ⇒ 제출부서 : 생활지원과 전체 위탁 용역업무, 총무과(청사 경비용역), 시설재난관리과 (청사 청소용역)

(기획감사실)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감사실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실적 2.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세부 집행내역(단위사업별) 3. 2010년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 4.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 현황 (2009. 6. 1~ 작성기준일까지의 신규사건 및 작성기준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사건접수(제소 포함)일,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결과, 비용 등) 5. 고문변호사 활동현황 및 실적 6. 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실적 7.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처분사항, 모범사례 8. 구민감시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9. 자체감사·특별감사·시·행안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10.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 '10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 시민위원 명단(추천단체 및 소속, 거주지 포함, 타 단체가입현황 - 시민위원 모집 홍보내역(반상회보, 게시지역 등) - 시민위원 단체 추천 발신 및 수신 공문 - 시민위원 선정관련 구정조정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회의결과 - 연구위원 명단 및 회의자료 - 연구위원 추천, 해촉, 위촉관련 발신 및 수신 공문 -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 및 연구회, 시민위원 교육자료 -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과별 회의록 및 순위, -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 지역 토론회 회의록 및 순위 11. 주민참여예산제 당초예산 반영내역 -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이후 연도별 당초예산 반영 내역	

(기획감사실)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기획감사실</td><td>12. 위원회 현황 관련
① 설치근거별 현황
- 법령, 조례/비상설, 의결적, 행정내부, 기금 관련으로 세분
② 성격별 현황
- 심의, 의결, 자문, 협의로 구분, 위원회 개수 및 위원회명
③ 위원 구성현황(공무원, 민간위원-시민사회단체추천 별도)
<table>
<tr><th>구 분</th><th>여성위원
(비율)</th><th>공무원</th><th>구의원</th><th>민간위원</th><th>시민단체추천
(비율)</th></tr>
<tr><td>총 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위원회</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④ 위원장 현황
<table>
<tr><th>구 분</th><th>구청장</th><th>부구청장</th><th>실국장</th><th>지역주민</th><th>시민단체</th></tr>
<tr><td>총 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위원회</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⑤ 각 위원회별 기본 현황 및 운영 실적
<table>
<tr><th rowspan="2">위원
회명</th><th rowspan="2">설치
근거</th><th rowspan="2">설치
목적</th><th rowspan="2">설치
일</th><th colspan="3">위원구성(여성)</th><th rowspan="2">임
기</th><th rowspan="2">위원
장</th><th rowspan="2">주관
부서</th></tr>
<tr><th>당연
직</th><th>민간
위원</th><th>시민단
체추천</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⑥ 위원회별 위원명단(성명, 위원회내 직위, 직업, 남녀, 연령 등
⑦ 위원회, 협의회, 운영위원회, 자치위원회, 실무협의회 등 위원회 변동사항(별도 표기)
- 위원회별 직위, 남여 등 변동사항
- 기존위원회 위원의 변동 시 여성위원으로 위촉현황
- 신설위원회 위원 여성위원 위촉 현황
⑧ 위원회 개최 실적
-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실적(참여인원), 회의록, 주관부서
⑨ 각 위원회 위원 전체 출석률 및 개별 위원 출석률
- 위원회명, 위원성명, 직업, 성별, 최초임명일자, 출석률
⑩ 각 위원회별 회의참석 수당 및 집행실적
<table>
<tr><th>구분</th><th>국</th><th>과</th><th>위원회</th><th colspan="4">집 행 내 역</th></tr>
<tr><td rowspan="2">일반
회계</td><td>총무국</td><td>총무과</td><td>00위원회</td><td>예산액</td><td>인원</td><td>회수</td><td>집행실적</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특별
회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td></tr>
</table>

(기획감사실)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감사실	13.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구성 현황, 운영실적 및 성과 14.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15.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 현황 및 실적 (팀별 출장실적, 타 우수시책 발굴 및 반영결과 등) 16.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17. 관·학 교류협약 체결현황 및 상호협력사업 추진현황 18. 주민참여 기 조례 시행이후 세부 추진실적 19. 우리 구 부채현황	

(총무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총 무 과	1. 인력운용 관련 - 전체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3) 2.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 3.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동별 취합) 4. 동별 예산 집행현황(동별 취합) 5.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현황(시간당 강사료 표기), 보조금 지원현황 (신설 또는 변동된 프로그램 비고란 별도표기- 동별 취합 6. 동별 주민자치위원 명단, 위원의 타 단체 가입현황, 여성위원 현황 7.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내역(동별 회의일시, 총원, 참석현황 수당지급현황 8. 구청장 동순회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 9.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복무연장 등) 10. 삼진아웃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1.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운영상황 12. 지역별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 세부현황 13.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 자생단체 현황,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각 단체별 사업실시 현황, 정산서 사본 14. 민주평통북구협의회 현황 관련 - 명단, 직업(소속단체), 사업추진내용 및 결과, 예산지원 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사본	

(총무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 무 과</td><td>15. 부서별(동 포함) 초과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현황
<table>
<tr><th rowspan="2">부서명</th><th rowspan="2">직급</th><th colspan="6">1인당 실제 초과 근무 시간</th><th colspan="6">1인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th><th rowspan="2">비고</th></tr>
<tr><th>'09. 6월</th><th>'09. 7월</th><th>'09. 8월</th><th>·</th><th>·</th><th>·</th><th>·</th><th>·</th><th>'10. 6월</th><th>'08. 6월</th><th>'08. 7월</th><th>'08. 8월</th><th>·</th><th>·</th><th>·</th><th>·</th><th>·</th><th>'10. 6월</th></tr>
<tr><td></td><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5급</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6급</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7급</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8급</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9급</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10급</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2009. 6. 1~12. 31, 2010. 1. 1~6. 30. 구분 소계 산출
- 휴일근무수당 및 현업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16. 공무원 현황
- 6급이하 공무원 현황(직급별, 연령대, 성별, 총근무연수
-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행정 6, 7, 8급 공무원 성별 비율
- 최근 4년간 행정7급▶6급, 행정8급▶7급(성별 승진비율 당해 직급 근무년수, 당해직급 근무부서 이력)</td><td></td></tr>
</table>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 (2010년 6월 30기준)

구분	지방공무원인력									기타 인력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소방직	기타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10. 6 30기준)

구분	기관명		지방공무원인력								
	실국	부서명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기타
		계									
본 청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									
		:									
	생활경제국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									
		:									
	도시건설국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									
		:									
의 회	의 회										
보건소	보 건 소										
동	농 소 1 동										
	:										
	:										

(붙임 3)

□ 기타인력 규모(2010. 6. 30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분	기관명			기타 인력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실국	부서명	업무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30일이하		60일이하		90일이하		180일이하		240일이하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본청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														
			:														
			:														
		회계정보과															
		:															
	:	:															
의회	의 회																
직속기관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총무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회계정보과</td><td>1. 공개입찰 계약현황
(공사 2,000만원이상, 물품·용역 2,000만원 이상)
<table>
<tr><th>부서명</th><th>일자</th><th>건명</th><th>사업량
(수량)</th><th>예정가</th><th>낙찰가</th><th>낙찰율</th><th>입찰참여
업체수</th><th>낙찰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3.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현황
4. 공유 재산 취득현황(구소유 - 토지, 건물)
<table>
<tr><th>품 명</th><th>취득일</th><th>취 득
방 법</th><th>취 득
가 격</th><th>취 득
목 적</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5. 관급공사 계약현황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공사개요,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6. 수의계약 현황
- 부서명, 일자,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7.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8. 계약심사 현황 및 추진실적
9. 우리 구 축제사이트의 월별 주민접속 현황
(최근 2년간 대비표 작성)
10.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운영 실적
11. 여름방학 컴퓨터교실 운영실적
12. 보건소 옆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이유,
추진상황</td><td></td></tr>
</table>

(총무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홍보과	1.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 (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3. 문화재 지정현황 및 정비실적 4. 축제 및 문화행사 (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현황,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5. 2009년도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6. 쇠부리문화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향후 사업운영 계획(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7.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 (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8. 사격부 예산집행 현황 - 인건비, 운영비 세부내역 및 운영비 영수증 사본 - 사격부 명단, 주소, 실거주지, 주소변동사항 - 울산 구군 체육특기종목 지원현황 9.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현황(추진사항) 10. 각종 공연. 전시행사 개최현황 11. 천곡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 12. 달천철장 유적 전시관 건립 계획 및 추진상황 13. 박상진의사 추모제 내용, 박상진의사 관련 예산지원 현황 및 사업내용 14.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지출 세부내역, 정산서 사본	

(총무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평생교육과	1. 주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2. 각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 세부 편성예산 - 하루평균 이용자수, 연령대별 - 도서(장서) 보유현황 - 인력현황(일반직 공무원, 사서직 공무원, 상용, 기간제 자원봉사자, 사서 자격증 보유여부 등) -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 참여자 현황, 소요예산 3. 중앙도서관, 권역별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포함) 4. 제3대학 운영 실적 (강사 및 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5.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6. 양정·염포권 도서관 건립현황, 설계도서, 당초 건립계획서 7. 교육진흥재단 관련 - 이사회명단, 이사회 회의자료, 재정현황, - 운영상황 및 운영계획 등 8. 울산외고 설립지원현황 및 추진상황 등 9. 비문해사업기관 현황 및 지원현황 10.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정산서 사본)	

(총무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세 무 과</td><td>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 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총괄)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table>
<tr><th colspan="2">체 납 자</th><th colspan="3">결손내역</th><th rowspan="2">결손처분
일자</th><th rowspan="2">결손사유</th></tr>
<tr><th>성명</th><th>주소</th><th>세목</th><th>부과연도</th><th>결손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td><td></td></tr>
</table>

(총무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민원지적과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2.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 3.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운영실적 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1일 평균)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무인발급기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중단횟수,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5.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6.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현황 7. 여권발급 실적(전년도, 월별 비교), 여권발급 배치인력 현황,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실적	

(생활경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생활지원과	1.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10년도 사업계획, 예산지원현황 - 금년도 사업실적 - 총수익금 - 수익금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2.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현황 3.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4.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5. 사회복지 상담실 운영현황(동별 취합) - 민원접수 현황 - 사회복지 상담내용(내용별 분류), 상담 인원수, 상담수(월별), 처리상황 및 조치결과 6.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7.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사업 - 동별 현황, 지원 현황, 사업 실적 8.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지원인력 분석현황 (동별,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세대주 유무 등 도표 작성) 9. 희망근로사업 사업내용, 사업평가 결과 10.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지원실적 11. 자활인큐베이팅 사업단 추진상황 12. 기초수급자 생활안전 지원내역 (일시, 지원내용, 대상자수, 지원금액) 13. 보훈단체 지원 현황, 예산 지원 현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등	

(생활경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복지과	1.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 - 기본현황 - 구청 및 지회 감사결과서 - 직원현황, 임금지급현황 : 2006~2010년 - 생산실적, 손이익 현황 : 2006~2010년, 월별 년도별 통계 - 자원봉사 현황 2.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 내용 포함) - 종사자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현황, 근무시간, 실제 근무시간 등 3.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4.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현황 - 2010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현황 - 2010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 - 총수익금(후원금 포함) -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5. 2010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 현황 및 내역 - 장애아 아동수, 전담보육시설 이용수, 미이용 아동수 및 그 사유 - 민원 및 문제점, 만족도 6. 보육시설관련 - 24시간 보육시설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시간연장형 야간 보육시설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7. 노인복지회관 시설현황, 일 이용인원,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8. 북구여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9. 2010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 예산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 사업내역	

(생활경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복지과	10. 경로당 현황, 경로당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급내역 물품 구입지원 내역 (정산 증빙서류 포함) 11.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12.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13.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련 - 신청대상자 현황 및 지정 인원 - 기초노령 지급에 따른 인력 지원내역(인원, 사역기간, 소요예산) 14.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현황 - 보조금, 성금품 및 기타 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15. 긴급생계자금 신청자 현황 및 지원현황(금액 등) 16.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 추진실적 17.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현황 및 이용현황(일, 월 평균 18.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및 대상지역 선정기준, 향후시설 확충 계획 19. 한부모가족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관련사업 20. 여성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 종사자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현황, 근무시간, 실제 근무시간 등 21.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 종사자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현황, 근무시간, 실제 근무시간 등 22. 동별 결혼이민자 현황, 행복바우처사업 참가현황, 사업실적 등 23. 저출산 대책관련 추진사업 현황 24. 관내 장애인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자립생활 지원현황 등 25. 아동 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 추진계획, 지역연대 기구 구성 현황, 역할, 사업비 내역, 사업현황	

(생활경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경제진흥과	1.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2.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현황(상담 및 지원사업) 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예산지원 현황 등 4. 노사정구민협의회 현황,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회의자료, 명단, 소속 5. 천곡동 산149번지 공장부지 허가내용(건축허가사항 포함) 6.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관련 지원사업 현황 7. 종합일자리 정보센터 운영 실적 8.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추진상황 및 관련 민원처리상황 등	

(생활경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위생과	1.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실적(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2.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 및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3.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4.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현황(개소수 현황 포함) 5. 게임장 현황 및 단속실적, 처리결과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현황 포함) 6.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7.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8. 학교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9.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점검현황 (기준 오염표 비교) 1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11.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공사 추진현황 12.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업소명, 위치표시) 13. 관내 음식점 남은 음식 줄이기 추진실적 - 음식물 싸주기, 모범 식단, 도시락용기보급 등 ※모범음식점 포함 14.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도표) 최근 3년(2008년 ~ 2010년) 업소명, 단속일시, 적발내용, 조치결과 등 15. 위생관리 도우미 운영현황 및 실적 16.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현황, 추진결과 (수질개선효과 등 결과치 분석내용) - 사업일, 대상, 사업내용 포함 17.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EMS) 추진내역	

(생활경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미화과	1. 폐기물 수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현황 -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지역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포함) 2.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3.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 포함 (과태료 부과내역 등) 4. 환경미화원 정·현원(2010년도) 및 담당구역현황 5.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6. 재활용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 - 매출실적, 예산지원 현황, 이용자수 7. 청소대행업체 관련(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포함) -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정 용역보고서(2007~2010)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2007~2010, 노무비 시설비 기타경비 등 세부내역 첨부) - 대행업체 종사자 임금대장 사본 (2007~2010)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직원현황 (2007~2010) - 청소대행료 지급현황(2007~2010) - 대행업체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 조치결과 8. 청소전방지휘소 현황(휴식 공간, 샤워시설 등) 9. 월별 음식물 처리방법 및 소요비용 (자체처리량, 위탁처리량, 위탁처리 시설명 등 표기)	

(생활경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환경미화과</td><td>10.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 끈달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 결과, 대책
11. 음식물자원화시설
- 시설 개요, 그간 투자금액, 가동실적
- 중단 이후 관리실태 및 향후계획
- 중산동 인센티브 지급내역, 주민지원협의체 및 감시단 현황 등
12. 음식물쓰레기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향후 계획
(2008. 2009. 2010 년도별, 월별 비교)
<'○○년도>
<table><tr><td>구 분</td><td>계</td><td>1월</td><td>2월</td><td>…</td><td></td></tr><tr><td>아파트</td><td></td><td></td><td></td><td></td><td></td></tr><tr><td>식당별</td><td></td><td></td><td></td><td></td><td></td></tr><tr><td>주 택</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13.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실적(성상별 분류)
14. 재활용품 선별장 및 판매장 위탁 실적현황
(기간. 업체명. 비용)
15. 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구입내역, 관리비, 월별 주행거리 등
16. 재활용품(고철 등) 수집상 현황</td><td></td></tr>
</table>

(도시건설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시녹지과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 현황 2.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현황, 민원현황 및 지원실적 3. 도시계획수립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4.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5. 공원시설물 보수 정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6.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 (구체적으로 작성) 7.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8. 공원 현황 (위치, 시설현황, 개·보수내역 - 소요예산포함, 관리대장) ※ 공원 특색화 계획 9. 도심녹화사업, 도시벽면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계획 10. 가로수식재,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11.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향후 조성계획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 (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13. 천마산 테마등산로 조성 현황 (사진 첨부, 공사비 포함) - 업체, 등산로 관련 주민 민원사항 접수현황 및 조치사항 14. 산불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현황 (세부추진사항, 소요예산) 15. 산불진화 장비 현황(구입시기, 장비명, 구입비용) 16. 산불 발생 현황 17.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현황 및 향후 계획	

(도시건설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교통행정과</td><td>1.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2.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현황 및 단속현황
<table>
<tr><th>연번</th><th>사업자</th><th>차고소재지</th><th>차고지
면 적</th><th>용도</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월별 실적 통계자료 포함
3.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실적(월별 실적 통계자료)
4.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사업 실적, CCTV 현황 및 설치실적 등
5. 주정차단속 실적 및 민원해소 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단속)
- 대낮 화물차 단속현황 별도 작성
- 야간 불법 주정차 및 차고지외 밤샘 주차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실적
6.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7.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
8.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및 설치현황</td><td></td></tr>
</table>

(도시건설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건 설 과</td><td>1. 긴급도로 복구공사 현황
(도로명, 위치, 복구내용, 공사기간, 사업비 등)
2. 가로등·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3.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table>
<tr><th>민원접수일자</th><th>내 용</th><th>완료일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4.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5.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 자전거 도로 내 체육시설 설치내역 포함
6.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7. 소방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8.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9.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0. 미불용지 보상현황 및 추진계획
11. 도로시설물 개·보수 현황
12.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13. 하천 수해복구공사 현황
14. 동천 하상정비공사 현황(준설모래 처리현황 포함)
15.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결과
16.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17. 동천 보 현황
18. 제설장비 현황
19. 도로시설물 개보수 현황
20. 미개설 오수관로 현황 및 추진계획
21. 공용자전거 구입내역, 부서별 이용실적</td><td></td></tr>
</table>

(도시건설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축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4.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5.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6. 건축허가관련 민원발생내역 및 조치현황 7. 정자항 일원 간판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성과 8.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 (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9.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일시, 공동주택명, 지원내용, 지원비용 포함 10. 천곡동 879-3번지 건축허가 세부내용 11. 천곡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 매곡동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신천동 엠코타운 아파트 사업 승인 조건 12.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13. 평창리비에르 지반침하에 대한 재난대비 분석·평가 여부. 대책수립 현황 및 추진계획 14. 미분양 아파트 현황(2010. 6. 30현재)	

(도시건설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농수산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4.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5.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6.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7.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8.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9. 가을꽃,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 가을꽃 전시회관련 추가사항 - 최초시행시기, 투입인력현황(채용방법), 전시회 후 꽃 활용현황 10. 학교급식 지원현황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친환경 농산물 지원현황 포함, 정산서 사본 제출) 11.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생산실적(위치, 생산량 표기) 12.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13. 2단계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세부현황 - 인공낚시터 , 수산물직판장 조성사업 등 전반 포함 14. 농업인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내역 및 농업인 복지지원내역 (일시, 지원내용, 수급자, 지원금액) 15. 관내 저수지 유료낚시터 현황 16.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 17. 축산경쟁력강화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농가수익증대, 판매실적, 육우 품질 향상 여부 등 포함)	

(도시건설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시설재난
관리과</td><td>1.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2.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3.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일시, 구성현황(조직도), 운영실적, 예산집행실적 등
4.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5. 운동장별 대여현황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도표로 작성
6. 구청사 개보수 내역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기간</th><th>사업내역</th><th>사업비</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7. 구 청사 월별 전기사용량 및 전기사용료 납부 현황
('07, '08, '09, '10년도 비교)
8.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 종목별 프로그램 현황 및 세목별 예산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등
-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9.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실적
10. 양정염포도서관 건립설계도, 초기계획서, 추진현황 등
11. 달천운동장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공사개요,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예산 세부 지출내역
- 최초 설계도면 및 변경내역서 사본</td><td></td></tr>
</table>

(보 건 소)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1.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2.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내역 3. 약품 관리현황 (입불출 기록 및 재고현황, 단가, 금액, 유통기한 등) 4.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5.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구입 및 접종 실적 6. 방역장비 현황 , 방역실적 및 대책 7. 저출산 대책수립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 임산부 지원현황 포함 8. 암치료비 지원 실적 9. 장애아 재활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 10.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록현황, 대상자선정 기준 11.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①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②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진료실적, 예산 내역 - 진료실적을 건강보험적용인구, 의료급여수급자 이용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제출 12.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장애인 출산 지원내역 13. 아토피클리닉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14. 전 세계적 확산으로 문제되는 신종플루 백신 보유현황 및 예방대책	

(보 건 소)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15. 관내 아동 예방접종 지원 현황 - 만12세까지 영유아대상 예방접종 종류 - 보건소 지원 관내 예방접종 대상자 및 수혜자 수 -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현황 및 지원현황 - 전체 접종 건수 중 보건소 이용건수 - 타 지자체 예방접종 현황 16. 보건소 단위사업별 인력 배치현황 - 법정사업별 필수인력 표시 - 최근 5년간 보건소 인력 확충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17.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운영 현황 18. 정신보건사업현황 19.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이용정원, 프로그램 내역, 향후 운용계획 프로그램	

(의회사무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의회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조례 제·개정 의원발의 총괄현황	

제2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의 목적

○ 2010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1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10. 10. 11 ~ 10. 15(5일간)

4.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감사실 ○ 총 무 국 ○ 생활경제국 ○ 도시건설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5.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안 승 찬	정 윤 석	이 홍 걸 윤 치 용 이 수 선 강 진 희 이 혜 경	김 규 석 강 우 송	이 동 희

② 감사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0. 10. 11(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현장)	ㅇ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ㅇ **총 무 국** • 총무과 • 회계정보과 • 문화홍보과	
2010. 10. 12(화)	10:00	〃	ㅇ **총 무 국** • 평생교육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ㅇ **생활경제국** • 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2010. 10. 13(수)	10:00	〃	ㅇ **생활경제국** • 경제진흥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ㅇ **도시건설국** • 도시녹지과 • 교통행정과	
2010. 10. 14(목)	10:00	〃	ㅇ **도시건설국** • 건설과 •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 시설재난관리과	
2010. 10. 15(금)	10:00	〃	ㅇ **보 건 소** ㅇ **기획감사실** ㅇ **의회사무과**	

③ 감사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감사첫날 관계공무원 합동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실·과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소·실·과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297	32	
공 통 사 항	23		
기 획 감 사 실	19	1	
총 무 국	66	15(동장 8)	
생 활 경 제 국	79	6	
도 시 건 설 국	88	7	
보 건 소	19	2	
의 회 사 무 과	3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01**	**48**	**53**
공 통 사 항	2	1	1
기 획 감 사 실	6	3	3
총 무 국	29	13	16
생 활 경 제 국	25	10	15
도 시 건 설 국	32	18	14
보 건 소	6	3	3
의 회 사 무 과	1	-	1

6. 감사결과

공통사항

시정요구

① 인허가시 유관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조 체계 강화

공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건축허가 사례, 소중한 산림자원이 풍부한 산지에 공장허가가 된 사례 등이 있었으므로 각종 인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령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 이후 주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복합민원 및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충분한 협의와 나아가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각종 업무추진비 지출 유의

각종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게 집행된다고는 하나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각조 업무협의, 간담회 등의 식사비용 지출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오인될 소지가 높으므로 향후에는 식사위주의 지출이 반드시 필요한 지 검토하여 주시고 가급적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집행토록 바람.

기획감사실

시정요구

① 각종 위원회 다양한 주민 참여 활성화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촉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회 개최시 사전에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

②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단체관리 및 정산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그간 많이 개선되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정확한 정산서가 제출 될 수 있도록 지원바람.

③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시민위원 구성에 있어 보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는 물론 광범위

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참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확대, 위원회의 예산 반영률 향상 등 시민위원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원활한 지역토론회를 위한 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구청 홈페이지에도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건의사항

① 효율적인 행정기구 운영

현재의 구청 행정기구 중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오토밸리 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가 시설재난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업무성격상 주민입장에서 혼선이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국(局)간 업무분장이 적정한지, 녹색성장 담당을 폐지한 것에 대한 재검토, 부서간 중복 사무, 불확실한 사무분장 등이 없는지 행정기구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조직진단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개편 검토바람.

②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

비정규직이 일정기간 근로시 정규직화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채용 해지를 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화하도록 점진적으로 검토바라며,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추진 바람.

③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이 전무한 실정이고 민선5기를 맞이하여 구정목표에 부합되고 북구 발전이라는 전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절실히 요구됨.

따라서 주민 각계 각층의 참여를 통한 앞으로의 10년, 20년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별 중장기 발전전략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총 무 국

1. 총무과

시정요구

① 여성공무원 양성평등시책 추진

공무원 남녀비율에 있어 여성공무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현재 여성공무원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공무원의 대부분이 여성임.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가 본인 의지에 따라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물론 종합적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시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금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7급 공무원의 경우 여성비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의 승진자중 남성비율이 높은 사례가 있음. 여성공무원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도록 승진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추진바람.

②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권자는 동장임. 현재 구성 현황을 보면 자생단체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음. 특정 단체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각 자생단체 및 공동주택 임원진 등 다양한 계층의 인사로 위촉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 추진바람.

③ 구청 어린이집 앞 부지 정비

구청 어린이집 앞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며 창고 앞에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미관이나 환경적으로 전혀 부합되지 않으므로 정비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주차공간을 어린이집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 추진바람.

④ 민간단체 유공자 표창 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민간인 유공자 표창에 있어 단체 회원 표창 시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닌 전체 회원이 공감하지 못하거나 의외의 인사가 수상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해당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는 물론 부서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민간유공자 표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람.

건의사항

① 오토밸리복지센터 경비 용역 검토

총무과와 협의하여 오토밸리복지센터 경비용역을 구청 청사와 병행하여 경비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경비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계약체결 검토바람.

② 공익근무요원 적정배치 및 관리강화

동 주민센터 인력부족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과 협의하여 확대 배치하여 잔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사회복지시설 등 각 시설별 수요인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기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안전사고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일된 복장을 착용토록 하기 바람.

③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일정부분 주부 등 특정 계층위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방과 후 수업이나 청소년 대상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에도 직장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④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자율방범대는 야간 취약지역 순찰 등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가 지원하는 금액은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므로 예산 증액 지원과 경찰서와 연계한 표창 등 사기앙양 시책 추진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집기 등의 행정비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2. 회계정보과

시정요구

① 공유재산 관리 철저

최근 접수된 진정 내용 중 부당 청구된 국유지 대부료 반환요구 건에 있어 대부료 과오납 환급에 대해 시효소멸로 인하여 최근 5년간 과오납금에 대해서만 환급 조치한 것은 유감이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공유재산 대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보건소 옆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 조속히 매입하여 토지소유주의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지역소재 업체 계약우대 및 부정당업체 관리 철저

각종 공사 시행 시 법령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한 계약을 실시함에 따라 타 지역 소재의 공사업체가 부도 발생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우리 구 소재의 우수 공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고, 각종 수의 계약 시 동질의 품질이라면 우리 관내 업체와의 계약으로 세수증대 및 관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하며, 지정된 부정당업체가 편법으로 명의만을 바꾸는 방법으로 관급공사를 다시 수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정당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② 계약심사 업무 추진 철저

회계정보과의 주요업무 중 계약 심사업무에 있어 각종 물품 구매를 위한 심사 시 구매 원가가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발주부서에서 요구조건이 다양하다고는 하나 철저한 원가분석이나 시장조사를 통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유의바람.

3. 문화홍보과

시정요구

① 생활체육 저변 확대

시민생활체육대회 선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62%달하는 특정 인원이 매년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하고는 거리가 멀고 엘리트 생활체육쪽으로 흐르고 있는 실정이며, 젊은 층은 줄어드는 등 연령대가 높아지는 추세임. 따라서 향후에는 젊은 연령대는 물론 다양한 선수층을 발굴하고 다수 구민 참여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② 중산동 문화센터 접근성 개선 및 다목적구장 운영 대책수립

중산동 문화센터는 약수마을이나 이화마을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중산동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다목적 구장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다목적구장 이용에 따른 소음으로 인근 학교의 면학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요구

③ 청소년 지원시책 강화

청소년 업무 담당자가 타업무와 중복하여 담당하다 보니 청소년 지원업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소장이 비상근임에 따라 원활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전문가로 상근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청소년 공부방의 경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운영목적이 유사함에도 인건비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청소년 공부방에 적절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또한,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복지 및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시설 건립도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주관부서인 총무과에 건의한 바 있으니 문화홍보과에서도 이러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건의사항

① 지역축제 집중 육성

전국적으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자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도 쇠부리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우

리 구의 축제가 특화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쇠부리 축제 등 우리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므로 우리 지역의 쇠부리 철기문화와 최첨단 자동차산업을 연계한 중장기적인 쇠부리축제 육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최근 발견한 2개의 갱도에 대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② 운동경기부 운영관련 개선 방안 마련

우리 구의 운동경기부가 사격부인데, 시비 지원에 있어 타구에 비해 우리 구가 다소 예산지원이 낮으므로 시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사격 종목은 예산투입대비 우리 구의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구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므로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 구민 모두가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고 우리 구를 상징하고 지역 청소년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다양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종목으로 검토하기 바람.

③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부지 매입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주변이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 예정에 따라 향후 토지 수용절차를 거치겠지만,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발전 시킬 수 있도록 검토 바람

4. 평생교육과

시정요구

① 농소3동 도서관 도서보유량 구입 확대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농소3동 도서관 도서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타 도서관 대비 도서 대출 회전율,

구입년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도서 구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② 상호대차서비스 도입 검토

우리 구는 권역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도서관에 비치하지 않고 있는 도서를 인근 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호대차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도서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나아가 일선 학교도서관과 우리 구의 도서관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 대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③ 교육경비 정산 철저

일선 학교에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조례상에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자부담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일부 정산서에는 영수증이 누락되어 있는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당초 계획한 사업내용과 사업실적이 동일한 지를 살피고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 되었는지 등 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람.

④ 권역별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권역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도서관별로 획일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등 지역 주민의 특성, 주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수요조사는 물론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도입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도서관 이용률 제고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있어 직장인을 위한 야간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여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재 휴관하고 있는 월요일에도 개관을 검토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 제3대학 운영 관련 건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년세대의 노후준비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3대학은 단순한 학습의 장에서부터 벗어나 재취업,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기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 관련 유관기관 협조 강화

우리 지역에 유치한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우리 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고 옹벽 붕괴사고로 인해 우려가 있으므로 붕괴사고 원인, 향후 준공 시기 및 개교 시기, 우리 지역의 학생 입학전형 등에 대해 지역교육청, 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우리 구가 일정부분 책임성을 가지고 향후 일련의 과정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④ 바다도서관 운영 관련

현재 바다도서관이 1층, 행정상황실은 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도서관 이용률 제고와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서는 상호 층수를 바꾸어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주시고, 바다도서관 이용률이 낮으므로 이용률 활성화 대책 마련

⑤ 도서관 청사 옥상녹화 검토

도서관 옥상공간이 빈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친환경 녹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객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5. 세무과

건의사항

①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작년 우리 구의 과오납이 6만5천건, 26억원이 초과하고 있으므로 세수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징수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미환부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환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② 체납세 징수활동 철저

지방세 부과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부과시부터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체납세 발생시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소멸시효 이전에 정리하기 바람.

6. 민원지적과

시정요구

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철저

무인 민원발급기의 장애로 인해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애 원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급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장애 발생시 위탁 관리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생활경제국

1. 생활지원과

시정요구

① 자원봉사센터 추진사업 재검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부 프로그램 또는 운영 전반에 대해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② 보훈단체의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철저

보훈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고, 회원 전체가 연령대가 높은 관계로 자체 정산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카드사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정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건의사항

① 재활용교환판매장 이전 장기검토

우리 구 지역자활센터사업 중 재활용교환판매장 공동체가 연암동 아파트 및 상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에 대해 우리 구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임대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기 바람.

② 자원봉사 홈타운 지원 방안 마련

자원봉사 홈타운 개소는 매우 좋은 정책이며 타 구에서도 우리 구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센터의 홈타운에 대한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③ 박상진의사 추모사업 활성화

우리 지역의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을 발굴하여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특히 고헌 박상진의사는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으로서 역사적으로 훌륭하신 위인이므로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통해 추모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연중 사업 추진은 물론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과 구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소관부서를 통일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④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운영중인 각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구청에서 직접 구매를 통한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고, 청소년 자활지원관은 청소년지원센터와 운영프로그램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운영 검토와 지역자활센터 등 입주하고 있는 시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2.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여성주간행사 참여자 확대

우리 구에서 추진한 여성주간행사 참여자 현황을 보면 일반 주민은 거의 없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특정단체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준비위원회 구성단계부터 다양한 단체의 참여로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 공동주택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법 개선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필요할 것이나,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 비록 오랜 관행이라고 하나 공동주택 경로당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법이 타당한지 점검하여 주시고 정산서대로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피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철저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채용 시 재산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채용한 것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채용한 결과로서 향후에는 정확한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저소득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특히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추진에 있어 저소득층이 참여할 경우 고정 수입으로 인해 수급권 자격이 취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④ 내실 있는 여성정책 기본시책 추진

2010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추진내용에 있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 등 세부사업 추진결과 지원대상에 남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본래 취지의 여성 특화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목적에 부합되는 여성 특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사업을 발굴 시행 바람.

건의사항

①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강구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 구뿐만 아니라 경찰서, 지역 교육청, 시민사회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다각적이고 예방위주의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조만간 출범예정인 지역 연대로서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바람.

② 노인복지관 증축 건의

종합사회복지관내 노인복지관이 입주하고 있으나 노인 이용자 대비 규모가 작으며 타구군의 시설과 비교할 경우도 매우 협소하므로 조기에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증축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③ 기타 건의사항

이주 여성 등 다문화가정의 지원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이 거짓으로 교부받았을 경우 엄격한 법 잣대를 통해 재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에도 미혼모 보호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는 물론 한부모여성에 대한 특화된 시책 추진과 여성의 건강보호에 있어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에서 나아가 갱년기여성 등 장년 여성층에 대한 지원 검토 요망.

3. 경제진흥과

시정요구

① 노사정 구민협의회 운영 활성화

노사정 구민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실적이 미흡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운영에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사용자의 의견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을 확대하여 주시고, 민간위원의 경우 위촉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위원이 있으므로 개선 조치 및 협의회의 기능 중 우리 구가 위탁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건의사항

① 사회적기업 육성발전 방안 마련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지역여건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②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계획에 따른 주민입장 대변

한전에서 추진중인 변전소 및 송전신로 설치계획은 주민 생존권 문제로서 많은 반발이 예상되므로 한전과 대책위 및 주민과의 중재역할을 해주시고, 대립되고 있는 주민 의견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과 주민의 입장을 잘 대변하여 주시기 바람.

③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노동부뿐만 아니라 광역시 및 우리 구와의 업무와 중복적인 기능이 많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향후 항구적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와

우리구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 그간의 운영실적을 살펴보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바람.

④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지원방안 마련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계획에 따라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바 우리 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적극 검토하는 등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보호에 가시적인 정책을 펼쳐주기 바람.

4.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

모범음식점에 대해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및 푸드백(봉투)를 112개소 37,900개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관내 모범음식점 여러 군데를 직접 방문한 결과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홍보 안내문조차 없었으며, 용기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 비닐에 싸주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동천강 제전마을 진입부분(동편) 화장실 설치

동천강변에 많은 주민들이 통행을 하거나 운동 및 산책을 하고 있은 관계로 화장실 설치민원이 제기되었고 천곡교 서편에 설치된 화장실 1개소는 원거리이고 이용에 불편하므로 제전마을 진입부분 동편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함.

②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지난 2009~2010년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수성천, 천곡천에 대해 실시하였으나 EM 처리제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을 분석하여 주시고, 폐수 방류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근 주택가의 생활폐기물 투기예방 활동 실시 등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③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점검 강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5.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환경미화원 충원 검토 등 청소체계 점검

재활용품 수거방식으로 인한 노동 강도가 높고 청소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미화원 3명이 산재로 입원하고 있는 실정임. 급격한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로 청소 민원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미화원 정원이 감소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②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 철저

폐형광등·폐건전지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음으로써 환경오염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배출되는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거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수

거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고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 배출방법에 대해 단독주택, 학교, 공동주택에 널리 홍보하여 분리배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건의사항

① 재활용품 거점관리지역 관리 강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거점장소를 관리하는 자생단체의 노고가 많으므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품 거점수거장소에 설치된 대형수집용기를 폐쇄 이후 그물망을 이용해서 수집하다 보니 오히려 예전보다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도시건설국

1. 도시녹지과

시정요구

① 천마산 일원 등산로 보수건의

- 대동아파트 뒤편 일원 등산로 노후로 등산로 보강
- 천마산 등산로 변에 설치된 소망우체통 정비

② 연암동 성원아파트 옆 공원 내 폐기물 처리

연암동 성원아파트 옆 공원 내에 대형 생활폐기물이 적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 초래되므로 처리 요망.

건의사항

① 명촌 일원 가로 정비 건의

명촌 일원 가로변 전체 구간 대부분이 가로수가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가로수가 있어야 할 인도의 특정 지점에는 비어 있는 관계로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이 있으며, 인도와 가로변 사이에 잡초가 발생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해당 조합과의 협의 및 직접 구청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바람.

②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기존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 내에 조성된 시설물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테마가 있는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기 바람.

2.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철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고질적인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력 및 CCTV 등 장비 보강으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요망

② 기계식주차장 행정지도

연암동 21세기학원 주차장 등 관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일부 기계식주차장이 실제 운영되지 않으며, 미작동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오히려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저해되고 있으므로 일제 점검을 통하여 작동여부를 잘 살피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건의사항

① 동천초 정문 앞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동천초 정문앞 중앙선 탄력봉 설치로 그간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차량의 불법유턴이 빈번하므로 현장 확인 후 탄력봉을 추가 설치 및 연장 건의

② 벽산블루밍 후문입구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대동아파트에서 벽산블루밍 후문 입구 도로변을 이용하는 통행 주민이 많으며 무단횡단이 빈번하여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가 요망되므로 현장 확인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한 조기 설치요망

③ 명촌 일원 주택가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명촌 일원에 빌라 등 주택가가 많이 형성되고 있으나 덤프 차량, 특수 차량, 공사차량 및 화물차량이 장기 주차하고 있고, 새벽에 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과와 상호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람.

④ 진장중학교 통학생 안전 통학로 확보

진장중학교 주변 자동차 매매상사, 식당,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학생통행 위험이 항시 상존한 가운데 신호등이 있으나 정상가동이 안되므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등하교시간에라도 정상적인 점등 조치 등 명촌지역에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함.

⑤ 휴먼시아 1.2차 아파트 및 송정초등학교 주변 종합적인 교통체계 검토

송정초등학교 주변 모두가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아파트 양쪽 도로 모두가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협소한 가운데 통행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학생들의 통행안전을 위해서는 양쪽의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이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 여론 수렴을 통한 시행을 검토하여 주시고, 휴먼시아 1.2차 아파트 대단위로 입주하였음에도 방어진이나 무거방향으로 대중버스 이용노선이 없으므로 휴먼시아 1차와 2차 아파트 사이의 도로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선 확대와 마을버스 또한 화봉중, 연암중, 무룡고 등의 학교 및 효성 삼환아파트, 한우리아파트 등의 인근 아파트에도 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3. 건설과

시정요구

① 볼라드 교체

최근에 볼라드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기존에 설치된 인도변의 일부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고, 야광효과가 없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석재로 된 볼라드에 대해 일제 정비하여 통일되고 규격화된 볼라드로 교체 바람.

②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작년에 구입한 142대의 공용자전거가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양심자전거 또한 분실되거나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므로 공용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나 고장난 자전거, 폐자전거에 대한 수리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필요가 없어진 자전거 주차대는 민간시설에 설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양정천 수질 개선

양정천 보수공사이후 양정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민원

이 많으므로 현장 확인을 통해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④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내황교 진입 도로변(주공@~평창3차@) 일부구간에 포장 및 인도변 잡초 제거
- 내황교부터 삼일교까지의 동천변내에 잡초 및 잡목 제거
- 연암동 77번지부터 연암사거리까지 오수관 조기 매설
- 쌍용아진아파트 일대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
- 쌍용아진아파트 2차~3차 사이 도로 재포장
- 7번국도 중산마을~이화마을 사이 학생 통학로 안전시설 보강
- 약수마을 건너편 경계석 보수
- 약수천 제방유실토 처리
- 약수초등학교 옆 운동시설 도로 보수
- 약수초등학교앞 CCTV 박스로 인한 인도 통행 불편으로 개선 요구
- 달천동 마을회관 방향 도로변 가이드레인 연장 보강
- 제전마을 농로길 비포장구간 포장
- 천곡동 창훈산업 앞 교량박스 톱니바퀴처럼 되어 통행위험으로 개선
- 호계 구시가지도로 인도보다 차도가 더 높으므로 개선
- 호계운동장 앞 인도구간 확보
- 동천에 설치된 각종 보의 보수, 어로 확보 및 보수
- 천곡마을회관 진입로 인도변 전주, 한전과 협의 이설 검토
- 벽산블루밍 옆 도로 법면 보강
- 천곡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구간 내에 과속방지턱 설치
- 달천운동장 진입 용이를 위한 제방뚝에 징검다리 형태의 인도 설치
- 화봉 1교 상단부 인도 및 안전펜스 설치

건의사항

① 명촌교 지하차도 통행 개선

명촌교 하부 지하차도를 이용하여 다수의 근로자 및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차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 현대자동차, 종합건설본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요망

4.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각종 건축행위 시 안전시설 설치 지도 강화

매곡 극동스타클래스 앞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안전시설물 없이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바, 관내의 건축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②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방법 개선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인정받고 있으나, 그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지원 시 현장 실사, 지역 안배, 저소득층 입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주택 관련 법령 개정사항 홍보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사항이 최근 개정되었음에도 홍보부족으로 일선 공동주택에서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개정사항을 널리 교육 홍보하여 혼란이 없도록 조치 바람.

④ 옥외광고물 정비 철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옥외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작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미관, 미풍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단속 정비는 물론, 향후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신규로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설치방법 등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바람.

건의사항

① 거리 벽면녹화 및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추진

관내 불법부착물 방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자연친화적이고 도시녹화사업과 연계하여 전주에 벽면녹화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② 건축물 인허가시 당부사항

명촌 일대 식당 등 상가 건축물이 샌드위치 판넬로 인해 화재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화재 위험여부를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항시 점검하여 주시고, 향후 건축허가 단계부터 방화. 방염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5.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당사 해상낚시공원 조성 관련

32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강동동 당사일원의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인 낚시터 조성에 있어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많으므로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고, 지역주민 의사 수렴은 물론 인공조형물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 훼

손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당사 해상낚시공원 조성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 바람.

② 봄꽃 전시회 보완 시행

봄꽃 전시기간이 짧고, 온실에서 전시하는 관계로 관람객이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개최 장소와 전시기간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③ 천곡동 유료낚시터 계약종료 검토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천곡동 저수지를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허가한 유료낚시터가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는 등 저수지가 오염되고 있으므로 환경보전 및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계약종료 후 재계약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여성어업인 지원 강화

나잠 어업인의 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여성 어업인을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② 유휴농지에 대한 경관직불사업 활성화

유휴농지 증가로 인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가의 소득 보전과 관광자원화에 부합되게 경관직불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김장담그기 행사를 위한 작물 관리지원

매년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는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배추가 부족하여 원활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지원하기로 한 배추가 작황부족으로 원활한 공급에 애로가 있었으므로 향후 농업경영인엽합회에 대한 행정

지원을 통해 김장담그기 행사를 위한 작물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람.

6. 시설재난관리과

시정요구

① 각종 공공시설물 시공 철저

국민체육센터, 달천운동장 등 최근 준공한 공공시설물이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불필요하게 행정력 낭비와 구민 불편이 많이 초래되었으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감리 지도 및 철저한 점검 조치 후 준공처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② 달천운동장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

달천운동장 스탠드 보완, 레인 재검토,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 바닥 재질 하자 보완, 식재된 나무의 수종 교체 또는 이식 검토, 축구장 골대 또는 안전펜스 이전 검토, 운동장 내 배수 흐름 개선, 입구변 주차 공간 확보, 인라인스케이트장 타시설 검토, 이용자 대비 전기이용 등 효율적인 운동장 개방시간 검토, 우천시 파고라 주변 진흙탕으로 인해 잔디식재 등 검토·보완바람.

③ 청사 내외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개선

청사 내 장애인 화장실내 청결 문제, 점자블록이 있는 출입문이 잠겨 있었으며, 청사외부의 경우 유도시설이 없는 등 청사 내외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보완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공공청사 신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최우선 검토

최근 준공한 공공시설물 중 장애인 보행로에 있어 경사가 너무 가파르게 되어 있어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설계단계부터 검토되었어야 할 사항이며 향후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립 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람.

보 건 소

시정요구

① 아토피 클리닉 지원사업 강화

아토피에 대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발병하는 추세로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에도 지난 한 해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하므로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체 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아토피 클리닉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 바람.

② 약품관리 철저

보건소에서 구입 관리하고 있는 주요 약품에 있어 수요와 공급 주기를 충분히 감안한 재고관리와 많은 양을 일시에 구입하거나 다량의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③ 직원 친절도 향상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 된 바 있음에도 직원 친절도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음. 특히 보건소를 첫 방문 할 경우 입구 쪽에서부터 안내데스크가 없어 다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으

며, 민원실에 문의를 할 경우 안내 공무원이 친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부드럽고 친절한 분위기속에서 진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건의사항

① 정신보건센터 유치 노력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이 사례관리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특화되고 연령별 다양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가운데 정신보건센터 유치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므로 각계각층의 참여 검토 등 적극적인 유치에 노력 바람.

② 각종 교육 확대 실시 검토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중 장애 인식 개선교육의 확대 실시와 경로당을 방문한 노인대상 성교육 등 다양한 계층의 성교육을 확대 실시 검토

③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보건소에서 널리 홍보하여 접종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바람.

의회사무과

건의사항

① 의원수첩 제작 시 건의사항

의원수첩을 제작함에 있어, 광역시 및 구청 출입기자 현황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타 기관 의회의 수첩을 참고하여 의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작하여 주시기 바람.

제3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 2009. 6. 1 ~ 2010. 6. 30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297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요구가 아닌 항구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여성아동 시책 추진, 일자

리 유지·창출과 사회적 기업 육성, 녹색성장 등 국가시책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98건이며 시정요구사항 47건, 건의사항 51건으로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10년 11월 30일까지 보고하기 바람.

제4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98	47	18	29	0	51	11	39	1
기획감사실		6	3	3	-	-	3	1	2	-
총무국	총 무 과	8	4	1	3	-	4	-	4	-
	회계정보과	3	1	-	1	-	2	2	-	-
	문화홍보과	6	3	-	3	-	3	-	3	-
	평생교육과	9	4	-	4	-	5	-	5	-
	세 무 과	2	-	-	-	-	2	-	2	-
	민원지적과	1	1	-	1	-	-	-	-	-
생활경제국	생활지원과	5	2	2	-	-	3	2	1	-
	사회복지과	7	4	2	2	-	3	-	3	-
	경제진흥과	5	1	-	1	-	4	-	4	-
	환경위생과	4	1	-	1	0	3	2	1	-
	환경미화과	4	2	1	1	-	2	1	1	-
도시건설국	도시녹지과	4	2	2	-	-	2	1	1	-
	교통행정과	7	2	1	1	-	5	2	2	1
	건 설 과	5	4	2	2		1	-	1	-
	건축주택과	6	4	2	2	-	2	-	2	-
	농수산과	6	3	-	3	-	3	-	3	-
	시설재난관리과	4	3	1	2	-	1	-	1	-
보 건 소		6	3	1	2	-	3	-	3	-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획감사실	시정요구	**① 각종 위원회 다양한 주민 참여 활성화** •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촉 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회 개최 시 사전에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	o **각종 위원회 운영 조치사항 전 부서 통보** 【기획감사실-10836(2010.11.13.)호】 • 위원회 구성 시 각계 각층의 전문가, 사회단체, 주민 등 위촉 ⇒ 위원 중복위촉 최소화 및 다양한 의견수렴 • 심도 있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당해 위원에게 자료를 송부하여 충분한 안건 검토 조치	완결
		②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단체관리 및 정산 철저 •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그간 많이 개선되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정확한 정산서가 제출 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o 사회단체 보조금 종합지원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성과측정을 통해 결과를 환류 시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유도하고 있음. o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집합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실무자들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 o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스템 이용도를 높이고 정산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부적정한 집행 사전에 방지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시정 요구	③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 시민위원 구성에 있어 보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는 물론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참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확대, 위원회의 예산 반영률 향상 등 시민위원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원활한 지역토론회를 위한 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구청 홈페이지에도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o 2011년도 시민위원 재구성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및 일반 주민들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추천서를 받을 계획임 o 2011년도부터 참여위원 실비보상금을 현행 1만원에서2만원으로 상향조정 (2011년도 당초예산반영) o 시민위원들의 예산심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률 향상 o 지역토론회 횟수를 확대하고 사전교육 강화 o 2011년도 홈페이지 개편 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개설토록 하고, 우선 현재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배치 【기획감사실-10425(2010.11.02.)】	완결
	건의 사항	① **효율적인 행정기구 운영** • 현재의 구청 행정기구 중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오토밸리 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가 시설재난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업무성격상 주민입장에서 혼선이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국(局)간 업무분장이 적	o 하반기 조직개편 시 행정기구에 대한 심도 있는 조직진단과 함께 의회, 공무원노조, 직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중심의 조직체계와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획감사실	건의사항	정한지, 녹색성장 담당을 폐지한 것에 대한 재검토, 부서간 중복 사무, 불확실한 사무분장 등이 없는지 행정기구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조직진단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개편 검토 바람.		
		②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 개선 • 비정규직이 일정기간 근로시 정규직화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채용 해지를 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화 하도록 점진적으로 검토 바라며,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 추진 바람.	o 정부의 조직운영방향이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 무기 계약직을 증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o 현재 무기계약직의 경우, 직원 보육수당, 맞춤형복지점수 부여 등 복지 분야에 대하여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가족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총무과와 협의하여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급식비 및 교통비 지급 등 점진적으로 처우가 개선토록 하겠음.	완결
		③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이 전무한 실정이고 민선4기를 맞이하여 구정목표에 부합되고 북구 발전이라는 전략과 공감	o 우리 구 전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에 분야별 발전계획에 대하여 용역 또는 자문을 받은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건의 사항	대 형성을 위해서는 마스터 플랜 수립이 절실히 요구됨. 따라서 주민 각계 각층의 참여를 통한 앞으로의 10년·20년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별 중장기 발전전략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후 불가능하다면 북구 전체 10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음.	
총무과	시정 요구	① **여성공무원 양성평등시책 추진** • 공무원 남녀비율에 있어 여성공무원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사용 여건 마련 및 종합적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시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금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7급 공무원의 경우 여성비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의 승진자 중 남성비율이 높은 사례가 있음. 여성공무원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도록 승진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추진 바람	ㅇ **자율적인 여성보건휴가 사용 협조 : 총무과** **-22073(2010.11.03)** • 전 부서에서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언제든지 보건휴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협조 당부 ㅇ **아이와 함께 행복한 직장환경 조성 계획 수립** **: 총무과-21935(2010.11.01)** • 복무조례 개정, 출산예정자 임산부 용품 지원, 모성보호 당직제 운영 등 육아 친화적인 복리후생 증대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공무원이 육아부담을 줄임으로써 활기찬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코자 함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시정요구		o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o 여성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승진요인 발생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승진임용기준과 인사방침을 마련하여 성별이 아닌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②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권자는 동장임. 현재 구성 현황을 보면 자생단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음 특정 단체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각 자생단체 및 공동주택 임원진 등 다양한 계층의 인사로 위촉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 추진 바람	o 현재, 8개동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다 다양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음 o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선진지 견학, 워크숍 개최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자치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회 계 정보과	시정 요구	① 공유재산 관리 철저 • 최근 접수된 진정 내용 중 부당 청구된 국유지 대부료 반환 요구 건에 있어 대부료 과오납 환급에 대해 시효소멸로 인하여 최근 5년간 과오납금에 대해서만 환급 조치한 것은 유감이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공유재산 대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보건소 옆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 조속히 매입하여 토지소유주의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기 바람.	o 국·공유지 실태조사, 대부신청 시 현장 확인, 수시 실태조사, 담당공무원 관련 업무 연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2011년에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할 계획임. o 2011년 당초예산에 1억 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들이 추가로 보상을 원할 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지역소재 업체 계약우대 및 부정당업체 관리 철저 • 각종 공사 시행 시 법령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한 계약을 실시함에 따라 타 지역 소재의 공사업체가 부도 발생 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우리 구 소재의 우수 공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고, 각종 수의 계약 시 동질의 품질이라면 우리 관내 업체와의 계약으로 세수증대 및 관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하며, 지정된 부정당업체가 편법으로 명의만을 바	o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역제한을 통하여 지역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수의계약의 경우 가급적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임 o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및 관공서 통보 및 국가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이 기간동안 모든 경쟁입찰, 수의계약에 대한 참가를 제한 할 계획임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회계정보과	건의사항	꾸는 방법으로 관급공사를 다시 수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정당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② 계약심사 업무 추진 철저 • 회계정보과의 주요업무 중 계약심사업무에 있어 각종 물품 구매를 위한 심사 시 구매 원가가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발주부서에서 요구조건이 다양하다고는 하나, 원가분석이나 시장조사를 통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유의 바람.	o 물품 계약심사 요청 시 조달청에서 조사한 가격정보 ,시중 가격조사 등을 참조하여 심사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발주부서의 요구사양과 적합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물품의 재질,구매조건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물품 규격 범위 내에서 적정한 가격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가분석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홍보과	시정 요구	① **생활체육 저변 확대** • 시민생활체육대회 선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62%달하는 특정 인원이 매년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하고는 거리가 멀고 엘리트 생활체육쪽으로 흐르고 있는 실정이며, 젊은 층은 줄어드는 등 연령대가 높아지는 추세임. 따라서 향후에는 젊은 연령대는 물론 다양한 선수층을 발굴하고 다수 구민 참여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o 구 생활체육회에 신규 선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시 생활체육회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요청함. - 전년도 참여 선수 비율 축소 등. o 또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구청장기, 생활체육회장배, 연합회장기 등 각종 대회와 생활체육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여 젊은 선수를 포함한 다수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임.	처리중
		② **중산동 문화센터 접근성 개선 및 다목적구장 운영 대책 수립** • 중산동 문화센터는 약수마을이나 이화마을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중산동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다목적 구장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다목적구장 이용에 따른 소음으로 인근 학교의 면학분위기	o 현재 중산문화센터의 입지조건이 모든 마을에서의 접근성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주민이 쉽고 안전하게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건설과 등)와 협의 추진하겠음. o 다목적구장 완공 시 주차 공간 10면이 확보 되므로 ,주차공간 부족문제는 문화센터와 다목적구장이 상호보완적 시설운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 다목적구장 소음문제는 외곽에 수목으로 식재 완료하였으며, 인근학교와 협의하여 사용시간대를 조율하는	처리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홍보과	시정 요구	가 저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요구	등 면학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협의 추진하겠음.	
		③ 청소년 지원시책 강화 • 청소년 업무 담당자가 타업무와 중복하여 담당하다 보니 청소년 지원업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소장이 비상근임에 따라 원활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전문가로 상근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청소년 공부방의 경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운영목적이 유사함에도 인건비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청소년 공부방에 적절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또한,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복지 및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시설 건립도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주관부서인 총무과에 건의한 바 있으니 문화홍보과에서도 이러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o 청소년 업무관련 인력보강 건은 담당부서(기획감사실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o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은 운영지침에 의거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하는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동구 및 부산 등 타시도 구단위 센터는 대부분 비상근 체제임). o 현재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 중임. –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후 국·시비가 지원된다면 공부방보다 많은 예산 (인건비 포함)이 지원 될 것이며 ,전환 전까지는 시비 확보 등 예산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음. o 동 주민센터 활용 건은 관련부서(총무과)와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겠음.	처리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홍보과	건의 사항	① **지역축제 집중 육성** • 전국적으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자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도 쇠부리 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우리 구의 축제가 특화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음.따라서 쇠부리 축제 등 우리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므로 우리 지역의 쇠부리 철기문화와 최첨단 자동차산업을 연계한 중장기적인 쇠부리축제 육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최근 발견한 2개의 갱도에 대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o 강동해맞이축제 , 강동해변축제 등 행사성 축제를 폐지하고 울산쇠부리축제를 특화된 우리 구 대표 축제로 집중 육성할 계획임. - 향후 달천철장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축제 개최 장소로 활용하는 등 보다 쇠부리의 이미지에 걸맞는 축제로 발전시켜 가겠음. - 또한 울산지역의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철기문화의 특성을 담은 프로그램도 추진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음. o 최근 발견한 갱도 2개의 달천철장 관련 관리 방안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달천공원조성 시나 달천철장 관광자원화사업 시 연계해서 관리·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음.	처리중
		② **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개선 방안 마련** • 우리 구의 운동경기부가 사격부인데, 시비 지원에 있어 타구에 비해 우리 구가 다소 예산지원이 낮으므로 시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사격 종목은 예산투입대비 우리 구의 인	o 사격부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와 시 체육회에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가능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o 우리 구의 발전과의 연계부분은 엘리트체육의 특성상 거주	처리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홍보과	건의 사항	재를 육성하고 우리 구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므로 생활체육 종목중에서 구민 모두가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고 우리 구를 상징하고 지역 청소년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다양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종목으로 검토하기 바람.	지와 상관없이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영입하다보니 우리 구 인재육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일수 있음. (타 구·군도 울산 출신 선수는 거의 없음) - 무룡고 등 울산에서도 13개의 학교에서 사격을 하고 있으므로 울산출신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o 현재, 사격부가 전국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종목 변경 보다는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음.	
		③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부지 매입 •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주변이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 예정에 따라 향후 토지 수용절차를 거치겠지만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발전 시킬 수 있도록 검토 바람	o 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결정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처리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평생교육과	시정요구	① 농소3동도서관 도서보유량 구입 확대 •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농소3동도서관 도서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타 도서관 대비 도서 대출 회전율, 구입년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도서 구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o 이용자수 대비 소장 장서가 적은 편이나, 도서관 시설 규모상 소장하는데 한계가 있음 o 이용률이 적은 도서를 순차적으로 제적하여 서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음 o 내년에는 도서구입 예산을 2천만원으로 증 편성할 예정이며, 가급적 중복 구입 배제 및 이용자 희망도서 중심으로 구입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음	추진중
		② 상호대차서비스 도입 검토 • 우리 구는 권역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도서관에 비치하지 않고 있는 도서를 인근 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호대차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도서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나아가 일선 학교도서관과 우리 구의 도서관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 대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o 2011년부터 약 400백만원의 예산으로 통합도서관리 시스템 구축과 통합 도서관 홈페이지 개발을 통해 원활한 도서관리시스템 운영과 구립도서관간의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주민참여 예산 조정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상호대차 운영을 위한 예산투입대비 효과에 대한 효율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o 학교 도서관과의 상호 네트워크 구축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KOLA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평생교육과	시정요구		학교 도서관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발한 DLS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o 구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과의 상호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에서 전산 프로그램 교체가 불가피하나 이에 대해 학교도서관 입장이 부정적이며, 교체 결정을 하더라도 네트워크 비용을 우리구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큼	
		③ 교육경비 정산 철저 • 일선 학교에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조례상에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자부담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일부 정산서에는 영수증이 누락되어 있는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당초 계획한 사업내용과 사업실적이 동일한 지를 살피고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 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람.	**o 2010년 교육경비보조사업 지도점검 실시** • 기간 : 2011. 11. 1 ~11. 12 • 대상 : 꿈동산 유치원 외 45개학교 • 내용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 사업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 및 정산방법 안내 등 o 향후 일선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하여 사업비의 집행에 있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평생교육과	시정요구	④ **권역별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 권역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도서관별로 획일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등 지역 주민의 특성, 주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수요조사는 물론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도입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o 2011년부터 구립도서관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의 종료 전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강의 및 강사를 평가하여 차기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을 하도록 할 것이며, o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및 열린 문화공간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 도서관별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① **도서관 이용률 제고**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있어 직장인을 위한 야간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여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재 휴관하고 있는 월요일에도 개관을 검토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o 울산광역시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중 "지자체 도서관 운영 활성화" 분야에서 우리구 5개 구립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사서직원 53명 중 9명만 배치되어 법정 사서직원 확보율이 16.9%에 불과하여 5개 구·군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인당 장서수 1위, 1인당 대출권수 1위를 기록하는 등 도서관 업무량이 과중하여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사기 등을 고려할 때 사서직원의 신규 충원 없이 월요일 개관은 어려운 실정임.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평생교육과	건의사항		o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운영은 도서관 이용자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중앙도서관에서 시범 실시한 후 성과가 좋을 경우 타도서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② 제3대학 운영 관련 건의 •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년세대의 노후준비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3대학은 단순한 학습의 장에서부터 벗어나 재취업,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기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o 2009년 조경기능사 자격과정으로 2명이 창업, 법인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발마사지 동아리의 정기적인 자원봉사, 포크기타동아리의 울산평생학습축제 참가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o 2011년 운영계획(안) • 자산관리학과 - 전문과정 운영 • 친환경 원예학과 - 친환경 채소재배 • 친환경 조경학과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전정 자원봉사	추진중
		③ 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 관련 **유관기관 협조 강화** • 우리 지역에 유치한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우리 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고 옹벽 붕괴 사고로 인해 우려가 있으므로 붕괴사고 원인, 향후 준공시기 및 개교 시기, 우리	o 외국어고등학교의 현재 공정율은 90%이며, 준공일은12월 17일임. 교사이전 예정일은 12월 말로 옹벽 붕괴 측 건물은 미사용할 계획임. o 현재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중이며, 2011년 2월 14일경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임. o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향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평생교육과	건의사항	지역의 학생 입학전형 등에 대해 지역교육청, 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우리 구가 일정부분 책임성을 가지고 향후 일련의 과정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후 옹벽붕괴 원인,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 지속적인 파악을 통해 시 교육청 및 외고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적극적 입장에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음.	
		④ 바다도서관 운영 관련 • 현재 바다도서관이 1층, 행정상황실은 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도서관 이용률 제고와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서는 상호 층수를 바꾸어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주시고, 바다도서관 이용률이 낮으므로 이용률 활성화 대책 마련	o 바다도서관은 원래 도서관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정자해변 이용 관광객의 구조 활동을 위하여 전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층으로 건립되었으며, o 여름철 이외에 비어있는 공간 활용을 위해 도서관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층수변경문제는 관계부서(문화홍보과 및 농수산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o 바다도서관은 다양한 자료를 비치하여 이용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⑤ 도서관 청사 옥상녹화 검토 • 도서관 옥상공간이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친환경 녹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객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o 현재 중앙도서관 옥상에는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 1조와 벤치 6개가 비치되어 있는 상태임. o 또한, 도서관이 공원 내에 위치하여 주위환경이 자연적이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나무 식재 등으로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을 좀더 내실 있게 조성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table>
<tr><th>부서명</th><th>구분</th><th>시정·건의 요구사항</th><th>처리내용</th><th>처리결과</th></tr>
<tr><td>세무과</td><td>건의사항</td><td>①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 작년 우리 구의 과오납이 6만 5천건, 26억원이 초과하고 있으므로 세수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징수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미환부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환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td><td>o 과오납 발생 및 처리실적 (2010. 1월~10월까지)
<table><tr><th>구 분</th><th>과오납금</th><th>환부액</th><th>미환부액</th><th>처리실적(%)</th></tr><tr><td>건수/금액</td><td>9,232/2,639</td><td>7,705/2,637</td><td>1,527/32</td><td>83.5</td></tr></table>※ '10. 10. 31현재 미환부액 누계
: 7,608건/53백만원
o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
•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시 기 : 상·하반기 2회 (4~5월/11 ~12 월
- 주요 추진내용
·환부통지서 일제 발송
·미환부금 전화 및 문자 안내
·구청 내 홍보 배너 설치
·아파트 입구 홍보물 게첨 및 반상회보 홍보
·정기분 고지시 과오납 안내 문구 추가
• 과세자료 일제정비 및 지방세 전문성 강화
- 재산세 과세 자료 (사권제한토지) 정비
-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법규해석 습득
• 지방세 납세 안내 강화
- 체납세 납부 시 가상계좌 납부 안내로 이중납부 미연 방지
-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 사전 안내 홍보</td><td>추진중</td></tr>
</table>

<table>
<tr><th>부서명</th><th>구분</th><th>시정·건의 요구사항</th><th>처리내용</th><th>처리결과</th></tr>
<tr><td>세무과</td><td>건의사항</td><td></td><td>※ 과오납금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소지가 있어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으로 명칭 변경 예정</td><td></td></tr>
<tr><td></td><td></td><td>② 체납세 징수활동 철저
• 지방세 부과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부과 시부터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체납세 발생시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소멸시효 이전에 정리하기 바람.</td><td>o 체납세 징수실적 (2010. 10. 31현재)
• 현년도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징 수 결정액 (A)</th><th colspan="3">정 리 액(B)</th><th rowspan="2">체납액 (A-B)</th><th rowspan="2">징수율 (C/A)</th></tr>
<tr><th>계</th><th>징수액 (C)</th><th>결손액</th></tr>
<tr><td>합 계</td><td>150,656</td><td>146,825</td><td>146,825</td><td>0</td><td>3,831</td><td>97.3</td></tr>
<tr><td>시 세</td><td>121,974</td><td>119,096</td><td>119,096</td><td>0</td><td>2,878</td><td>97.6</td></tr>
<tr><td>구·군세</td><td>28,682</td><td>27,729</td><td>27,729</td><td>0</td><td>1,153</td><td>96.0</td></tr>
</table>
• 과년도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징 수 결정액 (A)</th><th colspan="3">정 리 액(B)</th><th rowspan="2">체납액 (A-B)</th><th rowspan="2">정리율 (B/A)</th></tr>
<tr><th>계</th><th>징수액</th><th>결손액</th></tr>
<tr><td>합 계</td><td>12,055</td><td>4,767</td><td>3,713</td><td>1,054</td><td>7,288</td><td>39.5</td></tr>
<tr><td>시 세</td><td>9,941</td><td>3,905</td><td>2,892</td><td>1,013</td><td>6,306</td><td>39.3</td></tr>
<tr><td>구·군세</td><td>2,114</td><td>862</td><td>821</td><td>41</td><td>1,252</td><td>40.8</td></tr>
</table>
• 과년도 목표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목표액</th><th colspan="3">정 리 액</th><th colspan="2">목표대 실적</th></tr>
<tr><th>합계 (A)</th><th>징수액 (B)</th><th>결손액</th><th>합계 (C)</th><th>징수액 (D)</th><th>결손액</th><th>정리율 (C/A)</th><th>징수율 (D/B)</th></tr>
<tr><td>합 계</td><td>5,202</td><td>3,468</td><td>1,734</td><td>4,767</td><td>3,713</td><td>1,054</td><td>91.6</td><td>107.1</td></tr>
<tr><td>시 세</td><td>4,299</td><td>2,866</td><td>1,433</td><td>3,905</td><td>2,892</td><td>1,013</td><td>90.8</td><td>100.9</td></tr>
<tr><td>구·군세</td><td>903</td><td>602</td><td>301</td><td>862</td><td>821</td><td>41</td><td>95.5</td><td>136.4</td></tr>
</table>
o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
• 체납세할당 책임징수제 운영
– 시기 : 상·하반기 2회 (5~6월/9~10월)
– 주요 추진사항
·할당체납세 책임징수제 운영</td><td>추진중</td></tr>
</table>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세무과	건의사항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후 독려 활동 운영 • 납부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 - 근거과세 및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 정기부과 세목 납기 전 납부 홍보 - 고액부과자 납기 내 납부안내 문자발송 •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 체납발생시 조세채권 우선확보 -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과 병행한 독려 활동 전개 - 고의·고질, 단순·생계형 체납자 구분 관리 ·고의, 고질 :체납처분 및 행정 처분 강화 ·단순, 생계형 :납부 안내 독려 중점 추진 •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책임징수자 지정관리 ·대 상 : 5백만원 이상 ·책임징수자 지정 :업무담당자 ·신규발생자 및 납부자 매월 갱신 - 폐업·부도업체 등 징수불능자 별도 관리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민 원 지적과	시정 요구	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철저** • 무인 민원발급기의 장애로 인해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애 원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급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장애 발생시 위탁 관리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o 무인민원발급기 정기 점검(직원1, 보수업체) 으로 주1회 이상 장애원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o 통합정보관리체계(지캄e)를 활용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장애발생시 담당자에게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하여 신속히 장애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o 노후로 인해 민원고장 신고가 잦은 3개소에 대하여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함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생 활 지원과	시정 요구	① **자원봉사센터 추진사업 재검토** •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부 프로그램 또는 운영 전반에 대해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ㅇ 2011년부터는 자원봉사센터의 구청직영 운영으로 센터 고유업무 외 사업인 장애인 전용목욕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시락배달사업은 사회복지과로 분리하여 추진할 계획임.	완결
		①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철저** •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고, 회원 전체가 연령대가 높은 관계로 자체 정산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정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ㅇ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업무 언찬** **(2010.11.10)**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회계처리 지침(기배부)에 의거 보조금이 집행·정산될 수 있도록 교육 • 사업집행시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체크카드)사용을 원칙화하도록 교육	완결
	건의 사항	① **자원봉사 홈타운 지원방안 마련** • 자원봉사 홈타운 개소는 매우 좋은 정책이며 타 구에서도 우리 구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센터의 홈타운에 대한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ㅇ 자원봉사 홈타운 사업은 우리 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08. 12. 3부터 시작하여 현재 14개 점을 개소하여 운영중이며, 아파트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여 전 아파트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 지점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차량지원 등 지원 요청 시 적극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는 센터 운영업무를 구청이 직접 운영할 것임.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생활지원과	시정요구	**② 박상진의사 추모사업 활성화** • 우리 지역의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을 발굴하여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특히 고헌 박상진의사는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으로서 역사적으로 훌륭하신 위인이므로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통해 추모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연중 사업 추진은 물론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과 구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소관부서를 통일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 바람.	o **고헌 박상진의사 관련 업무 부서 지정** · 생가관리(문화재) - 문화홍보과 · 추모사업회운영 지원 - 생활지원과 o **추모행사 추진 - 시 문화예술과** · 3.1절, 8.15광복절 기념추모행사 ·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학생 미술실기대회 ·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학생 글짓기대회 o **홈페이지운영 및 관리 - 추모사업회** · 홈페이지 관리비 지원 : 2,800천원 · 구청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o 시·문화홍보과와 업무 협조하여 생가 관리 및 고헌 박상진의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건의사항	**③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 운영중인 각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구청에서 직접 구매를 통한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고, 청소년 자활지원관은 청소년지원센터와 운영프로	o **자활공동체 지원** -매년 자활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사업,재활용교환판매장, 엑기스사업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탁, 구매 지원하고 있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생활지원과	건의사항	그램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운영 검토와 지역자활센터 등 입주하고 있는 시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이외에도 구청 전자게시판 활용, 각종 행사시 부스설치 협조 등 지속적인 홍보 지원하고 있음 <2009년 지원실적> • 청소 위탁 : 3건, 48,358천원 • 재활용판매장 위탁 : 79,708천원 • 엑기스 구매 : 3회 700천원 • 사무실 무상임대 : 2건 (지역자활센터, 청소년자활지원관) <2010년 지원실적> • 청소 위탁 : 5건, 64,301천원 • 재활용판매장 위탁 : 78,632천원 • 사무실 무상임대 : 2건 (지역자활센터, 청소년자활지원관) **o 청소년자활지원관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담당부서(문화홍보과)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중복 운영 방지 및 내실화를 검토하겠음 **o 지역자활센터 시설환경 개선** -지역자활센터의 열악한 사무실 환경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단기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시정 요구	① **공동주택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법 개선** •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필요할 것이나,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 비록 오랜 관행이라고 하나 공동주택 경로당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법이 타당한지 점검하여 주시고 정산서대로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피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o 관내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집행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면적별 ·연료별로 난방비 지원금을 일부 조정하였음 o 4개 권역별로 나누어 경로당 임원들에게 운영비 등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 및 정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 ※ 날짜별 권역별 경로당 지도 내용 - 11. 2 : 농소권 - 11. 3 : 송정·효문권 - 11. 4 : 강동권 - 11. 8 : 염포·양정권	완결
		② **여성주간 참여자 확대** • 우리 구에서 추진한 여성주간행사 참여자 현황을 보면 일반 주민은 거의 없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특정단체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준비위원회 구성단계부터 다양한 단체의 참여로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o 여성주간행사 추진 시 여성주간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주민, 각계 여성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음. o 여성주간행사에 일반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동게시판, 동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③ **내실 있는 여성정책 기본시책 추진** • 2010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추진내용에 있어, "경력단절	o 제3차 여성정책 기본시책(2008-2012)의 시행계획을 추진 중이며,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시정 요구	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여성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등 세부사업 추진결과 지원대상에 남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본래 취지의 여성 특화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목적에 부합되는 여성 특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사업을 발굴 시행 바람.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여성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등은 2008년 여성정책 기본시책에 포함되어 현재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 특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토록 하겠음. o 2011년에 "찾아가는 주민 성인지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성격유형별 차이점 이해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음.	
		④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철저** •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채용 시 재산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채용한 것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채용한 결과로서 향후에는 정확한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저소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특히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추진에 있어 저소득층이 참여할 경우 고정수입으로 인해 수급권 자격이 취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제도권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o 2011년 장애인행정도우미 모집공고 시 채용자격기준 정확히 공고 할 것임. o 수급자등 저소득층이 참여할 경우 수급권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사전홍보 철저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조제6항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에 참여할 경우 50%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의미하므로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배치기관(동주민센터, 지방자치센터 소속 공공기관 및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장애인복지법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음.	
사 회 복지과	건의 사항	① **노인복지관 증축 건의** • 종합사회복지관내 노인복지관이 입주하고 있으나 노인 이용자 대비 규모가 작으며 타구군의 시설과 비교할 경우도 매우 협소하므로 조기에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증축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o 보건소 옆 공공청사 부지에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관 등을 부재매입이 완료되는 2012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 현 노인복지관 협소한 점에 대한 대책으로 거점 경로당 지정 및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겠음.	추진중
		②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강구** •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 구뿐만 아니라 경찰서 ,지역 교육청, 시민사회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다각적이고 예방위주의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조만간 출범예정인 지역 연대로서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바람	o **차돌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통해 아동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에 2인 1조로 파견하여 초등학교 및 주변 공원 등을 순찰토록 함. o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민방위교육장 ,주민 등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하도록 함. o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구성** 2010.10.21(목)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를 구성하였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건의 사항		으며,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아동·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음.	
		③ 기타 건의사항 ● 이주 여성 등 다문화가정의 지원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이 거짓으로 교부받았을 경우 엄격한 법 잣대를 통해 재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에도 미혼모 보호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는 물론 한부모여성에 대한 특화된 시책 추진과 여성의 건강보호에 있어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에서 나아가 갱년기여성 등 장년 여성층에 대한 지원 검토 요망.	ㅇ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여성들의 한글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행복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여 결혼이민자여성의 기본교육 및 자녀교육 ,가족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이주여성과 함께 보육시설, 초등학교 , 일반주민 등에 대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ㅇ **보육시설 지도점검 철저** 보육시설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도 병행하고 있음 보조금 허위청구 등으로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을 실시하며 , 재발을 방지를 위하여 행정처분 사례별 내용에 대해 보육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교육 실시 등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건의 사항		보조금 허위청구 등을 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강화하겠음 o **미혼모보호센터 운영** 울산지역에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각각 개소가 있으며, 미혼모자시설의 경우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입소 가능함.북구 지역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경우 사업을 추진할 개인이나 법인 발굴을 하여야하고, 국·시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추진방향 검토하겠음. o **한부모여성에 대한 특화된 시책 추진** 한부모 가정간의 정신적인 상처의 치유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자조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현재 한부모가족자립센터에서 한부모에 대한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추진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자립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경 제 진흥과	시정 요구	① **노사정 구민협의회 운영 활성화** • 노사정 구민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실적이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운영에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사용자의 의견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을 확대하여 주시고 ,민간위원의 경우 위촉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위원이 있으므로 개선 조치 및 협의회의 기능 중 우리 구가 위탁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ㅇ **울산광역시 노·사·정·구민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울산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의 원하청간 불공정거래문제, 고용·노사문제 등을 협의회가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을 30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의 구성원이 협의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음. 기존의 위원의 임기가 완료되는 내년 2월에는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간의 균형을 맞도록 위원을 위촉하겠으며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사회적기업 육성발전 방안 마련**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지역여건에 맞는 사회적	ㅇ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울산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 2011년 본예산에 사회적기업 지원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를 편성 요구하였음. 울산광역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계획이 정해지면 관내 사회적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회사에 알려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경 제 진흥과	건의 사항	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사회적기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취약계층 취업지원 등 협조 요청할 계획이며, 2011년 상반기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15명 이내, 구의원 전문가 등)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음.	
		②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계획에 따른 주민입장 대변 • 한전에서 추진 중인 변전소 및 송전신로 설치계획은 주민 생존권 문제로서 많은 반발이 예상되므로 한전과 대책위 및 주민과의 중재역할을 해주시고, 대립되고 있는 주민 의견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과 주민의 입장을 잘 대변하여 주시기 바람.	ㅇ **변전소 등 현재 추진상황** 동울산 변전소는 07. 10. 5부터 현재까지 후보지 검토 4(신현,산하,매곡,대안 1,대안 2)후 대안동 940번지 일원으로 확정된 가닥을 잡는 상태임. 주민들은 설치반대를 요구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어음골)에 변전소 설치 이전 요구중이어서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무산으로 생략 공고 후 지식경제부장관 승인 요청한 상태임. 매곡변전소는 매곡동 349-19(산업단지내 지원시설 용)위치 예정이나 산업단지 내에서 외곽지역으로 이전설치 요구중임. '08년 10월 한전에서 부지를 매입, 2차례에 걸친 건축허가 신청 반려 후,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임. 매곡분기 송전선로 및 동울산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경 제 진흥과	건의 사항		효문분기 송전선로 관련하여 주민측은 지중화 요구,한전측은 공사비 및 공사시기 등을 이유로 난색, 7~8㎸ 최적 능선 노선선정을 한다는 방침임. 향후 민원발생 대비 주민의 입장을 한전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주민 ·한전 측이 협의 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하겠음.	
		③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노동부뿐만 아니라 광역시 및 우리 구와의 업무와 중복적인 기능이 많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향후 항구적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와 우리구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그간의 운영실적을 살펴보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바람.	**o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2003년부터 민주노총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임. 2달에 1회씩 우리구 노사협력 담당,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소장 등 5인 이 참석하는 운영회의의 심의를 통해서 운영 방안을 결정하고 있음. 앞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우리구의 일자리종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경 제 진흥과	건의 사항	④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지원 방안 마련** •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계획에 따라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에 큰 피해가 우려 되는 바 우리 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적극 검토하는 등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보호에 가시적인 정책을 펼쳐주기 바람.	○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지원 시책 추진** 매년 10월경 개최되는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시시장 벤치마킹 및 시장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직원 재래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명절 등 성수기에 주요 길목에 재래시장 홍보 플랜카드 및 관내 기업체에 시장 이용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재래시장 이용 및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적극 독려할 계획임. 또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가스시설부적합 시장의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고객 및 시장상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지속적인 경영현대화 사업대상을 발굴할 예정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됨에 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재래시장의 상권을 보호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 • 모범음식점에 대해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및 푸드백(봉투)를 112개소 37,900매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관내 모범음식점 여러 군데를 직접 방문한 결과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홍보 안내문조차 없었으며, 용기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 비닐에 싸주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o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으로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및 푸드백(봉투)를 제작하여 모범음식점에 배부하였으며 일부 모범음식점에서 용기 등 부족하다고 추가 요구하나 제한된 예산으로 충분하게 지원 할 수 없어 부족 시 업소에서 자체 구입하여 사용토록 지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o 향후 모범업소 관리 계획·수립하여 남은 음식 싸주는 홍보 안내문을 제작 ·업소에 부착하여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① 동천강 제전마을 진입부분(동편) 화장실 설치 • 동천강변에 많은 주민들이 통행을 하거나 운동 및 산책을 하고 있은 관계로 화장실 설치민원이 제기되었고 천곡교 서편에 설치된 화장실 1개소는 원거리이고 이용에 불편하므로 제전마을 진입부분 동편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함.	o 최근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 농수산과에서 중산동 농소화훼단지에 한울타리 도심 내 농촌체험마을 공중화장실(2개소)을 설치하였으며, 동천강변 산책로에서 약 80~90m 정도 거리에 있어 산책로에서 화장실까지 이동로가 확보되면 화훼단지 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제전마을입구에서 250m이격)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위생과	건의사항		o 산책로에 공중화장실은 현장여건상 이동식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악취 등 미관저해 요인이 되어 주민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②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지난 2009~2010년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수성천, 천곡천에 대해 실시하였으나 EM처리제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을 분석하여 주시고,폐수 방류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근 주택가의 생활폐기물 투기예방 활동 실시 등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o '10년 12월말까지 EM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o 효과분석 후,미비점이 있을 시 EM을 포함한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며, o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인근지역에 폐수방류,생활폐기물 투기 등은 사전예방 및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추진중
		③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점검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o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임명하여 매월 1회 이상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시정을 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은 확인을 거쳐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2010.10.31현재)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 경 위생과	건의 사항		o 2010. 10. 18, 10. 27 2회에 걸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85개소에 대하여 정서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판매 등에 대한 지도 점검하여 청소상태 등 9개 업소에 대하여 현지시정 조치함. • 주요점검 사항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등 - 광고의 제한·금지 등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 168개소 • 전담관리원 : 12명 • 점검업소수 : 1,179개소 • 위반업소수 : 54개소 • 조치내역 - 현지시정 : 32개소 - 지도 및 홍보 : 22개소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환경미화원 충원 검토 등 청소 체계 점검** • 재활용품 수거방식으로 인한 노동 강도가 높고 청소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미화원 3명이 산재로 입원하고 있는 실정임.급격한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로 청소 민원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미화원 정원이 감소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o 환경미화원 증원은 총액인건비제와 연계된 문제이므로 재정상 패널티 등의 애로사항이 있으나 관내 인구 ,세대증가 및 미화원의 업무강도를 감안하여 충원할 계획임. o **환경미화원 충원계획** • 정원/현원 : 56명/50명 • 2010.12.31 정년퇴직 인원 : 4명 • 충원인원 : 5명 정도 • 환경미화원복무규칙 일부 개정 추진 - 기 간 : 2010. 11~12월 • 환경미화원 채용 계획 수립 및 추진 - 기 간 : 2010. 12월~ 2011. 1월 • 환경미화원 채용 : 2011. 2월 o 환경미화원 부상은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시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 철저** • 폐형광등·폐건전지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음으로써 환	o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방안 개선 • 수거주기를 적용하여 정기적인 수거 및 수시수거 조치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경오염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배출되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거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수거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고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 단독주택, 학교, 공동주택에 널리 홍보하여 분리배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공동주택 수거(500세대 기준 - 대단지 아파트 -매월 수거 - 소규모 아파트 -격월 수거 ※ 관리사무소에 수거함 비치 및 분리 배출 안내 홍보요청 공문발송 • 단독주택 수거 - 매주 재활용수거일에 수거 ※ 주민만남의 날 및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	
	건의사항	① **재활용품 거점관리지역 관리 강화** •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거점장소를 관리 하는 자생단체의 노고가 많으므로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품 거점 수거장소에 설치된 대형수집 용기를 폐쇄 이후 그물망을 이용해서 수집하다 보니 오히려 예전보다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o 현재 재활용 거점 수거관리자들에 대한 격려를 위한 예산으로는 분기 1회 다과를 제공 있으며, o 기존 대형분리수거용기가 설치되었다 폐쇄된 곳은 대형용기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과 무단쓰레기의 상습적 투기로 악취와 불편이 계속된다는 인근 주민들의 끊임없는 철거 요청으로 철거하였으며, o 기존 대형분리수거용기가 있던 장소는 인근 주민에 대한 이전 홍보와 거점관리자들을 다수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 경 미화과	건의 사항	② **재활용교환판매장 이전 장기 검토** • 우리 구 지역자활센터사업 중 재활용 교환판매장 공동체가 연암동 아파트 및 상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에 대해 우리 구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임대해 주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기 바람.	o 북구 재활용 교환판매장은 지난 2001. 7. 1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의거 주민들의 중고물품 재사용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해서 건립하였으며 북구 자활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o 향후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부지에 청소년종합센터 건립을 계획(2012. 7월 착공 예정)하고 있어 향후 이전 등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 시 녹지과	시정 요구	① **천마산 일원 등산로 보수 건의** • 대동아파트 뒤편 일원 등산로 노후로 등산로 보강 • 천마산 등산로 변에 설치된 소망 우체통 정비	o 대동아파트 뒤편 계단 20m 정비, 배수로 등 정비완료 (2010. 10. 22.) o 천마산 등산로변에 설치된 소망우체통 철거 완료 (2010. 10. 22.)	완결
		② **연암동 성원아파트 옆 공원 내 폐기물 처리** • 연암동 성원아파트 옆 공원 내에 대형 생활폐기물이 적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 초래되므로 처리 요망.	o 성원아파트 옆 화봉4어린이 공원 내 폐기물은 2010. 10. 14. 처리완료 하였음.	완결
	건의 사항	① **명촌 일원 가로 정비 건의** • 명촌 일원 가로변 전체 구간 대부분이 가로수가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가로수가 있어야 할 인도의 특정 지점에는 비어 있는 관계로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이 있으며, 인도와 가로변 사이에 잡초가 발생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해당 조합과의 협의 및 직접 구청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바람.	o 10. 14. : 건의사항 처리통보 (구→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조합) o 10. 27. : 건의사항 처리통보 회신(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조합→구) o 10. 27 ~ 11. 5. : 처리완료 o 진장명촌구획정리조합과 협의하여 인도 가운데에 설치 계획인 가로수를 도로 가장자리에 조금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협의 완료하였음. o 이후,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합에서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정비 계획임.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시녹지과	건의사항	②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 기존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내에 조성된 시설물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테마가 있는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기 바람.	o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 특색을 고려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교 통 행정과	시정요구	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철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고질적인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력 및 CCTV등 장비 보강으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요망	o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는 수시로 순찰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o 주정차단속용 CCTV는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민원 발생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으로 설치하고 있음. o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차량을 이용한 권역별 순회순찰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중
		② **기계식주차장 행정 지도** • 연암동 21세기학원 주차장 등 관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일부 기계식주차장이 실제 운영되지 않으며, 미작동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오히려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저해되고 있으므로 일제 점검을 통하여 작동여부를 잘 살피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o 기계식주차장 지도점검계획 수립 : '10. 10. 18 o 기계식주차장 지도점검 : '10. 10. 20~25(6일간) - 대상 : 13개소 - 결과 : 양호 4, 불량 9 o 조치사항 - 불량업소(9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10.12.6.한) 원상회복 시정요구 o 향후 추진계획 : 2차 시정명령 후 원상회복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완결
	건의사항	① **동천초 정문 앞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 동천초 정문 앞 중앙선 탄력봉 설치로 그간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차량의 불법유턴이 빈번하므	o 현장 확인 : '10. 10. 26 - 결과 : 동천초 정문은 도로협소(6m)로 불법유턴 방지를 위한 탄력봉 설치는 어려우며, 학교 측에 학부모 및 학원차량이 불법유턴을 억제토록 지도요청하고, 등하교	불가

<table>
<tr><th>부서명</th><th>구분</th><th>시정·건의 요구사항</th><th>처리내용</th><th>처리결과</th></tr>
<tr><td rowspan="4">교 통
행정과</td><td rowspan="4">건의
사항</td><td>로 현장 확인 후 탄력봉을 추가 설치 및 연장건의</td><td>시 교통안전지킴 사업단을 활용하여 통학로 안전 도모토록 하겠음</td><td></td></tr>
<tr><td>② 벽산블루밍 후문입구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 대동아파트에서 벽산블루밍 후문 입구 도로변을 이용하는 통행주민이 많으며 무단횡단이 빈번하여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가 요망되므로 현장 확인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한 조기 설치 요망</td><td>o 횡단보도 설치 관할부서인 울산 중부경찰서에 본 지점에 대한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요청
· 중부경찰서 회신내용
- 울산지방경찰청의 '10. 12월중 교통 규제심의회시 본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음.</td><td>처리중</td></tr>
<tr><td>③ 명촌 일원 주택가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 명촌 일원에 빌라 등 주택가가 많이 형성되고 있으나 덤프 차량, 특수 차량, 공사차량 및 화물차량이 장기 주차하고 있고, 새벽에 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과와 상호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람.</td><td>o 명촌동 일원에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대하여 수시계도 및 매월1회 지도단속을 통하여 민원발생 최소화토록 하겠음.
- 실적('10. 1월 ~10 월 현재
<table><tr><td>2010년</td><td>관내</td><td>관외</td><td>비고</td></tr><tr><td>단속실적</td><td>31</td><td>94</td><td></td></tr></table>- 건설과 건설기계 주기단속 협조 공문발송 : '10. 11. 5</td><td>완결</td></tr>
<tr><td>④ 진장중학교 통학생 안전 통학로 확보
• 진장중학교 주변 자동차 매매상사, 식당,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학생통행 위험이 항시 상존한 가운데 신호등이 있으나 정상가동이 안되므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등하교 시간에라도 정상적인 점등조치 등 명촌 지역에서 등하</td><td>o 등, 하교시간 신호등 운영상태 확인(10. 20일)
• 등, 하교시간 진장중학교 앞 신호등 운영상태 확인결과 정문 앞 신호등은 정상적인 운영체계에 의해 작동되고 있으며,
후문 앞 신호등은 점멸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 관할부서인 중부경찰서에</td><td>완결</td></tr>
</table>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교 통 행정과	건의사항	교 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함.	문의결과 후문 앞 신호등의 경우 인근 염포로와 70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아 교통체증 등을 고려하여 등·하교시간에도 점멸신호등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임.	
		⑤ 휴먼시아 1.2차 아파트 및 송정초등학교 주변 종합적인 교통체계 검토 • 송정초등학교 주변 모두가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아파트 양쪽 도로 모두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협소한 가운데 통행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학생들의 통행안전을 위해서는 양쪽의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이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 여론 수렴을 통한 시행을 검토하여 주시고 ,휴먼시아 1.2차 아파트 대단위로 입주하였음에도 방어진이나 무거방향으로 대중버스 이용노선이 없으므로 휴먼시아 1차와 2차 아파트 사이의 도로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선 확대와 마을버스 또한 화봉중, 연암중, 무룡고 등의 학교 및 효성삼환아파트 ,한우리아파트 등의 인근 아파트에도 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o 송정초등학교 주변 도로 일방 통행로 지정관련 주민의견 조회** **→ 송정동** • 교통행정과-26714 ('10. 10. 14) **o 휴먼시아 아파트 등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검토 요청** **→ 시 대중교통과** • 교통행정과-28133 ('10. 10. 26)	처리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시정요구	① **볼라드 교체** • 최근에 볼라드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기존에 설치된 인도변의 일부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고, 야광효과가 없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석재로 된 볼라드에 대해 일제 정비하여 통일되고 규격화된 볼라드로 교체 바람	o 볼라드 설치기준이 수립되기 전에 설치된 석재 볼라드는 현장 확인결과 화봉지구 내 3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12월중 교체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관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추진중
		②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 작년에 구입한 142대의 공용자전거가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양심자전거 또한 분실되거나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므로 공용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나 고장난 자전거, 폐자전거에 대한 수리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필요가 없어진 자전거 주차대는 민간시설에 설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o 공용자전거의 이용률 저조로 인하여 '10. 8. 2자로 양심자전거(20대) 및 구민자전거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양심자전거는 분실 등의 사유로 추가 운영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였으며, 구민자전거는 현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o 자전거 수리 및 재활용 방안으로 현재 주중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시 폐자전거 수거도 병행하고 있음. 정기적으로 일괄 수리하여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의 자전거 재활용 방안도 적극 시행하겠음 o 염포로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현장여건 변동으로 불필요해진 자전거보관대(4개소)를 수요가 많은 공동주택 (백산그린타워, 삼우타운)으로 이설완료 하였음	완료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시정요구	**③ 양정천 수질 개선** • 양정천 보수공사 이후 양정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현장확인을 통해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o 현장 확인 결과 양정천 수질은 민원사항과 같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o 다만, 공사 시 흙,모래 유입으로 탁도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o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완료
		④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내황교 진입 도로변 (주공@~평창3차@)일부구간에 포장 및 인도변 잡초 제거	o 내황교 진입도로변 잡초제거는 11월중 실시하고,포장보수는 하반기 불량도로 정비공사에 반영하여 조치하겠음	추진중
		• 내황교~삼일교까지의 동천변내에 잡초 및 잡목 제거	o 2010년 하천정비 예산으로 하천변 잡초 및 잡목 제거하겠음('10. 11월 정비공사 발주예정으로 현재 설계서 작성 중)	추진중
		• 연암동 77번지~연암사거리 오수관 조기 매설	o 연암동 77번지 및 208번지 일원 약 25가구의 오수관 매설은 2010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가용 시 2010. 12월 한 우선 실시설계용역 시행 추진	추진중
		• 쌍용아진아파트 일대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 • 쌍용아진아파트 2차~3차 사이 도로 재포장	o 쌍용아진 일원 보도블록과 2~3차 사이 도로 재포장은 현장 확인 결과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고,향후 소파부분을 전수 조사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완료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시정요구	• 7번국도 중산마을 ~이화마을 사이 학생 통학로 안전시설 보강	o 7번국도 안전시설보강은 관리청인 종합건설본부에 통보하겠음(11월중)	완료
		• 약수마을 건너편 경계석 보수	o 경계석보수 완료하였음 (11. 5)	완료
		• 약수천 제방유실토 처리	o 정비공사시 반영하여 12월중 조치	추진중
		• 약수초등학교 옆 운동시설 도로 보수	o 약수천 일원 제방유실 현황조사후 장비임차를 통해 연내 제방정비 완료하겠음(11월중)	추진중
		• 약수초등학교앞 CCTV박스로 인한 인도 통행 불편으로 개선 요구	o CCTV 컨트롤 박스 위치 상향 조정 완료하였음 (교통행정과)	완료
		• 달천동 마을회관 방향 도로변 가드레일 연장 보강	o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추가설치 검토하겠음	추진중
		• 제전마을 농로길 비포장구간 포장	o 제전마을 농로 포장은 관련부서로 처리 요청하였으며 현재 토지소유자 동의 불가로 사업 추진 어려운 실정임. 〔향후, 농로정비(쇄석부설 예정〕	추진중
		• 천곡동 창훈산업 앞 교량박스 톱니바퀴처럼 되어 통행 위험으로 개선	o 곡선반경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음	추진중
		• 호계 구시가지 도로가 인도보다 차도가 더 높으므로 개선	o 호계 구시가지는 향후 절삭후 재포장하여 개선토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시정요구	• 호계 농소운동장 앞 인도구간 확보	o 조속히 잡초제거하고 파손된 부분은 긴급 보수하겠음	추진중
		• 동천에 설치된 각종 보의 보수, 어로 확보 및 보수	o 동천 내 8개 농업용 보 중 어로가 확보된 보는 4개소(생천보, 천곡보, 오림보, 속심이보)로 나머지 4개소(신답보, 차일보, 무명1보, 무명2보)에 대한 어로확보 및 보수는 동천 하천기본계획 상 철거 후 재가설이 3개소(신답보, 차일보, 천곡보), 철거가 2개소(무명1보, 무명2보)임. 이에 수반되는 예산확보가 관건으로 하천기본계획 및 농수산과와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 소요예산액 - 신답보 : 1,037백만원 - 차일보 : 589백만원 - 천곡보 : 928백만원	장기검토
		• 천곡마을회관 진입로 인도변 전주 한전과 협의 이설 검토	o 전주이설은 한전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 벽산블루밍 옆 도로 법면 보강	o 벽산블루밍 법면은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조속히 보수 요청하겠음	추진중
		• 천곡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구간내에 과속방지턱 설치	o 천곡초 정문 앞 방지턱은 도로관리청인 종건과 협의하여 설치 가능할 경우 설치하겠음	추진중
		• 달천운동장 진입 용이를 위한 제방뚝에 징검다리 형태	o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달천운동장을 이용할 경우 기 개설	불가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시정요구	의 인도 설치	된 진입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나 접근성확보를 위해 징검다리형태의 인도를 설치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음 o 상안천은 하폭이 좁아 우수기 유속, 유량 변동이 심해 징검다리 유실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인사사고의 가능성이 있어 우수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인력, 장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 사실상 설치가 어려움	
		• 화봉 1교 상단부 인도 및 안전휀스 설치	o 안전휀스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① 명촌교 지하차도 통행 개선** • 명촌교 하부 지하차도를 이용하여 다수의 근로자 및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차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 현대자동차, 종합건설본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 요망	o 차량의 안전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보도확장 시 길어깨부(측대)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므로 제한차량 충돌 등의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의 안전에 불리하고,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설치기준 상 최소폭 (3.5M)확보가 불가함('10. 9. 9.종합건설본부 회신내용) o 역주행 방지를 위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계단은 보행자의 편리를 위하여 개선하여 주민들이 적극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임 ('10. 11. 1. 현대차 노조와의 협의결과)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축 주택과	시정 요구	**① 각종 건축행위 시 안전시설 설치 지도 강화** • 매곡 극동스타클래스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안전시설물 없이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바, 관내의 건축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매곡 극동스타클래스 앞 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안전시설 조치는 완료하였으며, ○ 향후 건축 인·허가 시 건축법 및 산업안전기본법 등 규정에 의거 건설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하겠음	완결
		②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방법 개선 •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인정받고 있으나, 그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지원 시 현장 실사, 지역안배, 저소득층 입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2011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조사 시 지역안배,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음	추진중
		③ 주택 관련 법령 개정사항 홍보 •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사항이 최근 개정되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일선 공동주택에서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개정사항을 널리 교육 홍보하여 혼란이 없도록 조치 바람	○ 주택법령 주요 개정내용 알림 (2010. 10. 15) • 2010. 7. 06 개정 이후부터 주택법령 개정 및 법령해석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단지별로 홍보를(문서 및 과 홈페이지 게시)하였고, 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주관으로 이미 교육을 하였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축 주택과	시정 요구		• 그리고 북구청 자체에서 주택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공동주택 단지별로 배부를 하였으며, • 또한 홈페이지 건축주택과 자료실에 주택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게시하여 홍보함	
		④ 옥외광고물 정비 철저 •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옥외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작 설치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미관, 미풍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단속 정비는 물론, 향후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신규로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설치방법 등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바람	○ 북구 관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계획 수립 및 권역별 단계적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 주민 참여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광고를 목적으로 간판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1조의 표시방법 및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 내지 제18조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에 의하여 광고물의 크기. 내용, 색상, 수량, 설치지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추진중 추진중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축 주택과	건의사항	① **거리 벽면녹화 및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추진** • 관내 불법부착물 방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자연친화적이고 도시녹화사업과 연계하여 전주에 벽면녹화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전주 녹화사업으로 넝쿨식물을 식재 할 경우 대부분의 전주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건설과(도로점용 및 가로등담당) 및 한국전력공사(전주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② **건축물 인허가 시 당부사항** • 명촌 일대 식당 등 상가 건축물이 샌드위치 판넬로 인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화재 위험여부를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항시 점검하여 주시고, 향후 건축허가 단계부터 방화.방염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내 정비공장 및 세차장 건축물 점검 실시 예정 (점검기간2010. 11. 15~2010. 11. 26)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내 경량철골조 정비공장 및 세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건축물 안전 및 위험요소 사전방지에 대해 점검하여 행정지도를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당사 해상낚시공원 조성 관련 • 32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강동동 당사일원의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인 낚시터 조성에 있어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많으므로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고, 지역주민 의사 수렴은 물론 인공 조형물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통해 당사 해상낚시공원 조성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 바람.	o "당사 해양낚시공원"은 제1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42억원/'10~'12년)중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는 2차 사업으로, o 당사 해양낚시공원 건립을 위해 3회에 걸쳐 경남 통영과 전남 장흥, 울주군 등 유사시설에 대한 견학 및 관계자 면담을 하였고, o 향후에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국내·외 견학, 실시설계 전 주민·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음.	추진중
		② 봄꽃 전시회 보완 시행 • 봄꽃 전시기간이 짧고, 온실에서 전시하는 관계로 관람객이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개최 장소와 전시기간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o 봄꽃전시회는 우리구의 대표 축제인 쇠부리축제와 공동개최함에 따라 기간의 제약과 봄꽃의 특성상 온실전시를 하게 됨. o 농소화훼단지 내에서 연중 개최하여 방문객이 직접 화훼재배 현장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좋은 방안들을 검토토록 하겠음.	추진중
		③ 천곡동 유료낚시터 계약종료 검토 •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천곡동 저수지를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허가한 유료낚시터가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는 등 저수지가 오염되고 있	o 천곡동 유료낚시터는 2007년도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허가를 불허하였으나, 사용자의 소송제기로 인한 재판결과 패소함으로써 연장허가를 2011년 10월30일까지 내준 상태임.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농수산과	시정요구	으므로 환경보전 및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계약종료 후 재계약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o 사용허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연장에 대한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환경오염방지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음.	
	건의사항	**① 여성어업인 지원 강화** • 나잠 어업인의 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여성 어업인을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o 2010년까지 나잠 어업인에 대해 탈의장 1개소와 잠수복 120벌을 지원 함. 2012년 까지 탈의장 2개소와 잠수복 120벌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으며, 탈의장 운영비는 구·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에 일괄지원이 되도록 건의하고, o 여성 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녀가 많은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의 우수한 시책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중
		② 유휴농지에 대한 경관직불사업 활성화 • 유휴농지 증가로 인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며,농가의 소득 보전과 관광자원화에 부합되게 경관 직불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o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금년도는 강동 달곡마을에 경관작물(유채,청보리)을 20여 ha 식재 하였으며, o 사업대상지 발굴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상지역 및 농지를 발굴하여 경관작물 재배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농수산과	건의사항	**③ 김장담그기 행사를 위한 작물관리 지원** • 매년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는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배추가 부족하여 원활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지원하기로 한 배추가 작황부진으로 원활한 공급에 애로가 있었으므로 향후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김장담그기 행사를 위한 작물지원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바람.	o 불우이웃돕기용 농작물 생산에 예산 6,000천원을 지원하여 봄에는 야콘을 식재하여 판매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후원, 가을에는 새마을지회 김장담그기 행사에 지원할 계획으로 배추를 식재하고 있으며 물량 부족으로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작황을 수시 현장 확인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설재난관리과	시정요구	① 각종 공공시설물 시공 철저 • 국민체육센터, 달천운동장 등 최근 준공한 공공시설물이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불필요하게 행정력 낭비와 구민 불편이 많이 초래되었으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감리 지도 및 철저한 점검 조치 후 준공처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o 공정관리 철저 및 시공 상세도 작성 • 설계서 작성 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보완토록 하겠음. • 하자의 주요원인이 공정관리,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지 못한데 기인하므로 현장 및 기상여건 등을 고려한 공정관리와 시공·감리 지도를 철저히 하고, • 주 1회 이상 공정회의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받아 검토 후 시공에 임하도록 하겠음.	완결
		② 달천운동장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 • 달천운동장 스탠드 보완 ,레인재검토,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 바닥 재질 하자 보완 ,식재된 나무의 수종 교체 또는 이식 검토, 축구장 골대 또는 안전펜스 이전 검토 ,운동장 내 배수 흐름 개선 ,입구 주차공간 확보, 인라인스케이트장 타 시설 검토 ,이용자 대비 전기 이용 등 효율적인 운동장 개방시간 검토 ,파고라 주변 진흙탕으로 인해 잔디식재 등 검토·보완 바람.	o 스탠드 및 인라인스케이트 바닥재질하자는 보완완료 하였음. o 육상트랙 레인은 운동장 부지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한 사안으로 이용 시 운영방법을 통해 보완될 사항임. o 식목의 수종 또한 운동장 현황을 고려하여 수고가 높은 수종을 식재한 것이며 다만, 수목 식재 부족을 감안하여 추가 식재하고 파고라 주변 조경석을 11월 설치완료. o 골대와 안전망 간격은 인조잔디 라인조정이 필요하고, 라인이동에 따른 잔디 포설물 제거가 어려워 이용자 불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설재난관리과	시정요구		편 대비 하자발생 우려가 높아 해당업체와 방안 협의 중에 있음. o 인라인스케이트장 타 용도 검토는 다목적구장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이며, 주차공간 추가확보는 GB관리계획변경이 이행되고 운동장 외곽배수로 문제 (역구배)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 검토할 계획임. o 기타 사용 중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수정 및 하자보수 시기에 맞춘 시정으로 구분하여 조치계획임. o 운동장 개방시간은 주택이 밀집한 양정생활체육공원을 시범적으로 연장 운영하여 장점을 찾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음.	
		③ 청사 내외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개선 • 청사 내 장애인 화장실내 청결 문제, 점자블록이 있는 출입문이 잠겨 있었으며 ,청사 외부의 경우 유도시설이 없는 등 청사 내외 각종 장애인 편의 시설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보완하기 바람	o 청사 내·외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및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청사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보완 설치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설재난관리과	건의사항	① 공공청사 신축 시 장애인 편의 시설 최우선 검토 • 최근 준공한 공공시설물 중 장애인 보행로 경사가 너무 가파르게 되어 있어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설계단계부터 검토되었어야 할 사항이며 향후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립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람.	o 염포도서관 경사로는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 o 향후 공공시설 신축 시에는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배려하여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 반영하고 시공 시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보건소	시정요구	**① 아토피 클리닉 지원사업 강화** • 아토피에 대해 영유아,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발병하는 추세로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에도 지난 한해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하므로 실직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체사업 추진을 강화하고,아토피 클리닉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 바람.	o 2011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추진중
		② 약품관리 철저 • 보건소에서 구입 관리하고 있는 주요 약품에 있어 수요와 공급 주기를 충분히 감안한 재고관리와 많은 양을 일시에 구입하거나 다량의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o 약품별 소요량을 철저히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적정량의 약을 구입하여 필요이상의 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완결
		③ 직원 친절도 향상 •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에도 직원 친절도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음. 특히 보건소를 첫방문할 경우 입구쪽에서부터 안내데스크가 없어 다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으며,민	o 친절 및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대민친절 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음 o 향후 일자리 창출 인력 확보하여 입구쪽에 안내데스크 마련과 함께 민원실 직원 친절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것임.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보건소	시정요구	원실에 문의를 할 경우 안내 공무원이 친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부드럽고 친절한 분위기속에서 진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건의사항	**① 정신보건센터 유치 노력** •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이 사례관리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특화되고 연령별 다양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가운데 정신보건센터 유치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므로 각계각층의 참여 검토 등 적극적인 유치에 노력 바람.	o 2011년 당초예산에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비 200,000천원(시비 100,000, 구비 100,000)을 확보토록하여 2011년 5월에 개소 할 계획임	추진중
		② 각종 교육 확대 실시 검토 •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중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확대 실시와 경로당을 방문한 노인대상 성교육 등 다양한 계층의 성교육을 확대 실시 검토	o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확대 실시 할 계획이며 o 노인대상 성교육도 필요시 경노당을 중심으로 실시계획임	추진중
		③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보건소에서 널리 홍보하여 접종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바람.	o 보건소 및 관내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예방접종일정 알림 문자서비스(SMS)로 다음 예방접종일정을 보호자에게 안내할 계획임.	추진중

제5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개요

가. 감사의 목적

○ 2011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감사세부계획

○ 감사기간 : 제12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 11. 22 ~ 2011. 11. 30(예정)]

○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라.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안 승 찬

○ 부 의 장 : 정 윤 석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김 종 구, 강 우 송

○ 사무직원 : 이 동 희

2.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윤종오		구정업무 전반 및 감사요구 자료참고
		부구청장	이종환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총무국	총무국장 총무과장 주민참여과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도서관과장 세무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상곤 홍성욱 윤기현 이태희 강수상 박경란 신해진 이병국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일자리과장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	장영대 강걸수 김규석 이충실 김병오 윤채걸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건설방재과장 도시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주택과장 농수산과장	조한희 김수권 윤규태 이상련 장경석 정옥현		
	보건소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황병훈 성태경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전 동	농소1동장	이해균		구정업무 전반 및 감사요구 자료참고
		농소2동장	김주한		
		농소3동장	정순상		
		강동동장	박경규		
		효문동장	한상길		
		송정동장	손기익		
		양정동장	허정행		
		염포동장	윤일호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제12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 11. 22 ~ 2011. 11. 30(예정)]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대상 현장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3.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1. 11. 22(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현장)	ㅇ**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ㅇ**기획홍보실** ㅇ**총무국** • 총무과	
2011. 11. 23(수)	10:00	〃	ㅇ**총무국** • 주민참여과 • 회계과	
2011. 11. 24(목)	10:00	〃	ㅇ**총무국**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2011. 11. 25(금)	10:00	〃	ㅇ**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경제일자리과	
2011. 11. 26(토)			**휴회**	
2011. 11. 27(일)			**휴회**	
2011. 11. 28(월)	10:00	〃	ㅇ**복지경제국**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ㅇ**보건소**	
2011. 11. 29(화)	10:00	〃	ㅇ**건설도시국** • 건설방재과 • 도시녹지과 • 교통행정과	
2011. 11. 30(수)	10:00	〃	ㅇ**건설도시국** •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ㅇ**(기획홍보실)** ㅇ**의회사무과**	

※ 안건 제출 상황에 따라 감사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계	공 통	기획감사실	총무국	생활지원국	도시경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361	20	22	86	103	99	27	4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자료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작성요령 : 「별첨 2」 참조
- 감사범위 : 2010. 7. 1 ~ 2011. 9. 30

※ 요구 자료에 따라 감사범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 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11. 9. 30일 현재

○ 제출기한 : 2011. 11. 3(목)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6.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국·소·실·과장·동장 합동 실시 - 32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20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 선서문 : 감사 첫날 선서 후 일괄 제출

7.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6급 전문위원 강우송외 5명

○ 감사지적사항 당일작성 제출 : 감사의원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6급 전문위원 강우송·사무직원 이동희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속기사 허순자외 1명

○ 현장확인 활동(필요시)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8. 2009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구 분		요 구 건 수	비 고
합 계		361	
공 통 사 항		20	
기 획 홍 보 실		22	
총 무 국	소 계	86	
	총 무 과	9	
	주민참여과	21	
	회 계 과	14	
	문화체육과	22	
	도 서 관 과	3	
	세 무 과	7	
	민원지적과	10	
복지경제국	소 계	103	
	복지지원과	12	
	사회복지과	40	
	경제일자리과	13	
	환경위생과	22	
	환경미화과	16	
건설도시국	소 계	99	
	건설방재과	25	
	도시녹지과	21	
	교통행정과	9	
	건축주택과	16	
	농 수 산 과	28	
보 건 소		27	
의 회 사 무 과		4	

(전 부 서)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사항]</td><td>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table>
<tr><th>민원명</th><th>접수일자</th><th>처리일자</th><th>민 원 인</th><th>민원내용</th><th>처리결과</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4. 각종 공사 추진현황
※ 사업비 100만원이상, 담당별, 사업 성격별, 사업추진 기간 순으로 작성, 설계단계, 계약 및 완료건 모두 포함
<table>
<tr><th>공 사 명
(사업명)</th><th>사 업 개 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th><th>사업비</th><th>공정률</th><th>시공업체</th><th>예 산
확보시기</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용역
종류</th><th>용역비</th><th>착수
일자</th><th>완 료
일 자</th><th>용 역
결 과</th><th>계약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6. 2011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7.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table>
<tr><th>공사명</th><th>변경사유</th><th>공사금액
증 가 액</th><th>설계변경
요 청 자</th><th>설계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8.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10. 7. 1이후 신규 설치분만 작성
10.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1.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12.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table>
<tr><th>통보일자</th><th>공사개요</th><th>통보내용</th><th>비 고</th></tr>
<tr><td></td><td>계</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전 부 서)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사항]</td><td>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2010. 7. 1 ~ 2011. 9. 30(일반 민간단체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포함)
<table>
<tr><th rowspan="2">단체명</th><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정산서 별도 제출(단체명 구분 표지 첨부)
※ 부서 개별사항에 중복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 가능
14.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table>
<tr><th rowspan="2">환수일</th><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2">환수대상</th><th rowspan="2">환수사유</th><th rowspan="2">금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성명(업체,기관,단체명</th><th>주소</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5.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table>
<tr><th rowspan="2">번호</th><th rowspan="2">차량명</th><th rowspan="2">차량번호</th><th rowspan="2">구입일</th><th rowspan="2">용도</th><th rowspan="2">상태</th><th colspan="3">수리내역</th><th rowspan="2">유류비</th><th rowspan="2">비고</th></tr>
<tr><th>일자</th><th>내역</th><th>비용</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1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현황
<table>
<tr><th>부서명</th><th>성명</th><th>성별</th><th>나이</th><th>주소</th><th>사역 기간</th><th>사역 목적</th><th>단가(원)</th><th>채용 방법</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작성기간 : 2010. 7. 1 ~ 2011. 9. 30
- 근로 조건 및 근로계약서 해당사업별로 각 1부만 사본 제출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국외 포함)
<table>
<tr><th>기간</th><th>지역</th><th>인원</th><th>목적</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예산편성부서에서 작성하되, 위탁 견학 포함.
20.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td><td></td></tr>
</table>

(붙임 1)

□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ㅇ **예산과목 :**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0 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명 또는 직책 명시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11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 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1) 민간위탁과 용역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11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용역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총무국	총무과			:												
					: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															
	…	…															
의회	의회																
직속기관	보건소																
	농소1동																
	…																

(1) 구성 :
- ○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 없이 상시 고용된 자
- ○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11. 5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11. 5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 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 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예 : 1,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1) 근속기간 : 평균 근속기간

(12)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 됨 3

(기획홍보실)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기획홍보실</td><td>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실적
※ 별도 제본된 책자 제출
2. 구정 목표 변경에 따른 각종 시설물 교체, 신규, 보수현황
(설치지역, 시설명, 종류, 수량, 예산액 등)
3.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
4. 구정연구동아리 운영실적
5. 구민창안제도 운영실적
6.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구성 현황, 운영실적 및 성과
7.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세부 사업별)
<table>
<tr><th>공 사 명
(사업명)</th><th>사업개요(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th><th>사업비</th><th>시공업체</th><th>비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r>
</table>
8.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2010년도, 2011년도)
9.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 '11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 시민위원 명단(추천단체 및 소속, 거주지 포함, 타 단체가입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 및 연구회, 시민위원 교육자료(제본된 책자로 제출)
-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 지역 토론회 회의록 및 순위
10. 주민참여예산제 2011년도 당초예산 반영내역
11.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12.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13. 우리 구 채무현황
14.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 현황
(2010. 7. 1~ 작성기준일까지의 신규사건 및 작성기준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사건접수(제소 포함) 일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결과, 비용(패소나 조정에 따른 배상비용 포함 등)
※ 위 기간 동안 사건완료 건도 포함
15. 고문변호사 활동현황 및 실적
16.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처분사항, 모범사례)</td><td></td></tr>
</table>

(기획홍보실)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홍보실	17. 구민감시관제, 명예구민 감사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18. 자체감사·특별감사·광역시·행안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19.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20. 계약심사 현황 및 추진실적 21.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기획홍보실)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기획홍보실</td><td>22. 위원회 현황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각종 협의회 포함)
① 위원회 현황
(2011. 10 월 현재
<table>
<tr><th>구 분</th><th>총계</th><th>법령</th><th>조례</th><th>기타 규정</th></tr>
<tr><td>설치근거별</td><td></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총계</th><th>심의</th><th>의결</th><th>자문</th><th>협의</th></tr>
<tr><td>성격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② 위원회 위원 현황
<table>
<tr><th rowspan="3">위원회명</th><th rowspan="3">위원장</th><th rowspan="3"></th><th colspan="6">위 원 수</th><th rowspan="3">임기</th></tr>
<tr><th rowspan="2">계</th><th rowspan="2">남</th><th rowspan="2">여</th><th rowspan="2">당연직
임명직</th><th colspan="3">위 촉 직</th></tr>
<tr><th>공무원</th><th>시·구
의원</th><th>민간위원
(시민단체</th></tr>
<tr><td>총계</td><td>구청장( )
부구청장( )
국장( )
민간위원( )</td><td></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③ 위원회 개최현황
<table>
<tr><th rowspan="2">위원회명</th><th rowspan="2">회의주기</th><th rowspan="2">개최횟수
(서면)</th><th rowspan="2">회의록</th><th colspan="3">예산집행내역</th></tr>
<tr><th>예산액
(천원)</th><th>인원
(명)</th><th>집행액
(천원)</th></tr>
<tr><td>총계</td><td></td><td>0</td><td></td><td>0</td><td>0</td><td>0</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위원회 관리카드(설치근거, 목적, 설치일, 위원 명단 등)별도 제본 제출
④ 2010. 7. 1~2011. 9. 30. 신규 설치 위원회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위원회 명</th><th>설치일자</th><th>설치근거</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대집행내역
<table>
<tr><th rowspan="2">소관부서</th><th rowspan="2">위원회명</th><th colspan="4">집행내역</th><th rowspan="2">비고</th></tr>
<tr><th>일시</th><th>장소</th><th>참석인원</th><th>소요금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 서식 변경</td></tr>
</table>

(총무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 무 과</td><td>1. 청사내 직원 휴식공간 등 복지시설 설치현황
2. 북구청 어린이집 현황
- 원생수, 교수현황, 북구청에서 지원사항, 보조금 집행내역
3. 인력운용 관련
- 전체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3)
4. 공무원 현황
- 6급이하 공무원 현황(직급별, 연령대, 성별, 총근무연수
-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행정 6, 7, 8급 공무원 성별 비율
- 최근 4년간 행정7급▸6급, 행정8급▸7급(성별 승진비율
당해 직급 근무년수, 당해직급 근무부서 이력)
5. 계약직 공무원 채용현황
<table><tr><th>부서명</th><th>성명</th><th>직급</th><th>계약기간</th><th>업무</th><th>채용방법</th><th>월평균급여</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시간제 계약직공무원 포함
6.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
7.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복무연장 등)
8.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운영 실적
(설문조사결과, 참여자 연령분포도 포함)
9. 여름방학 컴퓨터교실 운영실적</td><td></td></tr>
</table>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 (2011년 9월 30기준)

구분	지방공무원인력									기타 인력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소방직	기타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11. 9 30기준)

구분	기관명		지방공무원인력								
	실국	부서명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기타
		계									
본 청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주민참여과									
		: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									
		: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									
		:									
의 회	의 회										
보건소	보 건 소										
동	농 소 1 동										
	:										
	:										

(붙임 3)

□ 기타인력 규모(2011. 9. 30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분	기관명			기타 인력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실국	부서명	업무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30일이하		60일이하		90일이하		180일이하		240일이하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본청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														
			:														
			:														
		주민참여과															
		:															
	:	:															
의회	의 회																
직속기관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총무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주민참여과</td><td>
1. 주민참여조례 시행이후 세부 추진실적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추진실적 포함)
2.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현황(시간당 강사료 표기), 보조금 지원현황
(신설 또는 변동된 프로그램 비고란 별도표기- 동별 취합
3. 동별 주민자치위원 명단, 위원의 타 단체 가입현황,
여성위원 현황
4.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내역(동별 회의일시, 총원, 참석현황, 수당지급현황
5.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 자생단체 현황,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각 단체별 사업실시 현황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정산서 별도 제출
6. 민주평통북구협의회 현황관련
- 명단(회원경력포함), 직업(소속단체), 사업추진내용 및 결과,
예산지원 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자부담 포함)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정산서 별도 제출
7. 구청장 동순회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
8.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운영상황
9. 지역별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 세부현황
10. 동별 예산 집행현황(동별 취합)
11.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세부 사업별로 작성)
<table>
<tr><th>공 사 명
(사업명)</th><th>사업개요(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th><th>사업비</th><th>시공업체</th><th>비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r>
</table>
12. 교육진흥재단 관련
- 해산하고자 하는 사유, 해산관련 추진상황,
조성 출연금 운영계획, 향후 재단 운영계획 등
- 이사회명단, 이사회 회의자료, 재정현황
</td><td></td></tr>
</table>

(총무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주민참여과	13. 울산외고 설립지원 현황 및 추진상황 등 14. 주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15. 제3대학 운영 실적 (강사 및 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16.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7. 비문해 사업기관 현황 및 지원현황 18.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정산서 별도 제출 19.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 추진상황 20.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 전반 -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 정산서 별도 제출 -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실 운영 내역 21. 마을기업 발굴 육성 현황(예산지원 내역 포함)	

(총무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회계과</td><td>
1. 관급공사 계약현황 -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공사개요,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2. 공개입찰 계약현황
(공사 2,000만원이상, 물품·용역 2,000만원 이상)
<table>
<tr><th>부서명</th><th>일자</th><th>건명</th><th>사업량(수량)</th><th>예정가</th><th>낙찰가</th><th>낙찰율</th><th>입찰참여업체수</th><th>낙찰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수의계약 현황
- 부서명, 일자, 공사명, 예산액,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4.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5. 체불임금 없는 관공사 조례 시행 이후 추진실적 및 임금지불 서약서 사본
6. 보건소 옆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 추진상황
7.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현황
(대상자, 지번, 지목, 면적 등 포함)
8. 공유 재산 취득현황(구소유 - 토지, 건물)
<table>
<tr><th>품 명</th><th>취득일</th><th>취득방법</th><th>취득가격</th><th>취득목적</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9.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실적
10. 청사 환경개선 추진실적
- 사업명, 기간, 내역, 소요예산 등
11.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12. 구청사 개보수 내역
<table>
<tr><th>사업명</th><th>사업기간</th><th>사업내역</th><th>사업비</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3. 구청사 냉방기 가동실적(가동 온도 기준, 지침 포함)
14. 구청사,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5개소
- 청소 위탁 현황, 입찰내역
- 청사 내 실내화단 관리업체 관리비 내역
</td><td></td></tr>
</table>

(총무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문화체육과</td><td>1. 축제 및 문화행사 (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현황,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2. 쇠부리문화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별도 제출, 향후 사업운영 계획(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쇠부리 문화축제 평가보고회 회의록
3. 각종 공연. 전시행사 개최현황
4. 농소큰사랑 작은 음악회 개최현황
(회원수 등 현황, 개최일시, 예산지원 내역, 집행내역 등)
5. 천곡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
6. 강동사랑길 세부 조성내역(예산집행내역 포함-자재비,노무비, 홍보비 등), 개통 전 월 이용자와 개통 후 이용자 비교
7. 여행 바우처사업 추진실적
8.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지원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정산서 별도 제출
9. 강동해변 물놀이장(바다 수영장 포함) 운영실적
10. 문화재 지정현황 및 정비실적
11. 달천철장 관광자원화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12.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현황(추진사항)
13. 북구청소년 통일축구대회
(개최일시, 참여인원, 예산지원 내역, 집행내역 등)
14.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
(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15. 사격부 예산집행 현황
- 인건비, 운영비 세부내역 및 운영비 영수증 사본
- 사격부 명단, 주소
- 울산 구군 체육특기종목 지원현황
16. 운동장별 대여현황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도표로 작성
17.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
(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18. 2010년도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정산서 별도 제출</td><td></td></tr>
</table>

(총무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체육과	19. 생활체육회 운영비 - 보조금 지출 일자별 세부내역 ※정산서 별도 제출 20.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운영 현황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현황 21. 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 집행현황 포함),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현황 22. 오토밸리 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 종목별 프로그램 현황 및 세목별 예산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등 -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 복지센터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총무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서관과	1. 각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 세부 편성예산 - 하루평균 이용자수 - 도서(장서) 보유현황 - 인력현황(일반직 공무원, 사서직 공무원, 상용, 기간제 자원봉사자, 사서 자격증 보유여부 등) -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 참여자 현황, 소요예산 2. 중앙도서관, 권역별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포함) 3. 작은 도서관 조성 현황 및 지원 내역 (정산서 별도 제출)	

(총무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세 무 과</td><td>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 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총괄)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table>
<tr><th colspan="2">체 납 자</th><th colspan="3">결손내역</th><th rowspan="2">결손처분
일자</th><th rowspan="2">결손사유</th></tr>
<tr><th>성명</th><th>주소</th><th>세목</th><th>부과연도</th><th>결손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td><td></td></tr>
</table>

(총무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민원지적과	1.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2.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 3.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운영실적 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1일평균)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무인발급기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중단횟수,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6.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7.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 8.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현황 9.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 10. 여권발급 실적(전년도, 월별 비교), 여권발급 배치인력 현황	

(복지경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복지지원과</td><td>1.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2. 보훈단체 지원 현황, 예산 지원 현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정산서 별도 제출
3.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내역
(일시, 지원내용, 대상자 수,지원금액)
4.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현황
5. 긴급생계자금 신청자 현황 및 지원현황(금액 등)
6.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11년도 사업계획, 사업목표, 예산지원현황
- 금년도 사업실적(2009, 2010, 2011년도 비교작성)
- 총수익금
- 수익금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 교육실적, 교육내용, 기대효과
- 청소년자활지원관 참여청소년현황(명단), 사업성과, 일일업무현황, 월별사업현황, 봉사자현황
7. 자활인큐베이팅 사업단 추진상황
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사업) 운영실적
9.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10. (사)행복발전소 기부금 및 물품 기탁내역
11.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실적, 예산지원 내역</td><td></td></tr>
</table>

(복지경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복지과	1.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2. 경로당 현황, 경로당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급내역, 각종 물품 구입지원 내역 (세부 단가 포함) 3.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 (세부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4. 노인복지회관 시설현황, 일 이용인원,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5.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6.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련 7.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참가인원, 나이, 사업내용 등) 8.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 종사자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현황, 근무시간 등 9. 2011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 예산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 사업내역 10. 북구여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정산서 별도 제출 11. 아동 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 추진계획, 지역연대 기구 구성 현황, 역할, 사업비 내역, 사업현황 12. 어린이날 행사 세부 사업내용 및 평가결과, 정산서 별도 제출 13.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현황 14.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15. 한부모가족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관련사업 16. 한부모가족 동별 간담회 이후 추진사항 17. 다문화가족 현황(자녀연령 등), 예산지원, 지원사업현황, 중점 추진시책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시설 이용자 현황 18.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사업 - 동별 현황, 지원 현황, 사업 실적 19. 저출산 대책관련 추진사업 현황 20.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민교육현황, 강사, 참가자 현황 등	

(복지경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사회복지과</td><td>21.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 및 대상지역 선정기준, 향후시설 확충 계획
22. 보육시설 관련
- 24시간 보육시설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북구 관내 보육시설 현황
- 시간연장형 야간 보육시설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23. “행복만남”어린이집, 경로당 사업 현황
24.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현황
- 보조금, 성금품 및 기타 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 신청대상자 현황 및 지정인원
- 기초노령지급에 따른 인력지원내역(인원, 사역기간, 소요예산)
25. 관내 장애인 현황(장애등급별) 및 예산지원현황, 자립생활 지원현황,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26.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 기본현황
- 구청 자체 점검결과 및 지회 감사결과(2010~2011년도
- 직원현황(작성일 현재)
<table><tr><td>성명</td><td>나이(성별</td><td>부양가족수</td><td>장애유형</td><td>장애등급</td><td>월 평균임금</td><td>비고</td></tr><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생산단가, 생산량, 판매단가, 판매량(2010~2011년도) : 비누 생산분만 작성
- 손이익 현황(2010~2011년도)
- 자원봉사 현황(2010~2011년도)
- 시설운영 위원회 회의록(2010~2011년도)
-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처(2010~2011년도)
- 고용장려금, 인건비 등 각종 예산 지원현황</td><td></td></tr>
</table>

(복지경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사회복지과</td><td>27.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현황 ※시설별 구분 작성
- 기본 현황 <서식 적의 조정>
<table><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지체</td><td colspan="3">지적장애</td><td colspan="3">정신장애</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2011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현황
- 2011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
- 시설이용자, 종사자 연간 교육내용
28. 2011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 현황 및 내역
- 장애아 아동수, 전담보육시설이용수, 미이용아동수 및 그 사유
- 민원 및 문제점, 만족도
- 총수익금(후원금 포함),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29.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 추진실적
30.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현황 및 이용현황(일, 월 평균
31.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32.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사업
3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내역
34. 청소년 비행 예방 선도활동 내역
35.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내역
36. 청소년 지원센타 관련
- 월별 상담실적
<table><tr><td>상담내용별</td><td>1월</td><td>2월</td><td>3월</td><td>.....</td></tr><tr><td>성적</td><td></td><td></td><td></td><td></td></tr><tr><td>친구</td><td></td><td></td><td></td><td></td></tr><tr><td>가정</td><td></td><td></td><td></td><td></td></tr><tr><td>가출</td><td></td><td></td><td></td><td></td></tr><tr><td>부적응</td><td></td><td></td><td></td><td></td></tr><tr><td>기타</td><td></td><td></td><td></td><td></td></tr></table></td><td></td></tr>
</table>

(복지경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사회복지과</td><td>
※ 상담내용별은 예시이므로 실제 상담내용별로 구분 작성
- 상담 후 처리결과(상담일지 참조)
<table>
<tr><td>상담일지별</td><td>1월</td><td>2월</td><td>3월</td><td>.....</td></tr>
<tr><td>법률연계</td><td></td><td></td><td></td><td></td></tr>
<tr><td>학교연계</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상담내용별은 예시이므로 실제 상담내용별로 구분 작성
- 사례별 지속상담(10회 이상)관리 내담자수
<table>
<tr><td>사례별</td><td>내담자수</td><td>처리결과</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긴급위기상담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여부와 사례
- 센타 종사자 현황
<table>
<tr><td>종사자명</td><td>근무년수</td><td>자격증</td><td>학력</td><td>업무분장</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특별지원대상자 청소년과 연계나 지원사업여부(상담 등
37.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현황 및 실적
38. 청소년 축제 관련 사업내역 및 실적
39. 청소년위원회 위원회 개최현황, 개최목적 등 회의록
40. 청소년참여위원회 역할, 구성명단, 위원회 개최 관련 시기 및 자료와 관련 회의록
</td><td></td></tr>
</table>

(복지경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경 제 일자리과	1.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예산지원 현황 등 2.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추진상황 및 관련 민원처리상황 등 3. 해외우호도시 선정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실적 4.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5.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관련 지원사업 현황 6.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현황(상담 및 지원사업) 7. 노사정구민협의회 현황,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회의 자료, 명단, 소속 8.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실적, 상담실적, 상담 후 조치결과 (조례제정 이전과 비교 데이터 포함) 9. 종합일자리 정보센터 운영 실적 10.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립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11.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인력 분석현황 (동별,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세대주 유무 등 도표 작성 12. 일자리 창출실적 및 일자리 연계사업(지원) 추진실적 13. (예비적)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현황, 지원내역, 관련사업 현황	

(복지경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위생과	1.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2.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3.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 및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4.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현황(개소수 현황 포함) - 관리업체 입찰가격/수의가격 -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개선공사)비용 내역 (2009, 2010, 2011년도 비교작성) 5.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공사 추진현황 6.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7.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점검현황 (기준 오염표 비교) 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9. 가축분뇨 배출량과 처리방법 10. 1하천살리기운동 참가단체 지원현황, 사업내용 11.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실적 12. 지방하천 수질개선 비교결과 보고 - (2009, 2010, 2011년도 작성) 13.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현황, 추진결과 (수질개선효과 등 결과치 분석내용) - 사업일, 대상, 사업내용 포함 ※ 수성천 수질개선을 위한 추진상황 별도 작성 14.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EMS) 추진내역 15.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업소명, 위치표시) 16. 관내 음식점 남은 음식 줄이기 추진실적 - 음식물 싸주기, 모범 식단, 도시락용기보급 등 ※모범음식점 포함 17. 게임장 현황 및 단속실적, 처리결과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현황 포함) 18.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복지경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위생과	19.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도표) 최근 3년(2009년 ~ 2011년) 업소명, 단속일시, 적발내용, 조치결과 등 20. 위생관리 도우미 운영현황 및 실적 21.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실적(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22.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내역 기타현황	

(복지경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미화과	1. 기본 현황(2011. 9월말 현재) - 청소대행업체 계약 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 직영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 환경미화원 포함) 2. 환경미화원 정·현원(2011년도) 및 담당구역현황 3. 청소전방지휘소 현황(휴식 공간, 샤워시설 등) 4.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 종량제 봉투관련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결과, 대책 5. 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구입내역, 운영비, 청소노선, 월별 주행거리 등) 6.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 포함 (과태료 부과내역 등) 7.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8.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련(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포함) -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정 용역보고서(2010~2011)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2010~2011)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직원현황 (2010~2011) -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현황(2010~2011) - 대행업체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 조치결과 10.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 -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비용 -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방법 11. 음식물쓰레기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향후 계획 (2009. 2010. 2011 년도별, 월별 비교) ※ 3개년도 월별 음식물 발생량 변동 추이 포함	

(복지경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환경미화과</td><td><'○○년도>
<table>
<tr><td>구 분</td><td>계</td><td>1월</td><td>2월</td><td>…</td><td></td></tr>
<tr><td>아파트</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식당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주 택</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2. 음식물폐기물 시범지역 추진상황 및 민원발생 내용 등
13. 재활용품 선별장 및 재활용 교환판매장 관련
- 위탁 실적현황 (기간, 업체명, 위탁금액)
- 입찰계약서, 입찰조건, 인건비, 소요인력
- 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
(매출실적, 예산지원 현황, 이용자수)
- 교환판매장 수익 비교현황(2008, 2009, 2010, 2011작성)
- 재활용품 선별장 수익현황
- 재활용품 수거실적(2008, 2009, 2010, 2011년 작성), 처리내역
- 선별장내 구청 자산 목록(구입시기, 내구연한, 구입비 등)
- 재활용품별 가격 산정단가(폐지, 공병, 플라스틱, 캔 등)
14.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 수집상 현황
15.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실적(동별, 성상별 분류)
16.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내역(제작업체), 배포현황(동별)</td><td></td></tr>
</table>

(건설도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건설방재과</td><td>1. 가로등·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table>
<tr><th>민원접수일</th><th>내 용</th><th>처리결과</th><th>완료일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4. 미불용지 보상현황 및 추진계획
5.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 자전거 도로 내 체육시설 설치내역 포함
6.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7. 공용자전거 구입내역(단가, 구입대수), 부서별 이용실적,
현재 이용실태, 관리현황(분실대수, 현재대수)
※ 휴일 관리방법 포함
8.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현황
(처리건수, 처리결과, 상해현황)
9. 소방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10.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11. 동천 보 현황
12. 동천 하상정비공사 현황(준설모래 처리현황 포함)
13. 동천강변 내 각종 식재현황, 예산 집행내역 및 현재 생존율
14.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15.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상황
(사업개요, 추진상황, 당초계획과의 변경된 사항,
향후 계획 등)
16.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7. 미개설 오수관로 현황 및 추진계획
18.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일시, 구성현황(조직도), 운영실적, 예산집행실적 등</td><td></td></tr>
</table>

(건설도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설방재과	19. 제설장비 현황 및 설해대비 추진실적 20. 수방 장비 및 자재 보유현황 21.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 구 자체 판단 위험 취약지역 포함 22.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우수기 대비 예방사업 실적 포함 23.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후 그에 따른 추진상황 24.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현황 25. 오토밸리 2공구 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유관기관 협조)	

(건설도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시녹지과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2.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현황, 민원현황 및 지원실적 3. 도시계획수립 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6.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7. 산불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현황 - 세부 추진사항, 소요예산, 산불감시시설현황, 산불발생 현황 - 산불예방 대비책 - 산불진화 장비 현황(구입시기, 장비명, 구입비용) 8. 조림, 임도,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세부추진 현황 (예산집행 포함) 9. 숲길 관리 작업단 운영현황 10.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 현황 11. 관내 등산로 개설 및 정비현황 (세부내역, 예산 투입내역 포함) 12. 관내 차나무 식재현황, 예산집행내역, 식재 후 생존본수 등 13. 공원 현황 (위치, 시설현황, 개·보수내역-소요예산포함, 관리대장) 14.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향후 조성계획 ※ 공원 특색화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포함 15. 공원시설물 보수 정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 (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17.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8. 가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별도 제출 ※ 투입인력 현황(채용방법), 전시회 후 꽃 활용현황	

(건설도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시녹지과	19. 도심녹화사업, 도시벽면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계획 20. 가로수 식재,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 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포함 21.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 현황 (세부 소요예산, 자문회의 개최결과, 회의록 사본, 국시비 보조금 신청 내역 및 확보내역 등)	

(건설도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교통행정과</td><td>1.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및 설치 현황
2. 주정차단속 실적 및 민원해소 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단속)
※ 행정처분 실적 포함
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추진실적, 소요예산 등 포함)
4.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5. 짜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내집주차장 설치 현황
6.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현황 및 단속현황, 행정처분 실적
<table>
<tr><th>연번</th><th>사업자</th><th>차고소재지</th><th>차고지
면 적</th><th>용도</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월별 실적 통계자료 포함
7.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사업 실적, CCTV 현황 및 설치실적 등
8.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
9. 관내 차선규제봉(탄력봉) 설치 현황
<table>
<tr><th>설치일</th><th>대상지</th><th>설치내역</th><th>소요예산</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건설도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축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4.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5. 건축허가관련 민원발생내역 및 조치현황 6.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7.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현황 8. 명성요양원 건축허가 개요,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로 개설관련 검토사항 9.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그간 세부 진행사항, 소송 대응 방안 10.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 (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1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일시, 공동주택명, 지원내용, 지원비용 포함 12. 미분양 아파트 현황(2011. 9. 30현재) 13. 평창리비에르 지반침하에 대한 재난대비 분석.평가 여부. 대책수립 현황 및 추진계획 14. 한신공영(천곡동) 아파트 부지와 아이파크 1차 부지 경계에 토목 공사(절토)로 발생하는 위험에 따른 공사내용 (옹벽, 공법 등) 15.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16. 주민참여형 아름다운거리 조성 현황	

(건설도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농수산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농업인 복지지원 내역 (일시, 지원내용, 수급자, 지원금액) 4.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5.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6.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7. 관내 저수지 유료낚시터 현황 8. 후계농업인 육성 및 관리실적(후계농업인수 포함) 9.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0.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시책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전체적으로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친환경 농가수 현황, 친환경 농가 지원현황, 계절별 작물재배 현황, 물량수 포함 - 유기질성분 비료 생산농가, 생산량, 지원실적, 평가현황 11.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12. 재해위험지구 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13. “구”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실태 14.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별도 제출 15.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16.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7.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생산실적(위치, 생산량 표기) 18. 축산경쟁력강화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19. 구제역 예방활동 추진상황 20.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21.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건설도시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농수산과	22.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따른 예산지원 내역 이용 현황, 수익금 현황 23. 2단계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세부현황 (예산집행내역 포함) - 당사해상낚시공원 등 사업 전반 24.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 (농가수익증대, 판매실적, 육우 품질 향상 여부 등 포함 25.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현황 26.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 추진현황 27. 강동해안 익사사고 현황(최근 5년간), 구 차원의 예방대책 추진상황 28.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 집행내역 - 학교별 세부지원내역(정산서 별도 제출) -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적 (각종 간담회 포함)	

(보 건 소)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1.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①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②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진료실적, 예산 내역 - 진료실적을 건강보험적용인구, 의료급여수급자 이용 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 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2. 보건소 단위사업별 인력 배치 현황 - 법정사업별 필수인력 표시 - 최근 5년간 보건소 인력 확충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3. 약품 관리현황 (입불출 기록 및 재고현황, 단가, 금액, 유통기한 등) ※ 영양제 입고내역(예산 포함) 및 불출내역 포함 4. 고혈압 치료제 구입현황, 구입단가, 구입처, 복용자수 (타 제약회사와 비교)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구입 및 접종 실적 7. 방역장비 현황 , 방역실적 및 대책 8.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9.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내역 10. 저출산 대책수립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 임산부 지원현황 포함 11. 2자녀·3자녀,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12. 산모, 신생아 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실적 (예산집행/신청자수)	

(보 건 소)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13. 암치료비 지원 실적 14.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록현황, 대상자선정 기준 15.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장애인 출산 지원내역 16. 관내 아동 예방접종 지원 현황 - 만12세까지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종류 - 보건소 지원 관내 예방접종 대상자 및 수혜자 수 -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현황 및 지원 현황(병의원 포함), 시행이전과 비교실적, 이용자홍보실적, 관리대상자수 - 전체 접종 건수 중 보건소 이용건수 - 타 지자체 예방접종 현황 17.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추진실적 18. 아토피클리닉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19.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운영 현황 20. 장애아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 21.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이용정원, 프로그램 내역, 향후 운용계획 프로그램 22. 행복플러스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 23.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현황(건강생활실천사업 포함 24. 정신보건사업 추진상황 25.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추진 현황 26.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 및 부수, 내용 등 27. 구강보건실 운영실적 ※ 2011 여름방학 중 구강검진 사업 추진실적 포함	

(의회사무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의회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3. 조례 제·개정 의원발의 총괄 현황 4. 의원 청가서 및 결석계 제출 현황	

제6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의 목적

○ 2011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11. 11. 22 ~ 2011. 11. 30(9일간)

4.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5.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안 승 찬	정 윤 석	이 홍 걸 윤 치 용 이 수 선 강 진 희 이 혜 경	김 종 구 강 우 송	이 동 희

② 감사일시 및 장소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1. 11. 22(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ㅇ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ㅇ **기획홍보실** ㅇ **총무국** • 총무과	
2011. 11. 23(수)	10:00	〃	ㅇ **총무국** • 주민참여과 • 회계과	
2011. 11. 24(목)	10:00	〃	ㅇ **총무국**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2011. 11. 25(금)	11:00	〃	ㅇ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경제일자리과	
2011. 11. 26(토)			**휴회**	
2011. 11. 27(일)			**휴회**	
2011. 11. 28(월)	10:00	〃	ㅇ **복지경제국**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ㅇ **보건소**	
2011. 11. 29(화)	11:00	〃	ㅇ **건설도시국** • 건설방재과 • 도시녹지과 • 교통행정과	
2011. 11. 30(수)	10:00	〃	ㅇ **건설도시국** •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ㅇ **의회사무과**	

③ 감사방법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감사첫날 관계공무원 합동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361	34(구청장 포함)	
공 통 사 항	20		
기 획 홍 보 실	22	1	
총 무 국	86	17(동장 8)	
복 지 경 제 국	103	6	
건 설 도 시 국	99	7	
보 건 소	27	2	
의 회 사 무 과	4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02**	**42**	**60**
공 통 사 항	7	4	3
기 획 홍 보 실	5	3	2
총 무 국	29	14	15
복 지 경 제 국	32	13	19
건 설 도 시 국	25	7	18
보 건 소	4	1	3
의 회 사 무 과	·	·	·

6. 감사결과

공통사항

시정요구

① 각종 위원회 정비 철저

-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정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요망.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실제 회의 개최가 필요함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 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는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회가 다수 있으므로 위원회 성격에 적합한 위원으로 위촉하기 바람.
- 일부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 참여 비율과 위촉직 구성 비율이 너무 낮은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구성, 회의 개최 주기 등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위원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방법 및 정산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고, 정산 시 당초 계획과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물품 구입이 없었는지, 증빙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등 제출된 정산서에 대해 철저한 정산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③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구 청사, 보건소, 체육센터 등 우리 구 청사 내·외 각종 안내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결과 일부 불합리하거나 편의시설이 법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있으므로 장애인이 실제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보완·개선하고, 향후 신축 계획 중인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화장실로 설치 검토 바람.

④ 관용차량 관리 철저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구청 일부 부서의 경우 차량운행 일지가 실제 운행내용과 다르게 작성되고 있고, 3~4일간의 운행상황을 한꺼번에 작성하거나 차량관리 시 점검, 정비 등이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담당자 지정을 통한 차량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기간제근로자의 구민 채용 건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동등한 자격조건이라면 구민 중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② 각종 물품 활용

동 청사 개청에 따라 신규 물품 구매 시 기존의 불용 처리되는 물품과 각 부서별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자율방범대 등 봉사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어린이 놀이시설 등 시설물 소관부서 일원화 검토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화장실의 경우 설치 장소별로 그 소관부서가 상이함에 따라 민원인 입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환경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제 조사 후 일괄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각종 위원회 정비 철저

-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정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요망.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실제 회의 개최가 필요함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 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는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회가 다수 있으므로 위원회 성격에 적합한 위원으로 위촉하기 바람.
- 일부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 참여 비율과 위촉직 구성 비율이 너무 낮은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구성, 회의 개최 주기 등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위원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위원회 총괄부서인 기획홍보실은 정기적으로 부서별 이행사항을 점검 바람.

②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방법 및 정산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고 정산 시 당초 계획과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물품 구입이 없었는지, 증빙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등 제출된 정산서에 대해 철저한 정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기 바람.

③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배치

최근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적정한 인력 배치가 안 되어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부서 업무분장에 대해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력 배치로 보다 효율적인 기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건의사항

① 현장민원 즉시처리 기동팀 운영 검토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각 부서의 즉시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 적기에 처리되지 않거나 타 부서, 타 기관의 업무라는 이유로 인해 현장 민원업무 처리가 지체되는 등 민원인에게 혼선 및 불편을 끼치고 있음. 과거 운영한 120민원 기동대 운영 경험을 토대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현장민원 및 간단한 시설물 유지보수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 바람.

②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 구는 그간 7년간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므로 보조 사업비에 대한 심의대상 포함, 지역회의에 대한 일정부분 예산 배분, 시민위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검토, 시민위원에 대한 예산 반영 결과 공지 등의 시책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총 무 국

1. 총무과

시정요구

①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사용 적극 권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사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 분석을 통해 본인 의지에 따라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바람.

② **공익근무요원 교육 철저**

일선 사회복지기관 및 부서에 배치된 공익요원에 대하여 월1회 이상 등 주기적인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친절한 대민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공무원의 고충 상담제 내실 운영**

업무상 고충이 있는 직원이 상급자와의 대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충 상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업무상 고민이 있는 직원이 부담 없이 고충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가칭 '직원고충 상담처리 위원회' 운영 등 상설적이고 제도적 장치마련을 검토바람.

② **방사능 관련 자체 대책 마련 검토**

원전으로 둘러싸인 우리 지역은 만일의 사태 시 방사능으로부터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장기적으로 환경방사선 측정

소 설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우선적으로 방사선 측정 장비 구입을 검토하고, 갑상선 방호약품, 방독면 구입 및 원전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실시를 검토하기 바람.

③ 기간제근로자의 구민 채용 건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동등한 자격조건이라면 구민 중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총괄하여 주시기 바람.

2. 주민참여과

시정요구

① 동간 일부 행정구역 개선

농소지역 일부 지역(중산동, 천곡동, 신천동, 상안동, 창평동 등)에 있어 동천강을 경계로 법정동 및 행정동 간 구획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제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②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

- 일부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마인드 부족, 직능단체 회원 및 특정 직능단체 회원이 많은 수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활동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음. 위원 구성에 있어 동별 회칙이 상이하므로 운영세칙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기 바라며, 직능단체, 통장보다는 전문성과 활동력이 높은 다양한 계층을 발굴하여 위촉하기 바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마을 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여 주시고, 청소년 대

상 문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야간·주말에도 직장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매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시 경연대회 위주보다는 특화되고 모범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매달 개최됨에도 각종 행사 홍보 등 단순한 회의 수준에 머무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및 위원 활동에 대한 모범적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을 검토 바람.

③ 교육경비 지원 개선

-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조례에는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자부담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책임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부분 자부담 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자체적으로 권장사업을 마련하는 등 교육경비 사업 목적에 맞도록 학교별 지원사업을 선정하기 바람.
- 유치원의 경우 사업내용이 단순한 기기 구입에 불과하여 사업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경비 지원의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사업 시행 후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또한, 당초 사업계획서와 정산결과 사업실적과 차이가 있으므로 정산서대로 완료되었는지 등 정산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④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 개선

- 동장 포괄사업비에 있어 동 청사 유지보수 위주로 사업비가 집행된 사례가 있으므로 구청 예산지원을 통한 사업시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 즉시 처리가 가능한 긴급사항 등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 동 청사 유지보수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② 각종 물품 활용

동 청사 개청에 따라 신규 물품 구매 시 기존의 불용 처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자율방범대 등 봉사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 검토 바람.

② 동 행정서비스 강화

민원인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보다 친절한 응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복지상담실 운영을 동 운영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주민 활용도가 다소 낮으므로 복지상담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사회복지공무원의 적극적인 상담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③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사무국 통합 운영 검토

예산 절감 및 업무에 대한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사무국을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바람.

3. 회계과

시정요구

① 관용차량 관리 철저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지도·점검한 실적이 없는 등 지도 점검은 물론 차량 기록은 관용차량관리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 총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③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구 청사, 보건소, 체육센터 등 우리 구 청사 내·외 각종 안내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결과 일부 불합리하거나 편의시설이 법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있으므로 장애인이 실제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보완·개선하고, 향후 신축 계획 중인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화장실로 설치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청소위탁 관련 노동자 복지 개선 검토

- 전국적으로 공공부문 청소 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결과 임금, 고용상태 등 근로 조건이 열악한 상태로 조사되었음. 이에 우리 구의 경우에도 생계형 노동자로서 임금 또한 열악한 수준이므로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을 통한 실제 계약 시 임금을 인상하거나 복리후생비 지급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또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휴게실, 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 또는 기존의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이 개정 예정에 따라 우리 구 청사 청소위탁업체의 노동자에 대해 관련 법 개정내용에 맞도록 검토 바람

② 청사 출입 차량 관제시스템 위치 개선 검토

- 청사 출입 차량 관제시스템 차단기 위치가 진입로 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주차권 발급 등 이용에 불편하므로 개선 검토하기 바람.

4. 문화체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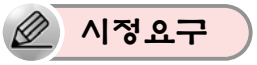

① 문화원 시설 개선 및 각종 사업 내실 추진

- 구 송정동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사용 중인 북구 문화원이 노후되어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음. 옥상 누수로 백화 현상에 따른 조치, 고목 전지작업, 전통춤 연구회 운영에 따른 소음 차단, 원활한 물 공급 등 북구 문화원 지원을 검토바람.
- 북구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북구 문화', '북구 지명사'의 내용이 타 문화원 발간집과 대비하여 그 내용이 부실하며, 보다 알찬 내용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북구 문화원과의 협조를 통해 향후 보완하기 바람.
-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불합리한 지출이 없도록 고유사업 목적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행정지도 및 지원을 강화하기 바람.
- 기박산성 의병제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할 것.

② 강동사랑길 스토리텔링 저자와의 저작권 관리

강동사랑길 책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로 인해 보다 많은 구민에게 배부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니, 향후 홍보책자 발간 시 유의하여 주시고, 저자의 판권과 관련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 동의를 받기 바람.

건의사항

① 바다수영장 운영 개선

올해 바다수영장 운영 결과 일부 보완사항이 필요함. 바다수영장의 수질 확보, 음수대 추가 확보, 공기주입기 추가 확보, 탈의장 및 샤워실내 모래 배출 시설 확보, 배출 쓰레기 적기 처리, 안전요원과 관리요원의 적정선 확보 등을 통해 향후 바다수영장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② 생활체육회 운영관련 건의

자체 정관에 따르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 이사회 및 광역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 생활체육회 회장이 임명하는 사항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상임이사회 위주의 운영 등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동 생활체육회장이 이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노력하기 바람.

③ 쇠부리 축제 내실 운영

우리 구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쇠부리축제 행사 진행과정에 어린이 공연 순서 등 매끄럽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주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하여 주시고, 쇠부리 불씨 점화 행사를 봉송행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아이템 개발 및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주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④ 여행바우처 사업 활성화

대상자가 실제 여행 시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건의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4. 도서관과

시정요구

① 도서 교환 및 기증운동 확대 시행 검토

올해 시범으로 실시한 농소1동 도서관의 도서교환전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므로 가정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도서에 대한 교환행사나 도서 기증 행사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② 도서관 각종 행사 적극 홍보

- 독서의 달, 문화프로그램 등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가 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도서관 인근 주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
- 북스타트 행사의 경우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홍보함과 아울러 다문화가정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건의사항

① 도서관 건립 관련 등

- 매곡지역에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이 입주됨에 따라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도서관 조기 건립을 건의함.
- 송정·화봉지역의 경우 인근에 중앙도서관이 있지만 철도 시설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므로 송정·화봉지역에도 공공도서관 건립을 건의함.

② 도서관 시설 개선 건의

- 기적의 도서관 시설 노후 및 협소, 햇빛으로 인해 적정한 실내 온도 유지의 어려움 등이 있으므로 어린이 도서관답게 꾸밀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거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일반 주민이 도서 검색 및 일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서관내 일반컴퓨터 설치를 검토 바람.
- 자원봉사자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작은도서관 지원 개선 건의

- 금년부터 실시한 작은 도서관 지원에 있어, 향후 사무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예산 지원을 함에 있어 적기에 신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월별 지원을 건의함.

5. 세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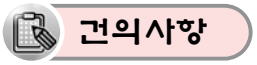

① 체납세 징수활동 철저

지방세 부과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부과 단계부터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체납세 발생 시 특별 대책반 구성 등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시효소멸이전에 정리하기 바람.

6.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검토**

관내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 장소별로 이용실적이 차이가 많으므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차원에서 이용실적이 낮은 민원발급기에 대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로 이전방안을 검토 바람.

복지경제국

1. 복지지원과

시정요구

① **자원봉사 홈타운 내실 운영**

현재 18호점까지 개소된 자원봉사 홈타운 운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활동내용 또한 대부분 공동주택 내 환경정화 활동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활동범위를 마을 전체로 확대함과 아울러 모범적인 매뉴얼 개발, 권장 사업 등을 마련하여 보다 활성화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고헌 박상진의사, 정임석열사 추모사업 행정지원**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홈페이지 검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개선하기 바라며, 정임석열사 추모사업회 보조금 통장 명의 변경 및 보조금 정산에 보다 철저를 기해주시고, 우리 지역의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들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람.

② 보훈단체 지원 강화

금회 실시한 고령회원 위로연 행사가 통합으로 운영된 점은 모범적인 사례이므로 향후 현충탑 참배, 전직지 순례행사 등에 대해서도 통합 운영을 검토바라며, 노령에 따라 갈수록 회원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차원의 많은 지원을 검토 바람.

③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 활성화

울산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의 보다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지원이 필요하며, 홍보 부족에 따른 빈곤 청소년의 자활지원 실적이 낮으므로 설립 취지에 맞도록 위상 강화는 물론 이용자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운영과 시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④ 각종 기부금 균등 배분

각계 각층에서 기부되는 금품을 관내 사회복지단체 등에 배분함에 있어 균등하게 배분하여 주시고,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과 거리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쌀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⑤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진입하기 위해 센터장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 판로 개척이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람.

2.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여성정책 기본시책 내실 수립 추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사업’에 있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

리사업 추진실적과는 다소 맞지 않으며,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사업' 또한 추진실적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며, '여성의 건강보호사업'의 경우 갱년기여성 등 장년 여성층에 대한 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여성정책 기본시책 수립 시 우리 구 여성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여성정책 기본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②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이 적어 시설운용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 확보를 통한 상근 근무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연계 방안 마련 건의
- 지역아동센터 대상자 발굴을 위해 동 주민센터의 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개선 요망
- 종사자의 보수가 타 복지시설과 대비해서 열악하므로 복지사 자격수당 지급 건의
- 식비 적기 지원 건의
- 호계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시설 개선이 필요하므로 청소년 지원센터 입지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③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언어의 벽 해소, 안정적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임. 조례에는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속히 구성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④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 활성화

지역연대 기구 구성에 있어 교육청 관계자가 빠져 있으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에 있어 편성

비율에 비해 회의비가 다소 과다하므로 차후 별도로 위원회 수당을 확보하여 주시고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바람.

⑤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개선

- 국공립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급식에 있어 식단표와 다르게 급식을 제공하거나 월별로 편차가 심하며, 식재료 구입 내역에 없는 급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식단표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액이 시설 간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당 지급액이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수당 인상 등 적정수준이 되도록 예산 지원을 검토 바람.

⑥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개선

- 운영위원회 회의 시 참석한 본인이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함에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의 서명이 허위로 기록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조치하기 바람.
- 근로 장애인들에게 공정하게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통풍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성희롱 예방 교육에 있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 최근 보육시설이 많이 신설되어 교사 수급 차질 및 잦은 교체가 예상됨에 따라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시설 인가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보육 자격증을 대여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

도점검을 강화하고,
- 맞벌이 가정 등의 편의를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시간연장형 보육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② 단기보호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적정 운영 지원
- 단기보호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입소 상담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다소 불친절하고, 입소를 거부하는 인상을 준다는 여론이 있고, 시설 개방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 시설입소자 중 제도상의 이유로 기초수급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구에서 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 바람.

③ 노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최근 노인 및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적정 장소에 충전기를 보급하여 전동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 바람.

3. 경제일자리과

시정요구

① 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호계공설시장의 경우 그 사용료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2배 이상 인상되어 왔음에도 호계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향후 관내 시장에 대한 인정시장 등록, 점포운영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전사고 교육 철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시 안전교육 실시에 더욱 노력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②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강화

- 산업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해 전세 버스 등 순환버스 운행방안 강구
- 산업단지 내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바람.

4.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만전

-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수성천 등에 실시하였으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오폐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오폐수 방류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근 주택가 및 공장의 오폐수 투기예방 활동 실시 등으로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 호우 등 하천 유입량이 증가되면 EM활성액 등 약제 효과가 미약하므로 보완 검토 바람.

②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실효성 확보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에 있어 여러 단체의 참여가 환경정비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 하천살리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

정임. 오폐수 감시활동, 수생식물 식재, 바이오콜로니 투입에 따른 수질분석 활동 등 참여 단체의 자발적이고 세부 임무 부여를 통한 생활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철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전년도 대비 많이 발생되었고, 야생동물 출현으로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피해발생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포획 허가기간 연장 검토, 유해조수 구제반에 대한 예산지원, 지역 엽사 발굴 등 전문 인력 확충, 서식지 및 분포도 조사,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② 정수기 수질 점검 강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 정수기 수질 위생에 대해 보도된 바 있는데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우리 구 차원의 학교 정수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내 요식업소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기 바람.

③ 기타 건의사항

- 동천강 동편에 화장실 설치 건의
- 덕양산업 앞 하천 수질오염물질 조사 건의

④ 모범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건의

-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있어 위생, 청결 위주로 그 기준이 되어 있는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여

부 기준도 포함하여 그 지정 기준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한 업소에 대한 대민 홍보 건의

5.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환경미화원 지원 강화
- 지난 4. 27, 9. 28. 2차례 개최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므로 조속히 반영하시기 바람.
- 환경미화원의 적정 인원 충원, 청소 전방지휘소 개선, 효율적인 인력 배치, 안전교육 실시 등 환경미화원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개선

재활용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에 있어 그 대상자를 보다 다양화하고 PPT위주의 단순 전달 교육보다는 실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으로 개선하고 자체 평가를 통한 결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바람.

③ 청소용품 품질 등 개선
- 종량제 봉투를 묶는 부분의 비닐부분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 바 끈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단독세대용 재활용품 그물망 제작 사양 개선

건의사항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지역별 특성 반영

차량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

집·운반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므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구역 조정 등 향후 위탁계약 시 반영하기 바람.

②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적기 수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CCTV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투기 쓰레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 투기 쓰레기 단속 강화는 물론 주택가 등에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적기에 수거바라며,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 일정을 준수 바람.

③ 효문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 협조

효문공단 내 자동차 시트 폐기물 약 1만 6천톤이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어 2차 오염 등이 우려되며, 처리 주체가 모호한 상태이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토 바람.

④ 타 지자체 청소행정 서비스 도입 검토

- 로드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소각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전담반 운영 및 적정 처리하는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구에서 이러한 시책 도입을 검토 바람.
-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용기를 소독 세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 바람.

⑤ 중산동 목욕탕 건립 관련 당부

중산동 목욕탕 건립에 있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부지 면적이 다소 협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원활한 주차 등을 위해 인근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기에 매입하여 주민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건의함.

건설도시국

1. 건설방재과

시정요구

① 배수구 정비 철저

원활한 배수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된 배수구에 잡초, 오물 등으로 원활한 배수가 안 되므로 적기 환경정비로 개선 요망

② 자전거 보관대 정비

관내 자전거 보관대에 있어 도시 미관상 어울리지 않거나 사용 없이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 일제 조사 후 정비할 수 있도록 건의

건의사항

① 설해대책 추진 만전

지난 폭설에 따른 중점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 작성 및 염화칼슘 등 제설장비의 적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염화칼슘 보급에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 또는 공동구매를 통한 저가 구매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② 안전한 자전거 타기 정책 추진

자전거 사고로 상해보험 지급 건수가 많으므로 사고 원인별 분석 후 사고율을 낮추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안전한 자전거 타기 운동에 보다 많은 홍보를 하여 주시고, 자전거 도로 시설물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③ 송정수변공원 진입도로 개선

현재 조성계획중인 송정수변공원의 내방을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주 도로가 위치한 도로는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정부분 한계가 있겠지만 송정수변공원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원지마을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보수 또는 개설 등을 검토 바람.

④ 소방도로 개설공사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강구

각종 소방도로 개설 시 인근 현장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 제시 시 적극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바라며, 해당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구 바람.

⑤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외솔교 하부도로 배수처리 요망
- 병영교~삼일교 자전거 도로와 보도 분리개설 검토
- 이화마을 굴다리 높이가 낮아 안전사고 우려로 도로를 낮추는 방안 강구
- 폭우시 동천강 유입으로 제전뜰, 천곡뜰, 원동아파트 뒤편 배수 불량 및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가 발생되므로 간이 배수장 설치 검토
- 벽산블루밍아파트 도로(대동아파트 인접) 앞 토사 유출 방지 시설 설치 검토
- 신천초 앞 매곡천 보조교량 배수관(흄관) 배수 막힘 현상 발생 우려로 대책 마련
- 대동아파트 5단지 앞 샛길 보안등 설치 요망
- 효문공단 내부도로(율동마을, 산성마을 주도로)가 차도보다 인도가 낮아 주택지 침수우려, 인도 미확보 등으로 근본적인 개선 요망
- 동천 자전거대행진 대비 구간내 자전거도로 보완 개선
- 이화천 이화초교 근처 교량 보강

- 동천 서로 자전거 도로 일부구간 노면 상태 개선, 부지 옆 농작물 재배 단속
- 홈플러스 앞 도로 개보수(볼라드 개선, 가로수 개선)
- 홈플러스 건너편 주유소 주변 인도 정비
- 오토밸리로 2구간 북구청 방향 교통표지판 개선 건의
- 중산동 이화농협 건너편 속심이보 진입로 대로변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 건의
- 북구청에서 오토밸리로 진입부분 휴먼시아 방향에서 오는 직진 차량 차량진입 규제봉 설치 건의
- 달천동 그린카운티 3.4차@ 사이 과속 방지턱 설치 건의(교통행정과 협의사항)
- 쌍용아진 2차@ 앞 버스승차권판매소로 인해 보행자 통행 불편으로 철거나 이전 검토

2. 도시녹지과

시정요구

① 등산로 일부구간 정비

- 동대산(연지암 입구) 일원 목재테크 보수
- 동대산~무룡산 임도 배수로 정비
- 옥동~농소 간 도로 구간하부 천마산 등산로 통행박스 설치 건의

건의사항

① 주민참여를 통한 특색 있는 공원 조성 검토

기존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 내에 조성된 시설물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테마가 있고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기 바람.

② 사방댐 설치공사 등 각종 사업 주민 홍보

각종 주민 편의사업 및 산림보호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에게 사업 추진 배경 등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주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건의함.

③ 기타 건의사항

- 토질 분석 등을 통한 식재 수목 선정
- 소나무 재선충, 깍지벌레 확산 방지
- 자전거활성화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자전거관련 여성위원으로 위촉

3.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유료 공영주차장 대부료 산정 검토

관내 6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 대부료 산정에 있어 수탁자의 수입을 감안하여 대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농소지역 버스 노선 및 배차 확대 지속 건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농소지역은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버스 노선이 부족하므로 지속적으로 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를 늘려주시기를 시에 건의 바람.

② 연암제일교회 앞 곡각지점 횡단보도 이전 건의

여름철 가로수로 인한 시야 미확보, 곡각으로 인해 연암제일교회 앞 횡단보도 횡단 시 주행 차량에 의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건의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건의바람.

③ 기타 건의사항

- 달천동 그린카운티 3.4차@ 사이 단속카메라 등 설치(건설방재과 협의사항)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성격에 맞는 위원 위촉

4.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현대자동차 직원숙소 철거에 따른 인근 주택가 피해 방지

양정동 현대차 직원 숙소 철거에 따른 현대2차 아파트 주민의 소음, 비산먼지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입주민들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검토 바람.

② 건축공사 허가 전 제반사항 검토

각종 건축공사에 대한 허가 시 관련 법령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주민 의견 청취, 주민 정서, 지역 여건 등을 사전에 감안하여 허가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지원

옥상녹화를 위한 사업비를 건축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면 녹색건축물 활성화가 잘 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부분 구청에서 행정적 지원을 검토 바람.

② 공동주택 내 자전거보관 설치 관리 지원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자전거보관대 미설치로 주민 불편이 있고, 기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관리에도 애로가 있으므로 공동주택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지원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③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행정지원

관내 공동주택 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검사 및 보험가입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기 바람.

④ 한신공영아파트 토목공사 지도·점검 강화

아이파크 1차 부지 경계에 한신공영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에 따른 아이파크 1차 아파트 옹벽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 예방과 옹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CIP공법 및 각종 계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5.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당사 해상낚시공원 조성 진행상황 의회 보고

당사 해상낚시공원 조성에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지만 정작 의회에는 보고된 바 없으므로 향후 의회에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친환경 농·축산물 이용 홍보

친환경 농축산물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학부모, 학생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바람.

② 친환경 작목반 등 친환경 농가 육성 지원

친환경 농산물 지정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배 후 3년이 경과해야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되는 만큼, 농가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절실하므로 친환경 작목반 등 친환경 농가 육성 지원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③ 급식지원센터 공간 확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우리 구의 급식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센터 시설이 협소하는 등 열악한 실정이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통사항

시정요구

① 약품 관리 철저

보건소에서 구입 관리하고 있는 주요 약품에 있어 수요와 공급 주기를 충분히 감안하고 재고관리와 많은 양을 일시에 구입하거나 다량의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의 유통기한을 감안하여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간이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

간이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절반이 부적합으로 판정됨에 따라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수인성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위생과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② 보건소 방역 위탁 검토

동별 방역을 현재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사정에 밝은 자생단체에 위탁 여부를 장단점 검토 후 시행 검토 바람.

③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확대 실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중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좋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보다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제7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 2010. 7. 1. ~ 2011. 9. 30.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361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요구가 아닌 항구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여성아동 시책 추진, 일자리 유지·창출과 사회적 기업 육성, 녹색성장 등 국가시책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회단체보조금 등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제시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96건이며 시정 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60건으로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12년 2월 15일까지 보고하기 바람.

제8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시정·건의 요구사항 현황

구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추진중	완결	불가	소계	추진중	완결	불가
계	**96**	**36**	**23**	**13**	**0**	**60**	**35**	**21**	**4**
기획홍보실	5	3	3	0	0	2	2	0	0
총무국	29	12	7	5	0	17	8	7	2
총무과	5	2	1	1		3	1	2	
주민참여과	7	4	3	1		3	2		1
회계과	4	2		2		2		2	
문화체육과	6	2	1	1		4	1	2	1
도서관과	5	2	2			3	3		
세무과	1					1	1		
민원지적과	1					1		1	
복지경제국	32	13	11	2	0	19	11	8	0
복지지원과	6	1		1		5		5	
사회복지과	9	6	5	1		3	3		
경제일자리과	3	1	1			2	2		
환경위생과	6	2	2			4	3	1	
환경미화과	8	3	3			5	3	2	
건설도시국	26	7	2	5	0	19	11	6	2
건설방재과	8	2	1	1		6	2	3	1
도시녹지과	4	1	1			3		3	
교통행정과	4	1		1		3	2		1
건축주택과	6	2		2		4	4		
농수산과	4	1		1		3	3		
보건소	4	1	0	1	0	3	3	0	0
의회사무과	-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각종 위원회 정비 철저 •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촉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정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하도록 검토하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실제 회의 개최가 필요함에도 서면심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회의를 개최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바람. • 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는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회가 다수 있으므로 위원회 성격에 적합한 위원으로 위촉 바람. • 일부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 참여비율과 위촉직 구성비율이 너무 낮은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구성 ,회의 개최주기 등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위원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위원회 총괄부서인 기획홍보실은 정기적으로 부서별 이행사항을 점검 바람.	○위원 구성의 편중성을 해소하고자 다수위원회 (3개 초과) 활동 위원 정비 • 정비 대상 위원 소관부서 통보 • 임기만료 도래 시 소관부서 정비 추진 • 위원 위촉 시 사전협의 명시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및 유사기능 위원회 통합 검토 중이며,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자유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부서 통보 ○위원회 고유기능 및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위원 위촉 촉구 및 향후 위원 위촉 사전협의 시 적합 여부 상시 점검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율 30% 이상으로 위촉 추진 및 여성비율 부적합 위원회에 대해 위원 위촉 및 정비 시 권고율 반영하도록 조치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운영 철저 및 상시 정비 ○각종 위원회 분기별 점검으로 미이행 사항 관리 철저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 획 홍보실	시정 요구	**②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 •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예산을 지원 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방법 및 정산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고, 정산 시 당초계획과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물품 구입이 없었는지, 증빙서류가 제대로 첨부 되었는지 등 제출된 정산서에 대해 철저한 정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기 바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집합교육 실시 • 시기 : '12. 2월중 • 대상 : 사회단체 회계실무자 • 내용 : 정확한 정산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회계처리기준 및 시스템 교육 ○필요 시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정산 등 교육 실시 :수시 ○보조금정산검사 :매월 또는 매분기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사용실태 점검 • 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대상 : 보조사업 전체 • 내용 : 카드 및 시스템 이용도 제고 및 정산내역을 투명하게 관리 하여 부적정한 집행 사전 방지	추진중
		③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배치 • 최근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적정한 인력배치가 안되어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부서 업무분장에 대해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력배치로 보다 효율적인 기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조직 개편 시 부서업무 및 기구운영에 대하여 직원, 의회, 공무원노조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자체 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기구 운영과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획홍보실	건의사항	① 현장민원 즉시처리 기동팀 운영 검토 •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각 부서의 즉시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 적기에 처리되지 않거나 타 부서,타 기관의 업무라는 이유로 인해 현장 민원업무 처리가 지체되는 등 민원인에게 혼선 및 불편을 끼치고 있음 .과거 운영한 120민원 기동대 운영 경험을 토대로 즉시처리가 가능한 현장민원 및 간단한 시설물 유지보수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 바람.	○현장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기동대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토론회를 2회('11. 12. 9, '12. 1. 16) 개최한 결과, 운영에는 공감하지만 명확한 업무범위와 운용인력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협의 중에 있음. ○내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 구는 그간 7년간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므로 보조 사업비에 대한 심의대상 포함, 지역회의에 대한 일정부분 예산 배분 ,시민위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검토 ,시민위원에 대한 예산 반영 결과 공지 등의 시책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오는 재원이므로 분과위원회 우선순위를 정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시 삭감조정 등 적용하기가 어려움. ○동 지역회의 시 소규모 사업에 일정부분 예산배정 및 시민위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도입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자문 및 벤치마킹을 통해 지속 발굴토록 하겠음. ○예산반영 결과 공개는 구 홈페이지 및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책자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시정요구	①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사용 적극 권장**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사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 분석을 통해 본인 의지에 따라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 바람.	○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활성화 방안 수립 :총무과-2625(2012.01.31)** ○ **전 부서 보건휴가 활성화 방안 통지 : 총무과-2729(2012.2.1.)** • **활성화 방안** -여성공무원이 개인별 필요시 자율적으로 실시 협조 -매월 말 부서별 여성보건휴가 사용실적 제출 및 새올시스템 게시판 부서별 실적 공개 -부서장 평가 시 부서별 여성보건휴가 사용실적 반영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된 보건휴가 반려 금지 -보건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인계인수 ,비상연락망 구축 등에 만전 -2월중 전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건휴가 미사용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매월 부서별 사용실적 등을 점검하여 부진 부서에 대하여는 보건휴가 사용을 적극 독려하는 등 여성공무원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시정요구	② 공익근무요원 교육 철저 • 일선 사회복지기관 및 부서에 배치된 공익요원에 대하여 월1회 이상 등 주기적인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친절한 대민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2011. 12. 26 전 공익근무요원 대상으로 집합교육 실시 ○사회복지시설 등 원거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월1회 실시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업무공백 발생으로 공익근무요원 활용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구청 주관 집합교육은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근무지 부서장 주관교육을 월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근무지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건의사항	① 공무원의 고충 상담제 내실 운영 • 업무상 고충이 있는 직원이 상급자와의 대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충 상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업무상 고민이 있는 직원이 부담 없이 고충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가칭 '직원고충 상담처리 위원회' 운영 등 상설적이고 제도적 장치마련을 검토 바람.	○현재 인사행정시스템에 개인고충, 인사교류 및 전보희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사이버 상으로 인사고충 상담이 가능하며 직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인사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음. ○아울러 궁금한 인사제도 설명, 애로·건의사항 청취를 위하여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운영하고 있음. ※ 2011년 찾아가는 인사상담 - 기간 : 2011. 4 ~ 5월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건의사항		- 대상 : 동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② 방사능 관련 자체 대책 마련 검토 • 원전으로 둘러싸인 우리 지역은 만일의 사태 시 방사능으로부터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장기적으로 환경방사선 측정소 설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우선적으로 방사선 측정 장비 구입을 검토하고, 갑상선 방호약품, 방독면 구입 및 원전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실시를 검토하기 바람.	○ 지역 내 환경방사능 측정소 설치를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였으나 인근에 간이측정소(기상대)및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어 추가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방사선 측정장비 구입을 검토한 바 전문인력 우선 확보, 측정자료 활용의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원자력 전문기관, 민간 환경감시기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강화를 통하여 다양한 방사능 관련 자료를 주민에게 알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방사능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강화에 노력하겠음. ○ 방사능 교육 강화 차원에서 민방위대원, 일반주민 대상으로 2011 년도에 30 회 방사능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사능 안전 직원교육을 2011.12.16에 실시하였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건의사항		○또한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방독면,보호의 등 화생방 장비를 구입하여 원전과 근거리에 위치한 강동지역에 우선 비치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재정여건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장비보급에 노력하겠음.	
		③ 기간제근로자의 구민 채용 건의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동등한 자격조건이라면 구민 중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총괄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749명 중 682명이 북구 주민이며 91%가 구민이 채용되고 있음 ○또한, 공개채용 유도를 의한 공문 배포 시 북구 주민 및 소외계층에게 가점이 부과 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음. 향후,우리 구민이 지속적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 민 참여과	시정 요구	① 동간 일부 행정구역 개선 • 농소지역 일부 지역(중산동, 천곡동, 신천동, 상안동, 창평동 등)에 있어 동천강을 경계로 법정동 및 행정동 간 구획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법정동과 행정동 간 구획에 설정으로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관계 지번을 모두 찾아내는 일제 조사는 현실적으로 많은 인원과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추후 인력 및 예산 확보 후 민원지적과와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임 ○또한, 현황이 파악되면 관계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 가능한 구획은 조정하겠음.	추진중
		②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 •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과 활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세칙 표준안을 마련하여 직능단체, 통장보다 전문성과 활동력이 높은 다양한 계층을 발굴하여 위촉하기 바람 •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 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청소년 대상 문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야간·주말에도 직장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 표준안 마련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의견을 수렴 중이며, 상반기 내에 표준안을 작성하여 동주민센터로 통보할 계획임. ○2012년 추진할 자치 아카데미, 통장 학교, CB학교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임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 민 참여과	시정 요구	• 매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시 경연 대회 위주보다 특화되고 모범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민설문조사 실시하여 수강 수요를 파악한 후 추진할 계획임. ○2007 ~ 2009년까지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시 연간 주민자치 활동사례를 발표 하였으나, 주민 호응도가 낮아 2010년, 2011년에는 경연대회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2012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 후 진행방식을 결정토록 하겠음.	
		•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혜택에 따른 수강료 수입 감소 대책	○확인 결과 동별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중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수는 극소수이며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로 인한 수강료 감소요인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③ 교육경비 지원 개선 •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조례에는 교육경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자부담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책임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부분 자부담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자체적으로 권장사업을 마련하는 등 교육경비 사업 목적에 맞도록 학교별 지원사업을 선정하기 바람	○2010년 교육경비 지원 시 자부담 없이 지원되는 부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1년 교육경비 지원 시 사업비의 10%를 자부담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음 ○실효성과 책임성 있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 교육경비 지원계획 시에는 자부담의 비율을 높일 것이며,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업이 다르므로 특정사업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 민 참여과	시정 요구	• 유치원의 경우 사업내용이 단순한 기기 구입에 불과하여 사업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교육경비 지원의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사업시행 후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또한 당초 사업계획서와 정산결과 사업실적과 차이가 있으므로 정산서 대로 완료되었는지 등 정산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을 권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단순 시설물 설치 사업보다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보조비율을 높이는 차등지원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 ○ 또한,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 상이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④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 개선 • 동장 포괄사업비에 있어 동 청사 유지보수 위주로 사업비가 집행된 사례가 있으므로 구청 예산지원을 통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즉시 처리가 가능한 긴급사항 등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 동 청사 유지보수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공문으로 8개동 주민센터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음 (주민참여과-849호)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 민 참여과	건의 사항	① 각종 물품 활용 • 동 청사 개청에 따라 신규 물품 구매 시 기존의 불용처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자율방범대 등 봉사단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 검토 바람	○8개동 주민 센터에서 신규 물품 구입 등을 통한 불용물품 발생 시 현황을 제출토록 하였음 (주민참여과-849호) ○불용 처리되는 물품의 대다수는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으로 재활용의 가치가 낮지만, 그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할 것임 ○ ○개별법령 또는 조례 등에 물품지원에 관하여 명시된 단체에 대하여는 물품 관리부서와 협의 후 지원하겠음	추진중
		② 동 행정서비스 강화 • 민원인이 동 주민 센터를 방문했을 때 보다 친절한 응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복지상담실 운영을 동 운영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주민 활용도가 다소 낮으므로 복지상담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사회복지 공무원의 적극적인 상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동 주민센터의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각동의 실정에 맞게 복지 상담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통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담 시에 복지상담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 민 참여과	건의 사항	③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사무국 통합 운영 검토** • 예산 절감 및 업무에 대한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사무국을 통합 운영 방안을 검토 바람	○사회단체 각각의 지원근거 법령과 중앙과의 지휘협조 체계가 다르고,사업목적이 상이하므로 사무국 통합 시 단체의 반발과 사업추진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무국 통합은 어려울 것임 ○향후, 효율적인 사무국 운영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토록 지도하겠음	불가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회계과	시정요구	① 관용차량 관리 철저 •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지도·점검한 실적이 없는 등 지도 점검은 물론 차량 기록은 관용차량관리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 총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2012. 1. 15 ~ 1. 31일까지 운행 중인 전체 관용차량 86대의 차량정수 관리·운영 사항, 차량정비 관리사항,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일부 부서에서 차량운행일지 작성, 차량의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세차, 엔진오일 등 교체) 등이 미흡하여 시정토록 조치함.	완결
		②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 우리 구 청사 내·외 각종 안내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결과 일부 불합리 하거나 편의시설이 법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있으므로 장애인이 실제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보완·개선하고, 향후 신축 계획 중인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화장실의 경	○청사 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공사 시행(2011.10.11) • 장애인 안전보행통로 설치 •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61개소 설치 •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 온·냉수 점자표지판 36개소 설치 • 서편출입구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정비 • 음성안내 유도장치 설치 ○신축중인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강동동 주민센터 - 편의시설 설치 완료 (2012. 01. 19) • 천곡문화센터, 중산목욕장	완결

<table>
<tr><th>부서명</th><th>구분</th><th>시정·건의 요구사항</th><th>처리내용</th><th>처리결과</th></tr>
<tr><td>회계과</td><td>시정요구</td><td>우 장애인,비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화장실로 설치 검토 바람.</td><td>- 설계 반영
• 청소년문화의집
- 향후 설계 시 반영 계획</td><td></td></tr>
<tr><td></td><td>건의사항</td><td>① 청소위탁 관련 노동자 복지 개선 검토
• 전국적으로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근로실태 조사결과 임금, 고용상태 등 근로 조건이 열악한 상태로 조사되었음. 이에 우리 구의 경우에도 생계형 노동자로서 임금 또한 열악한 수준이므로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을 통한 실제 계약 시 임금을 인상하거나 복리후생비 지급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또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휴게실, 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 또는 기존의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 예정에 따라 우리 구 청사 청소위탁업체의 노동자에 대해 관련 법 개정내용에 맞도록 검토 바람</td><td>○ 예정가격 산정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 반영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
○ 위생시설 설치
<table><tr><th>구 분</th><th>인원</th><th>휴게실</th><th>샤워장</th></tr><tr><td>구 청 사</td><td>7명</td><td>45㎡</td><td>있음</td></tr><tr><td>보 건 소</td><td>2면</td><td>15㎡</td><td>있음</td></tr><tr><td>문예회관</td><td>4명</td><td>50㎡</td><td>있음</td></tr><tr><td>오토밸리복지</td><td>6명</td><td>20㎡</td><td>있음</td></tr><tr><td>국민체육센터</td><td>5명</td><td>27㎡</td><td>있음</td></tr></table></td><td>완결</td></tr>
</table>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회계과	건의사항	**② 청사 출입 차량 관제시스템 위치 개선 검토** • 청사 출입 차량 관제시스템 차단기 위치가 진입로 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주차권 발급 등 이용에 불편하므로 개선 검토하기 바람	○ 청사 출입 차량관제 시스템 차단기 위치를 청사 쪽으로 이동할 경우 대형버스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음 ○ 차량진입로에 차선을 도색하여 주차권 발급이 용이하도록 하겠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체육과	시정 요구	① 문화원 시설 개선 및 각종 사업 내실 추진 • 구 송정동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사용 중인 북구 문화원이 노후 되어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음. 옥상 누수로 백화 현상에 따른 조치, 고목 전지작업 전통춤 연구회 운영에 따른 소음 차단, 원활한 물 공급 등 북구 문화원 지원을 검토 바람.	○현재 문화원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누수로 인한 백화현상은 담당과인 회계과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하고 ,고목 전지작업은 농림수산과의 가로수 정비 사업 시 협조를 통해 정비할 계획이며, ○물 공급의 경우 상수도관을 연결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주변지역 주유소 및 주택거주자와 협의하여 함께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장기 검토할 계획임.	추진중
		• 북구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북구 문화', '북구 지명사의 내용이 타 문화원 발간집과 대비하여 그 내용이 부실하며, 보다 알찬 내용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북구 문화원과의 협조를 통해 향후 보완하기 바람.	○차후 북구 문화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알찬 간행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불합리한 지출이 없도록 고유사업 목적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행정지도 및 지원을 강화하기 바람.	○보조금 지출 불적절에 대하여 북구 문화원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관련 문화원장을 비롯한 감사, 사무국장, 간사 등 관련자 교육을 실시(2011.12.01하는 등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출 관련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체육과	시정 요구	• 기박산성 의병제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할 것.	○자라나는 아이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단체와 협의 요청하였으며 교육청과도 협의하여 관내 학교를 정해 학생들이 기박산성 의병제를 참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② 강동사랑길 스토리텔링 저자와의 저작권 관리 • 강동사랑길 책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로 인해 보다 많은 구민에게 배부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니 ,향후 홍보책자 발간 시 유의하여 주시고, 저자의 판권과 관련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 동의를 받기 바람.	○판권과 관련하여 저자에게 판권 포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포기할 수 없다고 함. 이에 기존 강동사랑길 책자는 더 이상 발간하지 않을 계획이며 굳이 발간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책을 제작하여 발간(선거법 저촉여부 신중 판단)할 것임 .향후 홍보책자 발간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임.	완결
	건의 사항	**① 바다수영장 운영 개선** • 올해 바다수영장 운영 결과 일부 보완사항이 필요함. 바다수영장의 수질 확보, 음수대 추가 확보 ,공기주입기 추가 확보 ,탈의장 및 샤워실내 모래 배출 시설 확보, 배출 쓰레기 적기 처리, 안전요원과 관리요원의 적정선 확보 등을 통해 향후 바다수영장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강동 바다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경험을 살려 수영장 수질 및 음수대 및 공기주입기 추가 확보 및 기타 편의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바다 수영장을 찾는 관광객이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계획임.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체육과	건의 사항	**② 생활체육회 운영 관련 건의** • 자체 정관에 따르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 이사회 및 광역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 생활체육회 회장이 임명하는 사항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상임이사회 위주의 운영 등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동 생활체육회장이 이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노력하기 바람.	○북구 생활체육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민간단체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업(각종 대회 등 외에 자체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내부규정 및 운영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그러나, 향후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정에 따른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시 동 생활체육회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불가
		③ 쇠부리축제 내실 운영 • 우리 구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쇠부리축제 행사 진행과정에 어린이 공연 순서 등 매끄럽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주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하여 주시고 ,쇠부리 불씨 점화 행사를 봉송행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아이템 개발 및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주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쇠부리축제와 관련하여 행사 진행에 있어 어린이 및 노인 등 출연진을 배려한 행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달천철장에서 쇠부리 불씨 점화행사와 이것을 행사장인 북구청으로 봉송하는 행사를 통해 쇠부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삼고 기타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체육과	건의 사항	④ **여행바우처 사업 활성화** • 대상자가 실제 여행 시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건의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기존 여행사를 통한 관광여행상품 판매에 의존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철도 및 항공탑승권 ,주요 테마파크 및 워터파크 입장료 ,신한카드에 가맹된 숙박업소 (호텔, 모텔, 펜션)까지 사용처가 확대되어 실제 여행참여 제약이 많이 감소됨.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서관과	시정요구	① **도서교환 및 기증운동 확대 시행 검토** • 올해 시범으로 실시한 농소1동 도서관의 도서교환전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므로 가정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도서에 대한 교환행사나 도서 기증 행사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지난 해 농소1동도서관에서 시범 실시한 도서교환전을 올해부터는 4월 도서관주간 행사와 9월 독서의 달 행사시 구립도서관 5개관에서 도서교환, 책사랑 장터 등의 형식으로 확대 시행하여 도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 **도서관 각종 행사 적극 홍보** • 독서의 달, 문화프로그램 등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가 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도서관 인근 주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 • 북스타트 행사의 경우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홍보함과 아울러 다문화가정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지난 해에는 도서관주간 행사 및 독서의 달 행사 시 개별 도서관별로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나, 올해에는 구립도서관 5개관의 모든 행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 리플렛을 제작할 예정이며, 홍보방법도 기존 홈페이지, 구정 소식지, 주민만남의 날 홍보 자료 제공 등 외에 작은도서관 및 인근 아파트에도 홍보물을 비치 및 게시 하여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겠음. ○현재, 북스타트 행사는 동으로부터 참여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북스타트 홍보물을 비치하여 영유아들의 참여를 확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서관과	시정요구		대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결혼 이민자 행복바우처 사업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건의사항	**① 도서관 건립 관련 등** • 매곡지역에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이 입주됨에 따라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도서관 조기 건립을 건의함. • 송정·화봉지역의 경우 인근에 중앙도서관이 있지만 철도 시설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므로 송정·화봉지역에도 공공도서관 건립을 건의함.	○ 매곡지역에도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 1개관 건립에 토지매입과 건축비 등 건립비용이 50억원 이상 소요되고, 총액 인건비제 제한 등으로 운영인력인 사서직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곡도서관의 조기 건립과 송정·화봉지역의 공공도서관 건립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매곡, 송정·화봉지역에는 작은도서관 추가조성 및 활성화와 이동도서관 노선 조정 등으로 구립도서관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향후 재정 여건 및 운영인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을 검토하고자 함.	추진중
		② 도서관 시설 개선 건의 • 기적의도서관 시설 노후 및 협소, 햇빛으로 인해	○ 기적의도서관의 경우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열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0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서관과	건의사항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의 어려움 등이 있으므로 어린이 도서관답게 꾸밀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거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백만원의 예산으로 1층 자료실 내에 60㎡규모의 다락방을 설치 할 예정이며, 노후화된 블라인드로 인한 햇빛차단과 실내 적정온도 유지의 어려움은 향후 추경 예산 확보로 암막커튼 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며,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신규 건립에 못지않은 예산 소요와 공사에 따른 장기 휴관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다락방 설치 등으로 열람환경을 개선한 후 중·장기적으로 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일반 주민이 도서 검색 및 일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서관내 일반컴퓨터 설치를 검토 바람.	○중앙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의 경우 자료실에 도서 검색용 컴퓨터 외 일반 정보검색용 컴퓨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기적의도서관은 현재 컴퓨터 및 인터넷 회선망의 부족으로 일반 정보 검색용 컴퓨터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이용자 필요 시 사무실 내 컴퓨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서관과	건의사항	• 자원봉사자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자원봉사자 휴게공간의 경우 중앙도서관은 동아리B실(2층, 40㎡), 기적의도서관은 지킴이방(지하1층 23㎡), 농소1동도서관은 자원봉사자실(2층, 36㎡), 염포양정도서관은 자원봉사자실(2층, 53㎡)이 확보되어 있으며, 농소3동도서관의 경우 여유 공간이 없어 자원봉사자 휴게 공간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통해 휴게실(2층, 8㎡)을 리모델링하여 자원봉사자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③ 작은도서관 지원 개선 건의 • 금년부터 실시한 작은 도서관 지원에 있어, 향후 사무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예산 지원을 함에 있어 적기에 신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월별 지원을 건의함.	○ 2011년도 지원한 작은도서관 3개소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을 검토하여 향후 추경 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도서구입비의 경우 지원 확정되면 2백만원을 바로 교부하되, 구입 시기는 작은도서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간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음.	추진중

<table>
<tr><th>부서명</th><th>구분</th><th>시정·건의 요구사항</th><th>처리내용</th><th>처리결과</th></tr>
<tr><td>세무과</td><td>건의사항</td><td>① 체납세 징수 활동 철저
• 지방세 부과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부과 단계부터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체납세 발생시 특별대책반 구성 등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시효소멸 이전에 정리하기 바람.</td><td>○ 체납세 징수실적 (2011.12.31현재)
(단위 :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징 수 결정액 (A)</th><th colspan="3">정 리 액(B)</th><th rowspan="2">체납액 (A-B)</th><th rowspan="2">정리율 (B/A)</th></tr>
<tr><th>계</th><th>징수액</th><th>결손액</th></tr>
<tr><td colspan="2">합 계</td><td>216,153</td><td>204,010</td><td>202,140</td><td>1,870</td><td>12,143</td><td>94.4</td></tr>
<tr><td rowspan="3">시세</td><td>소 계</td><td>168,836</td><td>159,074</td><td>157,325</td><td>1,749</td><td>9,762</td><td>97.2</td></tr>
<tr><td>현년도</td><td>160,186</td><td>155,712</td><td>155,509</td><td>203</td><td>4,474</td><td>97.2</td></tr>
<tr><td>과년도</td><td>8,650</td><td>3,362</td><td>2,016</td><td>1,346</td><td>5,288</td><td>38.8</td></tr>
<tr><td rowspan="3">군세</td><td>소 계</td><td>47,317</td><td>44,936</td><td>44,815</td><td>121</td><td>2,381</td><td>95.0</td></tr>
<tr><td>현년도</td><td>45,380</td><td>44,140</td><td>44,125</td><td>15</td><td>1,240</td><td>97.3</td></tr>
<tr><td>과년도</td><td>1,937</td><td>796</td><td>490</td><td>306</td><td>1,141</td><td>41.1</td></tr>
</table>
○ 추진사항
• 납기 내 지방세 징수율 제고 : 97.2%
- 근거과세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 정기부과 세목 납기 전 납부홍보 강화
•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910대/759백만원
- 각종 재산압류 : 6,048건/7,755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 및 공매 : 57건/897백만원
○ 향후 추진사항
• 고액(5백만원이상)체납자 특별관리
- 기 간 : 연중
- 관리책임자 지정 : 세무과장외 2명</td><td>추진중</td></tr>
</table>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세무과	건의사항		- 배 분 : 186명, 2,807건 5,217백만원 - 내 용 : 재산압류, 공매, 휴폐업조사 • 체납세(1백 ~5백만원)책임징수제 운영 - 기 간 : 2012.2.1. ~4.30 (3개월간) - 지 정 : 27명 (세무과 전직원) - 배 분 : 7,351건 / 1,271백만원 - 내 용 : 전화·방문 징수 독려, 체납처분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민 원 지적과	건의 사항	① 무인발급기 이전 검토 • 관내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 장소별로 이용실적이 차이가 많으므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차원에서 이용실적이 낮은 민원발급기에 대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로 이전 방안을 검토바람.	○이용실적이 낮은 무인민원발급기 2개소에 대해 검토한 바 인근 농협의 경우 365코너에 설치 장소가 없어 농협 내부에 설치 시 짧은 운영시간(09:00~16:00)으로 인해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기존 설치 장소와 인근 지역으로 유동인구 면에서도 동일함. ○따라서 2009년 당초 설치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되었으므로 향후, 주민의견을 감안하여 무인민원발급기 홍보 강화를 통해 이용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복 지 지원과	시정 요구	① **자원봉사 홈타운 내실 운영** • 현재 18호점까지 개소된 자원봉사 홈타운 운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활동내용 또한 대부분 공동주택 내 환경정화활동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활동범위를 마을 전체로 확대함과 아울러 모범적인 매뉴얼 개발, 권장 사업 등을 마련하여 보다 활성화하기 바람.	○ 자원봉사 홈타운 활동내용 다양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홈타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자체 아이템을 발굴토록 유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홈타운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건의 사항	① **고헌 박상진의사, 정임석 열사 추모 사업 행정 지원** •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홈페이지 검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개선하기 바라며, 정임석열사 추모사업회 보조금 통장 명의 변경 및 보조금 정산에 보다 철저를 기해주시고, 우리 지역의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들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바람.	○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홈페이지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2011.12.10판리 유지업체인 “이지테이크”에서 주요 통합검색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야후” 등에 사이트 연결 조치함 ○ 2012년 정임석 추모사업회의 보조금 사업 지원 통장은 회장명의 통장을 발급토록 조치하였으며, 정임석 열사의 주민 홍보를 위해 추모행사시 언론보도자료 제공과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에 게재하겠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복 지 지원과	건의 사항	② 보훈단체 지원 강화 • 금회 실시한 고령회원 위로연 행사가 통합으로 운영된 점은 모범적인 사례이므로 향후 현충탑 참배, 전직지 순례행사 등에 대해서도 통합 운영을 검토 바라며, 노령에 따라 갈수록 회원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차원의 많은 지원을 검토 바람.	○보훈단체의 고령회원 위로연 행사는 8개 단체에서 통합으로 개최토록 조치하였으나, 단체별 개별사업인 "현충탑 참배, 전적지 순례"행사는 보훈단체별 성격과 목적이 달라 통합 개최 하기에는 애로가 있음. ○보훈단체가 요구하는 참전수당 인상, 보조금 인상 등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③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 활성화 • 울산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의 보다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지원이 필요하며, 홍보 부족에 따른 빈곤 청소년의 자활지원 실적이 낮으므로 설립 취지에 맞도록 위상 강화는 물론 이용자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운영과 시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자활참여자 및 저소득계층 자녀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진로멘토링, 직업전문훈련, 청년인큐베이팅 등을 구축하여 사회 진출 기반의 터전이 되겠으며 ○본 사업의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후원처 모집(공동모금회, 지역기업체 확대 및 지정법인 동광교회) 전입금을 적극 활용 ○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형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복지지원과	건의사항	④ 각종 기부금 균등 배분 • 각계 각층에서 기부되는 금품을 관내 사회복지단체 등에 배분함에 있어 균등하게 배분하여 주시고,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과 거리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쌀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후원금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복지지원과 438호, 2011.08.16)에 의거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동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이 밀집된 주공 아파트 경로당과 급식혜택을 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로당에 백미,부식 등의 후원물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완결
		⑤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진입하기 위해 센터장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판로 개척이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람.	○지역 내 수급자수와 자활사업 참여인원, 사업추진성과 등을 감안 규모별로 지정·국비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자활사업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를 적극 발굴함과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교육을 자활센터에서 정기 또는 상시로 구·군과 연계 추진하여 향상된 자활센터로 성장하겠으며, ○자활센터내의 사업(청소, 용역조달 등)활로 개척 및 생산품(건강식품 반찬)을 구청 홈페이지 및 구정소식지 등으로 점차적으로 홍보 강화와 수익성 확대가 되도록 추진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시정 요구	① 여성정책 기본시책 내실 수립 추진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사업'에 있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과는 다소 맞지 않으며, '기업 여성인력수요 활성화 사업'또한 추진실적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며,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2007년 하반기에 수립되어 선정된 과제로 현재의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제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 시 과제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여성재취업을 위한 자격증취득 등 지원사업은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 '여성의 건강보호사업'의 경우 갱년기 여성 등 장년 여성층에 대한 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여성정책 기본시책 수립 시 우리 구 여성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여성정책 기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여성건강보호사업의 경우 보건소에서 갱년기 ,중장년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건강보호사업 추진부서인 보건소와 협의하여 다양한 장년 여성건강사업이 되도록 추가 발굴토록 하겠음.	
		②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이 적어 시설운영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확보를 통한 상근 근무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연계 방안 마련 건의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위해매년 공공근로사업 등을 신청 하여 인력지원 하였으며, 향후 노인일자사업 신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시정 요구	• 지역아동센터 대상자 발굴을 위해 동 주민센터의 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개선 요망	○사회복지과-14466 (2011.11.28)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동 주민센터 발송하여 이용아동 발굴 및 사회복지관련 상담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완결
		• 종사자의 보수가 타 복지시설과 대비해서 열악하므로 복지사 자격 수당 지급 건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복지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 식비 적기 지원 건의	○2012년부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을 분기별에서 월별지원으로 변경하고, 매월초 지급하여 아동 급식 지원이 원활하도록 조치하였음.	완결
		•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이 필요하므로 청소년 지원센터입지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012년 당초예산에 호계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비로 80,000천원 예산 확보하였으나 , 시설의 노후 정도가 심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 청소년 지원센터가 이전하여야 하므로 같이 연계·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함.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시정 요구	③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언어의 벽 해소,안정적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임.조례에는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속히 구성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문화가족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을 '12.2.1위촉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완결
		④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사업 활성화** • 지역연대 기구 구성에 있어 교육청 관계자가 빠져 있으므로,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에 있어 편성비율에 비해 회의비가 다소 과다하므로 차후 별도로 위원회 수당을 확보하여 주시고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람.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위원에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 될 수 있도록 현재 울산강북교육청에 위원 추천 협조 요청한 상태로 추가 위촉할 예정이며 ,지역연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2년 예산편성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 별도로 편성하였음.	추진중
		⑤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개선** • 국공립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급식에 있어 식단표와 다르게 급식을 제공하거나 월별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 시 양질의 급·간식 제공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 특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시정 요구	편차가 심하며,식재료 구입내역에 없는 급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식단표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히 사정상 식단표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보육일지 등에 정확히 기입하게 하여 식단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또한 보육정보센터에서 받은 식단표도 반복적인 메뉴 등에 대해서는 사전검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음.	
		•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액이 시설 간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당 지급액이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수당 인상 등 적정수준이 되도록 예산 지원을 검토 바람.	○2012년 신규시책인 보육교사 명절휴가비지원과 같이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특히 국·공립보육교사의 경우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원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 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⑥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개선 • 운영위원회 회의 시 참석한 본인이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함에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의 서명이 허위로 기록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조치하기 바람.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지급내역 원본자료 제출 요구하여 서면확인 후 시설장 및 담당자 면담한 결과 수당지급내역서는 참석 당일 서명을 받고,회의록은 작성 후 직접 방문하여 서명을 받고 있음.시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시 반드시 본인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시정 요구	• 근로 장애인들에게 공정하게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통풍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서명 날인을 득한 후 지급하도록 조치 완료함. ○근로장애인 작업능력 체크리스트 및 임금규정표를 2010. 1. 13일자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 향후 작업능력 체크리스트 및 임금규정표를 매년 시설운영위원회 심의후 적용하도록 하고, 2012년 임금규정표는 3월 정기회의 후 제출토록 조치완료. ○2010년 제1회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위원회 회의록 확인결과 안건 제 4호에 의안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추진중
		• 성희롱 예방 교육에 있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012년 시설 환경개선계획 수립 제출(2012.1.30 일자) - 2. 15한 1층 공장내 환풍기 2개 설치 - 근로장애인에게 방진마스크, 귀마개 지급 - 오전 1시간 30분, 오후 2시간씩 교대 근무하여 1일4시간이상 소음분진 등에 노출 방지대책 마련 - 향후 시설 지도·점검 시 환경개선 여부 확인하겠음. ○2012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계획 제출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시정 요구		- 상·하반기 1회 동영상을 통한 시청각 교육 및 외부 전문강사 초빙하여 교육 실시 예정.(내부강사를 외부 전문강사로 변경) - 향후 시설 지도·점검 시 교육 실시 여부 확인하겠음.	
	건의 사항	①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 최근 보육시설이 많이 신설되어 교사 수급 차질 및 잦은 교체가 예상됨에 따라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시설 인가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보육교사 수급 차질 등을 해소하기 위해 '12.1.26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인가제한 사항을 정원 충족율 85%이하일 경우로 상향조정 완료하였음.	추진중
		• 보육 자격증을 대여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 자격취소 등 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 처분할 계획임.	
		• 맞벌이 가정 등의 편의를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시간연장형 보육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시간연장형 지정여부는 광역시에서 할애되는 사업량 만큼 지정 가능하여 독자추진에 다소 한계가 있으나, 2012년 신규 지정 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 미지정 어린이집 6개소 (기지정완료 4개소)에 대해 우선 추진토록 하겠음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건의 사항	② **단기보호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적정 운영 지원** • 단기보호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입소 상담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다소 불친절하고 입소를 거부하는 인상을 준다는 여론이 있고, 시설 개방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 시설입소자 중 제도상의 이유로 기초수급자가 거의 없는 실정 이므로 구에서 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 바람.	○주간·단기보호시설 자체 직원 친절교육 및 개방시간 준수 등 운영 전반 교육 실시 완료. - 메아리주간보호시설 : 1. 27, 시설장외 3명. - 울산장애인복지센터 주간·단기 보호시설 : 1. 26, 시설장외 6명 - 울산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 1.27, 시설장외 4명 ○기초수급자는 주간·단기보호 시설 4개소,현원 56명 중 5명임.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운영규정에 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을 우선 입소토록 규정되어 있음. ○수급자중 입소대기자는 없으며 향후에도 시설 미입소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도 검점하겠음.	추진중
		③ **노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 최근 노인 및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적정 장소에 충전기를 보급하여 전동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 바람.	○북구청 내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시범 설치 후 확대 추진토록 하겠음. (1,400천원정도×1개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경제일자리과	시정요구	① **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 호계공설시장의 경우 그 사용료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2배 이상 인상되어 왔음에도 호계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향후 관내 시장에 대한 인정시장 등록, 점포운영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사업명 : 호계공설시장 차양시설설치사업 - 사업규모 : L=70m, B=6m - 사업기간 : '12. 3월 ~12월 - 사업비 : 300백만원 (국180,시60,구60) ○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 - 기간 : '12. 4월~6월 - 대상 : 호계공설시장 상인 - 내 용 : 경영마인드를 갖춘 상인 양성을 위한 종합교육 및 우수시장 견학 ※ 경영혁신 지원사업 공모신청('12.1.20) ○ 인정시장 등록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 필요 시 적극 지원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안전사고 교육 철저**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시 안전교육 실시에 더욱 노력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 전문강사를 2개월 주기로 초청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경제일자리과	건의사항	②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강화 • 산업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 등 순환버스 운행방안 강구	○산단 전세버스 운행방안 강구 - 국토해양부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대상 산업단지 수요조사 후 중산산단 신청하였으나, 심사 결과 미등록 친목단체로 자격 조건 미달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호 (2012. 1. 12)에 의거 통근용 전세 버스 운행 허용 대상 울산지역 해당 사항 없음(전국 9개 산단 허용)	추진중
		• 산업단지 내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바람.	○산단 주차난 해소 유관기관 협의 - 울산광역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 확충 방안을 강구하겠음.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만전 •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수성천 등에 실시하였으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오·폐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오·폐수 방류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근 주택가 및 공장의 오·폐수 투기예방 활동 실시 등으로 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 호우 등 하천 유입량이 증가되면 EM활성액 등 약제효과가 미약하므로 보완 검토 바람.	○2011년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추진결과, 육안상으로 하천퇴적토의 색상이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유기물분해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분석 데이터 상으로 유기물함량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사업대상지 주변의 수질오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실시 및 현재 진행 중인 오수관연결사업 등으로 당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계획임 〈2012년도 대상지 - 천곡천,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소하천, 소요예산 : 20,000천원〉	추진중
		②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실효성 확보 •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에 있어 여러 단체의 참여가 환경정비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 하천 살리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오폐수 감시활동, 수생식물 식재, 바이오콜로니 투입에 따른 수질분석 활동 등 참여단체의 자발적이고 세부 임무 부여를 통한 생활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으로 하천 환경정화, 가시박·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 창포 등 수생식물 및 초화류 등 식재를 통한 하천 가꾸기 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하천구간 지정, 세부임무 부여 및 월별·분기별 참여 등 참여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계획 ※ 2011년도 추진실적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 경 위생과	시정 요구		- 하천수 16개, 참여단체 21개, 참여횟수 61회, 연인원 2,319명, 수거실적 17.17톤 ※ 2012년도 추진계획 - 2월중 추진계획 수립 :하천구간 지정 및 월별 ·분기별 청소일 지정 - 3월 중 참여단체 간담회 개최 - 봄맞이 대청소 등 계절별 환경정화 활동 적극 추진 ○오폐수 감시활동은 구민자율 환경감시원 (15명)를 위촉하여 수시로 순찰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바이오콜로니 투입에 따른 수질분석 활동 등은 환경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건의 사항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철저**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전년도 대비 많이 발생되었고 ,야생동물 출현으로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피해발생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포획 허가기간 연장 검토 ,유해조수 구제반에 대한 예산지	○2011년 우리구 관내 멧돼지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여 2012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작물 피해농민 발생 시에는 우리구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에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 경 위생과	건의 사항	원, 지역 엽사 발굴 등 전문 인력 확충, 서식지 및 분포도 조사,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피해를 보상토록 하겠음 - 2011년 구제반 편성 및 포획실적 : 8개조 16명 멧돼지115마리 등 205마리 - 향후대책 : 구제반 확대 운영(인원, 시기 등)	
		② 정수기 수질 점검 강화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 정수기 수질 위생에 대해 보도된 바 있는데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우리 구 차원의 학교 정수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내 요식업소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기 바람	○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정수기 수질 점검은 상·하반기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 학교 정수기 수질 위생상태에 대하여는 강북교육청과 협의 실시토록 하겠음	추진중
		③ 기타 건의사항 • 동천강 동편에 화장실 설치 건의 • 덕양산업 앞 하천 수질오염물질 조사 건의	○ 천곡교 인근에 설치된 노후화장실을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향후 이용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 시 신규 설치 검토 ○ 당해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은 평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도로노면 등 차량에 의한 생활오염원과 효문공단 내 일부 지역은 아직 합류식으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통하여 하천으로 방류되고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 경 위생과	건의 사항		있으며, 우수토실을 설치하여 일정량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유입량을 초과하는 하수는 넘쳐 하천으로 흐르고 있는 실정임 ※현재 시에서 효문공단 내 부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오수관로를 매설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④ 모범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건의 •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있어 위생, 청결 위주로 그 기준이 되어 있는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여부 기준도 포함하여 그 지정 기준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한 업소에 대한 대민 홍보 건의	○모범 및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업소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등 설치토록 2011년 12월 음식점지부 임원 간담회시 홍보하였으며, 금년 2월중에도 홍보하여 장애인 시설 설치 권장 ○음식종류·수용인원 등 음식점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구 홈페이지 등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환경미화원 지원 강화 ● 지난 4. 27, 9. 28. 2차례 개최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므로 조속히 반영하시기 바람. ● 환경미화원의 적정 인원 충원, 청소전방지휘소 개선, 효율적인 인력 배치, 안전교육 실시 등 환경미화원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2011.4.27 협의안건 조치결과** • 폐가전제품 수거전용차량 구입 건 ⇒ 2012년 당초예산 차량구입비 45,000천원 반영 • 재활용 수거전용 1톤 포터 구입 건 ⇒ 2011.8.30. 1톤포터 구입완료 ○ **2011.9.28 협의안건 조치결과** • 감독 임기 변경 건 - 현재 4년 연임 → 2년 1회 연임 변경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개정 중 • 2011년 퇴직자 (6명)인원 충원 건 ⇒ 2012.1.2일자 6명 신규배치 완료 • 선진지견학비 560만원 인상 건 ⇒ 2012년 당초예산 560만원 반영 (12,600천원→18,200천원) ○ 안전교육 : 2011년 4회 실시 ('11.6.16, '11.7.18, '11.8.30, '11.10.27)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②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개선 ● 재활용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에 있어 그 대상자를 보다 다양화하고 PPT위주의 단순 전달 교육보다는 실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내용으로 개선하고 자체 평가를 통한 결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바람.	○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에 있어 교육대상자를 기존 경로당어르신 대상은 지양하고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동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원, 어린이(초등학생, 유치원생)등 대상자를 다변화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음. ○ 2012 신규시책으로 방학을 활용한 중고교생 청소년 재활용선별체험을 실시하여 자원재활용 의식을 고취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기회 확대 등을 기여하겠음	추진중
		③ 청소용품 품질 등 개선 ● 종량제 봉투를 묶는 부분의 비닐 부분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 바 끈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단독세대용 재활용품 그물망 제작 사양 개선	○ 끈달린종량제봉투 품질개선 건 • 봉투제작업체 품질개선 요구 및 제작과정 입회 : 2011.12.15 - 업체 답변 : 수차례의 실험을 거쳐 새로운 물성의 원료를 봉투에 적용함. 기존 부텐계열 LLDPE →옥텐계열 LLDPE+헥센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 경 미화과	시정 요구		계열 LLDPE 원료로 개선하여 기존의 부텐계열 LLDPE 보다 2배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도록 개선함 ○ 단독세대용 재활용품 그물망 제작사양 건 그물망 제작 시 규격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 기 존 : 800mm×600mm - 개 선 : 700mm×900mm	
	건의 사항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지역별 특성 반영** ● 차량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므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구역 조정 등 향후 위탁계약 시 반영하기 바람.	○ 현재,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는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독립채산제 형식임 ○ 향후, 수집운반대행계약은 지역별 특성, 대민서비스의 질, 생활쓰레기 적기수거 여부 등 종합적인사항을 고려하여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 계약 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완결
		②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적기 수거 ●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CCTV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	○ 장비현황 •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 12대 • 순찰차량 : 1대 ○ 불법투기예방 홍보물 제작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 경 미화과	건의 사항	법투기 쓰레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 투기 쓰레기 단속 강화는 물론 주택가 등에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적기에 수거바라며,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 일정을 준수 바람.	및 설치 • 현수막 및 스티커 설치 : 66개소 • 홍보물 제작·배부 : 냄비받침대 1,000개, 전단지 40,000매, 자석스티커 3,000개 ○ 기동청소반 운영 : 3개반9명 (단속 : 17건 1,494천원)	
		③ 효문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 협조 ● 효문공단 내 자동차 시트 폐기물 약 1만6천톤이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어 2차 오염 등이 우려되며, 처리 주체가 모호한 상태이므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 바람.	○ 부도와 경매로 배출자가 여러차례 변경되어 폐기물의 처리 주체가 없으며, 관리부서도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울산광역시로 다시 우리구로 이관된 사항임 ○ 토지소유자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추진중
		④ 타 지자체 청소행정 서비스 도입 검토 ● 로드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소각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전담반 운영 및 적정 처리하는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구에서 이러한 시책	○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건 ● 우리구의 경우 로드킬 동물사체는 애완동물에 대한 주민정서 및 전염성 등을 고려하여 동물사체수거반(환경미화원 청소반장이 겸임)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봉투형)에 수거 후 시 소각장에 반입 처리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 경 미화과	건의 사항	도입을 검토 바람. ●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용기를 소독 세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 바람.	하고 있음 ● 타자치단체의 로드킬 동물사체처리에 대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타당성여부를 거쳐 좋은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음 ○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소독 건 ● 용기세척기는 차량탑재형으로 직영 시 설비 구입, 운영인력 확보가 요구되며, 현재 울산에 대행업체가 없음. 향후 타 지자체 견학 등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하도록 하겠음.	
		⑤ 중산동 목욕탕 건립 관련 당부 ● 중산동 목욕탕 건립에 있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부지 면적이 다소 협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원활한 주차 등을 위해 인근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기에 매입하여 주민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건의함.	○ 중산동 목욕탕 건립에 있어 설계용역 주민설명회 개최(2011. 11. 03) 등 설계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왔으며, 주차부지 추가 확보는 향후 시설운영 중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설 방재과	시정 요구	① **배수구 정비 철저** • 원활한 배수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된 배수구에 잡초, 오물 등으로 원활한 배수가 안 되므로 환경정비로 개선 요망	○ 효문공단, 북구청 일원 등의 배수구 정비 완료 ('11. 12. 16) ○ 지속적인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유지관리 하겠음.	완결
		② **자전거 보관대 정비** • 관내 자전거보관대에 있어 도시미관상 어울리지 않거나, 사용 없이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보관대에 대해 일제 조사 후 정비 요망	○ '12. 3월 중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관내 자전거보관대 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12. 4월중 정비 예정.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물 소관부서 일원화 검토** •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도시공원,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 설치 장소별로 지도·점검 등의 관리부서가 상이하여 민원 혼선발생, 개별부서에서 관리 보다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일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총괄 관리에 대한 소관부서 일원화 등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시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업무에 대하여 설치장소에 따라 분야를 나누어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처리토록 지시하였으며, 이는 소관 부서별로 관계 법령이 다를 뿐 아니라 법령에 맞도록 관리부서에서 검토하여 관리함이 타당한 것임. 다만 전체적인 현황관리 및 취합은 건설방재과에서 업무처리를 이미 하고 있으며, 관리상에는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불가
		② **설해대책 추진 만전** • 지난 폭설에 따른 중점취약지역에 대한 지도	○ 제설차량 구입('11. 12월), 염화칼슘 91톤, 제설삽 구입 후 동주민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설 방재과	건의사항	작성 및 염화칼슘 등 제설장비의 적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염화칼슘 보급에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 또는 공동구매를 통한 저가 구매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센터 배부, 이면도로 초기대응을 위한 제설함 41개 추가 설치. ○ 동별 설해취약지역 지도 작성, 작업 우선구간 지정 등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전준비 완료. ○ 염화칼슘 보급에 있어 공동주택 배분 시 도로가 아닌 단지 내 인력살포로 염화칼슘의 낭비요인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관내 공장 등 또 다른 요구처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 불가하며, 염화칼슘 단가문제와 관련하여 구입처 소개 등은 구청에서 안내토록 하겠음.	
		③ 안전한 자전거타기 정책 추진 • 자전거 사고로 상해보험 지급 건수가 많으므로 사고 원인별 분석 후 사고율을 낮추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안전한 자전거 타기 운동에 보다 많은 홍보를 하여 주시고, 자전거 도로 시설물 하	○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부주의로 확인되었으며, '12. 1. 18현대자동차 정문 일원에서 울산시 자전거도로 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안전한 자전거타기 캠페인 실시함 ○ '12. 2월중 자전거정책 홍보물 제작 배포 예정임.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설 방재과	건의 사항	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에 대하여 상시 점검을 시행하고 파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음.	
		④ 송정수변공원 진입도로 개선 • 현재 조성계획 중인 송정수변공원의 내방을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주 도로가 위치한 도로는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정부분 한계가 있겠지만 송정수변공원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원지마을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보수 또는 개설 등을 검토 바람	○ 지속적으로 송정수변공원 진입도로 포장상태를 확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방문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수하겠음	추진중
		⑤ 소방도로 개설공사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강구 • 각종 소방도로 개설 시 인근 현장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 제시 시 적극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바라며, 해당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구 바람	○ 향후 소방도로 개설 시 실시설계용역 수행 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 시행 시 대형공사구민감시관 및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겠음	완결
		⑥ 개선 및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 외솔교 하부도로 배수처리 요망	○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동천) 시비보조금 150백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설 방재과	건의 사항		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상반기 중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음	
		• 병영교 ~삼일교 자전거도로와 보도 분리 개설 검토	○'12. 4월 이전 자전거도로와 보도 분리공사 완료 예정	추진중
		• 이화마을 굴다리 높이가 낮아 안전사고 우려로 도로를 낮추는 방안 강구	○통행로를 낮출 경우 소하천종합정비계획상 제방여유고 부족으로 소하천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통행로 정비 불가	불가
		• 폭우시 동천강 유입으로 제전뜰, 천곡뜰, 원동아파트 뒤편 배수 불량 및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가 발생되므로 간이 배수장 설치 검토	○당 아파트 서쪽 구거는 천곡천을 통하여 동천으로 배수되도록 되어있으며, 강우 시 본류인 동천 수위가 상승할 경우 지류인 천곡천과 구거의 수위도 동반 상승됨 ○농경지(윤하평들 A= 55ha 정도)의 배수로가 연결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지반이 낮은 당 아파트의 인근 농경지는 우수기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발생 ○농경지가 주거지로 개발될 경우 침수피해가 해소되는 사항으로 60억원 정도 소요되는 배수장 건립 보다는 당 아파트 구거와 연결된 천곡천 유로에 자생중인 수초(L=160m)를 제거할 경우 동천 수위하강 시 배수시간이 단축되는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설 방재과	건의사항		사항으로 금년도부터 "하천 풀베기공사 단가계약"이 시행되므로 정기적으로 수초를 제거토록 하겠음	
		• 벽산블루밍도로(대동아파트 인접) 앞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검토	○현장 확인 결과 개별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 토사유출이 발생됨에 따라 관련부서에 개선토록 요청하였음	완결
		• 신천초 앞 매곡천 보조교량 배수관(흄관)배수 막힘 현상 발생우려로 대책 마련	○잠수교 사업시행자인 울산개발(주)에서도 유지관리를 위한 하상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우수기 전·후 하상정비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완결
		• 대동아파트 5단지 앞 샛길 보안등 설치 요망	○보안등 설치는 전주에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전주가 없으며, 자체 보안등주 설치는 사유지로 불가	불가
		• 효문공단 내부도로(율동마을, 산성마을 주도로)가 차도보다 인도가 낮아 주택지 침수우려, 인도 미확보 등으로 근본적인 개선 요망	○'11. 12월 맨홀승고(15개)를 완료 하였으며, 현장상황상 인도는 도로폭 협소로 설치 불가함	완결
		• 동천자전거대행진 대비 구간 내 자전거도로 보완 개선	○'12.4월 이전 자전거도로 보완 완료 예정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설 방재과	건의 사항	• 이화천 이화초교 근처 교량 보강	○'12. 1월 안전시설 난간 등 보강 완료	완결
		• 동천 서로 자전거 도로 일부구간 노면 상태 개선, 부지 옆 농작물 재배 단속	○동천 내 농작물 불법경작지(신답교, 천곡2교, 홈플러스, 시례잠수교 인근 9에 대하여는 '11.11.29 ~12.2 기간 철거 완료하였음	완결
		• 홈플러스 앞 도로 개보수(볼라드, 가로수 개선)	○볼라드 설치와 관련해서는 '11. 11월 현지 확인, '12년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예정이며, 가로수 관리부서에 이식토록 요청하겠음	추진중
		• 홈플러스 건너편 주유소 주변 인도 정비	○가로수 성장에 따른 훼손된 보도에 대하여 부분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보수하고 있음	완결
		• 오토밸리로 2구간 북구청 방향 교통표지판 개선 건의	○도로관리청인 시 종합건설본부에 개선 건의하였음	완결
		• 중산동 이화농협 건너편 속심이보 진입로 대로변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 건의	○하절기 강우에 따른 동천 수위 상승 시 차량통제를 위한 차단 시설은 기 설치되어 있으며, 대로변 전광판 설치 시 예산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치는 불가하나, 향후 차량통제 시 사전통보를 통하여 차량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음	불가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설 방재과	건의 사항	• 북구청에서 오토밸리로 진입부분 휴먼시아 방향에서 오는 직진 차량 차량 진입 규제봉 설치 건의	○ 도로관리청인 시 종합건설본부에 개선 건의하였음	완결
		• 달천동 그린카운티 3.4차 아파트 사이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 도로관리청인 시 종합건설본부와 중부경찰서 협의 결과 급제동에 따른 사고 우려로 '11. 5. 24차로 불가 통보된 사항임	불가
		• 쌍용아진2차@앞 버스승차권 판매소로 인해 보행자 통행 불편으로 철거나 이전 검토	○ 버스승차권판매소는 '99년 도로점용허가 받았으며, 철거 시 충전소 부재로 인하여 인근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재신청 시점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적정한 위치를 선정 이전토록 검토하겠으며 재신청이 없을 경우 철거 조치하겠음	추진중
		• 자전거활성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자전거 관련 여성위원으로 위촉	○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12.4월) 자전거 관련 여성위원으로 위촉토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 시 녹지과	시정 요구	① 등산로 일부 구간 정비 • 동대산(연지암 입구)일원 목재 테크 보수 • 동대산 ~무룡산 임도 배수로 정비 • 옥동 ~농소 간 도로 구간 하부 천마산 등산로 통행박스 설치 건의	○추기 등산로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12월 보수완료 ○자체 산림작업단을 활용하여 12월에 임도배수로 정비 완료 ○옥동 ~농소 간 도로개설 구간 내 천마산 등산로 통행박스 설치 등 원활한 등산로 연결로 설치를 위해 '11. 2. 24 시행사와 현장면담 및 '11. 3. 21시행청에 공문 요청, '11. 12월 시행사와 유선면담 등 지속 요청	완결 완결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주민참여를 통한 특색 있는 공원 조성 검토 • 기존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 내에 조성된 시설물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테마가 있고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기 바람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어린이공원의 대부분은 구획정리지구사업에 포함되어 조성 후 관리 이관되어 일률적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나 ,향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계획 시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특색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화봉 2지구 내 교통안전을 테마로 한 어린이 공원이 조성 되어 있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 시 녹지과	건의사항	② **사방댐 설치공사 등 각종 사업 주민 홍보** • 각종 주민 편의사업 및 산림 보호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에게 사업 추진 배경 등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주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건의함	○'11. 10월 오치골 사방시설물 안내판 설치 및 '11. 12월 사방시설물 안내 현수막 추가 설치 완료	완결
		③ **기타 건의사항** • 토질 분석 등을 통한 식재수목 선정 • 소나무 재선충, 깍지벌레 확산 방지	○향후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연구기관에 생육환경 자문 등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식재수목 선정하겠음 ○자체 예찰방제단 11명을 활용하고 적기에 방제사업을 시행하여 소나무재선충 및 깍지벌레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교 통 행정과	시정 요구	① **유료 공영주차장 대부료 산정 검토** • 관내 6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 대부료 산정에 있어 수탁자의 수입을 감안하여 대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대부료는 주차면수, 근무인원의 일비(식비포함),주차용지 인쇄, 전기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총수입의 20%를 대부료로 산정하고 있음 ○ 유료공영주차장 6개소 중 신전공영주차장은 진입로 확장요구 등으로 주차면이 감소됨에 따라 수입을 감안하여 대부료를 감액하여 계약 체결함	완결
	건의 사항	① **농소지역 버스 노선 및 배차 확대 지속 건의** •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농소지역은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버스 노선이 부족하므로 지속적으로 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를 늘려 주시기를 시에 건의 바람	○ 담당기관인 시 대중교통과에 농소지역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소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중
		② **연암제일교회 앞 곡각지점 횡단 보도 이전 건의** • 여름철 가로수로 인한 시야 미확보, 곡각으로 인해 연암제일교회 앞 횡단보도 횡단 시 주행 차량에 의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건의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담당기관인 울산 중부경찰서에 횡단보도 이설(현재 위치 →연암초등학교 방향)을 요청한 결과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음	불가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교 통 행정과	건의 사항	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건의바람	[답변내용] - 본 횡단보도를 이설할 경우 교차로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보행 불편이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이설은 곤란하나, 우리 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본 지점에 경보 등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음	
		③ 기타 건의사항 • 달천동 그린카운티 3.4차 @ 사이 단속카메라 등 설치(건설방재과 협의사항	○달천동 그린카운티 3,4차 사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담당기관인 울산지방경찰청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 요청한 결과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음 [답변내용] -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는 사고다발지역 및 대형 교통사고 우려 장소를 위주로 설치되고 있으며, 본 지점은 현장여건상 설치 불가함	불가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성격에 맞는 위원 위촉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 -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 청장, 위원은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교 통 행정과	건의 사항		건설도시국장, 기획홍보실장, 중·동부서 경비교통과장, 강북교육청 학무국장, 교통안전공단 울산자동차 검사소장 및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게 되어있음 - 현재 우리 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11명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8명, 위촉직 위원은 3명으로 향후 교통 관련 식견이 있는 주민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음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축 주택과	시정 요구	① **현대자동차 직원숙소 철거에 따른 인근 주택가 피해 방지** • 양정동 현대차 직원 숙소 철거에 따른 현대 2차 아파트 주민의 소음,비산먼지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입주민들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검토 바람	○ 염포동 현대자동차 기숙사 철거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인 현대자동차(주)에 공사소음 및 민원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환경 피해 등 추가 민원 발생 없이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음 ○ 현대2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현대엠코(주)에서 사업성을 검토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완결
		② **건축공사 허가 전 제반 사항 검토** • 각종 건축공사에 대한 허가 시 관련 법령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주민 의견 청취, 주민 정서 ,지역 여건 등을 사전에 감안하여 허가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 건축 공사 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전 주변 여건들을 철저히 파악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건축허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	완결
	건의 사항	①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지원** • 옥상녹화를 위한 사업비를 건축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면 녹색건축물 활성화가 잘 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부분 구청에서 행정적 지원을 검토 바람	○ 옥상녹화사업은 2011년말 기준 54건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 녹색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행정적 지원에 대하여는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축 주택과	건의 사항		우리구의 재정적 여건과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겠음.	
		② 공동주택 내 자전거보관 설치 관리 지원 •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자전거보관대 미설치로 주민 불편이 있고, 기설치된 자전거보관대 관리에도 애로가 있으므로 공동주택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지원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201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자전거보관대 설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관대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추진중
		③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행정지원 • 관내 공동주택 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검사 및 보험가입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기 바람	○ 201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우선 지원토록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지원사업 13건에 대해 모두 설치검사에 합격하였음	추진중
		④ 한신공영아파트 토목공사 지도·점검 강화 • 아이파크 1차 부지 경계에 한신공영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에 따른 아	○ 한신공영아파트의 가시설 공사로 인한 아이파크 1차 아파트 옹벽의 변위측정을 위하여 185개의 지하침하계, 하중계, 균열측정계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축 주택과	건의 사항	이파크 1차 아파트 옹벽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 예방과 옹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CIP공법 및 각종 계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등을 각 개소마다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또한 현장 상주감리가 상시 계측 및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한신공영아파트는 현재 전체 공정률 12%,지하터파기 공정률 85%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안전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향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당사 해상낚시공원 조성 진행 상황 의회 보고** • 당사 해상낚시공원 조성에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지만 정작 의회에는 보고된 바 없으므로 향후 의회에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기 바람.	○ 당사해양낚시공원 실시설계 결과 및 공사계획 보고 • 2011.12.14. 2012년 예산안 심의 시 향후 시공 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음	완결
	건의사항	① **친환경 농·축산물 이용 홍보** • 친환경 농·축산물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학부모, 학생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바람.	○ 교육청 및 학교 측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음	추진중
		② **친환경 작목반 등 친환경 농가 육성 지원** • 친환경 농산물 지정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배 후 3년이 경과해야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되는 만큼 ,농가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절실하므로 친환경 작목반 등 친환경 농가 육성 지원에 대한 세부 추진계	○ 2012년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더불어 친환경 농가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농수산과	건의사항	획을 수립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③ 급식지원센터 공간 확보 •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우리 구의 급식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센터 시설이 협소한 등 열악한 실정이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현재 농소농협 하나로마트의 회의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방문자에게 불편은 없지만, 향후 구청 내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이전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보건소	시정요구	① **약품 관리 철저** • 보건소에서 구입 관리하고 있는 주요 약품에 있어 수요와 공급 주기를 충분히 감안하고 재고관리와 많은 양을 일시에 구입하거나 다량의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의 유통기한을 감안하여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약품별 소요량을 철저히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적정량의 약을 구입하여 필요 이상의 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약품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정리하여 이월, 구입, 사용, 현 재고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주요약품관리 대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음	완결
	건의사항	① **간이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 • 간이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절반이 부적합으로 판정됨에 따라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위생과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환경위생과로 공문발송을 통해 향후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이 나오지 않도록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② **보건소 방역 위탁 검토** • 동별 방역을 현재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사정에 밝은 자생단체에 위탁 여부를 장단점 검토 후 시행 검토 바람	•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법적으로 자생단체로의 보건소 방역 위탁은 불가하며, 동 방역 소독요원 채용 시 자생단체 회원중심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생단체 방역활동 필요 시 방역약품 및 기자재를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보건소	건의사항		지원할 계획임	
		③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확대 실시 •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중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이 좋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보다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 운영하며 연차별로 초·중·고등학생의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 등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지역주민에게도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임	추진중

제6장

기타의정활동

제1절 결의안
제2절 구정질문, 서면질문
제3절 5분 자유발언
제4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제5절 주요 의정활동사항
제6절 의정활동일지

제1절 결의안

1. 결의안 현황

의안 번호	본회의 의결일	의 안 명	결의안 발의자	처리 결과
9	제122회 임시회 (2010.9.15)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윤치용의원 외 2명	원안가결
10	제122회 임시회 (2010.9.15)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강진희의원 외 2명	원안가결
18	제123회 제1차 정례회 (2010.10.18)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점반대 결의안	이혜경의원 외 5명	원안가결
71	제126회 임시회 (2011.5.19)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	이혜경의원 외 5인	원안가결
72	제126회 임시회 (2011.5.19)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촉구 결의안	강진희의원 외 5인	원안가결
92	제127회 제1차 정례회 (2011.7.14)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윤치용의원 외 6인	원안가결
140	제129회 제2차 정례회 (2011.12.26)	국내원전에 대한 안전종합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이혜경의원	원안가결
167	제132회 임시회 (2012.5.21)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윤치용의원 외 6인	원안가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22회 임시회(2010. 9. 15)

○ 결의안 발의자 : 윤치용의원외 2명

대법원이 2010년7월22일 2008두 4367호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며 위법한 파견에도 구「근로자파견법」제6조 제3항 즉 파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당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이것은 제조업체에 만연되어 있는 사내하청 대부분이 불법파견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며, 이 같은 근로조건하에 있는 노동자는 원청회사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이다.

울산은 산업도시이자 노동자 도시이다.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울산이 품격 높은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울산의 당면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울산의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제조업체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없는 울산, 불법적인 비정규직이 없는 울산을 요구하는 18만 북구 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불법파견으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상자에 대해 조건 없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울산 북구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런 불법파견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22회 임시회(2010. 9. 15)

○ 결의안 발의자 : 강진희의원외 2명

정부는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2년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예방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및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4대강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년에 걸친 조사로도 모자랄 환경영향평가를 고작 4개월 만에 날림으로 진행하고, 실시설계도가 나오기도 전에 급히 공사를 시작하는가 하면, 수리모형실험마저 무시한 채 보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문화재 조사 사업 없이 강행된 공사로 인해 값을 매길 수 없는 문화재들이 파괴되거나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즉 정부는 사상 초유의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임기 중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재정현실에 4대강 사업에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교육 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대폭적으로 줄어

들어 북구 주민들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앙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상 지방재정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것은 자명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더 늦기 전에 미래의 복원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1. 정부는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기본절차를 전면 재실시하라.
1. 정부는 대운하 사업 전단계로 의심되는 무리한 보 설치와 준설을 지양하고 4대강 지류, 지천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순수한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으로 진행하라.
1.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열악한 지방재정과 복지재정 확충에 투입하라.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23회 제1차 정례회(2010.10.18)

○ 결의안 발의자 : 이혜경의원외 5명

지난 8월24일 진장유통단지조합은 북구청 건축주택과에 지상 4층에 연면적 30,593㎡ 규모인 미국계 회원제 할인매장인 코스트코(Costco)의 건축허가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코스트코는 지난 2009년7월에 북구청 건축주택과에 입점관련 문의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구의회는 코스트코(Costco) 입점에 의한 중소상인의 몰락이 너무도 자명하게 예상되는 지금, 시급히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에 나서고자 한다.

이미 북구지역에는 4개의 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해 있다.

유통업계의 연구에 의하면 대형할인매장은 인구 12만 명당 1개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한다. 인구 18만의 북구에 4개의 대형할인매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인 것이다.

이 대형할인매장들이 벌이는 가격할인 경쟁으로 인해 동네의 상권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아직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혼란과 상인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다른 대형마트가 입점을 한다면 생존권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의 몰락의 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산과 대구에 있는 코스트코를 경험했던 시민들은 이미 창고형 도매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코스트코의 위력을 잘 알고 있다.

북구의회는 또한 중간유통업의 일대혼란과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라도 코스트코(Costco) 입점을 반대한다.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이며 회원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회원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으로 운영하

고 모든 상품을 저가(도매가)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인 컬크시그니춰를 통해 수입농산물과 공산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이는 북구의 농민들과 유통업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의 토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북구지역 농민들을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입점반대를 분명히 하며, 아울러 북구의 중소상인과 함께 입점저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26회 임시회(2011. 5. 19)

○ 결의안 발의자 : 이혜경의원외 5인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핵발전소가 있는 울산시민의 공포와 불안은 가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리(4기), 신고리(1기), 월성(4기), 영광(6기), 울진(6기) 등 모두 21기의 상업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현재 울산주변에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 9기가 가동되는 가운데 핵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30㎞에 82만 명이 이르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리 3기, 신월성 2기 등 5개가 건설 중이고 신울진 2기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7년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를 연장 운영하고 있고, 2012년이면 수명이 완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한 달 전에 설계수명이 다했지만 10년간 '수명연장'이라는 사기극으로 참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국내 핵발전소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으며, 핵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성을 들어 현재 원전운용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추가로 14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면 울산에는 모두 18기의 핵발전소로 둘러싸이게 된다.

게다가 올해 안에 핵발전소 신규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부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방폐장 건설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는 핵발전소를 새로운 신 성장 동력으로 진흥하려고 '원전르네상스'라는 말까지 써가며 핵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일본처럼 사고가 나면 울산시민 80만 명 이상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듯 핵발전소는 우리에게 상시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원전사고를 분명한 교훈으로 삼고 재난과 재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으며, 중국은 지난 4월 16일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승인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독일과 스위스, 미국 등에서도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재점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핵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정부는 핵발전소의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의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며, 울산 주변 핵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수립과 나아가 핵발전소확대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다 음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가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발전소 사고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전면적인 안전 점검 및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핵발전소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수명 연장된 직후 사고가 난 점에 유의하여, 수명연장 되어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과 2012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상기하여, 현재 울산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와 울산시가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방사능 감시와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핵사고시 대처방법과 대피요령 등 최상의 안전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26회 임시회(2011. 5. 19)

○ 결의안 발의자 : 강진희의원외 5인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한 시장 잠식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인데, 설상가상으로 주택가 골목의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인들은 재벌 유통업체의 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어 부자독식(富者獨食)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그저 눈물을 삼키고 있을 따름이다.

지난 1997년「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 대규모 소매점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재벌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영업에 초토화되고 말았다.

대형마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 116개이던 국내 점포 수가 2010년 7월 현재 총 419개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연간 매출액도 7조6,000억원에서 무려 8배가 늘어난 32조여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만7천개에 달하는 전국의 전통시장 연간 총 매출액 25조9,000억원(2008년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재벌마트 등장으로 우리의 의식주를 전담해왔던 전통시장은 속속 문을 닫아 1999년 46조2,000억원에 이르던 국내 전통시장 총 매출액이 2008년 현재 25조9,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도 재벌유통업체들은 오직 매출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3조 2항과 3항은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와 '중소기업

의 보호 육성'을 규정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 추구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권능과 의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으로 거대한 규모의 마트를 짓고 '싹쓸이식' 영업행태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의 생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재벌마트의 영업행태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규제 받지 않고 있다.

생존터전을 잃어버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계속되자,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잇따라 개정하고 나섰지만, 영세상인을 살리고 균형 있는 유통체제를 통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유통업에 실질적인 규제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 품목 제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빠지다 보니 2개의 법률안은 속빈강정에 다름이 없다.

재벌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 휴일제 적용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영세업체들에게 바늘 구멍만한 숨구멍이라도 열어주자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경제적인 룰이기도 하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른 바 장사에도 나름대로 사회적 윤리를 적용해 왔다.

자본이 빈약한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결코 일방적인 수탈을 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상인들이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덕목이자, 도리인 상도(商道)인 것이다.

우리는 오늘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유통체제를 바로잡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상인들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가 강력히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27회 제1차 정례회(2011. 7. 14)

○ 결의안 발의자 : 윤치용의원외 6인

산업수도 울산의 대동맥의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오토밸리로(路)는 지난 2000년 2월 착공을 시작하였고, 2006년 2월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공식 지정되었으며 전체 12.46㎞ 공사구간 가운데 수년의 공사 끝에 2007년 제1·제3공구인 5.46㎞ 개설이 완료됐으며, 제2공구 7㎞ 가운데 3㎞는 현재 도로개설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남은 제2공구 3구간 4km 구간은 울산시가 요구한 사업비 1,034억원 국가의 예산 지원이 없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4,400여억원을 들인 제1·제3공구도 '반쪽 도로'로 방치되고 있는 등 도로 개설에 나선 지 11년이 지났지만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기업체의 물류비용 증가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 불편을 오랜 기간 동안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고비용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주민과 북구지역 기업체 노사, 관계 공무원 등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등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개설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오토밸리로 제2공구의 조기 개설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3일 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제출되기도 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국가권익위원회를 방문해 4만 2천 920명의 의사를 담은 주민청원서 연명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달천농공단지 입주 기업 협의회와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등 지역 노·사·민·정 대표들과 함께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 개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건의문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북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총 930여개 중소기업과 17개 노동조합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2개 중소기업과 12개 노동조합 등 모두 1,300여명에 달한다.

이러한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의 참여 과정을 보듯이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개설은 단순한 도로 개설공사가 아니라 북구 주민의 편의 차원이 아닌 울산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며, 울산광역시 발전의 미래이자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므로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타당성 있음으로 결론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단일 완성차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930여개의 중소기업이 위치해 있는 기업도시인 울산광역시 북구의 핵심 거점 물류도로이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된 오토밸리로가 제2공구 개설 지연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11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오토밸리 제2공구가 조기에 개설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결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가 오토밸리로 제2공구 개설 지연에 따른 시민의 고통과 국가 경제적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개설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여 하루라도 빨리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긴급예산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내원전에 대한 안전종합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29회 제2차 정례회(2011. 12. 26)

○ 결의안 발의자 : 이혜경의원

울산시민들의 71%는 원전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59%가 반대하고 있다.

올해 1월에 발생한 영광 5호기, 신고리1호기, 2월에 영광5호기, 신고리1호기, 4월에 고리1호기, 3호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6월에는 고리2호기, 월성1호기, 10월에 울진6호기, 12월에 울진1호기, 고리3호기가 고장으로 멈춰섰다. 우리나라 원전 21기중 8기 38%에 달하는 원자로가 갑자기 가동이 중단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달여간 원전 안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우리나라는 원전 안정성이 세계최고라는 결론을 내린 뒤에 연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세계 다른 나라는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전에 대해 지금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체르노빌사고 이후 30년, 후쿠시마 사고 9개월이 지난 지금 원전사고로 전 세계가 불안감과 두려움에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원전사고로 일본은 수천만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백만명 이상의 암이나 기형아 출산을 경험 할 것이라고 한다.

졸속적이며 형식적인 점검으로 이뤄진 원자로 가동중단에 대해 한수원은 대수롭지 않은 일쯤으로 여기고 '원자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능 현상은 없다'고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만도 11건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고 그중 6건이 고리원전에서 일어났다.

고리1호기의 경우 전원계통에 이상으로 불시에 가동을 멈췄고, 2호기 사고의 원인은 농사용 폐비닐이 송전선로에 걸려 전기공급이 끊겼으나 보호계전기가 작동을 계속하여 가동을 중단했고, 또 고리 3호기는 2차계통의 터빈 발전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 손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한다. 케이블의 경우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지만 중고부품을 새것으로 속여 시공한 회사의 비리 등 최근 일부간부 직원이 연루된 비리 사건까지 드

러나고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측은 국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일본원전 사고이후 국민들이 예민해진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원자로는 정지시킬 때는 출력을 갑자가 낮추지 않고 서서히 낮추어 원자력 발전기에 손상이나 무리를 최소화해야한다. 그런데 원전이 갑자기 가동을 정지하면 원자력발전소에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손상과 충격을 가할 수 있고 그 이후 원전의 결함과 고장, 사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리원전 6건 사고는 고리원전의 노후한 시설에서 발생하였다.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행 한뒤 2008년 1월 수명 연장하였고, 2호기는 1983년 7월, 3호기는 1985년 9월, 4호기는 1986년 4월에 가동을 시작하였다. 일련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노후한 시설에서 발생하였고 사소한 원인으로도 원전이 멈추는 상황에서 어떻게 울산시민들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 할 수 없으며 그동안 진행된 안전점검이 엉터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시한번 올해만도 11번의 원전 사고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안전불감증에 대해 울산시민들의 요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지금까지 원자로 정지사고에 대해 어떠한 명확한 원인규명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수천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원전사고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고, 졸속적인 안전점검을 했던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원전 안전점검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안점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3. 수명연장중인 고리1호기를 당장 폐쇄하고 노후원전에 대해 노후화 순서대로 가동을 중단하여 일본과 같은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원전 가동 중단과 상관없이 원전 반경30㎞이내 거주민에 대해 상시 방재대책과 방재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5. 언제 정지될지 모르는 원전 때문에 원전을 더 짓는 어리석음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하며,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원전은 당장 건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늘도 울산광역시청 앞에는 80번째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정부를 국민들은 바란다.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32회 임시회(2012. 5. 21)

○ 결의안 발의자 : 윤치용의원외 6인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산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 4월 13일 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의 폐지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개편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국가 균형 발전의 든든한 토대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체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본질 때문에 우리는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으며, 지난 21년간 변함없는 정성과 열정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왔다.

이로써,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없는 국가발전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시한 독선적 의결로 구의회 폐지와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만행에 우리 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18만 구민의 함성을 모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규탄하며, 그 같은 위법한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

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하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지방자치의 근본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 지방발전이 이룩되는 그 날까지 일치단결하여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제2절 구정질문, 서면질문

1.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 질문의원 : 윤치용의원
○ 질문일시 : 제126회 임시회(2011. 5.19)
○ 질문요지 : 방사능 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1. 울산 북구 지역내 지방방사능 측정소 설치에 관한 질문

우리 북구는 환경방사선 감시기(ERMS) 측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방사능으로부터 북구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방 방사능 측정소가 울산 북구 지역에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 **구청장 답변**

- 우리구 주변에 소재한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1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울산에는 미설치된 지방방사능 측정소가 우리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울산시에 요청하였음.
- 아직까지 해당부처의 확답은 없으나 최근 개최된 교육 과학기술부 산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중 지역방사능 측정소의 추가 설치 및 무인환경방사선 감시기 추가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음.
- 따라서 북구 지역내 지방방사능 측정소의 설치 및 무인 환경방사선 감시기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지역에 방사능감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임.

2. 환경 방사능 감지기 설치 관련 추진사항에 관한 질문

원전 주변지역에 공기 중의 방사선량과 율을 연속 감시하기 위하여 환경 방사선 감지기를 설치·운영하고 시료를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방사능을 분석·평가하는 방사능 감시가 원전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북구 지역에는 이러한 감시 기능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방사선 감지기 설치 촉구 등 방사능 감시를 위한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 구청장 답변

- 구청에서는 지난 3월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북구지역 방사능 측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4월에는 월성원자력본부에 공문 발송하여 환경방사능 감시기를 북구청사를 포함하여 2개소 추가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최근 일본원전 사고에 따른 지역주민의 환경방사능에 대한 중대한 관심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 월성원자력본부에서는 이번 주까지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뒤 북구 지역내 환경방사능 감시기 설치 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겠다고 하였음.
- 만약,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우리지역내 환경방사능을 가장 합리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적정장소에 감시기를 설치토록 노력 하겠음.

3. 원전 감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질문

방사능을 주기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환경방사능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인 지역대학이나 시민단체에서 참여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와 주민 중심의 원전주변 감시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환경방사능 감시는 정부·사업자·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조하에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전 감시에 대한 협조체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우리 북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 구청장 답변

- 현재 경주에서 설치운영중인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 위원회에서는 경주지역에 대한 환경방사능 측정·분석, 환경 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북구 지역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은 전무한 상태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월성원전환경감시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정 및 우리구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의 감시기구 위원 위촉으로 월성원자력 주변지역의 방사능 감시 및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지자체의 조례 개정 등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월성원전의 사고 발생시 발전소 주변지역인 우리구에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원전 방사능에 대한 감시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쓰겠음.
- 또한 주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재난시 대처 요령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우리구 홈페이지에 방사능 관련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링크하였으며, 지난 4월 25일부터 한 달간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방사능 및 지진해일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주민들의 대처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힘을 쓰고 있음.

○ 질문의원 : 강진희의원
○ 질문일시 : 제128회 임시회(2011. 10.7)
○ 질문요지 : 장애인 성폭력 대책 등에 관한 질문

첫째. 우리지역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통계 및 장애인 성폭력사건에 대해 어떤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현재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과 지원은 전담기관인 “울산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사례접수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통계자료는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음.
  울산전체로 볼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는 최근 3년간 총 184명으로 매년 6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1,900 여회로 상담관리 되고 있고, 피해자 중 43%가 아동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피해사례는 표면적 통계자료이고, 장애인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와 성폭력 피해 상담을 꺼리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피해 사례는 더 많이 존재할 것임.
- 현재 울산광역시, 울산지방경찰청, 동강병원 3자 협약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여성, 학교폭력 피해자등을 365일 연중 무휴로 지원하는 <울산 원스톱 지원센터> 가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울산 원스톱지원센터>는 여성경찰관, 상담사, 행정요원등으로 구성되어 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상담과 수사, 의료, 법률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울산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한 우리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은 2009년 5명, 2010년 4명, 2011년 2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 이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약자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둘째.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우리지역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등 장애인학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사회적 약자가 겪는 피해 등 모든 사회적 문제는 사전 예방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예방교육의 효과는 단기적인 성과가 바

로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우리구에 소재한 장애인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교별로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교직원 및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내 성희롱 예방교육, 구제절차, 성폭력 예방등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최근 3년간 태연학교에서는 총 4회, 메아리 학교에서는 총 7회가 실시되었음.

셋째. 지역내 장애인관련 시설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우리구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총 14개소가 있음.
  14개소 시설별로 실시된 성폭력 예방교육은 종사자 및 장애인을 각각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총 130회에 걸쳐 자체 실시되었음.
  향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직접적인 지원과 예방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행정과 교육청, 지역사회 등 관련 당사자들이 소통, 교류하며 지혜를 모아서 장애인들이 더 이상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특히 우리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민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과 다각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음
  나아가, 장애인만을 위한 특수한 시책을 뛰어 넘어 장애인이 행복하면 비장애인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릴수 있도록 모든 시책의 기획단계에부터 염두에 두어 누구나 누리는『문화복지 북구』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음.

○ 질문의원 : 윤치용의원
○ 질문일시 : 제128회 임시회(2011. 10.17)
○ 질문요지 : 달천유적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질문

첫째. 본 사업은 잠정적으로 대략 85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 주체가 어디인지, 사업추진에 대한 광역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광역시와 어떠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시 지정기념물 제40호인 달천철장은 울산광역시가 2008년12월29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보존대책으로 유적전시관을 건립토록 문화재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바 있음.
- 취임한 이후 여러 차례의 간담회 개최와 최종 2010년 9월1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농소3동 전체 주민 의견으로 현재 부지 상태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합의점이 도출된 만큼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을 위해 시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시의 입장은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비가 지원되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고, 당초계획인 유적공원조성사업에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음.
-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사업주체는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라 우리 구청이 해당됨.

둘째. 본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시비 예산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를 위한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으로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에 근거하여우리 구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부지매입, 재정투·융자심사, 그리고 시설물 관리운영계획(시설운영주체, 콘텐츠 확보방안, 시설운영계획 수립여부, 운영·유지비 확보방안 등)을 수립하여 광역시에 예산신청하고 광역시는 계획서 검토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써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당초예산에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담당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앞서 설명한 선행조건 행정절차 이행 후 국·시비를 요구토록 하고 있음.

셋째.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있어 용역 발주가 늦어진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용역발주를 위하여 2011년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업지시서 작성 등 기본용역계획 검토 절차와 계약심사, 입찰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다소 늦어졌음.

  2011년10월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여건 조사분석 중 설문조사 진행 및 분석, 상위계획검토, 기본계획구상, 관련 문헌조사를 완료하였음.
-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는 사업에 들어갈 시설물에 대한 종류 규모, 예산에 대한 검토, 유사 시설에 대한 사례 조사를 추진 중에 있음. 그리고 용역전반에 걸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2011년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회 후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에 있으며 추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넷째.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착공 등 전반적인 세부 추진 일정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업비 규모 등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2012년2월에 완료예정이며,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을 2012년3월에 울산광역시에 요청할 것이며, 국고보조금 교부가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2013년에 공사 발주할 계획임.
- 2012년 당초예산에는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미반영 되어있으나,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가 확정되면 추경에 실시설계비 2억 원 정도를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임.

다섯째. 사업 장기화시 사계절 꽃 식재나 작은 휴식공간 및 주민들의 산책로로 활용할 계획 여부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다소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휴식공간 및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어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사업의 장기화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과 국고보조금과 시비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앞으로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의견수렴과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우리 북구의 새로운 문화명소 및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이수선의원
○ 질문일시 : 제129회 제2차 정례회(2011. 11.21)
○ 질문요지 : 중산동 목욕탕 건립에 관한 질문

첫째. 중산동 목욕탕 건립은 총 사업비가 건축비 24억원을 합하여 31억 4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음식물 자원화 사업의 폐쇄와 주민지원금의 사용처 등 주민 숙원사업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시행하게 되었음.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주민 지원금 중 일부를 포함하여 중산동 615번지에 대지면적 235.95평(780㎡)에 건축면적 83.64평(276.49㎡), 지하1층, 지상 3층인 연면적 223.18평(737.77㎡)의 중산동 목욕탕 건립에 대한 추진현황 및 왜 건물이 있는 땅을 매입했는지 부지선정에 대하여?

▶ 구청장 답변

- 구청장으로 취임 이후, 북구지역 현안사업 중 가장 우선순위 사업으로 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이후에 2010. 9. 13일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타 시설전환을 위한 공청회”를 농소2동 중산문화센터에서 개최하였음.

공청회 개최결과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민지원 기금으로 목욕탕을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참석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공청회를 마친바 있음.

- 2010. 10. 12일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주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2010. 10. 1 ~ 11. 30일까지 지역주민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 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하여 82.58%의 압도적 찬성으로 목욕탕 및 체력단련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음.
- 따라서, 중산동 615번지 목욕탕 부지선정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공청회,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 지원협의체회의, 구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의 모범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계획된 사업부지는 자연녹지 내 자연취락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율 100%로 바닥면이 넓은 가로형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는 활용성이 매우 용이한 부지임.

둘째. 중산동 615번지 기존 상가건물 부지 매입과 영업보상 이주비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 매입시기가 1년 이상 늦어져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이며, 목욕탕 부지 보상의 총 7억4천1백8십2만5천7백9십원 중 236평(780㎡)의 토지 매입비로 3억5천7백2십4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건물보상, 영업보상, 이주비 등 보상비로 3억8천4백5십8만 5천7백9십원이 소요되었는데 이와 관련 부지매입비에 대하여?

▶ 구청장 답변

- 각종 토지매입은 도시계획사업이든 아니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거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보상액의 산정은 2개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에 의하여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졌음. 보상과정에 시간이 좀더 지연되었다고 해서 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영업보상과 이사비용 등도 법적 기준에 의해 지급되었음.

  그리고 사업의 지연부분도 세입자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배려하여 다소 늦어진 측면은 있으나 협의 기간동안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을 준비해 왔기에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음.

셋째. 중산동 목욕탕 부지는 부지형태가 부정형이고 주차대수 또한 7대로 설계되고 있어 주차장이 협소하고 목욕탕이 협소하여 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되는바 주차장 추가확보에 대하여?

▶ 구청장 답변

- 당초부터 인근 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 하였지만, 감정가격보다 2배정도 높은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여 매입을 할 수가 없었음.

  현재 설계 과정에 7대의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질 운영은 10여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며 향후 운영결과에 따라 주차장 추가확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 이미 지난 11월 3일 최종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세부 시설 배치까지 주민합의를 이루고 본격사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

  향후, 사업추진시 전문가 자문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북구의 새로운 복지문화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음.

2. 서면질문 및 답변요지

○ 질문의원 : 이혜경의원
○ 질문일시 : 제128회 임시회(2011. 10.7)
○ 질문요지 :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방안에 관한 질문

첫째. 작은도서관이 29개에 이르는 조건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을 돕고, 새로이 만들어지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작은도서관 사업을 담당할 책임 사서 및 구립도서관별 데스크 사서채용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민선 4기 출범 이후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조성 및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당초 작은도서관 업무는 중앙도서관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2010. 10. 1.자로 신설된 도서관정책담당에 작은도서관 업무를 이관하여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구가 작은도서관 정책의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작은도서관이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서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적 제약도 많은 만큼 단계적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둘째.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있어 행사를 분산해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여 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한 행사 진행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올해까지는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구립도서관 5개관에서만 진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진행 공간이 확보된 67㎡ 이상 작은도서관 9개소(2011년 조성 3개소, 2012년 조성 6개소)에서도 작가와의 만남, 인형극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2년도 당초예산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예산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내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참여하는 작은도서관의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주민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도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음.

셋째. 지역 특성과 도서관 이용자에 맞는 세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권역별, 지역별 운영위원회로 전환할 것과 이에 따른 구립도서관운영 조례 개정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민선 4기 출범 이후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 개설, 북스타트 확대 운영, 사서 도우미 교육과정 강화, 작은 도서관 운영자 교육과정 신설 등 책 읽기 좋은 북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 등이 시행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 방안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체계에서 권역별 운영위원회 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향후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하여 권역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 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음.

넷째. 특성화된 운영모델을 만들어 가기위해 5개 구립 도서관 중 1~2개 정도는 민간위탁이나 민간 전문관장 위촉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구립도서관의 경우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기관임.
  현재 민간위탁이 시행되고 있는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직영할 때보다 관리비용 증가, 인건비 축소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 정보 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구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정윤석의원
○ 질문일시 : 제129회 제2차 정례회(2011. 11. 24)
○ 질문요지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질문

첫째. 2001년 이후부터 2006년 12월 말경 시공사인 평창토건 부도까지 우리구 조치내용이 있는지 여부와 2001년 5월경에 연대보증인이 선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2000년 시·구 합동감사이후 연대보증인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에 연대보증인을 선정토록 수차례 촉구요청을 하였고, 조합으로부터 2001년 5월경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 이후 평창토건의 부도가 날때까지 건설경기 부진과 부동산 매각침체 등의 사정으로 시공사 유치가 어려워 연대보증인 선정이 지연 되었음.
  시공사 평창토건 부도 이후 시공업체 부재로 연대보증인 또한 선정될 수 없었으며, 최근 시공사가 재선정되어 조합에 연대보증인을 선정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임.

둘째. 기성금을 90% 범위 내 지급 및 감리조서 첨부 등에 대하여 감사이후 이행 확인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

▶ 구청장 답변

- 2000년 시·구 합동감사이후 조합에 기성금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하여 각종 분담금 및 세금 등을 납부토록 서면촉구, 구두 및 유선으로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관할경찰서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 이행에 따라 조합장을 2001년 9월경 고발조치 하였음.
  그 이후 체비지 매각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차례 조합과 회의를 하였고, 2008년경 체비지 불법매각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경찰청의 자료요청에 따라 우리구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한 바 있음.

셋째. 2001년 9월 농지전용부담금 체납 징수 대책에 의거 개별 건축 시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조합에 납부토록 조치했다는 것은 수 백회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한것인데 농지법 관련 어떤 규정에 근거 한 것인지 여부?

▶ 구청장 답변

-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분할납부는 구)농지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착수 전에 30/100을 납부하게하고 3년 이내

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최종 납부일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허가취소 또는 관계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체납금은 국세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있음.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경우 재산 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 체비지를 압류한 상태이며, 그 압류에 따라 2001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체납된 농지조성비 등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분할 납부를 하게 하더라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넷째. 개별건축주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 또한 감액이나 면제해준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있는지 여부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진장·명촌지구 토지 구획정리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음에 따라 '99. 7. 16일에 농지조성비 등 20,451백만원을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부과하게 되었고, 조합에서는 2001. 9. 1일까지 1,243백만원을 납부 후 19,208백만원을 장기 체납함에 따라, 구)농지법 제41조에 의거 허가취소 또는 관련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렇게 할 경우 구획정리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장기화됨에 따라 만성적인 민원 발생, 체비지를 매각하여 각종 부담금과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 조합의 실정으로는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점, 개별건축허가 불가 등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별 건축 허가 시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농지조성비 등을 조합에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된 것임.
- 따라서 체납액 전부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의 실정을 감안하여 2001. 9. 7일부터 체비지를 압류하고 개별 건축 허가 시 대지면적에 상응하는 농지조성비 등을 조합에서 납부하게 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음.
현재,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액 20,452백만원 중 20,127백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325백만원이 체납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당초 부과한 금액에서 감면이나 면제 해 준 사실은 없음.

다섯째. 북구청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에 대해?

▶ 구청장 답변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 및 평창리 비에르 아파트 주민의 피해가 발생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후 불법행위조치 및 관리 등 이행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제3절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정윤석의원
○ 발언일시 : 제124회 제2차 정례회(2010.11.22)
○ 발언요지 : 북구청의 당면과제와 해결방향에 관해서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윤석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북구 의회와 북구청이 지닌 문제점과 당면과제를 제시하고,

이 과제를 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점으로

저는 북구 발전에 저해되는 우려스러운 몇몇 사례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의원으로서 구청장님의 공약 실천을 위한 남다른 열정과 의지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고,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정치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협조를 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의회가 우리 지역과는 동떨어진 국가 핵심 정책인 4대강 사업을 굳이 반대결의를 해야 했는지, 북구청이 광역시와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 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하는지 등 울산광역시와 정부의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 다수 의사와는 거리가 먼, 과연, 특정 정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여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 북구가 예산 지원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또한,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인사교류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5대 북구의회가 민주적인 절차로 의욕적으로 출범한지도 5개월로 접어듭니다. 돌이켜 보면,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많은 주민들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둘째, 당면과제로는

지난 1997년 북구청 개청당시 10만명의 인구는 이제 17만 5천명이 되었고, 북구

예산은 257억에서

현재 1,500억이 넘어, 울산에서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성장이 빠른 도시가 되었고,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울산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우리 북구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가 팽창되고 있어, 주민 편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불편해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토밸리 조기개통, 농소~옥동간 도로 개설, 동천강 마스터플랜 시행, 북부 소방서와 북부경찰서 조기 설립,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이설사업, 그리고 송정 수변공원 조성, 명촌·진장 지역의 개발문제, 양정·염포 주거환경 개선, 강동 산하지구 개발 등 수많은 현안이 산재하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아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북구청의 예산으로 해결될 사업이 아닌 울산광역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까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일치된 시각과 한목소리를 내어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고, 예산확보에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함에도 구청과 의회, 구청과 시청, 구청과 중앙정부간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세 번째로, 이 과제를 풀어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18만 주민을 위해, 중단되거나 실패 없는 북구 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모두가 소통을 위한 노력은 물론,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대단위 아파트 준공으로 매년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 해양관광이 조화된 도시, 동부권의 새로운 물류거점도시로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로 육성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후손을 위한 백년대계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초당적인 협조와 주민통합을 도출해야 합니다.

주민의 선택으로 의원이 되었고, 북구민의 선택으로 북구청장으로 선출되었듯이, 울산광역시장 또한 시민의 선택으로 선출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성공한 시장,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울산광역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구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어떤 자세가 옳은 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승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종오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의원 : 이혜경의원
○ 발언일시 : 제124회 제2차 정례회(2010.11.22)
○ 발언요지 : 현대자동차의 2년이상 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경의원입니다.

일주일이 넘게 북구 양정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판결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불씨를 당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며,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자,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공정사회' 실현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0%가 넘는 사회가 안정된 사회일 수 없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가와 기업,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쳐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수개월동안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요구한 대화와 교섭을 철저히 무시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22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사용자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였습니다.

또, 지난 11월 12일에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현대차의 대법원 판결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사항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전경련, 경총 등 경제인단체들은 그동안 입만 열면 '법질서'를 주장하여 왔고, 정부와 현대자동차는 앞장서서 '법의 판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법원판결에 따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여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공장 농성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정규직화 요구이며 지극히 정당한 투쟁입니다.

그런데 11월 15일 현대자동차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와 경찰이 짜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공권력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집단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이들을 강제로 경찰차에 태운 것은 경찰이 아니라, 현대차의 관리자들과 회사가 고용한 용역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현대자동차 관리자들이 경찰업무를 대행했단 말입니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미란다 원칙도 경찰서에 가서야 본인들에게 고지되었다고 합니다. 부상으로 피를 흘리는 사람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2시간이 넘게 경찰서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출하는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잠재우려하는 현대자동차에 맞서, 11월 20일 오후 4시20분경 한 비정규직노동자가 분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용역깡패를 동원한 무자비한 폭력은 지금의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며, 현 사태를 풀려고 하기 보단 더욱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누르려 하지 말고 당장 용역깡패를 철수 시키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는 가장 합법적인일이며, 정당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끝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대화와 교섭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폭력진압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발언의원 : 이수선의원
○ 발언일시 : 제124회 제2차 정례회(2010.12.13)
○ 발언요지 :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북구의회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북구 18만 구민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저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의 야만적이고도 비인도적인 무자비한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우리정부에게 적의 어떠한 군사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에 갑작스런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우리의 소중한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의 아픔을 이겨내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는 우리 국민의 염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은 우리 영토와 국민을 향해 직접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하고 평화적인 남북관계 조성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한의 비인도적인 무력도발행위에 충격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무력도발에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18만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가 우리 영토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고,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외면한 적대행위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해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북한당국의 즉각적이고도 진심어린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며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여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방지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당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연평도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승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종오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의원 : 윤치용의원
○ 발언일시 : 제126회 임시회(2011. 5.19)
○ 발언요지 : 공동주택 지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지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라는 주제아래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라는 요지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총 90개소 44,251세대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구 전체 세대수의 74.5%에 해당되는 절대 다수 주민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 개설 및 개보수는 물론 상하수도, 방역, 쓰레기 수거, 치안 등 모든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을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원이나 학교까지도 입주민의 부담으로 지우고 있는 현실에 비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산세 등 세수 또한 절대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재활용분리배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모범적으로 정착되었듯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촌 자매결연, 1하천 살리기 운동 등 북구청 주요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18일자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매년 일정한 예산을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몇 년간 북구청이 추진한 공동주택 지원사항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억 8천만원의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너무 적으므로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가까운 울주군만 하더라도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15억원이었고, 우리 구보다 재정이 열악한 동구만 해도 3억5천만원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북구청은 북구 전체 세대수의 74.5%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고작 1억 8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 지역내 몇백미터 도로 개설에만 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개설된

도로는 소방도로의 역할은 뒤로한 채 인근 거주민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거주비율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권의 문제라든지 공공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이러한 균등한 편성이 힘들더라도 적어도 지금의 1억 8천만원의 예산보다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주택 지원방법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 그 지원규모를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고 있고, 그 금액도 총 사업비 2천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최대 1천만원에 불과하여 웬만한 주요 숙원사업은 총사업비가 2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점입니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감시카메라 보강, 담장 보수 등 단순한 시설 보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비 지원 한도인 2천만원에서 보다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대상도 단순한 시설 개보수비 지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재도장 공사 및 주차장 재포장 공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부담이 큰 부분에도 지원 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내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비용 및 가로등 전기료 등 공적 성격의 비용도 사업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 지원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나아가 관리비 절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북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구상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구청에서 공동주택 자문단을 구성하여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공동 주택별로 카페 배너를 개설하여 입주민들이 관리비 등 단지별 각종 정보사항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공동주택 통합 사이트를 제공한다든지, 공동주택별로 따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표준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정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기준안 마련, 표준 입찰 내역서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공동구매 제도 도입 등은 조기에 도입 추진이 가능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민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의 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북구청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통해 신청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함과 아러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수를 평가하여 우수단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나아가, 입주민들과 자생단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는 모든 일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정하여 그 결과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입대의 회의를 전 입주민에게 생방송으로 방송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간 우리 구청이 추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한 지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규모 개보수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 활성화 등 건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건의한 세가지 부분과 여러 구상들에 대해 지금 당장 실천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 주권이 조기에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윤종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이홍걸의원
○ 발언일시 : 제127회 제1차 정례회(2011. 7. 14)
○ 발언요지 : 코스트코 허가 신청 반려에 따른 재논의 촉구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계 대형할인 매장인 코스트코의 관내 입점에 따른 우리청의 "건축허가신청, 최종반려"에 대해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구 진장동 283-3번지 일원의 부지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통산업 발전으로 물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상 "판매시설"용도로 지정되어 대규모점포만이 입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동법에 따라 울산진장유통단지조합측은 진장유통단지내 상기부지에 코스트코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심의신청의 반려에 따른 행정심판과 건축허가 신청반려에 따른 행정심판 개최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6월20일 "건축허가신청 최종반려"라는 우리청의 결정에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상인 보호 및 지역유통경제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반려된 코스트코의 허가신청 반려가 「건축법」 제11조 및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제반관계법령의 위법, 부당성은 차지하고서라도 우리청의 결정이 과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절차내지 처분이냐 하는 점이 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건축심의와 허가신청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을 무시한 북구청의 행정에 대해 먼저 행정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묻고 싶으며, 또한 향후 예상될지도 모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과 사업지연에 의한 조합측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북구청의 행정데미지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받게 될 금전적인 피해 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경제의 논리가 적용되는 자유경제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논리내지 타당성으로 접근하여 행정을 집행할 시 혹 야기될지도 모르는 피해와 주민대다수의 권리와 이익에 상치되는 특정단체내지 세력에 대한 행정이 과연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이혜경의원
○ 발언일시 : 제127회 제1차 정례회(2011. 7.14)
○ 발언요지 : 노후한 월성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 관련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노후한 월성 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해 5분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월성1호기 노후 핵발전소 재가동에 의한 수명연장은 또 다른 후쿠시마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일본에서 일어난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핵폭발 사고의 참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보면서 자연재앙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한편,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에서 가슴 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는 핵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한 탈핵정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정책의 수정은 커녕 핵발전소 정책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가장 먼저 폭발한 원전1호기는 폭발 한달전 수명이 연장된 기종이었고, 그로 인해 노후한 원전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수명연장 원전의 위험성을 눈으로 확인하고도'우리는 일본과 원자로 노형이 다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설비를 보강하였다'고 하고 교육 과학기술부는 수명연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과 수명연장은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첫째, 1982년 11월 21일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을 마감해야합니다.
30년 예측으로 설계된 월성1호기 핵발전소는 가동율 80%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90%에 가까운 가동으로 조기 노후화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연쇄핵폭발사고에서 보았듯이 노후한 원전일수록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은 수소 폭발에 의해 일어난 핵사고였습니다.
월성1호기의 경우 수소제거 설비가 없이 28년간 가동해 왔습니다. 한수원은 2003년 안정성 검사에서 주기적으로 수소 제거설비를 하라는 지적에 받았음에도 수소 제거장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2009년 4월1일 설계수명을 다해 가동 중단된 월성1 호기를 지난 27개월간 7천억원

을 들여 압력관 등 주요 부품만 교체한 체 수소 제거장치 없이 2011년 7월 17일 부터 재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후쿠시마 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월성 1호기는 재가동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월성 1호기는 가압 중수로형으로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핵연쇄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격납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으며, 월성원전 1호기와 동일한 유형이 25년 전 체르노빌 원전유형이었습니다.

넷째, 월성원전 앞바다 10㎞ 지하에 50㎞의 활성 단층이 존재해 해저에서 지진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지진으로 지질이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 북구는 월성핵발전소 반경 10㎞에 위치해 있으며, 울산의 100만 인구가 월성과 고리 핵발전소 반경30㎞이내에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친다면 지진과 핵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울산에서 어떤 참상이 발생 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선진 국가는 수명연장을 선택할 때 새원전 건설이 사회 경제적으로 도저히 불가능 할 때 불가피하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새원전을 계속 지으면서 수명연장을 공론화하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다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쫓아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로 세계는 핵포기 정책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노후 원전을 폐쇄하였고, 필리핀이 원전 재가동을 중단했고, 이탈리아, 스위스와, 대만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였습니다. 일본도 핵발전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정치권의 제기는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현재 울산 상황은 후쿠시마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를 교훈삼아 핵발전 정책에서 새로운 친환경에너지 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월성1호기 재가동 중단과 수명연장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현재 수명연장 가동중인 고리1호기의 가동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녕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의원
○ 발언일시 : 제128회 임시회(2011. 10. 7)
○ 발언요지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영화 '도가니'로 인하여 장애인 성폭력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비호하는 권력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행정과 정책에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1년 6월 울산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적장애 여중생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팬티만 입고 장애여중생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울산에서는 장애인 단체 및 시민·여성단체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9월 26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징역5년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중에 가해자 공무원을 용서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장애인 단체 및 시민·여성단체들이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닌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칼을 들고 복면을 쓰고 팬티를 입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가해자를 용서해 달라는 탄원서를 공무원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성폭력 가해자를 용서해 달라는 탄원서를 집단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에, 울산시민들이 공무원사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법정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공무원 자신의 직책과 직위가 다 기재되어 있어 개인 공무원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파렴치한 성폭력 가해자를 감싼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보다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사회의 정의와 도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 수년 동안 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과 고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육체와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 여학생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파렴치한 방법으로 성폭력을 한 것을 어떤 이유로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해자는 업무능력이 뛰어난 공무원, 인맥이 넓은 공무원이 아니라, 그는 단지 파렴치한 성폭력 범죄자일 뿐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자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 저의 발언을 듣고 있을 많은 공무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서명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구 공무원은 단 한명도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이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본 의원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지금까지 본의 아니게, 악의 없이 평소 그 사람의 업무능력과 행실을 보아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는지, 본 사건을 왜곡되게 동료공무원에게 애기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성폭력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2차 가해 행위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성범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눈높이가 아닌가 싶어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씩 울리는 2차 가해 행위가 공직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사회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의회와 행정이 함께 나서서 우리 북구가 장애인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1. 처리현황

(2010. 7. 1 ~ 2012. 6.30)

연도별	접 수	처 리 결 과			
		계	완 료	추진 중	불 가
계	19	19	10	7	2
2010	1	1		1	
2011	12	12	6	4	2
2012	6	6	4	2	

2. 2008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2008. 6. 5 하수종말처리장관로 조기 연결 요청 (완결)	농소 삼우타운, 백산 그린타워 입주자 대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에 당아파트 정화조 관로를 조속히 연결 조치	2008. 6. 13 ○건설과 이첩 ○방어진처리구역(농소)지선 관거 부설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실시설계완료 사업예산(국비)이 확보되면 단계별로 사업시행예정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울산광역시(하수관리과)에 건의
2008. 7. 15 농소1동주민센터 옆 소방도로 개설 관련 (완결)	호계동 870-16 이○○	농소1동 주민센터 옆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호계동 868-1번지 122㎡중 93㎡가 도로로 편입되어 나머지	2008. 7. 16 ○도시녹지과 이첩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반영하여 보상 완료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부지 29㎡을 신축건물허가요구 및 적절한 보상금 요구	
2008. 7. 3 달천아이파크 111동 부실시공에 따른 대책수립 및 정밀안전 진단 (완 결)	달천아이파크 입주자 대표	달천아이파크 1차 111동 지반침하 및옹벽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요구	2008. 8. 4 ○건축주택과 이첩 ○긴급보수 및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조치 ○'09.6.1현재 보수중이며 8월중 완료
2008. 7. 31 벽산블루밍 공사와 관련한 달천아이파크 1차 분진, 소음 및 안전진단(완 결)	달천아이파크 입주자 대표	달천아이파크 111동 지반침하 및 옹벽균열의 발생, 분진, 소음은 벽산블루밍 공사로 판단되어 조치요구	2008. 8. 4 ○건축주택과, 환경위생과 이첩 ○소음, 분진 과태료 부과 ○'09.6.1현재 보수중이며 8월중 완료
2008. 8. 8 매곡푸르지오 앞 상가공사로 인한 피해 (완 결)	푸르지오 2단지 입주자 대표	프리머스 플라자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 먼지, 사생활침해 발생으로 입주자 피해보상	2008. 8. 12 ○건축주택과, 환경위생과 이첩 ○소음측정 10회중 2회 초과로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지속적인 지도점검 ○푸르지오 2차와 상가간 거리 25m며 사유재산 제한 법적근거 없음
2008. 8. 8 푸르지오내 헬스장 부실시공의 해결 대책의 건 (완 결)	푸르지오 2단지 입주자 대표	아파트 지하 헬스장 결로와 누수로 사용못하고 있으니 대우건설 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요구	2008. 8. 12 ○건축주택과 이첩 ○시공사에서 결로 발생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아파트 입대의와 협의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완료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2008. 8. 8 달천아이파크 111동 보강토 옹벽 크랙 및 주차장 침하 관련 (완 결)	달천아이파크 입대자 대표	주차장, 보도블럭 침하, 오폐수관, 배수관과 집수정 등 침하되었으니 전면 재시공 요구	2008. 8. 12 ○건축주택과 이첩 ○안전진단전문기관 현장 점검 ○전문기관 보수보강 계획서 제출 및 주민설명 : '08.8.21 ○'09.6.1현재 보수중이며 8월중 완료
2008. 9. 2 그린카운티 4단지민원협조 요청 (완 결)	달천그린카운티 입주자 대표	○그린카운티 학교부지 용도폐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 심의결과 부결에 따른 주민 해명과 도로개설요구	2008. 9. 3 ○도시녹지과 이첩 ○학교폐지 후 부지활용방안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향후 교육정책 및 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함이 타당하여 부결되었으며 ○중로2-142은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투자가용 재원내 우선순위에 의거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2008. 9. 2 달천동 쇠곳마을 내 오수관 및 도로 설치요구 (불 가)	달천동 68 이○○외14	달천동 37-1에서 69번지 일원에 도로와 오수관 설치 요구	2008. 9. 3 ○도시녹지과 이첩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의거 농업에 필요한 시설만 할 수 있어 농수로에 설치는 불가함 ○마을진입로를 통한 오수관로매설은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나 동의 등이 우선되어야 하며 재정여건과 사업우선순위 등을 검토 후 조치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2008. 9. 5 중산현대아파트옆 축사로 인한 분뇨 악취 피해 (완 결)	중산현대 아파트 201/602호 김○○	중산현대아파트 옆 소축사에서 분뇨악취 발생하여 고통을 겪고 있으니 조치 요구	2009. 9. 29 ○환경위생과 이첩 ○'08.9.26 악취 포집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 조치 결과 : 기준치 미달임 ○축사 소유자에게 축사관리 및 발효를 촉진하는 미생물제재의 살포 등으로 악취 저감토록 조치
2008. 9. 25 구유동 281-1 번지외2필지 근린공원 해제 요구 (불 가)	중구 남외동 447-5 김○○외2	강동권관광개발 사업으로 북구 구유동 28-1, 27-1번지가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해제요구	2008. 10. 1 ○도시녹지과 이첩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근린공원 지정 ○구유동의 경우 취락지역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이며 자연환경과 경관이 잘 보전된 천혜의 해안지역으로 근린공원 폐지는 불가
2008. 9. 29 진장동 125-17 (답) 형질변경 요청 (불 가)	중구 반구동 736-25 이○○	진장동 125-17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 요청	2008. 10. 1 ○생명산업과 이첩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며 농지보전가치가 높은 집단화된 우량 농지로 농지전용시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추가잠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신청지주변의 농지전용허가 불가
2008. 10. 9 변상금 통지서 취소요구	북구 매곡동 795-25	매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고물상 영업구역인 매곡동	2009. 10. 13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이첩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완 결)	장○○외1	795-154번지가 행정대집행되어 손실보상요구 및무단점유변상금 철회	○ 매곡동 795-25,26,27,153번지는 2006.12월말에 대부계약 만료되었으며 소공원 조성을 위해 사유물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무단점유하였기에 변상금 부과
2008. 11. 4 중산동 현대글로리아 입대의 인정 (불 가)	현대 글로리아 아파트 주민일동	'08.5월 개정된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새로이 입대의를 구성하였는데 구에서 관리규약을 재개정하고 입대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함	2009. 11. 11 ○ 건축주택과 이첩 ○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관리규약 재개정 및 입대의 재구성토록 하였으며 주택법과 관리규약 준수하시기를 양해바람
2008. 11. 10 소방도로 변경에 따른 진정인 소유의 땅 및 집에 대한 보상요구 (불 가)	염포동 481-1 천○○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본인의 집(염포동 475-5번지) 주위로 도로가 나게 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데 편입된 대지보상 및 집에 대한 상응한 조치 바람	2009. 11. 11 ○ 건설과 이첩 ○ 본 도로는 '76.4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0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노선일부가 변경 결정되었으며, 염포동 475-5번지는 소3-96호선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이 없어 보상이 불가함
2008. 11. 10 염포동 392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 (추진중)	염포동 392-7 김○○	염포동 392-4번지가 태풍으로 파손되어 집이 방치되어 있고 392-5, 3번지 10세대는 출입할 수 있는 길	2009. 11. 11 ○ 건설과 이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사업추진 할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였으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이 없어서 이 일대에 소방도로 개설 바람	며 향후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및 노력하고 있음
2008. 11. 24 현대글로리아의 개정된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인정요청 (불 가)	중산현대 글로리아 아파트 서○○	아파트 관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2008년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인정해주거나 북구청에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줄 것이며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 현 입주자대표회의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	2009. 11. 28 ○건축주택과 이첩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0조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규약준칙 및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협의하거나 입주민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
2009. 1. 5 신흥사 소방도로 정비의 건 (완 결)	신흥사 주지 차○○	신흥사와 호계 ~마우나오션 리조트간 도로 상당부분 비포장 도로로 굴곡이 심하고 낭떠러지 등으로 사고위험이 있으니 소방도로 확보 요청	2009. 1. 5 ○건설과 이첩 ○구도2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특별교부세 9억 확보로 용역결과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 후 9월말까지 완료
2009. 2. 10 교통안전시설물(단속카메라,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추진중)	달천아이파크 입주자대표	달천아이파크 2차 아파트와 천곡고등학교 사이 도로 교통안전시설물(단속카메라,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2009. 2. 12 ○건설과 이첩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간선 도로이며 2차적 사고위험이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의 어려움이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주민간담회시 속도제한 30km 지정 주민동의 70%시 과속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방치턱 설치 긍정적 검토 ○무인단속카메라 예산 없어 설치 불가-중부경찰서
2009. 2. 10 옥동~농서간 도로개설시 제전마을 Y자형 진입로 설치 (추진중)	천곡동 143 이○○	옥동~농서간 도로개설시제전마을 Y자형 진입로설치	2009. 2. 20 ○울산광역시 이첩 ○본 도로의 실시설계는 도로개설의 목적, 기능 등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교차로 및 접속도로 계획을 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의 의견수렴절차 완료한 상태 ○도로법 64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터널 등의 시설물로부터 350M이내의 구간에는 도로연결 금지 및 접속시설 간격을 2Km이상 규정하는 등 적합하지 않으나 주민이용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2009. 2. 26 달천I-PARK 1차옹벽 보수보강관련 (완 결)	달천아이파크1차 입주자 대표	달천 I-PARK 1차 옹벽 보수보강 관련 완벽한 보수보강을 위한 현대산업개발㈜에 시정지시 요청	2009. 3. 3 ○건축과 이첩 ○사업주체인 현대산업개발(주)에 조속한 협의 등을 통하여 하자보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시정공문 발송완료
2009. 3. 11 농소3동 지구대 설치 요청 (완 결)	농소3동 주민자치 위원회	급속한 인구증가로 치안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지구대 설치 요청	2009. 3. 18 ○중부경찰서 이첩 ○'09.3.18 울산중부경찰서 협조공문 발송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2009. 5. 22 진장동 메가마트 사업장내 주유소 설치 인·허가 반대 및 도시계획조례 제정 건의 (불 가)	(사)한국주유소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지회장 박○○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54B 1N에 위치한 메가마트 울산점 사업장내 주유소 설치 인·허가 움직임에 따라 설치 반대 및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제정 요구	2009. 5. 28 ○경제교통과 이첩 ○진장동 54B 1N의 메가마트 사업장내 주유소 설치시 기존주유소들의 경영 어려움은 예상하나 현행 법규상 요건 충족 시 제한규정이 없어 불가하며, ○도시계획조례는 울산광역시 조례 제정사항으로 이첩함
2009. 5. 22 중산 디아채 아파트 버스증차 및 모화로 가는버스노선변경 요구 (불 가)	중산동 디아채 아파트 206/1102 이○○	중산동 디아채 아파트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지선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노인, 주부, 학생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버스 증차 및 모화로 가는 버스 노선 변경 요구	2009. 5. 28 ○경제교통과 및 울산광역시 이첩 ○울산광역시의 한정된 차량으로 특정지역에서 각 방면별로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신설은 어려움이 있어 보완대책으로 '04.10월부터 무료환승제(1시간이내) 실시하고 있으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기 운행 중인 지선버스(940번 3대 40회)를 이용하여 가까운 정류소(호계, 신천)에서 환승하시기를 바람
2009. 6. 11 중로1-123호선 안전시설물 설치 (신호등, 과속방지턱, 탄력봉 설치)	달천그린 카운티 3단지 관리소장	달천그린카운티 3단지와 달천I'PARK 2차 사이에 연결도로(중로1-123)가 개통됨에 따라 경사진 내리막길 도로로서 주민들 이 안전사고에	2009. 6. 25 · 건설과 이첩 ·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구간이 도로 곡선이며 안전거리를 확보 할 수 없는 곳으로 중부경찰서에 협의결과 중로1-123호선은 과속방지턱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노출되고 있어 신호등, 과속방지턱, 탄력봉 등 안전시설물 설치 건의	설치 불가. ·탄력봉 설치 완료.
2009. 7. 20 달천 I'PARK ~ 대동@ 연결도로 부분개설에 따른 통행 불편으로 조기개설 건의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달천 I'PARK~ 대동@ 연결도로 부분개설에 따른 통행불편으로 조기 개설 요망	2009. 7. 22 · 도시녹지과 이첩 · 시공사인 극동주택개발(주)과 시행사인 한유건설(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10. 9.15(수) 민원해소차원에서 먼저 개통.
2009. 7. 20 중1-121호선 부분개설에 따른 통행불편으로 조기 개설 건의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중1-121호선 부분개설에 따른 통행불편으로 조기 개설 요망(쌍용아진3차@~달천 유적공원)	2009. 7. 22 · 시 종합건설본부 이첩 · '09년 6월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보상완료 되었으며 2011년 착공 예정.
2009. 7. 20 교통량 증가에 따른 쌍용아진@ 단지 내 소방도로 혼잡가중 및 교통사고 우려로 대2-31호선 조기개설 건의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쌍용아진@ 단지 내 소방도로 혼잡가중 및 교통사고 우려로 대2-31호선(천곡사거리~ 대동@) 조기개설 요망	2009. 7. 22 · 시 종합건설본부 이첩 · 현재 개설계획은 없으나 옥동~농소간 도로와 연계하여 검토 예정임.
2009. 7. 20 7번 국도 및 농소3동 일대 혼잡으로 오토밸리와 천곡(옥동 ~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7번 국도 및 농소3동 일대 혼잡으로 오토밸리와천곡(옥동~농소)간 도로 조기개설 요망	2009. 7. 22 · 시 건설도로과 이첩 · 2010년 6.23 공사 착공하여 2015년 준공예정임.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농소)간 도로 조기개설 건의			
2009. 7. 20 상안동 홈플러스 앞 우회전 불편 및 교통체증으로 가각부 주변 개선 건의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상안동 홈플러스 앞 우회전 불편 및 교통체증으로 가각부 주변 개선 건의	2009. 7. 22 · 시 종합건설본부 이첩 · 본 도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추가적인 가각부 개선은 불가.
2009. 7. 20 7번 국도에서 신답교 진입 좌회전 차선길이 짧아 교통체증 유발로 차선길이 연장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7번 국도에서 신답교 진입 좌회전 차선길이 짧아 교통체증 유발로 차선길이 연장	2009. 7. 22 · 중부경찰서 이첩 · 현재 좌회전 차선 약 85m로 설치되어 있어 차선길이를 연장할 경우 교차로 내 사고 및 정체유발로 불가.
2009. 7. 20 농소3동 일원 배차간격이 넓어 증편운행 요망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농소3동 일원 배차간격이 넓어 증편운행 요망	2009. 7. 22 · 시 대중교통과 이첩 · 신설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노선 신설 및 증차운행을 추진하여 왔고 지속적으로 향후 동 노선에 대해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극 증편운행.
2009. 7. 20 달천 I'PARK, 삼성코아루후문 인근 버스전자정보 안내판 설치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달천 I'PARK, 삼성코아루 후문 인근 버스전자정보 안내판 설치	2009. 7. 22 · 시 교통정책과 이첩 · 버스전자장보안내시스템은 노선과 배차시간에 따라 출발 ⇒ 위치정보 수집 ⇒ 정보제공까지의 처리과정을 위해 1~3분 정도 후 운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건의한 지역은 종점에서 1~3분 정도면 도착할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수 있는 종점과 가까운 정류소이므로 종점에서 도착까지의 시간이 짧아 수집할 버스운행정보가 없어 안내단말기(BIT)설치 불가.
2009. 7. 20 상안~달천간 신호 연동 요망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상안~달천간 신호 연동 건의	2009. 7. 22 · 중부경찰서 이첩 · 현재 비보호 좌회전실시로 신호연동 운영중.
2009. 7. 20 홈플러스 앞 신호체계 개선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홈플러스 앞 신호체계 개선 - 상안동 홈플러스 앞 쌍용아진1차 방향 좌회전 - 신답교 ⇒ 홈플러스 방향 2차로의 직좌 신호개선 요망	2009. 7. 22 · 중부경찰서 이첩 · 상안동 홈플러스 앞에서 쌍용아진 1차 방향 좌회전 허용 시 신답교 교통정체를 유발하므로 불가함. 국도7호선을 이용하여 동천서로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이 많아 교통정체 해소차원에서 조치한 사항임.
2009. 7. 20 달천고등학교 앞 사거리 과속단속 CCTV 설치요망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달천고등학교 앞 사거리 과속단속 CCTV 설치요망	2009. 7. 22 · 중부경찰서 이첩 · 상기 지역 과속단속 CCTV 설치는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아파트 입주시 설치 불가하다고 기 통보한바 있고 시 전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연 4~5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설치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기 지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2009. 7. 20 쌍용아진@ 목요장터와 삼성코아루 수요장터 단속 쌍용아진@ 2·3차 사이 도로 차 없는 거리 지정 요망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쌍용아진@ 목요장터와 삼성코아루 수요장터 단속 쌍용아진@ 2·3차 사이 도로 차 없는 거리 지정 요망 및 공설시장 조성 등 대책 마련 등	2009. 7. 22 · 건설과 이첩 · 상기 지역의 노점상 단속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과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만족할만한 수준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하지만 시간대별 집중단속 등과 같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 쌍용아진 2·3차 사이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폐지하지 않고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공설시장 등의 조성은 불가함. 인근 지역 또한 공설 시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성 시 예산 또한 많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2009. 7. 20 달천 유적공원 부지 고도를 낮춰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등을 포함한 공원 조성요망		달천 유적공원 부지 고도를 낮춰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등을 포함한 공원 조성요망	2009. 7. 22 · 시 문화예술과 이첩 · 향후 유적공원 조성 시에 소관부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009. 8. 11 하수도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업체 피해에 대한	전국정화조 보상대책 추진연대	울산광역시의 하수도정비사업(정화조폐쇄공사)이 수년내 완료될시 30여 정화업	2009. 8. 12 · 환경위생과 이첩 · 분뇨수집·운반수수료 현실화, 재정지원(감차 등 폐업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보상대책 촉구	울산본부	체의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어 대책 요구	지원, 분뇨처리비 감면 또는 면제, 주차장, 사무실, 차량 도색 지원 등), 대체사업 요구내용은 현 상태에서 즉시 수용은 불가하며 현재 수수료 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 추진중.
2009. 8. 11 바르게살기위원회 동 활동지원금 분기별 지원 건의	류00	2004년부터 분기별 지원금 (읍면동사업비)이 중단되어 봉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지원금을 부활하여 봉사의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구	2009. 8. 12 · 자치행정과 이첩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등을 반영하여 예산금액이 산정되며 보조단체별 제출된 자체사업계획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됨으로 증액 불가하며 참신하고 우수한 사업 계획을 발굴하여 신청할 것을 권고.
2009. 8. 18 행정동명 변경 (송정동주민센터 → 화봉동주민센터) 건의	송정동 주민센터 개명추진 위원회 대표 황00	송정동주민센터 →화봉동주민센터로 행정동명 변경 요구	2009. 8. 25 · 자치행정과 이첩 · 2012년 2만여명의 인구가 송정동으로 전입될 예정으로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전입주민 분포도, 관할지역의 특성과 유래, 대내외 인지도, 주민여론, 주민합의 권고 등 장기검토.
2009. 9. 7 진장명촌 토지구획 정리지구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	명촌 향우회 회장 정00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건립 건의	2009. 9. 9 · 사회복지과 이첩 · 구청소유인 명촌동 700-15번지 기존 명촌마을회관 부지는 도로 및 상하수도 관로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건의			등의 기반시설이 개설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음. 향후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당해 부지에 관련 도시기반시설을 완료 하였을 경우 경로당건립 적극 검토하겠음.
2009. 9. 7 엠코타운 아파트 공사 관련 진정	약수빌라 연합회 회장 박00	신천엠코타운 공사관련 야간 및 휴일 공사,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발생에 따른 불편 등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009. 9. 11 · 환경위생과 이첩 · 소음측정1회, 현지지도점검 6회 실시 등 시공사 행정지도로 소음 비산먼지 피해 해소.
2009. 9. 29 상안동 진입로 확장 건의	농소3동 통장 한00	상안동 680-1(상안가든) 인근 진입로가 비좁아 통행이 불편하고 사고위험 및 농번기에 주민들과 마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진입로 확장 건의	2009. 10. 5 · 건설과 이첩 · 우리구 재정여건상 관내 미개설된 계획도로와 마을안길 확장을 일시적으로 개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임.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연차적으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2009. 11. 11 이화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및 도로확장 건의	현대 글로리아 회장 서00	이화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보행로 개설 및 도시계획도로 확장	2009. 11. 16 · 건설과 이첩 ·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우리구 재정 형편상 당장개설은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길 확보를 위해 현우파크 앞 이화천을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이용한 보행데크 설치를 2010. 6. 4 완료.
2010. 1. 22 제전 천곡간 통학로 확대 보수 건의	천곡동 143 이00	제전 천곡간 통학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므로 통학로 확대보수 건의	2010. 2. 1 · 농수산과 이첩 · 천곡동 1053번지 일원 통학로 개설은 현재 통학로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로 및 임도개설예정이 없고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천곡동 197번지 일원에 대하여 농로 포장을 검토 중에 있으며 차선책의 통학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유지 토지사용동의서 징구 및 예산확보 후 우회농로 개설 검토.

(2010년도)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2010. 11. 24. 천곡동 대로 2-31호선 4차선 확장공사	대동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옥동 농서간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천곡동 대로 2-31호선 4차선 확장공사」요청	2010.11. 24. · 건설과 이첩 · 옥동~농서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서인 건설도로과에 민원내용 이첩하여 검토중~

(2011년도)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2011. 1. 7. 천곡동 골프연습장 건립반대	천곡동 주민 이○○	골프연습장 건립 지역은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골프연습 소음 및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여 건립을 반대함	2011. 1. 7. · 위치 : 천곡동 600-5번지 일원 · 체육시설(골프연습장): 17,908㎡ ☞ 2011. 3. 23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
2011. 3. 22. 달천운동장 주차공간 부족 해소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농소3동은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로 주거인구가 급증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및 운영이 미흡하므로 부대복리시설인 달천운동장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해 주기를 요청함	2011. 3. 23. · 시설재난관리과 이첩 · 별도의 부지 확보하여 조성시 필요한 예산(5억원정도)의 확보가 당장 어려워 우선적으로 운동장 측면 배수로 구간을 정비하여 주차 공간(30~35면) 확보 완료
2011. 3. 25. 안전통행길 확보를 위한 철길건널목 확장 건의	송정동 효성삼환 아파트 부녀회장외 주민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이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송정동 1104-17 (효성삼환~송정초) 철길 건널목을 2차선으로 확장 건의	2011.03.28 · 건설과 이첩 · 현재 추진 중인 울산~포항 복선 전철화 사업에 상기구간의 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철도 이설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으며, 2차선 확장공사는 완료
2011. 4. 26. 가대동 화물자동차 정류장 설치반대	가대동 가대마을 대표 고○○외 주민	가대마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천혜의 자연자산의 보전으로 쾌적한 환경이고 지역발전과 아무런 도움도 없는 화물자동차 설치를 반대함	2011. 4. 26. · 도시녹지과 이첩 - 위치 : 가대동 산 38번지일원 - 면적 : 38,805㎡ ※ 사업시행자가 '11. 9. 8사업을 포기함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2011. 5. 24. 백산그린타워 옹벽에 인접한 수로의 안전에 관한 민원	농소2동 백산그린타워 관리사무소장	백산그린타워아파트 옹벽에 인접한 수로가 낙엽과 자갈 등으로 덮혀 있어서 안전을 보장하기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므로 수로 확보 요청함	2011. 5. 24. ·농수산과 이첩 ·백산그린타워 옹벽 담장 옆에 위치한 수로는 아파트 옹벽시 설치한 산마루 측구로 중산동 736-3번지(농림부 구거)이나 농업용수 소통을 위한 구거가 아니므로 배수로 정비 및 청소 불가 ☞ 공동주택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2012년도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안내함
2011. 5. 31. 대동 황토방 단지 진입로 도로 포장 요청	농소3동 대동 황토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동황토방 진입도로 패인부분 포장 요청함	2011. 5. 31. ·건설방재과 이첩 ·대동황토방 진입도로 전면 재포장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구 재정 여건상 즉시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포장하도록 검토하겠으며, 파손이 심한 일부구간은 부분 조치하였음
2011. 5. 31. 천곡동 골프연습장 건립 허가	천곡동 주민 이○○	천곡동에 추진 중인 골프연습장 허가를 적극 건의함	2011. 6. 24. ·위치 : 천곡동 600-5번지 일원 ·체육시설(골프연습장): 17,908㎡ ☞ 2011. 3. 23.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 ☞ 2011. 7. 25.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원안 가결
2011. 6. 23. 천곡동 골프연습장 건립반대	천곡동 주민 김○○	골프연습장 건립 지역은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골프연습 공사소음 및 연습 소음 등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여 건립을 반대함	
2011. 10. 20. 북구 농소하수종말처리	울산광역시 북구야구인	울산지역 동우회 야구단, 리틀야구단 등이 시합을 위한 구장	2011. 10. 25. ·울산시 하수관리과 진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시설 내 야구장 건립 건의	연합회 회장 이○○	확보에 어려움 및 부상위험에 노출되어있으니, 야구전용구장을 건립하여 줄 것을 요청	북구 농소하수처리시설 내에 야구장을 건립하여 야구인의 숙원을 해결해달라는 내용으로, 본 사업은 2009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 현재 실시협상을 완료하고 총사업비를 확정하여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변경은 어려운 실정임.
2011. 11. 23. 청우그린파크 103동 옆 고가도로 방음벽 설치 건의	청우그린파크 맨션 입주자대표	청우그린파크의 103동이 고가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소음을 저감하고자 방음벽 설치 건의함	2011. 11. 25. ·건설방재과 이첩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시설부)로 주택지 소음 발생으로 생활불편으로 소음저감 마련을 요구 하는 내용으로 건의 하였음.
2011. 12. 23. 단지 외곽 차도 보안등 설치 요청	효성·삼환 아파트 입주자 대표	아파트 후문 외곽 차도 및 철길 건널목 방향 에 보안등이 없어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니 보안등 설치 요청건의	2011. 12. 23. ·건설방재과 이첩 ·보안등은 한전주 대상으로 설치하나, 해당 지역은 전주가 없어 자체 가로등주를(5등) 상반기내 설치하여 통행이 지장없도록 조치하겠음
2011. 7. 21. 시도 대로 3-43호선 계획 변경 건의	어물동 주민 김○○	시도 대로 3-43호선 도로개설은 마을과 불과 수십미터 거리에 통과하므로 도로 공사로 인한 벌목 및 절개, 소음 분진으로 아름다운 금천마을 미관이 흉물이 될 것이므로 시도대로 3-43호선 도로선형 변경 건의	2011. 7. 21. ·건설방재과 이첩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만 결정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이므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도 진행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광역시 사업부서가 정해지면 건의사항을 적극 추진하겠음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2012. 1. 27.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부지 토지준공을 위한 간담회 개최요구	평창리비에르 2차 제1기 입주자대표회장 한○○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 토지부분 미등기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요구	2011. 1. 31. ·도시녹지과 이첩 ·간담회 개최 - 일시 : 2012.2.15(수) 14:00 - 장소 : 구청장실 - 참석 : 구청장 포함 관계자 14여명 - 내용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부분 준공 논의
2012. 1. 30. 효성·삼환 아파트 단지입구 전봇대 이설 건의	효성·삼환 아파트 입주자 대표	아파트 입구 인도 가장자리에 한전 전봇대가 설치되어 외관저해 및 인도 보행 시 주민과 충돌 우려되므로 이설 요청	2012. 1. 30. ·건설방재과 이첩 ·건설방재과에서 한전동울산지점으로 협의 ☞ 한전동울산 회신내용 : 전주이설공사비는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으로, 전주이설은 한전동울산지사에서 부담하고 지중인입선은 소유자인 효성·삼환 아파트에서 부담하여야 함. 추후 이설이 필요한 경우 협의추진토록 하겠음. ※ 비용부담으로 아파트 측의 추가 이설요청 없음
2012. 3. 15. 천곡동 제전마을 일원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계고)관련 건의	천곡동 165 이○○	제전마을 일원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선처 호소	2012. 3. 15. ·도시녹지과 이첩 ·불법성토가 된 토지는 원상복구가 선행된 후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하고, 협소한 진입로 확충과 우량 농지 조성을 위한 개발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행위는 허가 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추후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충분히 검토하겠음.
2012. 5. 3. 연암동 328, 329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 건의	연암동 329 정○○외 30인	해당지역이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부천숯불갈비 앞 일부만 도로 개설 되었고 나머지 구간은 미개설 상태로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해 사유지보상 및 소방도로 개설 청원	2012. 5. 25. ·건설방재과 이첩 ·소방도로 개설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개설계획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해당 소방도로는 소요사업비 과다 등으로 일시에 개설하기는 어려움. 추후 예산확보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2012. 5. 7. 아파트 앞 정문도로 노면공사 및 과속방지턱 보강 건의	상안동 358-1 쌍용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쌍용아진아파트 앞 도로 노면이 군데 움푹 꺼져 노면 공사 및 정문 주변의 과속방지턱 높이가 낮으니 보강공사 요청	2011. 5. 16. ·건설방재과 이첩 ·과속방지턱의 경우 상태 양호하여 정비 불가 ☞ 상안동 358-15 5월말 보수 완료
2012. 5. 21. 대형마트 강제휴업 시행에 따른 건의 (2건)	대형마트 소상인 대표 박○○외 2인 메가마트 입점 상인 박철민 외 20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시행에 따라 입점소상인의 피해의 억울함 호소 이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고 울산시 타구·군과 동시에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	2012. 5. 25. ·경제일자리과 이첩 ·6월 예정인 중·남구의 조례 개정상황과 연계하여 5개 구·군 의무휴업 시행시기와 휴업요일을 맞춰 가도록 노력하고, 향후 다른 구·군의 조례 개정 및 시행시기가 계속 지연될 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잠정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음

제5절 주요 의정활동사항

□ 2010년 하반기

01.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과 여론을 청취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민원상담실 운영 정례회)

가. 운영방법

○ 기간 : 년 중(월~금 매일실시)

○ 장소 : 의원실 내(의회민원상담실)

○ 일일근무조 편성운영

• 일일근무조 편성운영(의장단 매일 출근, 의원1명 윤번제 근무)

요 일	상시근무	상시근무	월	화	수	목	금
성 명	안승찬	정윤석	강진희	윤치용	이수선	이혜경	이홍걸

• 근무시간 : 10:00 ~ 17:00
• 상담보좌 : 전문위원 1명 ※민원접수방법 : TEL(052-289-8111), FAX(052-219-7529)
• 상담내용 : 각종 민원불편 및 애로사항 상담·처리, 여론수렴

나. 운영실적

구 분	운 영 기 간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완결	추진중	불가	
2010년도	2010. 7. 1 ~ 12. 31	4	1	3	·	

02.『조례입법연구회』운영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연구하는 의정상 확립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는 2010년 11월 5일 북구의회 다목적실에서 조례입법연구회 첫 회의를 가졌다.

조례입법연구회 활동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구의 조례 중 제정이 필요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북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를 제·개정하여 구민편의 증진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03. 북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심의의결

의원 발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북구의회는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북구의회는 이번 제1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심의의결하게 된 것에 대해 “북구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조례입법 연구회를 통해 북구의 조례안들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모아진 조례안을 처리하

게 된 것"이라며 "이번 의원 발의 조례안을 통해 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04. 제122회 임시회 현장활동 실시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공사 등 6개소 현장활동

북구의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북구의회 전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동행한 가운데, 국민 체육센터 하자보수공사 현장 등6개 시설 및 지역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활동은 오는 9월 29일 개회 예정인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활동으로 북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장 및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사업 진행 점검 등에 대해 의원들이 직접 점검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활동에서 의원들은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05. 울산외고 옹벽붕괴 긴급 현장점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속한 조치 당부

북구의회는 9월 9일 오후 2시 신축중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옹벽 붕괴와 관련해 긴급 현장 검검을 가졌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의원들은 공사관계자로부터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06. 3/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자원봉사활동

북구의회는 8월 27일 오후 2시 달천동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안승찬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작업장 관계자들과 함께 비누포장을 위한 종이상자 접기와 비누포장 등의 일을 하는 한편, 애로사항 얘기도 나눴다.

북구의회는 지난 2008년부터 분기별로 관내 소외계층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소외됨 없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7. 4/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달천동 농소 배 작목반 배 수확

북구의회는 10월 18일 오후 2시 달천동 농소 배 작목반에서 4/4분기 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북구의회는 자원봉사활동지역을 관내시설 및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

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피부에 와 닿는 현장 체험 활동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4/4분기에는 북구 달천동 배 작목반에서 농번기철을 맞이하여 농촌 일손돕기를 위해 배 수확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비지땀을 흘리며 작업에 임했다.

08. 북구의회 2년연속 의정비 동결 결정

북구의회 2년연속 의정비 동결 및 의원 공무국외여행 예산 전액 삭감 결정

북구의회는 2년 연속 의정비를동결키로 결정했다.

북구의회는 8월 27일 8월 의원간담회를 열어 2011년도 의정비를동결키로 결정함에 따라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2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였다.

이에 따라, 북구의원들의 2011년도의정비는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3,887만원이다. 또, 북구의회는 2010년도에 모두 1,400만원의 의원 공무국외여행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결정은 북구의 재정 및 경제여건, 구민정서 등을 최대한 고려했으며, 절감된 예산은 구민 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 앞으로도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09. 북구지역 시·구의원 간담회

오토밸리도로2공구 조속추진 청원관련 북구지역 시·구의원 간담회

북구지역 시.구의원은 9월 3일 오전 12시 화봉동 모식당에서 '울산시 북구 오토밸리로 2공구 조속추진 청원'과 관련해 시·구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오토밸리로 2공구의 조속추진을 위한 청원에 앞서 시·구의원과 주민자치위원장, 통정회장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오토밸리로 2공구의 조속추진을 위해 5만명 서명운동을 펼쳐, 울산시와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련부처에 청원서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미개설 구간인 오토밸리로 2공구는 북구 부품소재단지와 현대차 등 주요 기간산업을 연결하는 산업도로 중 일부 잔여구간으로 1공구와 3공구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각각 완공됐다.

10. 의정실무능력향상 특별연수

의정실무 및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

북구의회는 11월 1일 ~ 3일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강화를 위한 특별연수 및 타지역 선진시설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과 각종 의정활동 자료수집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 의원 특별연수 및 현장 시설견학은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견문을 넓힘과 아울러 선진시설의 자료수집 등을 통한 북구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11.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단 방문

의정활동 정보교류 및 시설 벤치마킹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신은호)의원 10명과 수행직원 6명이 8월 26일 오후 5시 북구의회를 방문하여 북구의회 의원들과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부평구의회 의장과 도시 경제위원회 의원들의 북구의회 방문은 국내 비교시찰의 일환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시설 및 의회를 방문.견학하여 의정활동 정보수집과 교류를 위해 북구의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12. 추석맞이 복지시설방문 위문품 전달

북구노인복지회관 외 1개소 복지시설방문 추석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는 9월 16일 오후 1시 추석을 앞두고 관내 복지시설인 북구노인복지회관과 엘림종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80만원 상당의 쌀을 전달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다함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의원들은 “시설수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위문품이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3. 제4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민주주의의 원리와 풀뿌리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 북구지회는 11월 17일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북구의회의원들과 달천고등학교 1,2학년 학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차세대 정치지도자를 키워내는 소중한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모의의회에서 청소년들은 '학생대상 상벌점제에 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의제로 정해, 학교 발전을 위한 질문 및 답변 등의 의정활동 체험시간을 가졌다.

□ 2011년 상반기

01.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과 여론을 청취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민원상담실 운영 정례회)

가. 운영방법

○ 기간 : 년 중(월~금 매일실시)

○ 장소 : 의원실 내(의회민원상담실)

○ 일일근무조 편성운영

• 일일근무조 편성운영(의장단 매일 출근, 의원1명 윤번제 근무)

요 일	상시근무	상시근무	월	화	수	목	금
성 명	안승찬	정윤석	강진희	윤치용	이수선	이혜경	이홍걸

• 근무시간 : 10:00 ~ 17:00

• 상담보좌 : 전문위원 1명 ※민원접수방법 : TEL(052-289-8111), FAX(052-219-7529)

• 상담내용 : 각종 민원불편 및 애로사항 상담·처리, 여론수렴

나. 운영실적

구 분	운 영 기 간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완결	추진중	불가	
2011년도	1. 1 ~ 6. 30	11	3	6	2	

02. 『조례입법연구회』 운영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연구하는 의정상 확립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는 2010년 11월 5일 북구의회 다목적실에서 조례입법연구회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월1회 정기회의 및 사안별 수시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조례입법연구회 활동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구의 조례 중 제정이 필요한 조례,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북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등을 제·개정하여 구민편의 증진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03. 북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심의의결

의원 발의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북구의회는 제125회 임시회 회기중에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제126회 임시회 회기중에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을심의의결 하게 된 것에 대해 “북구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조례입법 연구회를 통해 북구의 조례안들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논의하여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 것“이라며 “의원 발의 조례안을 통해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04. 제126회 임시회 현장활동 실시

울산화력발전소,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10개 시설 및 지역 현장활동

제126회 임시회 회기중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북구 관내 및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사업진행 점검 등의원들이 직접 현장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위해 현장활동이 이루어졌다.

주요 현장활동 대상지는 울산화력발전소와 고리원자력발전소, 농소~옥동간 도로개설현장, 화동못 수변공원 등 총 10개 시설 및 지역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임시회 현장활동은 의원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10곳의 대상현장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중점 추진하게 되었다.

05. 울산지식산업센터 방문 산업체 현장 의견수렴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 산업시설 관계자 간담회 실시

북구의회는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으로 산업체 현장 수렴을 위해 3월 17일 오후 5시효문동 울산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하여 산업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은 관내 주요 산업시설 및 복지, 구정 역점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구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실시하게 되었다.

06. 1/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울산명성전문요양원 어르신 말벗되기, 손발 씻겨드리기 등 자원봉사활동

북구의회는 3월 14일 오후 2시 천곡동 울산명성전문요양원에서 안승찬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어르신들의 말벗되기와 손발 씻겨드리기 및 환경정비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관계자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임하였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소외됨 없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7. 2/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태연재활원에서 장애우들과 함께 체육활동, 물리치료 등 자원봉사활동

북구의회는 5월 30일 오후 2시 대안동 태연재활원에서 2/4분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북구의회는 자원봉사활동지역을 관내시설 및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피부에 와 닿는 현장 체험 활동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2/4분기에는 북구 태연재활원에서 장애우들과 함께 체육활동과 산책지도 보조 및 물리치료 등 서로 어울리며 친교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08. 완주군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정책 사례 등 벤치마킹

완주군 마을여행사업프로그램 체험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벤치마킹

북구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사례 체험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타 자치단체 성공적인 정책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5월 3일부터 1박 2일 전북 완주군 마을여행사업 프로그램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완주군 마을여행사업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도·농복합도시인 우리구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발전방안 모색 등 북구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나가는 내실있는 체험·견학 일정이 되었다.

09. 부산 수영구의회 의원일행 북구의회 내방

의정활동 비교견학을 위한 부산 수영구의회 의원일행 북구의회 방문

부산 수영구의회 의원 및 직원 일행은 5월11일 북구의회를 방문하여 북구의회 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항들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북구의회를 방문한 수영구의회 의원 일행은 북구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 방문과 이에 따른 운영사례 견학 및 의회상호간 전반적인 의정활동 사항들에 대한 의견교환 등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하였다.

의원들은 의회 상호간 의정활동 의견교환 및 북구의회 의정홍보 영상물 시청 후 본회의장을 둘러보았다.

10. 설맞이 복지시설방문 위문품 전달

어울림화봉 공동생활가정 외 1개소 방문 설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는 1월 31일 오후 3시 설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시설인 어울림화봉 공동생활가정과 어울림연암 공동생활가정 방문하여 6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설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다함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의원들은 "시설이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1. 태화강배 전국고래배 경주대회 참가

2011 태화강배 전국고래배경주대회 개회식 및 시군구 친선경기가 5월 28일 오후 2시부터 태화강둔치에서 개최되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고래배 경주대회에 출전한 지역 구민들을 격려하였다.

□ 2011년 하반기

01.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과 여론을 청취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간담회)

가. 운영방법

○ 기간 : 년 중(월~금 매일실시)

○ 장소 : 의원실 내(의회민원상담실)

○ 일일근무조 편성운영

• 일일근무조 편성운영(의장단 매일 출근, 의원1명 윤번제 근무)

요 일	상시근무	상시근무	월	화	수	목	금
성 명	안승찬	정윤석	강진희	윤치용	이수선	이혜경	이홍걸

• 근무시간 : 10:00 ~ 17:00

• 상담보좌 : 전문위원 1명 ※민원접수방법 : TEL(052-289-8111), FAX(052-219-7529)

• 상담내용 : 각종 민원불편 및 애로사항 상담·처리, 여론수렴

나. 운영실적

구 분	운 영 기 간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완결	추진중·불가	
2011년도	7. 1 ~ 12. 31	9	6	3	

02. 『조례입법연구회』 운영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연구하는 의정상 확립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는 2010년 11월 5일 북구의회 다목적실에서 조례입법연구회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월1회 정기회의 및 사안별 수시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조례입법연구회 활동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구의 조례 중 제정이 필요한 조례,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북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등을 제·개정하여 구민편의 증진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03. 북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14건 심의의결

의원 발의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북구의회는 제127회 제1차 정례회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제128회 임시회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제129회 제2차 정례회시의원 발의 조례안 8건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이번 회기에 의원 발의 조례안 14건을 심의의결 하게 된 것에 대해 “북구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조례입법 연구회를 통해 북구의 조례안들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논의하여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 것“이라며 “의원 발의 조례안을 통해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04. 3/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농소3동 도서관 도서정리 등 일일 사서 체험 자원봉사활동 실시

북구의회는 8월 21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농소3동 도서관에서 안승찬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반납과 서가정리 등 일일 사서 체험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불편사항 청취 및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 모색을 위해 도서관 근무자들과 함께 비지땀을 흘리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05. 4/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북구노인복지관 어르신 행복식당운영 배식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 실시

북구의회는 11월 1일 오전 11시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행복 식당운영 배식 및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북구의회는 자원봉사활동지역을 관내시설 및 어려운 계층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피부에 와 닿는 현장체험 활동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4/4분기에는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행복식당운영 배식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알아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06. 북구의회 4년연속 의정비 동결

4년연속 의정비 동결 결정, 서민경제 활성화 동참 및 구재정 부담 최소화

북구의회는 4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북구의회는 9월 7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2012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함에 따라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였다.

이에 따라, 북구의원들의 2012년도 의정비는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3,887만원이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결정은 전 의원이 어려운 서민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열악한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하고,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품격을 높여 나가는데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07. 추석맞이 복지시설방문 위문품 전달

울산장애인복지센터 외 2개소 방문 추석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는 9월 7일 오후 3시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시설인 울산장애인복지센터와 북구어르신 행복마을 그리고 이화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6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다함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의원들은 "시설이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8. 통영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조성사례 관련 등 벤치마킹

북구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 방안 모색

북구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통영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조성사례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벤치마킹을 위해 9월 21일부터 1박 2일 통영 연대도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통영 연대도의 에코아일랜드 조성사례 현장답사 벤치마킹을 통한 도·농복합도시인 우리구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발전방안 모색 등 북구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나가는 내실있는 체험·견학 일정이 되었다.

09.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민주주의의 원리와 풀뿌리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 북구지회는 12월 22일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5회청소년 모의의회'를 북구의회 의원들과 달천중학교 학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차세대 정치지도자를 키워내는 소중한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모의의회에서 청소년들은 '남녀 합반이 필요한가'를 의제로 정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질문 및 답변 등의 의정활동 체험시간을 가졌다.

□ 2012년 상반기

01. 『조례입법연구회』 운영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연구하는 의정상 확립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는 2010년 11월 5일 북구의회 다목적실에서 조례입법연구회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월1회 정기회의 및 사안별 수시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조례입법연구회 활동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구의 조례 중 제정이 필요한 조례,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북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등을 제·개정하여 구민편의 증진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02. 북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심의의결

의원 발의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북구의회는 제130회 임시회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제131회 임시회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제132회 임시회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 하게 된 것에 대해 “북구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조례입법 연구회를 통해 북구의 조례안들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논의하여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 것”이라며 “의원 발의 조례안을 통해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03. 1/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상안동 굿실버전문요양원에서 어르신 놀이치료 등 자원봉사활동 실시

북구의회는 2월 14일 오후 1시 30분 상안동 굿실버전문요양원에서 안승찬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전문요양원에서 어르신 간식 및 놀이치료 자원봉사활동과 노인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체험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비지땀을 흘리며 자원봉사활동에 임하였다.

04. 2/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호계동 어울림보호작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조립 등 자원봉사활동 실시

북구의회는 2/4분기 자원봉사활동을 5월 21일 오후 1시 30분 호계동 어울림보호작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조립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실시하였다.

이번 2/4분기에는 북구 호계동 울림보호작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조립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비지땀을 흘리며 자원봉사활동에 임하였다.

북구의회는 자원봉사활동 지역을 관내 시설 및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피부에 와닿는 현장 체험활동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05. 설맞이 복지시설방문 위문품 전달

소망지역아동센터 외 1개소 방문 설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는 1월 13일 오후 2시 설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시설인 소망지역아동센터와 어울림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60만원 상당의 학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설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다함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의원들은 “시설이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6. 의정실무능력향상 특별연수 및 선진지 벤치마킹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방안 모색

북구의회는 4월 25일~27일의원과 직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연수 및 타지역 선진시설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과 각종 의정활동 자료수집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 의원 특별연수 및 현장 시설견학은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견문을 넓힘과 아울러 선진시설의 자료수집 등을 통한 북구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연수는 2013년부터 전면시행되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수 및 여수세계박람회와 해양수산과학관 등 벤치마킹을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정 발전정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07. 북구의회 의원과 8개동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북구의회는 안승찬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8개동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이종해)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다목적실에서 「구의원과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 구정 참여 및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필요에 의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조례의 일부 개정시에 반영 등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관련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과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북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고, 의원들은 간담회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132회 임시회에서 의원 간 논의 후 조례를 일부 개정 심의의결하였다.

08. 북구의회 의원과 생활체육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북구의회는 안승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북구 생활체육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5월 4일 오전 11시 다목적실에서 「구의원과 생활체육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북구의회 의원들과 생활체육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는 제132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심의 안건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관련 생활체육회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과 생활체육회 관계자들은 “북구 지역 주민의 건

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화합을 위해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09. 양정·염포지역 초등학생 및 여성회 북구의회 견학

본회의장 등 의회시설 견학 및 의사진행 직접 체험

양정·염포지역 초등학생 35명과 염포·양정여성회 12명은 2월 22일 오전 11시 북구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영상물 상영 및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의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은 후 본회의장 시설을 견학하였으며 시설 견학후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사진행 체험과 아울러 견학기념 촬영도 하였다.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통해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친구들과 우애있게 지내며, 특히 인사 잘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장래에 희망하는 일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생활하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0. 매곡초등학교 학생(매곡자치의회 임원) 북구의회 견학

북구의회 방문 직접 의사진행 체험 등 소중한 현장학습 경험

매곡초등학교 매곡자치의회 임원학생 17명과 인솔 선생님 및 학부모 3명은 3월 23일 오후 3시 30분 북구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영상물 상영 및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알아보는 시간을 갖은 후 본회의장 시설을 견학하였으며 시설 견학후 본회

의장에서 직접 의사진행 체험과 아울러 견학기념 촬영도 하였다.

특히 이날 북구의회를 방문한 매곡초등학생들은 학교내 “뚜벅이 쉼터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를 정하여 학생들간 의견을 나누는 등 직접 의사진행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뚜벅이 쉼터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직접 의사진행을 체험한 학생들은 “북구의회 현장 견학 체험으로 생소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소중한 현장 경험을 쌓는 체험의 장이 되었다”말하였다.

11. 북구 자원봉사센터(라온누리 청소년 봉사단) 북구의회 견학

청소년 진로방안 모색 및 의사진행 체험으로 경험의 장 마련

북구 자원봉사센터 라온누리 청소년 봉사단 23명과 인솔자 3명은 3월 24일 오전 10시 북구의회를 방문하여,의회 영상물 상영 및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의원과의 대화의 시간 및 본회의장 견학 직접 의사진행 체험도 실시하였다.

특히 이날 북구의회를 방문한 북구 자원봉사센터 라온누리 청소년 봉사단 학생들은 “청소년 봉사 내실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정하여 학생들간 의견을 나누는 등 직접 의사진행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북구의회 방문은 청소년 진로방안 모색 등 청소년들의 현장견학 학습체험을 쌓고자 실시하게 되었으며, 견학에 참석한 학생들은 “직접 의사진행 체험으로 멋진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12. 농소3동 찾아가는 한글교실 어르신 북구의회 견학

농소3동 “찾아가는 한글교실”어르신 10명과 인솔교사 1명은 4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북구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영상물 상영 및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의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은 후 북구 CCTV통합관제센터와 북구의회 본회의장 시설을 견학 하였으며 시설 견학후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사진행 체험과 아울러 견학 기념 촬영도 하였다.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한글교실 수업이 더욱 알차고 보람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는 인사말과 아울러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사항 해결노력에도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13. 농소초등학교 학생 북구의회 견학

북구 농소초등학생 4학년 1반 학생 16명과 인솔 선생님 1명은 6월 15일 오전 9시 30분 북구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영상물 상영 및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대화의 시간을 갖은 후 본회의장 시설을 견학하고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사진행 체험과 아울러 견학기념 촬영도 하였다.

북구의회를 방문한 농소초등학교 4학년 1반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장래에 희망하는 일에 대해 발표의 시간을 갖고 각자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북구의회 현장견학 학습체험으로 “멋진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 제5대 북구의회 전반기 2년 의정활동 성과

“현장중심 의정활동과 조례입법연구회 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혼신의 힘을 펼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2010년 7월 1일 제5대 북구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전반기 2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를 만들고 구민들의 민원에 대화와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북구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구민 복리증진에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 강화

임시회 회기내에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비회기중에도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사항들에 대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민원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제122회 임시회시 지역 현안사업인 오토밸리로 2공구 도로 개설공사 현장 등 6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제126회 임시회시 고리원자력 발전소 등 10개 시설 및 지역에 대한 현장활동을 펼쳤다.

또한 132회 임시회시 천곡동 한신휴플러스 절개지 현장에 대해서도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의원들은 “현장에 해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수시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통한 논의를 하는 등 주민 민원현장활동을 강화하였다.

둘째, 각종 의안의 신속한 처리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북구의회는 내실있는 회기운영으로 정례회 4회와 임시회 10회 총 177일을 개회하여 예·결산안 10건과 조례안 141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 총 167건을 처리하였으며,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회기 내 민원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현장활동도 한층 더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내실있는 회기를 운영하였다.

셋째, 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한 입법활동강화로 의정활동 내실화와 연구하는 의정상 확립

북구의회는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연구하는 의정상 정립을 위해 전 의원들이 입법활동강화를 위해 「조례입법연구회」를 2010년 11월 3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이 작성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연구·분석하여 의원들간 토론을 통해 조례를 제·개정하였다.

특히 의원들은 구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 활동에적극적인 관심으로 알찬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 그동안 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해 30건의 의원 발의하여 심의의결하였다.

넷째, 주민속에서 적극적인 민원 해결방안 모색·처리

북구의회는 구민들을 위해 작은 민원이라도 현안문제에는 구민과 함께 발로 뛰며 지역 현장활동을 펼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의회,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내 각종 현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접수 된 민원에 대하여 현지 방문과 상담을 통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집행부 건의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토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5대 전반기 동안 총 61건에 대해 접수하고 완결 28건, 추진중 25건, 불가 8건을 처리하였다.

다섯째, 다양한 현장체험 자원봉사활동 참여

북구의회는 관내 시설 및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피부에 와닿는 현장 체험활동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봉사에 기여하여 왔다.

2010년도 3/4분기에는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비누포장을 4/4분기에는 북구 달천동 농소 배 작목반에서 배 수확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비지땀을 흘리며 작업에 임하였다.

2011년 자원봉사활동은 1/4분기 천곡동 울산명성전문요양원에서 손발 씻겨드리기를 2/4분기 북구 태연재활원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체육활동과 물리치료를 3/4분기에는 농소3동 도서관에서 서가정리 등 일일 사서 체험 봉사활동을 4/4분기에는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행복식당운영 배식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2012년 자원봉사활동은 1/4분기 상안동 굿실버전문요양원에서 놀이치료를 2/4분기에는 호계동 어울림보호작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조립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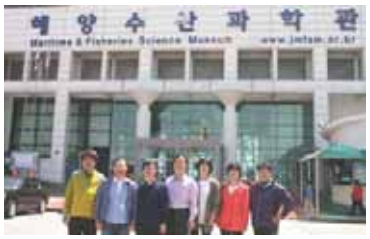

북구의회는 의정실무 및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와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의정활동 연찬회 및 북구 강동 사랑길 조성에 따른 제주 올레길 현장답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 상반기에는 완주군 마을여행사업 프로그램 관련 벤치마킹을 하반기에는 통영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조성사례 관련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2012년 상반기 연수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수 및 여수세계박람회와 해양수산과학관 등 벤치마킹을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정 발전정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의원들은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여 북구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우리 구 행정에 접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끊없이 연구 노력하였다.

일곱째, 열린의회로의 학생 및 주민 체험학습의 장 마련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 및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서 북구의회를 견학하여 의회 영상물 시청과 의원과의 대화의 시간 및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사진행 체험 등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중한 꿈을 키우는 열린 체험 학습 공간 마련으로 많은 유아원 및 학교에서 견학을 다녀갔다. 특히 한글을 배우는 어르신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직접 의사진행 체험을 하는 등 지역학생 및 주민들과 함께하는 북구의회로의 역할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동안 달천고등학교 학생들의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등 15개 학교 및 단체에서 402명이 북구의회를 견학하고 의사진행 체험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의정활동 최우선으로 펼쳐

북구의회는 구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업자에게는 생계 지원 효과 및 지역상권의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혼신의 힘을 쏟아 의정활동을 펼쳐나갔으며, 어려운 계층에 대해 신속한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방안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심의하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위해서도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북구의회 의원들은 2009년부터 4년 연속 의정비 동결 및 의원 공무국외여행 예산 전액 삭감으로 어려운 서민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열악한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였다.

제6절 의정활동일지

2010년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7. 1(목) 09:30	북구의회 소회의실	임시회	○제120회 북구의회 임시회	
7. 1(목) 11:30	북구문예회관 2층 대공연장	취임식	○민선 4대 윤종오 구청장 취임식	
7. 1(목) 15:30	북구의회 본회의장	개원식	○제 5대 북구의회 개원식	
7. 5(월)~ 7. 7(수)	서울 국회사무처	의원연수	○2010년도 지방의회 의원연수 (2박3일)	
7. 8(목) 10:30	농소농협	수료식	○제 20기 농소농협 주부대학 수료식	
7. 9(금) 12:00	들속가든	월례회	○농소지역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	
7. 11(일) 09:30	달천운동장	축구대회	○농소3동 생활체육회장배 축구대회	
7. 12(월) 11:00	북구청 3층 상황실	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7. 13(화) 10:00	매곡휴먼시아 304동 1층	개원식	○국공립 빛솔어린이집 개원식	
7. 14(수) 13:30	북구문예회관	정기행사	○제15회 여성주간행사	
7. 15(목)~ 7. 26(금)	북구의회	임시회	○제121회 북구의회 임시회(12 일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7. 15(목)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북구의회 7월 의원간담회	
7. 17(토) 12:00	신천초등학교	설명회	○신천초등학교 통학로 학부모 설명회	
7. 18(일) 11:00	명촌근린공원	개장식	○명촌다목적 미니구장 개장식	
7. 19(월) 11:00	화봉휴먼시아 주민복지관	현판식	○자원봉사 홈타운 11호점 현판식	
7. 23(금) 20:00	북구문예회관 야외공연장	축 제	○제5회 대한민국 시노래 축제	
7. 24(토) 10:30	농소3동 주민센터	이.취임식	○농소3동 아파트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7. 31(토) 20:00	정자해변	축 제	○2010강동해변물놀이축제 '강동해변가요제'	
8. 9(월) 11:00	중부경찰서 회의실	설명회	○중부경찰서 현안설명회	
8. 12(목) 10:30	강동농협	비상대책회의	○변전소 및 송전철탑 반대 비상대책 회의	
8. 12(목) 14:00	북구청 3층 상황실	보고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보고회	
8. 15(일) 09:00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대회	○제3회 생활체육회장배 배드민턴대회	
8. 15(일) 10:10	박상진생가 내	추모제	○고헌 박상진의사 서거 89주기 추모제	
8. 16(월) 10:00	북구청 지하 충무상황실	을지훈련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 참석	
8. 19(목) 13:00	김해 장유면 공공도서관외 3곳	견 학	○하반기 타시도 비교견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8. 23(월) 11:00	7765부대 2대대	위문방문	○제7765부대 2대대 위문방문	
8. 25(수) 14:30	동아청구@ 고나리동	현판식	○자원봉사 홈타운 12호점 현판식	
8. 26(목) 19:00	신명교육 수련원	캠프 및 교육	○2010장애인가족캠프 및 의식교육	
8. 27(금)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북구의회 8월 의원간담회	
8. 27(금) 14:00	달천동 장애인보호 작업장	봉사활동	○북구의회 3분기 자원봉사활동	
8. 30(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설명회	○친환경무상급식 추진경과 설명회	
9. 1(수) 11:00	울산수협 강동위판장	준공식	○수산물종합 위판장 및 제빙공장 준공식	
9. 1(수)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발대식	○지역공동체사업 발대식	
9. 1(수) 19:00	북구문예회관	개막식	○2010무룡예술제 개막식	
9. 2(목) 15: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이.취임식	○북구지역자율방재단장 이.취임식	
9. 5(수) 09:30	달천운동장	체육대회	○제13회 농소3동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9. 6(월)~ 9. 15(수)	북구의회	임시회	○제122회 북구의회 임시회(10 일간)	
9. 10(금) 19:00	북구청 야외특설무대	개막식	○선생님밴드 페스티벌 개막식	
9. 13(월) 19:00	중산문화센터	주민공청회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전환을 위한 주민공청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9. 14(화) 15:00	협성노블리스 관리동	현판식	○자원봉사 홈타운 13호점 현판식	
9. 16(목) 11:00	북구청 3층 상황실	정기총회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정기총회	
9. 16(목) 13:00	북구어르신 복지회관 외2	위문방문	○추석맞이 불우이웃방문	
9. 26(일) 10:30	강동해변	수영대회	○제1회 울산광역시 북구수영연합회 장배 몽돌바다 핀수영대회	
9. 28(화) 14:00	당사마을회관	주민토론회	○당사 낚시공원조성 주민토론회	
9. 29(수)~ 10.18(월)	북구의회	정례회	○제123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일간)	
9. 30(목) 15:00	옹기마을	개막식	○옹기엑스포 개막식	
10. 1(금) 18:00	태화강둔치	미술제	○제4회 태화강 국제설치 미술제 TEAF	
10. 1(금) 19:00	울산MBC 컨벤션 2층 안젤로홀	개회식	○제13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개막식	
10. 5(일) 11:00	롯데호텔	설명회	○동남권 지방의회 의원초청 지역 발전 정책 설명회	
10. 7(목) 11:00	무룡운동장	개회식	○저탄소 녹색생활화 실천다짐대회 개회식	
10. 7(목) 17:00	유진횟집	월례회	○구군의장협의회 월례회	
10. 9(토) 11:00	연암초등학교	경로잔치	○효문동 어르신 위안잔치식	
10. 9(토) 11:30	매곡초등학교	경로잔치	○농소2동 주민한마음 큰잔치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 9(토) 18:00	달동문화공원	퍼레이드	○제44회 처용문화제 퍼레이드	
10. 10(일) 11:00	천곡중학교	경로잔치	○농소3동 어버이 싱글벙글 큰잔치	
10. 10(일) 11:30	호계초등학교	경로잔치	○농소1동 어버이 효도 큰잔치	
10. 11(월) 16:00	롯데호텔	시상식	○제4회 서덕출 문학상 시상식	
10. 13(수) 15:00	호계공설시장	간담회	○호계공설시장 번영회 상인 간담회	
10. 16(토) 10:00	태연재활원 실내체육관	체육대회	○20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10. 16(토) 11:00	무룡정	궁도대회	○제3회 고헌 박상진의사배 궁도대회	
10. 18(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북구의회 10월 의원간담회	
10. 18(월) 14:00	달천동 배작목반	봉사활동	○북구의회 4분기 의원 자원봉사활동	
10. 20(수) 15:00	북구청 광장	기념식	○까페'다드림' 북구청점 오픈 기념식	
10. 21(목) 11:30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수료식	○농소3동 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과장 수료식	
10. 24(일) 09:3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11회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10. 27(수) ~ 10. 28(목)	강화도	통일기행	○민주평통 통일기행	
10. 28(목) 19:00	북구문예회관 야외공연장	음악회	○북구문화원 '가을음악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 29(금) 15:00	울산대공원 SK남문	개막식	○2010 울산평생학습축제 개막식	
11. 1(월)~ 11. 3(수)	제주도	합동연수	○북구의회 하반기 의원.직원 합동연수	
11. 5(금)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개회식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 학생글짓기 대회 개회식	
11. 10(수) 12:00	호계동 소구루마	위로연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고령회원 위로연	
11. 10(수) 13:50	의장실	면 담	○출소자 합숙소 건립반대 대책위 면담	
11. 11(목) 10:00	동천체육관	체육대회	○제6회 울산시 선출직 친선체육대회	
11. 11(목) 16:30	동구 주전동	준공식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식	
11. 12(금) 13:30	동천체육관	개회식	○울산광역시 자원봉사 박람회 개회식	
11. 13(토) 11:00	호계초동학교 체육관	개회식	○제11회 북구장애인 복지증진대회 개회식	
11. 13(토) 14:00	북구문예회관 공연장	개회식	○2010 북구자원봉사자 대회 개회식	
11. 16(화) 10: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강연회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구청장 강연회	
11. 17(수) 14:00	북구의회 본회의장	모의의회	○북구 청소년 모의의회	
11. 19(금) 09:3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토론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토론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 19(금) 11:00	호계동 소구루마	위안행사	○무공수훈자회 2010고령회원 위안행사	
11. 19(금) 14:00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개장식	○천마산 편백 산림욕장 개장식	
11.22(월)~ 12.21(화)	북구의회	정례회	○제124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30일간)	
11. 22(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북구의회 11월 의원간담회	
11. 27(토) 11:00	연암초등학교	체육대회	○제7회 효문동 동민화합 체육대회	
11. 28(일) 10:00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대회	○제9회 북구 생활체육회장기 탁구대회	
11. 29(월) 10:00	호계초등학교 체육관	체육대회	○제6회 호계배드민턴클럽회장배 배드민턴대회	
12. 7(화) 11:00	당사동 자연산직판장	개장식	○당사 자연산직판장 개장식	
12. 7(화)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졸업식	○제3대학 제3학기 졸업식	
12. 8(수) 14:00	북구문예회관 공연장	수료식	○제8기 주민자치대학 수료식	
12. 12(월) 19:00	호계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시상식	○북구생활체육 유공자 시상식	
12. 13(월) 15:00	시청본관 2층 대강당	행 사	○울산광역시 여성자원봉사자대회	
12. 16(목) 12:00	보건소 지하주차장	격려방문	○새마을북구지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격려방문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2. 16(목) 18: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발표회	○제6회 북구청 어린이집 발표회	
12. 16(목) 19:00	울산MBC컨벤션	기념행사	○북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송년의 밤	
12. 18(토) 11:00	중산문화센터 옆	개장식	○중산다목적구장 개장식	
12. 19(일) 14:00	마니무도식당	송년회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 송년회	
12. 21(화) 11:00	북구노인복지회관	종강식	○2010북구어르신행복대학 종강식	
12. 22(수) 16:00	북구문예회관 공연장	발표회	○2010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12. 22(수) 18:30	문수컨벤션센터	기념행사	○울산보육시설연합회 보육인의 밤	
12. 23(목)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시상식	○2008년도 통일염원 한마음글짓기 대회	
12. 23(목) 15:20	신현 IC 옆	기념식수	○통일동산 무궁화 가념식수	
12. 27(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종무식	○2010 북구의회 종무식	
12. 28(화) 11:00	오토밸리복지센터	평가회	○2010 자활사업 평가회	
12. 29(수) 10:00	북구청 구내식당	전시회	○2010 양정.염포 한글교실 글 전시회	
12. 31(금) 11:30	북구청 구내식당	종무식	○2010 북구청 송년다과회	

2011년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 4(화) 14:00	북구의회 의장실	시무식	○2011 북구의회 시무식	
1. 5(수) 10:40	롯데호텔	신년인사회	○2011년도 신년인사회	
1. 7(금)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신년인사회	○2011년도 북구청 신년인사회	
1. 13(목) 15:50	북구의회 의장실	전달식	○적십자 회비 전달식	
1. 18(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북구의회 1월 의원간담회	
1. 20(목) 15:00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정기총회	○제36회 새중앙새마을 금고 정기총회	
1. 20(목) 19:3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총회	○울산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및 정기총회	
1. 24(월) 17:00	도원일식	월례회	○구.군 의장협의회 월례회	
1. 25(화) 19:00	북구문예회관 공연장	보고회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	
1. 27(월) 12:00	래운가든	월례회	○농소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	
1. 27(목) 14:00	농소새마을 금고	정기총회	○농소새마을금고 정기총회	
1. 28(금) 10:3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공청회	○북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1. 31(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연구회	○북구의회 조례입법 연구회	
2. 8(화) 16: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연구회	○북구의회 조례입법 연구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2. 11(금) 17:30	북구청 3층 상황실	정기총회	○민주평통북구협의회 2011 정기총회	
2. 16(수) 14:00	오토밸리 복지센터	보고회	○북구지역노동자실태조사 결과보고회	
2. 16(수) 18:30	울산MBC 컨벤션	이취임식	○사)울산광역시 장애인후원회장 이·취임식	
2.17(목)~ 2.25(금)	북구의회	임시회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9 일간)	
2. 19(토) 10:00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정기총회	○제32차 북울산새마을금고 정기총회	
2. 21(월) 09:30	북구의회 의장실	간담회	○북구의회 2월 의원간담회	
2. 27(일) 10:00	화봉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이취임식	○제9대 화봉.연암.강동축구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2. 28(월) 10:00	농소농협 3층 대회의실	정기총회	○농소농협 제42기 정기총회	
2. 28(월) 11:30	북구문예회관 다목적실	총 회	○북구문화원 총회 및 문화한마당	
3. 1(화) 10:00	시 문화예술회관	기념행사	○제90주년 3·1절 기념행사	
3. 1(화) 17:00	화봉중학교 실내체육관	이취임식	○송정동 제7대 생활체육회장 이취임식	
3. 2(수) 10:30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설명회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설명회	
3. 2(수) 10:30	새중앙새마을 금고	이취임식	○새중앙새마을금고 12대 이사장 이취임식	
3. 2(수)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발대식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발대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3. 3(목) 14:00	농소1동주민센터 다목적홀	개강식	○농소1동 제1기 어르신 아카데미 개강식	
3. 5(토) 10:00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전시회	○현대자동차 난 전시회	
3. 6(일) 10:00	나이스족구장	기원제	○나이스족구회 안전기원제	
3. 8(화)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입학식	○제3대학 제4기 입학식	
3. 8(화) 15:00	울주군청3층 회의실	발간기념회	○'울주군의회 의정 20년사' 발간기념회	
3. 10(목) 13:30	화봉동 사청경로당	개강식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개강식	
3. 14(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북구의회 3월 의원간담회	
3. 14(월) 14:00	명성전문 요양원	봉사활동	○북구의회 1분기 의원자원봉사활동	
3. 16(수) 14:00	북구청 3층 상황실	이사회	○북구교육진흥재단 이사회	
3. 17(목) 14:3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총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제15차 정기총회	
3. 18(금) 10:30	농소새마을 금고	입학식	○농소새마을금고 주부가요교실 제5기 입학식	
3. 18(금) 11:30	한우리 @정문	현판식	○자원봉사홈타운 15호점 현판식	
3. 19(토) 15: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8대 북구축구연합회장배 축구 대회	
3. 22(화) 17:00	중구 고래막	월례회	○구.군의장단협의회 월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3. 23(수) 14:00	북구문예회관 공연장	개강식	○주민자치대학 제9기 개강식	
3. 24(목) 14:00	강동동	개통식	○강동사랑길 개통식	
3. 25(금) 14:00	유아교육 진흥원	개원식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개원식	
3. 25(금) 19:00	북구문예회관 공연장	콘서트	○2011기획공연 천원의 행복 충전 콘서트	
3. 26(토) 10:00	북구청 광장	나눔장터	○제1회 클린환경 나눔장터 격려 방문	
3. 27(일) 11:00	무룡테니스장	체육대회	○북구테니스연합회 테니스대회 방문	
3. 28(월) 10:00	화봉게이트볼장	개장식	○화봉게이트볼장 개장식	
3. 28(월) 11:00	천곡동	식수행사	○제66회 나무심기행사	
3. 28(월)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교 육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교육	
4. 1(금) 14: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연구회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	
4. 6(수) 11:00	호봉사 경내	위령제	○제58회 농소6.25전몰군경 합동 위령제	
4. 7(목) 10:00	새중앙새마을 금고 송정지점	개강식	○새중앙새마을금고 제 1대 주부대학 개강식	
4. 8(금) 11:00	달천운동장	기원제	○농촌지도자회 북구연합회 풍년 기원제	
4. 13(수) 11:00	북구문예회관 다목적실	정기총회	○2011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 정기 총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4. 15(금) 15:00	농소농협 하나로 마트	개소식	○급식지원센터 개소식	
4. 17(일) 10:00	화봉초등학교	체육대회	○제4회 송정동민 생활체육대회	
4. 20(수) 11:00	천곡동(속심) 열사 묘역	추모식	○4.19민주혁명 제51주년 정임석 열사 추모행사	
4. 22(금)~ 4.24(일)	북구청 특설무대	축 제	○제7회 쇠부리축제 개최	
4. 23(토) 10:00	기박산성 기령제	추모제	○제12회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	
4. 24(일) 18:00	북구청 특설무대	축 제	○어르신한마당 & 북구민 어울림 한마당	
4. 24(일) 19:30	북구청 특설무대	시상식	○자원봉사자 시상식 및 폐막행사	
4. 30(토) 14:00	울산대공원 동문	기념행사	○노동절 기념행사	
5. 1(일) 11:00	진장중학교 체육관	경로잔치	○2011 제일팔각회 '효경로잔치' 개최	
5. 3(화)~ 5. 4(목)	완주군	견 학	○2011년 상반기 북구의회 선진지 견학	
5. 13(금) 14: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연구회	○북구의회 조례입법 연구회	
5. 14(토) 15:50	성원상떼빌@ 정문 앞	현판식	○자원봉사 홈타운 제 16호점 현판식	
5. 14(토) 19:00	농소2동 디아채@	음악회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 5월 공연	
5. 16(월) 10:00	삼서코아루 1차 관리동	입학식	○느티나무 엄마학교 입학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5. 16(월) 15:00	북구청 구청장실	회 의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5. 17(화) 11:00	북구청 3층 상황실	위촉식	○주민참여예산 연구원 위촉식 및 회의	
5. 18(수) 11:00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수료식	○사서도우미 전문과정 수료식	
5. 18(수) 12:00	래운가든	월례회	○농소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	
5. 19(목)~ 5. 30(월)	북구의회	임시회	○제126회 북구의회 임시회	
5. 19(목) 10:40	북구의회 의장실	위촉식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	
5. 19(목) 11:2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북구의회 5월 의원간담회(12 일간)	
5. 27(금) 19:00	신명교육연수원	간담회	○여성단체 회원 간담회 개최	
5. 28(토) 09:30	농소운동장	개회식	○제1회 북구청장배 청소년 통일 축구대회 개회식	
5. 28(토) 11:00	북구청 야외광장	벼룩시장	○2011년 제2회 클린나눔장터 격려방문	
5. 28(토) 13:00	북구문예회관 대공연장	개회식	○2011 청소년주간 기념 청소년 직업체험축제' 개회식	
5. 28(토) 16:00	태화강 고래배경기장	체육대회	○2011 태화강 전국교래배 경주대회	
5. 30(월) 14:00	태연학교	봉사활동	○북구의회 2분기 의원 자원봉사 활동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6. 1(수) 14:00	신천하나로마트 대회의실	설명회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	
6. 2(목)~ 6. 3(금)	지리산 일원	단합대회	○상반기 북구의회 직원.의원 단합대회	
6. 6(월) 10:00	현충탑	기념식	○제56회 현충일 추념행사	
6. 8(수) 19:00	강동농협	이취임식	○동해라이온스클럽 제 16.17대 회장 이취임식	
6. 15(수) 19:00	북구문예회관	기념식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식	
6. 20(월) 14: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북구의회 6월 의원간담회	
6. 20(월) 15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연구회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	
6. 21(화) 10:3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토론회	○구청장 취임1년 구정성과 시민단체 토론회	
6. 22(수) 12:00	호계동 모리	운영위원회	○북구노인복지관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	
6. 22(수) 15:00	울산박물관	개관식	○울산발물관 개관행사	
6. 24(금) 13: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글짓기대회	○제11회 효자송도선생 효사상고취 글짓기대회	
6. 24(금) 16: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선포식	○교통사고 제로화비젼 선포식	
6. 25(토) 10:00	동천초등학교 체육관	영어대회	○제3회 울산북구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6. 27(월) 10:30	푸른작은 도서관	개관식	○시설 리모델링 지원 작은도서관 개관식	
6. 27(월) 12:00	시례동 흙과 나무	월례회	○농소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	
6. 30(목) 10:30	쌍용아진4차@ 책가방도서관	개관식	○시설 리모델링 지원 작은도서관 개관식	
6. 30(목)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워크숍	○지역 노사민정 공동 워크숍 개최	
7. 1(월)~ 7. 14(목)	북구의회	정례회	○제127회 제1차 정례회 (14일간)	
7. 1(월) 16:00	신화프라자	개소식	○울산장애인인권포럼 개소식	
7. 6(수) 14:00	북구문예회관 2층 대공연장	개념식	○제16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7. 9(토)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나눔장터	○3회 클린환경 나눔장터	
7. 16(토) 11:00	천곡마을회관	경로잔치	○천곡마을 경로위안잔치 및 주민 단합대회	
7. 16(토) 14:00	호계초교 체육관	강습회	○2011 생활체육회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 강습회	
7. 16(토) 20:00	상안초교 운동장	콘서트	○2011 투게더 콘서트	
7. 19(화) 09:30	소망지역아동 센터	워크숍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7. 19(화) 11:00	매곡휴먼시아 아파트	개소식	○매곡휴먼시아 작은 문고 개소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7. 21(목) 10:00	행복발전소	졸업식	○제2기 희망여성대학 졸업식	
7. 21(목) 11:30	매곡휴먼시아 아파트	현판식	○자원봉사 홈타운 제17호점 현판식	
7. 21(목) 13:00	보건소 3층 회의실	간담회	○장애인 부모회 간담회	
7. 22(금)	호수지구 숲속의정원	일일호프	○해피마을 사랑나눔 일일호프	
7. 22(금) 20:00	한솔그린공원	콘서트	○2011 투게더 콘서트	
7. 23(토) 10:50	산하해변	캠페인	○새마을회 여름철 선진행락질서 지키기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	
7. 23(토) 11:30	강동해변 물놀이장	개장식	○2011 강동해변 물놀이장 개장식	
7. 23(토) 20:00	동대초교 운동장	콘서트	○2011 투게더 콘서트	
7. 26(화) 18:00	오토밸리회관 예식장	취임식	○민주평통북구협의회 제15기 회장 취임식 및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	
8. 9(화) 12:00	구청장실	간담회	○코스트코 대책위 간담회	
8. 13(토) 10:00	신천초교 체육관	단합대회	○냉천마을 한마당잔치 및 청년단합 대회	
8. 16(화) 10:00	구청 지하 충무상황실	간담회	○2011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참관	
8. 16(화) 17:00	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북구의회 8월 의원간담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8. 17(수) 11:00	오토밸리로 연암IC	개통식	○오토밸리로(연암IC~화봉IC) 개통식	
8. 21(일) 10:00	농소3동 도서관	자원봉사	○2011년도 3분기 자원봉사활동	
8. 23(화) 14:00	양정동 주민센터	개소식	○청소년 전용 틔움지역아동센터 개소식	
8. 24(수) 16:3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의원과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	
8. 27(토) 19:00	홈플러스 맞은편 공터	노래자랑	○농소 노래자랑대회 "나도 가수다"	
8. 30(화) 11:30	판지경로당	준공식	○판지경로당 준공식	
8. 30(화) 19:00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	개회식	○2011년 장애인가족캠프 및 의식 교육 세미나 개회식	
8. 31(수) 11:00	문예회관 다목적실	총 회	○북구문화원 임시총회	
8. 31(수)	남구 식당	월례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9. 1(목) 11:00	무룡운동장	캠페인	○북구새마을회 저탄소 녹색생활화 실천 다짐대회	
9. 2(금) 14:00	당사마을회관	설명회	○해양낚시공원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9. 3(토) 20:00	북구종합사회 복지관 앞	음악회	○소리샘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9. 6(화) 10:30	동천체육관	위안행사	○2011년 호국보훈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9. 8(목) 10:00	시의회 3층 대회의실	발족식 특강	○울산광역시 자살예방네트워크 발족식 및 기념 특강	
9. 9(금) 12:00	북구청 구내식당	선포식	○한우 먹는 날 선포식 및 한우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9. 15(목)~ 9.16(금)	충남 홍성군 풀무학교생협	현장견학	○친환경 농업현장 견학	
9. 17(토) 11:00	송정동 무룡정	궁도대회	○제2회 박상진의사 추모 궁도대회 개회식	
9. 18(일) 09:00	강동구장	축구대회	○제16회 화봉.연암.강동 축구연합 회장기 축구대회	
9. 21(수)~ 9.22(목)	경남 통영	견 학	○북구의회 2011년 하반기 선진지 견학	
9. 24(토) 10:00	호계초교 체육관	결연식	○농소농협 다문화 가족 친정엄마 맺어주기 결연식	
9. 24(토) 14:00	중앙도서관 외 2개소	시상식	○독서의 달 행사 다독자 및 우수자원봉사 시상식	
9. 26(월) 17:00	북구청 3층 상황실	정기회의	○2011년 3분기 민주평통 정기회의	
9. 27(화) 10: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발대식	○노인자원봉사 클럽 발대식	
9. 28(수) 10:00	문예회관 다목적실	워크숍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워크숍	
9. 29(목) 09:30	마우나오션 리조트	워크숍	○장애인부모 및 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9. 29(목) 14:20	북구의회 다목적실	연구회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9. 30(금) 15:00	대하그린파크 아파트	현판식	○자원봉사 홈타운 제18호점 현판식	
10. 1(토) 09:00	종목별 경기장	격 려	○제14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선수단 격려	
10. 1(토) 18:00	북구청 광장	축 제	○북구 청소년예술제 "제8회 끼의 왕을 찾아라"	
10. 3(월)~ 10.5(화)	울릉도,독도	연 수	○북구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기행	
10. 6(목) 12:00	지역 식당	월례회	○농소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	
10. 7(금)~ 10. 17(월)	북구의회	임시회	○제128회 북구의회 임시회(11 일간)	
10. 8(토) 10:00	북구청 광장	나눔장터	○2011년 제4회 클린환경 나눔장터	
10. 8(토) 11:00	연암초교 체육관	경로잔치	○효문동 경로잔치	
10. 9(일) 10: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12회 북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	
10. 10(월) 15:30	공영차고지	준공식	○농소 공영차고지 준공식	
10. 13(목) 11:00	송정수변공원	제막식	○화동못수변공원 준공기념 제막 행사	
10. 14(금) 13:30	효문운동장	단합대회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격려	
10. 16(일) 09: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12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 17(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10월 의원간담회	
10. 19(수) 14:00	문예회관 다목적실	포 럼	○건강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포럼	
10. 19(수) 17:30	매곡산업단지	음악회	○노사민정 한마음 음악회	
10. 20(목) 10:00	동천체육관	대 회	○2011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본행사	
10. 20(목) 13:50	문예회관 공연장	기념행사	○제15회 노인의날 기념 어르신문화 축제	
10. 21(금) 11:00	북구노인지회 앞 소공원	경로잔치	○2011 북구노인회 친선윷놀이 및 노래자랑대회	
10. 22(토) 10:00	대현체육관	체육대회	○울산시 민간보육시설장 체육대회	
10. 22(토) 15:00	문수축구장	참 관	○K리그 북구 DAY 참관	
10. 24(월) 12:00	동구 방어진 식당	월례회	○구군 의장협의회 월례회	
10. 26(수) 10:00	우리마을 보물상자	개업식	○마을기업 2호점 개업식	
10. 27(목) 10:00	마우나오션 리조트	워크숍	○구립도서관 발전방안 워크숍	
10. 31(월) 14:00	문예회관 다목적실	토론회	○북구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	
10. 31(월) 16:00	힐스테이트1차아파트	현판식	○작은 도서관 현판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 1(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연구회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	
11. 1(화) 11:30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봉사활동	○2011년 4분기 의원자원봉사활동	
11. 2(수) 11: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위안행사	○보훈단체 고령회원 위안행사	
11. 3(목) 11:30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수료식	○사서도우미 양성과정 수료식	
11. 3(목) 17:00	중산문화센터	설명회	○중산목욕탕 주민설명회	
11. 5(토) 16:00	문예회관 공연장	기념식	○어울림복지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	
11. 8(화) 13:00	시청 대강당	경연대회	○제2회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11. 9(수) 11:00	문수체육공원	대 회	○제14회 울산광역시 농업인 대회	
11. 10(목) 19:00	울산문예회관 전시실	시상식	○제7회 울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11. 11(금) 10:00	달천운동장	체육대회	○2011 선출직 체육대회	
11. 12(토) 10:00	메아리복지원 다목적실	대 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한마음대회	
11. 12(토) 11:00	호계초교 체육관	대 회	○제12회 북구장애인복지증진대회	
11. 14(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연구회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 14(월) 14:00	문예회관 공연장	발표회	○효문동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11. 15(화) 09:00	마산시, 진해시	견 학	○선진행정 우수지역 견학	
11. 16(수) 12:00	롯데호텔 샤롯데룸	협의회	○제160차 전국의장협의회	
11. 18(금) 19:00	명촌문화센터	설명회	○명촌도서관 증축관련 주민설명회	
11. 20(일) 09:00	화봉제2어린이공원	개장식	○화봉 제2어린이공원 다목적구장 개장식 및 나이스회장배 족구대회	
11. 20(일) 10:00	울산MBC컨벤션	오토밸리 복지센터	○제10회 생활체육회장배 배구대회	
11. 21(월) ~ 12. 26(월)	북구의회	정례회	○제129회 북구의회 2차 정례회 (36일간)	
11. 21(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11월 의원간담회 참석	
11. 29(화) 10: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졸업식	○제3대학 졸업식 참석	
12. 1(목) 09:30	보건소 지하 주차장	격 려	○북구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담아 주기	
12. 3(토) 14:00	문예회관 공연장	대 회	○2011 북구자원봉사자대회	
12. 3(토) 15:00	연암족구장	개장식	○연암족구장 개장식	
12. 5(월) 18:30	오토밸리 복지센터	기념식	○북울산청년회의소 창립 제21주년 기념식 및 이·취임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2. 5(월) 19:30	문예회관 공연장	연주회	○제8회 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2. 7(수) 14:00	문예회관 공연장	수료식	○북구주민자치대학 제9기 수료식	
12. 8(목) 11:30	오토밸리 복지센터	워크숍	○노사민정 공동워크숍	
12. 9(금) 12:00	MBC컨벤션 안젤로홀	송년회	○울산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2011 보육인의 밤 행사	
12. 14(수) 10:00	북구청 3층 상황실	보고회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활성화 평가가보고회	
12. 15(목) 10:30	MBC컨벤션 아모레홀	포 럼	○민주평통 통일포럼 “통일시대 시민교실”	
12. 15(목) 13:00	동해농장	오토밸리 복지센터	○구군의장협의회 월례회	
12. 16(금) 18:3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총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정기총회	
12. 19(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12월 의원간담회	
12. 21(수) 18:30	노인복지관 다목적홀	송년행사	○북구노인복지관 송년의 밤	
12. 26(월) 11: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퇴임식	○2011년 북구청 명예퇴임식	
12. 28(수)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종무식	○2011년 북구의회 종무식	
12. 30(금) 11: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종무식	○2011년 북구청 종무식	

2012년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 6(금)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신년회	○2012년 북구 신년인사회	
1. 11(수) 18:00	문예회관 다목적실	발대식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 발대식 및 전기모으기 실천대회	
1. 12(목) 14:00	북구의회 의장실	전달식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행사	
1. 13(금)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총회	○울산여성회 북구지부 정기총회	
1. 13(금) 14:00	어울림보호작업시설 외 1	위 문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	
1. 13(금) 19:00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정기총회	○제14차 북구자연보호협의회 정기총회	
1. 14(토) 15:00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정기총회	○새중앙새마을금고 제38차 정기총회	
1.17(화) 11:00	올림픽파크엘 올림피아홀	정기총회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 정기총회	
1. 18(수) 10:00	북구새마을지회	정기총회	○북구새마을협의회·부녀회 정기총회	
1. 26(목) 19:00	청소년지원센터	설명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주민설명회	
1. 27(금) 10:30	북구의회	견 학	○염포양정여성회 북구의회 견학	
1. 30(월)	문예회관 다목적실	정기총회	○대한적십자사 울산북구협의회 정기총회	
1. 31(화) 10:3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보고회	○사회적기업 수익모델 개발용역 최종보고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2. 1(수) 16:00	북구청 광장	전달식	○자율방범대 방범용차량 전수식	
2. 3(금) 11:00	북구새마을지회	정기총회	○북구새마을지회 정기총회	
2. 3(금) 14:00	울산시청 대강당	기념식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식	
2. 6(월)~ 2. 14(화)	북구의회	임시회	○제130회 북구의회 임시회(9일간)	
2. 6(월) 16:00	8개동	전통행사	○정월대보름 주민한마당행사	
2. 7(화) 14:00	북구청 5층 관제센터	개소식	○울산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식	
2. 10(금) 14:00	북구청 3층 상황실	회 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의	
2. 10(금) 18: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연시총회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 연시총회	
2. 13(월) 11:3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2월 의원간담회	
2.14(화) 13:30	엘림종합 복지센터	봉사활동	○1분기 의원자원봉사활동	
2. 15(수) 11:00	염포동 나무아래	발대식	○염포·양정여성회 발대식	
2. 19(일) 09:00	양정체육공원	준공식	○양정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준공식	
2. 20(월) 10:00	문예회관 다목적실	행 사	○그린리더 북구협의회 “회원의 날” 행사	
2. 20(월) 14:00	달천농공단지 협의회	정기총회	○달천농공단지 정기총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2. 20(월) 19: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취임식	○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이·취임식	
2. 21(화) 14:00	강동동 주민센터	개청식	○강동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	
2. 23(목) 15: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취임식	○북구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 ·취임식	
2. 24(금) 10:30	농소새마을 금고 2층	취임식	○농소새마을금고 이사장 이 ·취임식	
2. 27(월) 11:00	기적의도서관 지하1층	발대식	○기적의 도서관 친구들 발대식	
2. 28(월) 11:00	문예회관 다목적실	정기총회	○북구문화원 제8차 정기총회	
3. 2(금) 14:00	북구의회 다목적실	회 의	○조례입법연구회	
3. 3(토)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전시회	○현대차 난우회 화예품 전시회	
3. 6(화) 10: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입학식	○제3대학 제5학기 입학식	
3. 6(화) 16:00	문예회관 다목적실	수료식	○제1기 CB학교 수료식	
3. 10(토) 10:00	호계초교 체육관	취임식	○북구배드민턴연합회장 이 ·취임식	
3. 13(월)	북구의회	임시회	○제131회 북구의회 임시회	
3. 16(금) 10:30	농소농협 육묘센터	취임식	○농촌지도자 북구연합회장 이·취임식	
3. 18(일) 11: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체육대회	○제11회 북구청장배 탁구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3. 19(월) 12:00	강동동 식당	간담회	○북구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3. 20(화) 18: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취임식	○북구생활체육회장 이취임식	
3. 23(금) 19:30	문예회관 공연장	콘서트	○충전콘서트 “천원의 행복”	
3. 24(토) 15: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19회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3. 25(일) 10:00	무룡테니스장	체육대회	○제11회 생활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	
3. 26(월) 14:00	구청장실	전달식	○제53보병사단 사단장 감사패 전달식	
3. 28(수) 14:00	귀영하이야트 아파트	발대식	○귀영하이야트아파트 그린마을 발대식	
3. 31(토) 11:00	신기마을회관	발대식	○매곡·신천·중산 지역발전 협의회 발대식	
4. 5(목) 11:00	호계동 호봉사	위령제	○제59회 농소 625전몰군경 합동 위령제	
4. 6(금) 11:30	명성전문 요양원	경로잔치	○천곡마을 어르신 경로잔치	
4. 15(일) 10:00	화봉초교 체육관	체육대회	○제5회 송정동민 생활체육대회	
4. 16(월) 14:00	문예회관 다목적실	콘서트	○제2기 CB학교 개강식	
4. 17(화) 10:30	북구의회 다목적실	회 의	○4월 의원간담회 및 조례입법 연구회	
4. 17(화)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입학식	○주민자치 아카데미 입학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4. 19(목) 14:00	오토밸리복지 센터 4층	기념식	○친환경급식 활동사례집 출판기념식	
4. 20(금) 10:00	문예회관 공연장	교 육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4. 21(토) 09:30	명촌둔치 운동장	행 사	○동천 자전거대행진	
4. 21(토) 10:00	문예회관 로비	나눔장터	○2012년 제1회 클린환경 나눔장터	
4. 21(토) 10:30	오토밸리 체육관	기념식	○북구아파트연합회 창립 기념식	
4. 21(토) 14:00	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	발대식	○자원봉사센터 제8기 가족봉사단 발대식	
4. 22(일) 09:30	메카볼링장	체육대회	○제13회 북구청장기 볼링대회	
4. 22(일) 10:30	달천운동장	체육대회	○제15회 농소3동 한마음생활체육 대회	
4. 23(월) 11:00	기박산성 [기백이재]	추모제	○제13회 기박산성 의병제	
4. 24(화) 14:00	효성삼환@ 관리사무소앞	개소식	○자원봉사 홈타운 제19호점 현판식	
4. 25(수)~ 4. 27(금)	여수	연찬회	○북구의회 의원·직원 합동연찬회	
4. 28(토) 13:00	태화강 축구장	대 회	○울산태화강 고래배 경주대회	
4. 30(월) 14: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심포지엄	○도시농업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심포지엄	
5. 1(화) 10:00	함월운동장	대 회	○울산농협 임직원 한마음 전진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5. 1(수) 10:3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의원 및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5. 2(수) 19: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개강식	○좋은 아버지학교 개강식	
5. 3(목) 11:00	벼자동화 육묘센터	준공식	○벼자동화 육묘센터 증축 준공식	
5. 3(목) 14: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취임식	○북구새마을부녀회장 이·취임식 및 직장공장협의회장 취임식	
5. 4(금) 10:00	화봉게이트볼장	체육대회	○제12회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5. 4(금)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의원과 생활체육회 관계자 간담회	
5. 4(금) 14:00	농소운동장	단합대회	○환경미화원 상반기 단합대회	
5. 4(금) 15:00	중산문화센터	발대식	○농소2동 문화예술단 발대식	
5. 5(토) 09:30	북구청 광장	개막식	○제8회 봄꽃전시회 개막식	
5. 5(토) 10:00	북구청 광장	개막식	○제90회 어린이날 기념 "북구 어린이 큰잔치" 개막식	
5. 8(화)~ 5. 21(월)	북구의회	임시회	○제132회 북구의회 임시회	
5. 10(목) 14:00	대우아파트 관리사무소앞	발대식	○대우아파트 그린마을 발대식	
5. 11(금) 19:00	북구청 광장	개회식	○제8회 울산쇠부리축제 개회식	
5. 13(일) 07:00	동천초등학교	대 회	○제13회 북구 건강달리기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5. 13(일) 19:30	북구청 광장	폐막식	○제8회 쇠부리축제 폐막식	
5. 15(화) 14:00	오토밸리 4층 회의실	개강식	○제1기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리더 양성학교 개강식	
5. 15(화) 15:00	문수양궁장	체육대회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체육대회	
5. 17(목) 17:30	롯데시네마	행 사	○가정어린이집 스승의날 행사	
5. 19(토) 13:00	문예회관 공연장	대 회	○제5회 청소년 직업체험 축제	
5. 19(토) 15: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9회 구청장기 축구대회	
5. 19(토) 19:00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광장	음악회	○농소큰사랑 작은 음악회	
5. 20(일) 09:00	무룡테니스장	체육대회	○제15회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5. 20(일) 11:00	염포초교 운동장	체육대회	○제9회 염포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5. 21(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5월 의원간담회	
5. 21(월) 14:00	어울림보호작업장	자원봉사	○2분기 의원자원봉사활동	
5. 22(화)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선포식	○2012년 울산북구의 책 선포식	
5. 24(목)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설명회	○송정수변공원조성사업 주민설명회	
5. 27(일) 16:00	농소운동장	폐회식	○제2회 구청장배 청소년통일축구대회 폐회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5. 30(수) 09:00	농소1동 주민센터	입학식	○호계시장 상인대학 입학식	
6. 2(토) 19:00	홈플러스 앞	일일호프	○농소3동 자율방범대 일일호프	
6. 3(일) 09:30	명촌공원	걷기대회	○2012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 걷기	
6. 8(금)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세미나	○2012 지역사회복지 세미나	
6. 9(토) 11:00	북구청 광장	박람회	○2012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6. 9(토) 14:00	동천초교 체육과	체육대회	○제7회 생활체육 국학기공대회	
6. 10(일) 10:00	강동해변 야외공연장	체육대회	○2012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	
6. 11(월) 14:00	농소부추 출하장	준공식	○농소황토부추 출하장 준공식	
6. 12(화) 11:30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수료식	○제2기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수료식	
6. 18(월) 10: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간담회	○6월 의원간담회	
6. 24(일) 10:00	연암중 체육관	체육대회	○북구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6. 26(화) 14:00	보건소2층 정신보건센터	개소식	○북구 정신보건센터 개소식	
6. 29(금) 10:00	북구의회 대회의실	임시회	○제133회 북구의회 임시회	

부록

1. 역대 의장단 명단
2. 초대의원 명단
3. 초대의원 사진
4. 제2대의원 명단
5. 제2대의원 사진
6. 제3대의원 명단
7. 제3대의원 사진
8. 제4대의원 명단
9. 제4대의원 사진
10.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
11. 역대 구청장 명단
12.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13.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역대 의장단 명단

□ 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강 동 동	김 성 보	1937. 4. 4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8.7.7 ~2000.2.21	
〃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11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양 정 동	진 한 걸	1953.11.15	2000.7.7 ~2002.6.30	
제3대 전반기	송 정 동	김 진 영	1964.10.11	2002.7.9 ~2004.7.6	
제3대 후반기	염 포 동	하 인 규	1959. 9.17	2004.7.7 ~2006.6.30	
제4대 전반기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류 재 건	1961. 2. 5	2006.7.3 ~2008.7.2	
제4대 후반기	농소1동,강동동,송정동	윤 임 지	1952.10.15	2008.7.3 ~2010.6.30	
제5대 전반기	농소1동,강동동,송정동	안승찬	1963. 5.29	2010.7.1 ~2012.6.30	

□ 부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11	1998.7.7 ~2000.2.21	
〃	양 정 동	진 한 걸	1953.11.15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강 동 동	박 광 식	1955.11.15	2000.7.7 ~2002.6.30	
제3대 전반기	농소2동	김 재 근	1958. 9.11	2002.7.9 ~2004.7.6	
제3대 후반기	농소1동	이 재 경	1956. 4.25	2004.7.7 ~2006.6.30	
제4대 전반기	농소1동,강동동,송정동	윤 임 지	1952.10.15	2006.7.3 ~2008.7.2	
제4대 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문 석 주	1962. 8.27	2008.7.3 ~2010.4.21	
〃	효문동,양정동,염포동	류 인 목	1961.12.30	2010.4.22 ~2010.6.30	
제5대 전반기	효문동,양정동,염포동	정 윤 석	1960. 9.20	2010.7.1 ~2012.6.30	

초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강동동	김성보	1937. 4. 4	1997.7.15 ~1998.6.30	환경수도
2	부의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7.7.15 ~1998.6.30	교육사회
3	의 원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7.7.15 ~1998.6.30	운영·건설
4	의 원	농소동	한성두	1941. 3.31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5	의 원	농소·강동 (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7.7.15 ~1998.6.30	운영·내무
6	의 원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7.7.15 ~1998.6.30	내무위원장
7	의 원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간사)·운영
8	의 원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8.3.2 ~1998.6.30	환경수도 (간사)·운영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

초대의원 사진

□ 의장단

강 동 동(면)

의장 **김 성 보**

송 정 동

부의장 **윤 두 환**

□ 의 원

제10선거구

이 상 원

농 소 동(읍)

한 성 두

진 장 동

정 석 수

효 문 동

이 병 우

양 정 동

진 한 걸

염 포 동

조 승 수

제2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8.7.1 ~2000.2.21	전반기
2	〃	농소3동	박춘환	1952. 1.11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 및 의장(보궐)
3	〃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보궐) 및 후반기 의장
4	부의장	강동동	박광식	1955.11.15	1998.7.1 ~2002.6.30	
5	의 원	농소1동	김수헌	1957.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6	〃	농소2동	강혁진	1961.10. 1	1998.7.1 ~2002.6.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1998.7.1 ~2002.6.30	
8	〃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0.6.8 ~2002.6.30	보궐선거 당선
9	〃	염포동	윤종오	1963. 8.14	1998.7.1 ~2002.6.30	후반기 운영위원장

제2대의원 사진

□ 의장단

송 정 동

의장 **윤 두 환**

농 소 3 동

의장 **박 춘 환**

양 정 동

의장 **진 한 걸**

강 동 동

부의장 **박 광 식**

□ 의 원

농 소 1 동

김 수 헌

농 소 2 동

강 혁 진

효 문 동

류 재 건

송 정 동

김 진 영

염 포 동

윤 종 오

제3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2.7.1 ~2006.6.30	전반기 의장
2	〃	염포동	하인규	1959. 9.17	2002.7.1 ~2006.6.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농소2동	김재근	1958. 9.11	2002.7.1 ~2006.6.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1동	이재경	1956. 4.25	2002.7.1 ~2006.6.30	후반기 부의장
5	의원	농소3동	김대영	1960. 2. 2	2002.7.1 ~2006.4.10	후반기 운영위원장
6	〃	강동동	윤임지	1952.10.15	2002.7.1 ~2006.6.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2002.7.1 ~2006.6.30	
8	〃	양정동	류인목	1961.12.30	2002.7.1 ~2006.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3대의원 사진

□ 의장단

송 정 동

의장 **김 진 영**

염 포 동

의장 **하 인 규**

농 소 2 동

부의장 **김 재 근**

농 소 1 동

부의장 **이 재 경**

□ 의 원

농 소 3 동

김 대 영

강 동 동

윤 임 지

효 문 동

류 재 건

양 정 동

류 인 목

제4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류재건	1961. 2. 5	2006.7.1 ~2010.6.30	전반기 의장
2	〃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윤임지	1952.10.15	2006.7.1 ~2010.6.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윤임지	1952.10.15	2006.7.1 ~2010.6.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2동, 농소3동	문석주	1962. 8.27	2006.7.1 ~2010.4.21	후반기 부의장
5	〃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류인목	1961.12.30	2006.7.1 ~2010.6.30	후반기 부의장
6	의원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박병석	1966. 9.25	2006.7.1 ~2010.6.30	
7	〃	농소2동, 농소3동	이은영	1966.10.16	2006.7.1 ~2010.3.22	
8	〃	비례대표	이영희	1963. 7.22	2006.7.1 ~2010.6.30	

제4대의원 사진

□ 의장단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의장 **류 재 건**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의장 **윤 임 지**

농소2동, 농소3동

부의장 **문 석 주**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부의장 **류 인 목**

□ 의 원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박 병 석

농소2동, 농소3동

이 은 영

비례대표

이 영 희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97.7.15 이전)

연번	직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원	울산시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5.7.1 ~1997.7.14	제5대 경남도의회의원 운영·내무위원
2	의장	울주군 농소읍	한성두	1941. 3.31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울주군의회의장 통합시의회 부의장
3	의원	울주군 강동면	김성보	1937. 4.4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원
4	〃	중 구 송정동	윤두환	1955. 3.5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교육사회위원
5	〃	중 구 진장동	김두헌	1936. 4.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원
6	〃	중 구 효문동	한기찬	1938. 4.3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건설위원
7	운 영 위원장	중 구 양정동	류재락	1945. 8.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위원장
8	의원	중 구 염포동	김춘길	1942. 10.10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
9	〃	중 구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건설위원
10	내 무 위원장	중 구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장
11	의 원	중 구 양정동	진한걸	1953. 11.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운영위원
12	〃	중 구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간사·운영위원

역대 구청장 명단

연 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직무대행	황 성 환	1948. 2.29	1997.7.15 ~1998.6.30	
2	민선초대	조 승 수	1963. 1.22	1998.7.1 ~2002.6.30	
3	민선제2대	이 상 범	1957. 4.15	2002.7.1 ~2006.5.24	
4	민선제3대	강 석 구	1960. 9.18	2006.7.1 ~2010.6.30	
5	민선제4대	윤 종 오	1963. 8. 14	2010.7.1 ~현재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연번	직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1	사무 국장	지 방 서 기 관	이종영	1939. 9.27	1997.7.15 ~1998.9.30	1998.10.1 구조조정으로 직제개편
2	사무 과장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30	1998.10.1 ~2001.1.15	〃
3	〃	〃	최종식	1952.10.20	2001.1.16 ~2004.3.5	
4	〃	〃	송태호	1955. 1.10	2004.3.6 ~2006.1.11	
5	〃	〃	이상헌	1955. 2. 6	2006.1.12 ~2007.7.26	
6	〃	〃	홍장희	1956. 7.22	2007.7.27 ~ 2009.7.19	
7	〃	〃	윤규태	1959. 5.10	2009.7.20 ~2010.7.22	
8	〃	〃	이차범	1955. 9.17	2010.7.23 ~2011.12.31	
9	〃	〃	강걸수	1957.11. 5	2012.1.1 ~현재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1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30	1997.7.15 ~1998.9.30	
2	〃	〃	이차호	1960.10.26	1998.10.1 ~1999.9.30	
3	〃	〃	성낙화	1952. 5. 5	1999.10.1 ~2001.1.15	
4	〃	〃	김찬수	1955. 9.28	2001.1.16 ~2003.1.27	
5	〃	〃	이상찬	1971.12.25	2003.1.28 ~2006.1.8	
6	〃	〃	박민수	1957. 4.27	2006.1.12 ~2008.7.20	
7	〃	〃	윤규태	1959. 5.10	2008.7.21 ~2009.7.19	
8	〃	〃	김규석	1956. 7.26	2009.7.20 ~2011.2.13	
9	〃	〃	김종구	1956.10. 2	2011.2.14 ~현재	

의 정 백 서 제8집

제5대 전반기

인 쇄 : 2012년 11월 일
발 행 : 2012년 11월 일
발행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우)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
(연암동 1004-1)
편집처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TEL : 052-241-8975
FAX : 052-241-8979
인쇄사 : 신정종합인쇄사(T.052-273-1070)